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8호 2007. 12

차례

특집 동북아 영토 관련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 최장근 | 일본의 竹島·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
-1905년 '竹島영토' 편입~2005년 '竹島の 날' 제정 7
- 권오엽 | 『隱州視聽合紀』와 獨島 39
- 김종건 |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65

논문

- 차순철 | 三國~統一新羅時代 城郭의 鐵器生産과 管理 145
- 이효형 | 『歷代年表』와 『三國遺事』를 통해 본 一然의 발해 인식 183
- 임상선 |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指掌圖』 217
- 이준식 | 일본제국주의와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만주영화협회를 중심으로 245

설림

- 송병기 | 獨島(竹島)問題의 再檢討 293

서평

- 이성환 | 『영토 내셔널리즘의 탄생-「독도/다케시마 문제」의 정치학』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獨島/竹島問題」の政治學』,
東京:ミネルヴァ書房, 344쪽) 319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31

특집

동북아 영토 관련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일본의 竹島·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

- 1905년 '竹島영토' 편입 ~ 2005년 '竹島の 날' 제정 -

최 장 근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I. 머리말

현재 일본의 선행연구 중에서 역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독도관련 논문 및 저서는 160편 정도 있다.¹⁾ 이들 선행연구는 시기와 경향에 따라 대충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1905년 일제가 竹島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이후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연구, 둘째로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의 연구, 셋째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의 연구, 넷째로 1977년 국제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부터 1996년 한·일 양국이 채택한 시기까지의 연구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외무성의 논리²⁾가 선행연구에

1) 최장근, 2007a, 「독도관련연구경향(1948 ~ 현재)분석: 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128 ~ 148쪽, 참고목록 참조.

2) 일본 외무성의 논리는 현재 일본 영토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행연구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의해 계발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독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무성의 논리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국내외적 배경³⁾에 의해 어떤 연구자에 의해 어떤 논리가 계발되었고, 그 이후 어떻게 수정·변경·보완되어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⁴⁾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① 시기별로 선행연구를 일본제국기, 평화선 선포기, 한일협정기, 국제해양법협약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시기부터 그 이후시기로 나누어 사료의 발굴과 해석의 변천을 검토한다. ② 내용별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의 지위에 대한 선행연구의 영유권 인식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③ 대표적 선행연구를 위주로 검토하고, 그 이외의 선행연구는 각주에서 보완한다.⁵⁾

일본의 독도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는 최근 몇 편 있으나,⁶⁾ 선행연구를 내용별·시대별·저자별·테마별로 함께 다루려는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인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죽도/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근세시대 일본 측의 울릉도 호칭, 영토편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 측의 독도 호칭에는 '竹島'라고 한다.

3) 국내외적 환경에 관해서는 시기 구분으로 다소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지면관계와 본론의 취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4) 일본 측 논리의 수정·변경·보완에 대해서는 시기별 내용의 차이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5) 일본 외무성의 논리가 본고에서 제시한 대표적 선행연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본고 이외의 선행연구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김병렬, 2001,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더; 한철호, 2006, 『명치 시기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장근, 2007b, 「일부 일본학자들의 독도사료조작으로 인한 영유권 본질 훼손」, 『일본문화학보』 제32집. 401~428쪽 기타.

II. 일본제국期の 독도 · 竹島 연구

竹島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러일전쟁 때이며, 일본해전의 승리로 지리학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⁷⁾ 1905년 4월, 『地學雜誌』의 「잡보」에 '帝國新領土 竹島'라는 제목으로 "이 섬(신영토 竹島)은 한국의 범위에 속하는 울릉도(松島 ; Dagelet Isiland)와 함께 일본 해상의 고도(孤島)로서 아직 소속이 미정이다"라고 했다.⁸⁾ 이 기사는 1899년의 『조선수로지』(263쪽)에 의한 것이다.⁹⁾ 이 『조선수로지』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1905년 2월 22일 島根縣이 공지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田中阿歌麻呂는 1905년 5월 "이 섬은 에도시대에 일본인이 먼저 발견했으나, 明治 일본은 '리앙쿠르암'을 일본제국 영토의 외곽에 두고 있었고, 조선은 이를 '독도'라고 했다" "明治 초년에 正院 지리과에서 이 섬을 일본 섬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후 출판되는 많은 지도에서 소재를 기록하지 않았다. 1875년 문부성 출판 宮本三平씨의 일본제국전도에 이 섬을 기록하지만, 제국 영토 외곽에 두고 일본 영토와 같은 색으로 도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田中은 에도시대의 '竹島'와 지금의 '竹島'를 혼동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시의 竹島 인식이 『조선수로지』의 조선영토론을 답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1906년 5월) 울릉도 사람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리학자들도 인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일본이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요한 사료들 중

7) 田中阿歌麻呂,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旧記」, 『地學雜誌』 제17권 제200호, 594~598쪽.

8) 1905, 「帝國新領土竹島」, 『地學雜誌』 제17권 제196호, 282쪽.

9) 田中阿歌麻呂,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旧記」, 『地學雜誌』 제210호, 415쪽.

10) 田中阿歌麻呂 자신이 『地學雜誌』 제210호의 「부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했음을 시인함.

「竹島考」 「竹島圖說」이 田中에 의해 처음으로 활용되었다는 점, 처음으로 「竹島(울릉도)도해면허」를 언급했다는 점이 특기사항이다.¹¹⁾

奥原碧雲은 처음으로 독도의 영유권 연구를 총체적으로 시도했다. 그는 1906년 3월 島根縣調査團의 일원으로서 독도에 동행하고, 그 결과 『竹島沿革考』를 저술하여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근에 島根縣의 竹島問題연구회가 발굴한 「中井養三郎氏立志傳」도 대동소이한 내용이다.¹²⁾ 『隱州視聽合記』(1667), 『邊要分界圖考』의 「同習考定分界圖」(1804), 『地誌概要』,¹³⁾ 大西教保의 『伯耆古記集』(1823),¹⁴⁾ 『竹島圖說』, 『竹島考』, 『伯耆民談』 등을 일본영토의 근거로 삼았다. 奥原은 독도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프랑스 선박이 발견하기 이전, 『邊要分界圖考』(1809), 『古記集』(182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지가 이 암초를 외국인이 발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조 양국 해안에서의 거리는 일본 측이 10리가 더 가깝다. 그런데 海圖에는 조선부여 편입되어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현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문헌이 奥原에 의해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隱州視聽合記』에 대해서도 “울릉도, 즉 무인도인 竹島를 가지고 일본의 건(乾: 서북)영토, 이 주(州)를 경계로 한다”고 해석했다. 『隱州視聽合記』의 ‘이 주(州)’의 해석을 처음으로 ‘竹島(울릉도)’라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한 장본인이다. 또 “1903년 伯州 東伯郡 小鴨村 中井養三郎씨가 리양코도(신영토)의 바다사자 포획업을 기도했는데, 동향 사람들이 찬성하여 리양쿠르도에 상륙하여 처음으로 일장기를 바위 위에 펼리게 되었던 것이 明治 36년 5월이었다”고 했다.¹⁵⁾ 또 “中井養三郎은 리양코도를 조선영토라고 믿고 조선정부에 貸下의 청원을 결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11) 田中阿歌麻呂, 1905, 앞의 논문, 594 ~ 598쪽.

12) 竹島문제연구회, 2007, 「최종보고서」, 153쪽. 竹島문제연구회가 최근 발굴한 사료임.

13) 한국북방학회 편, 2004, 『한국북방학회논집』 제8권, 302 ~ 303쪽; 奥原碧雲, 1906a, 『竹島及び鬱陵島』, 松江縣立図書館所藏.

14) 한국북방학회 편, 2004, 위의 책, 302 ~ 303쪽.

15) 한국북방학회 편, 2004, 앞의 책, 311쪽.

는 해명하지 않았다.¹⁶⁾ “영토편입은 지위상·경영상·역사상으로 보다 공연히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竹島 인식에 대해 “다들 ‘신영토 竹島’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¹⁷⁾

이처럼 奥原은 근세와 근대에 걸쳐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는 한국 측의 사료를 전적으로 무시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적 竹島 연구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고, 1910년 이후에는 독도를 포함해서 대한제국 영토 전부가 일본영토로 존재하게 되었다. 일제시대의 독도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1910년 이후의 독도연구는 순수한 의미의 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된 것들이 많다.

1919년, 栢原昌三은 울릉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⁸⁾ 1921년, 坪井九馬三은 독도에 대해 “이 섬을 卵島라고 하여 근년에 竹島라고 개명한 것을 신속히 원래대로 돌릴 것”, “일본의 서남부인 일본해 해전전장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이 있다. …… 이 두 섬(울릉도와 죽섬)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 隱岐郡도의 북서북 앞바다에 바위섬이 있다”라고 했다.¹⁹⁾ 이는 지리적으로 동해·일본해에 일본의 隱岐嶋와 조선의 ‘울릉도·죽섬·독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특히 죽섬의 존재를 울릉도 속도에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발상으로 「칙령41호」와 동일한 인식이다.

1930년, 桶畑雪湖는 “竹島(리앙쿠르트도)는 울릉도와 함께 지금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隱岐의 제3부속도 卵島”라고 하

16) 한국북방학회 편, 2004, 앞의 책, 312쪽.

17) 奥原碧雲, 1906b,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제8권 제6호, 461~478쪽.

18) 栢原昌三, 1919a, 「太平洋問題としての竹島回顧(承前)」, 『歴史と地理』 제4권 제1호, 36~44쪽; 栢原昌三, 1919b, 「日明鮮の國交通商と柳川一件の真相」, 당시는 미간으로 간행예정이었음.

19) 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歴史地理』 제38권 제3호, 4~5쪽.

여 일본해·동해의 도서로서,²⁰⁾ ‘울릉도·독도·隱岐嶋’를 이전 시대와 달리 같은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于山-于陵-武陵-羽陵-鬱陵’을 같은 어원으로 보고,²¹⁾ ‘우산도=울릉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동해 울릉도와 우산도 2도가 존재한다는 조선시대의 논리를 부정하는 논리의 기원이다.

1931년, 田保橋潔은 “고 기록에 의하면 2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한데, 두 섬을 각각 울릉도, 리양쿠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금 울릉도의 별명을 松島, 리양쿠르도의 별명을 竹島라고 하는 것은 영국해군의 관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근세시대의 울릉도 즉 竹島가 松島가 된 경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²²⁾ 또 “제3도는 竹島 즉 죽섬(땃섬)은 울릉도 주변의 10여개의 암초 중에 가장 큰 암초이고, 竹島는 松竹의 명칭으로 이 섬은 해도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보이지 않는다.²³⁾ 울릉도의 속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²⁴⁾ 죽섬이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20) 樋畑雪湖, 1930, 「日本海にお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歴史地理』 제55권 제6호, 62~63쪽.

21) 坪井九馬三, 1930, 「竹島について」, 『歴史地理』 제56권 제1호, 33~34쪽.

22) 田保橋潔, 1931a,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嶺學叢』 제3호, 1~26쪽.

23) 田保橋潔, 1931b, 「鬱陵島の名稱について(補)一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嶺學會編, 『嶺學叢』 제4호, 106쪽.

24) 田保橋潔, 1931b, 위의 논문, 107~108쪽.

III. 평화선 선언기의 독도·竹島 연구

1_ 川上 논리의 성립

川上の 연구는 한국이 1951년 1월 28일 평화선을 선언했을 때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영유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1953년 8월 『竹島の領有』를 집필했다.²⁵⁾ 본서는 당시 한국이 내세운 “①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총사령부각서에 의해 명백히 일본영토에서 배제되었다. ② 독도가 맥아더라인 외부에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③ 성종 3년(1483) 이래 당시 조정이 조사한 결과 조선실록에 영흥인 金自周가 섬을 발견하여 삼봉도라고 명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④ 獨島는 예로부터 우산도라고 칭해졌는데, 일본은 숙종 23년(1697) 울릉도와 우산도에 일본인의 출어를 금했다”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했다.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

(1)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지 않는다. 공식으로 산출해 보면, 해발 200m 이상 지점에 올라가야 독도가 보이는데, 당시 울릉도는 밀림으로 200m 지점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시계가 가려서 볼 수 없다.²⁶⁾

(2)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면 『동국여지승람』에 삽입되어 있는 「팔도총도」를 비롯해서 울릉과 우산 2섬으로 제작된 지도가 많이 있다. 이들 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동일한 섬을 표기한 것이다. 「대동여지도(1861)」에도 지금의 竹島가 없다. 요컨대 한인이 예로부터 지금의 竹島를 분명히 인지했다는 증

25) 川上健三, 외무성 조약국 편,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 조약국 참조.

26)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281~282쪽.

거는 문헌이나 지도 어디에도 없다.

(3) 삼봉도의 소재는 金自周라는 사람의 글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다. 정부가 수차례 조사를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이 독도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²⁷⁾

(4) 『동국여지승람』의 “풍월청명하면 서로 역력가건”은 울릉도에서 조선 본토 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나 「강원도부분도」의 「2도설」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실제의 식견이 아니다.²⁸⁾

(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산국」은 문헌상으로 독도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산국의 영역과 무관하다.²⁹⁾

2) “근세 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으며, 독도는 漁撈地나 寄港地로 삼았다”

(1) 일본의 古문헌인 『隱州視聽合紀』(1667), 『竹島圖說』(1751~1763), 『長生竹島記』(1801), 『隱岐古記集』(1823), 『古記集』,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磯竹島覺書』(內閣文庫), 『通航一覽』(권137) 등에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기했다.

(2) 조선 측 문헌인 『지봉유설』 권2 지리부(1614)와 長久保赤水의 『日本輿地路程全圖』(1775), 近藤守重의 「今所考定分界之圖」(『邊要分界圖考』所收, 1804), 그리고 江戸時代 中期 이후의 일본지도에도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기했다.

(3) 서양지도와 도명의 혼란 경위는 시볼트 지도의 영향으로 유럽지도가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하면서 일본에서도 섬 명칭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예부터 일본에서 松島라 불렀던 섬은 호네트 록스인데, 각국 지도에 일본영토로 되어 있다.

(4) 1618년 伯耆國 米子인 大谷甚吉, 村川市兵衛가 번주 松平新太郎을 통해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도해면허를 받고, 매년 도해하여 잡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27) 川上健三, 1966, 위의 책, 113~117쪽; 堀和生, 1986, 「1905年の竹嶋領土編入」, 『朝鮮史研究』論文集, No.24, 101쪽.

28)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104쪽.

29)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98~99쪽.

(5) 『태종실록』 권34에 의하면 “왜구 우산, 무릉 침략하다”라는 대목처럼 조선정부가 완전히 방기하여 일본인들의 왕래가 점차로 늘어났다.

(6) 3대의 大谷右九衛門(勝信)이 延寶 9년 막부 순검사에게 청원한 문서 속에 “竹島로 가는 길에 둘레가 20평 되는 작은 섬(松島)을 24~25년 이전에 阿部四良五郎이 배령하여 도항했다”는 기록이 있다. 大谷가문은 萬治 2년(1659) 阿部四良五郎이 松島 도항에 관한 막부의 내의를 얻어 寬文 원년(1661) 大谷가문이 松島 도항을 시작했다.³⁰⁾

3) “『竹島一件』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와 무관하다”

(1) 『숙종실록』의 안용복 기록은 허위 진술이고, 『동국문헌비고』(1770) 등의 우산도=松島(독도)설은 편찬자가 무비판적으로 베낀 것이다.

(2) 막부의 울릉도도해의 금지조치도 안용복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용복 도해의 5개월 전에 이미 도해금지조치가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 도해와 무관하다.

4) “明治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는 1877년의 태정관 문서를 비롯한 명치정부의 독도 인식이었는데, 川上은 이러한 문헌적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 “1905년 竹島の 영토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합당했다”

竹島는 반드시 무주지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먼저 인지하여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다. 법적으로 보면, 1905년 2월 22일 島根縣의 「고시40호」로 정식 영토로 편입됐고, 이후 제2차 대전 발생 직후까지 中井의 바다사자 조업 등 유효적으로 경영을 했으며, 그 사이에 한 번도 일본영유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³¹⁾

30) 박병섭, 2006,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31) 横川新, 横田喜三郎, 田岡良一, 芹田健太郎, 太壽堂鼎가 논리를 보강함. 최장근, 2007a, 앞의 논문, <참고목록> 참조.

6)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처리되었다”

(1)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의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 의거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제외된 것이 1952년 4월 발효됨으로써 SCAPIN 677호의 독도 규정은 일본영토로 변경되었다.³²⁾

(2)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연합국이 한국영토로 결정한 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맥아더라인의 각서는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의 행정권정지 지령도 필연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竹島는 종전처럼 島根縣 隱岐지청 관할하에 돌아갔다.

(3) 竹島가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공군연습장으로서 일·미합동위원회의 토의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竹島가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2. 田村 논리의 성립

田村은 島根縣의 입장에서 1954년 『島根縣竹島の研究』를 집필했고,³³⁾ 이를 보완·수정하여 1965년 『島根縣新竹島の研究』를 출간했다.³⁴⁾ 그 내용 중 竹島의 역사적 지위에 관해서는 川上の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田村은 島根縣이 명치시대에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여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기본적으로 竹島는 일본영토이고,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지위에 관해서는 전술한 川上の 논리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한 내용으로 田村의 논리를 살펴보기로 한다.³⁵⁾

32) 太壽堂鼎, 1966, 「竹島紛爭」,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 4~5合併号, 130쪽.

33) 田村清三郎, 1954, 『島根縣竹島の研究』, 島根縣總務部總務課.

34) 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島根縣總務部總務課.

35) 이하의 (1)~(4) 내용은 田村清三郎, 1965, 위의 책, 1~30쪽의 「죽도와 송도의 역사적 연혁」 참고 바람.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

(1) 竹島 영유에 관한 한국 측 주장의 역사적 사실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뿐이다. 竹島가 우산도 또는 삼봉도라고 하는데, 우산도를 울릉도 이외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에 지나지 않고, 『삼국사기』·『동국여지승람』·『지봉유설』과 그 외 모든 문헌이 신라 지증왕 때에 우산국을 정복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라고 명기하고 있다.

(2)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2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뿐이고, 그 『동국여지승람』 자체에 일단 우산과 울릉은 원래 1개의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 『동국여지승람』 부도의 「팔도총도」와 「강원도도」를 보면 조선 동해안에 거의 같은 크기의 섬 2개가 그려져 있다. 조선 해안에 가까운 것을 우산이라고 하고, 먼 것을 울릉이라고 한다. 만약 우산을 일본의 竹島라고 한다면, 울릉도는 竹島의 동쪽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과 모순된다.

(4)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이 오랫동안 울릉도를 포기하여 동해에 있어서 가장 지식이 결여되었을 때 그려진 작품이고, 1개의 울릉도를 우산과 울릉 2개의 섬으로 그릴 정도로 엉터리이다.

(5) 于山, 鬱陵, 武陵, 羽陵, 蔚陵은 모두 ‘鬱’과 ‘山’을 다른 한자로 쓴 것에 불과하다.

(6) 한국은 삼봉도를 竹島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봉도는 울릉도의 별칭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그것이 竹島라고 해도 풍랑 때문에 도달할 수 없었던 섬을 조사단이 삼봉도를 유효하게 점거하여 경영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근세 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고, 독도를 어로지 및 기항지로 삼았다”

大谷, 村川 양 가문이 막부로부터 竹島를 배령받아서 울릉도를 왕복하던 도중 竹島에 들러서 바다사자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 大谷, 村川은 竹島에 임시 천막을 쳤다.³⁶⁾ 1724년 1월 28일 竹島에 가는 길에 松島에 들러 어업을 했다. 延

36) 田村은 “享保 9년(1724) 鳥取 池田藩에서 막부에 제출한 지도에 건물이 그려져 있다”고 함.

寶 9년(1681)에 “小島(竹島)에서 바다사자 기름을 채취했다”, 1695년 “울릉도 기항을 조선인이 방해하여 歸途에 전복을 채취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3) “「竹島一件」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와 무관하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 도항하여 이들 2섬이 한국영토라고 성명하고 일본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했다고 하지만, 안용복의 사건은 울릉도에 관한 분쟁이고 對馬島를 통한 일·한 교섭에서 일본 측이 포기한 것은 울릉도인 磯竹島로서 島根縣 竹島인 당시의 松島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훗날 ‘隱岐國 松島’라고 했고, 八右衛門은 松島 도항을 명목으로 울릉도에 배를 보냈다고 했다.

4) “明治 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

(1) 시마네 현지의 中井養三郎이 이 섬을 조선영토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후세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 부속설명 중에도 이 섬을 예로부터 일본인이 인지하고 경영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2) 군함 對馬의 건은 『朝鮮沿岸水路誌』(昭和 8년, 1933)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연안 部分’에 竹島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선총독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동해안으로 항해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本州沿岸水路誌』에서는 ‘隱岐列島 및 竹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울릉도의 주민은 여름마다 이 섬(독도)에 상륙하여 천막을 치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했다”라는 것은 對馬의 보고가 아니고, 수로지 편찬자의 기술이어서 울릉도의 조선인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竹島에서 어업을 한 것은 島根縣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다사자 어업자들뿐이었다.

(4) 1904~1905년 당시 울릉도를 근거로 竹島에 도항하여 바다사자를 포획한 사람은 일본인이고, 그들은 隱岐 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어부들이었다. 당시 울릉도 한인들은 미역 외에 다른 것은 채취할 줄 몰랐던 것이다.

(5) 樋畑雪湖는 『역사와 지리』에서 明治 이전의 竹島가 울릉도인 것을 전

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竹島는 결코 강원도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 자체도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같이 잘못투성이인 형편없는 논저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

5)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은 정당했다”

(1) 독도가 조선인에 의해 발견되어 점유되었고, 한국영토로서 영유의 의도를 가지고 역대 한국정부가 행정조치를 해왔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다.³⁷⁾

(2) 한인은 지리적으로 울릉도 ~ 竹島 간의 49해리가 竹島 ~ 隱岐섬 86해리에 대해 한국영토의 근거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울릉도 자체를 공도화하려고 했는데, 조선 본토와 竹島 간의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3) 미국인 외교고문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05년 2월 島根縣 고시에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서 외부에 고용할 것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천한 외국인은 미국인이고,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간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竹島 편입 때에 만일 정말로 한국이 竹島에 대해 역사적·행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

(4) 島根縣 고시에 의한 竹島 편입절차에 있어서도, 영토편입을 외국에 통고해야 하는 것은 국제법적 통칙이 아니다. 南島島, 沖島島의 편입도 東京府 고지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현 고지에 의한 영토편입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5) 선점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서 국가의 실력 지배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은 편입 직후인 1905년 8월 島根縣知事와 1906년 3월 島根縣 內務部長 등이 현지시찰과 나무심기를 했고, 1905년 漁期에는 島根縣 경관이 파견되

37) 이하 ①~⑥의 내용은 田村清三郎, 1965, 앞의 책, 40~115쪽의 「竹島 영토 편입과 관리」 참고 바람.

어 단속을 했다. 또 해군망루건설 및 매각, 토지측량과 국유대장예의 등재, 국유지의 매각, 어업단속규칙에 의한 바다사자 어업허가, 금어구역 설치 등 종전을 맞이하기까지 국가의 지배는 배타적으로 계속되었다. 국제법이 요구하는 선점의 제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었고, 竹島의 주권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³⁸⁾

6)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했다”

(1) 대일평화조약의 독도 지위와 관련하여 전전에 島根縣이 竹島를 島根縣 영역으로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竹島를 울릉도의 부속도로 간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로서 남게 되었다.

(2) 1953년 2월 27일 미군 현지부대가 한국에 통고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竹島의 폭격연습 중지를 미극동공군사령부가 결정한 것은 竹島의 영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竹島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일·미합동위원회의 의제가 된 것이다.

(3) 1905년 竹島어업권을 허가했다가, 주일미군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중지되었지만, 竹島가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됨으로써 島根縣은 1953년 6월 10일 바다사자 어업을 橋岡忠重을 포함해서 3인에게 허가하여 1941년 패전까지 지속되었다. ‘竹島의 광업권’도 1953년에 허가했는데 현재에도 광업채굴권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³⁹⁾

38) 田村清三郎, 1965, 앞의 책, 143 ~ 160쪽.

39) 田村清三郎, 1965, 앞의 책, 110 ~ 115쪽.

IV. 한일협정期の 독도·竹島 연구 - 山邊健太郎의 川上·田村 논리의 비판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川上健三은 외무성 조사관으로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竹島の研究』(1953년 8월)를 수정·보완하여 1966년 『竹島の歴史地理學的 研究』(古今書院)를 집필했다. 독도에 대한 川上の 내셔널리즘적 역사해석은 당대의 역사학을 대표하던 山邊健太郎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山邊은 일본의 독도 편입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토침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에 대한 비판

山邊은 “竹島문제는 지리나 지리지의 문제가 아니고 제국주의의 영토확장욕의 역사문제이다” 또는 “竹島 영토문제는 1904년 이후의 문제이기애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니므로 고문헌의 인용은 무의미하다”며⁴⁰⁾ 고문헌에 등장하는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2) “근세 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고, 독도를 어로지 및 기항지로 삼았다”에 대한 비판

막부(德川)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이 섬을 알고 있어서 일본영토라고 한다면, 1905년 2월 새로 영토편입을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⁴¹⁾

3) “「竹島一件」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와 무관하다”에 대한 비판

외무성이 『隱州視聽合記』(1667), 「大谷九右衛門勝信의 請書」를 적용하여 竹島

40) 山邊健太郎, 1964,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民族問題研究所, 『코리아評論』, 4~14쪽.

41) 伊東巳代治 문서에 의하면 “제국의 고유 영토는 신화에 의한 것으로 本州, 九州, 四國, 淡路島”라고 기록됨. 山邊健太郎, 1964, 위의 논문, 4쪽.

와 松島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했고, 1696년 막부가 竹島도항금지조치를 결정한 후에는 ‘竹島’ (당시의 울릉도)가 일본령임을 포기했지만, 『竹島圖說』 (1751~1763)의 『隱岐國松島』라는 것을 이용하여 지금의 竹島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明治시대 일본인의 竹島인식을 증명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4) “明治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에 대한 비판

明治시대 일본인은 『隱岐誌』, 『島根縣誌』에 나타나는 中井의 인식처럼, 竹島를 ‘조선령’ 혹은 ‘소속미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울릉도 도항 도중에 竹島를 일본인들이 알게 되었지만, 막부가 竹島(울릉도)를 포기했다. 1882년 明治정부도 울릉도를 한국영유라고 인정했다. 이때 일본이 竹島 영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竹島를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1904년께 일본은 竹島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5) “1905년 일본의 竹島 영토편입은 정당했다”에 대한 비판

(1) 근대국제법 이론은 영토편입의 정당성으로 부적절하다.⁴²⁾ ‘영토경영’은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경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귀속결정과 무관하다. ‘국가의 영유권 의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1904년께에는 ‘조선령’ 혹은 ‘소속불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竹島문제의 본질은 1905년 영토편입의 정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일본의 한국침략의 의도가 명확한 시점에 竹島를 편입하였다는 것은 탐욕에 해당 하는 것이다. 러일전쟁 중 「한일의정서」의 ‘臨機收用’ 항목에 의해 실제로 일본해군이 竹島를 강점한 상황에서 영토편입을 단행했는데, 일본의 외무고문이 있었기에 한국은 항의할 수 없었다.

42) 山邊健太郎, 1964, 앞의 논문, 8쪽.

V. 200해리 국제해양법 채택期の 독도·竹島 연구 (1977 ~)

1_ 梶村秀樹의 川上·田村 논리의 비판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독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독도문제가 일본 역사학계에 이슈가 되어 논쟁거리가 되었다가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977년 해양국제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됨으로써, 동해·일본해의 해양경계를 의식한 福田 총리가 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발언하여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⁴³⁾ 이때에 일본 국내에서는 위무성의 내셔널리즘적인 영유권 논리를 비판하는 연구가 등장했다. 바로 조선사학자 梶村秀樹의 연구이다.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에 대한 비판

울릉도와 독도를 형제의 섬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다.⁴⁴⁾ 형제 섬은 역사적 경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川上은 수식을 동원해서 해수면에 떠 있는 선상에서 관측해서 竹島의 정상부가 보이는 한계는 30해리라고 산출하여 49해리 떨어진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한기의 반론을 인용할 경우, 산에 오르면 같은 공식을 사용해도 시달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竹島의 최상봉이 174m인데, 49해리 떨어진 울릉도에서도 120m 이상의 곳에서 보인다. 또한 울릉도가 밀림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웠고, 올라가더라도 시계가 가리어서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울릉도에 몇 백 년이나 살아온 조선인을 멍청이로 취급하는 편견이다.

이처럼 梶村은 川上の 주장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임을 비판했다.

43) 梶村秀樹, 1978, 「獨島問題=日本國家」, 『朝鮮研究』第182, 32~35쪽.

44) 梶村秀樹, 1978, 위의 논문, 11쪽.

2) “근세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고, 독도를 어로지 및 기항지로 삼았다”에 대한 비판

(1) 울릉도 이외의 또 다른 섬 우산도가 조선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일본보다 약 200년 빠르다.

(2) 川上은 울릉도와 우산도가 같은 어원이므로 동일 섬이라고 주장하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인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양섬이 상이한 2섬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⁴⁵⁾

(3) 『竹島圖說』(17세기 중엽)의 『隱岐國松島』와 관련해서는, 1667년 『隱州視聽合記』에서 隱岐를 서북경계로 하고 있으므로 松島를 오키국이라고 할 수 없다. 또 『長生竹島記』(1801)에서 “松島(지금의 竹島, 독도) 앞바다를 일본 서해의 끝”이라고 한 것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일본령이 되려면 울릉도 앞바다를 일본 서해의 끝이라고 해야 한다. 막부의 배령은 울릉도의 배령이 아니라 울릉도·독도의 국외도해면허증을 배령했다는 의미이다.⁴⁶⁾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隱州視聽合記』의 해석에 대해 梶村은 隱岐를 일본의 서북경계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3) “『竹島一件』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와 무관하다”에 대한 비판

川上은 1618년 울릉도 도항 시 竹島를 항해의 목표로 사용했고, 1661년에는 竹島도항면허를 받아서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지만, 에도막부가 竹島와 松島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구분했다는 증거사료는 단 한 점도 없다. 따라서 울릉도 도항금지선 곧 竹島 도항금지선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⁴⁷⁾ 즉 울릉도와 독도는 ‘불가분의 관계’(속도관계)에 있다.

이처럼 梶村은 川上の 『竹島圖說』 주장을 비판했다.

45)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15~16쪽.

46)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20~21쪽.

47)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18~19쪽.

4) “明治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에 대한 비판

1876~1878년 사이에 울릉도개척원이 제출되었을 때 “松島는 조선의 우산도”(공신국장 田邊太一), “호르넷 록스는 일본에 속하며, 각국의 지도에 있다”(기록국장 渡邊洪基)고 한 것처럼, 독도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달랐다. 따라서 明治시대에도 일본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⁴⁸⁾ 그러나 1881년 조선 측이 급속히 울릉도를 개척하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섬에 대해 독도·석도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⁴⁹⁾

梶村이 '石島'를 지금의 독도로 단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5) “1905년 일본의 竹島 영토편입은 정당했다”에 대한 비판

(1) 1900년 「칙령 41호」의 “석도가 관음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지형이나 연혁으로 봐서 생각하기 어렵고, 독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면 편입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독도영토편입은 일본인의 입장에서든 제국주의의 영토확장욕의 역사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⁵⁰⁾

6)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했다”에 대한 비판

(1) 평화선은 제국주의로부터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고, 전후 한국은 광복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게 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애매하게 표현하여 영토문제 해결을 회피했다.

(2) 1952년 7월 26일 미·일안보조약을 실행하기 위해 미·일합동위원회가 미·일협정 제2조에 의거하여 竹島를 미군연습기지로 지정했다. 일본은 이

48)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21~22쪽.

49)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22~23쪽.

50)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24~27쪽.

것을 미국이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측의 항의로 1953년 2월 27일 일·미공군이 竹島를 연습구획에서 제외했다고 공표함으로써 일본 측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⁵¹⁾

7)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처리했다”에 대한 비판
한일협정에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일본은 독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상유지정책을 택했다. 독도가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은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국내법에 의거하여 3해리 영해와 12해리 전관수역을 설정했다.⁵²⁾

2_ 堀和生の 川上·田村 논리의 비판

1977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되면서 한·일 양국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었다. 川上·田村 논리는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유리한 자료만 활용했고, 한국 측의 사료를 비롯해 일본 측에 불리한 사료를 전적으로 배제했다.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의 심각한 외교분쟁이 되는 것을 우려한 역사학자들 중에는 독도연구에 가담한 이도 있다. 堀和生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그는 1987년 川上·田村 논리의 모순성을 비판했다.⁵³⁾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에 대한 비판

(1) 川上은 『세종실록지리지』(실질적으로는 1432년, 형식적으로는 1454년)의 2도설과 『고려사』(1451)의 1도(2도 주석)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의 2도(1도 주석)설을 비교하여 1도설만 채택하고, 다른 문헌은 『고려사』의 주석설을

51)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27~30쪽.

52) 梶村秀樹, 1978, 앞의 논문, 31~32쪽.

53)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24호, 綠蔭書房, 97~125쪽.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울릉도와 우산도는 원래 1개의 섬이라고 했다. 川上은 자신의 1도설을 주장하기 위해 16세기 이후의 많은 문헌과 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를 모두 부정했다.

(2) “松島는 우산도이다. 우산도는 우리나라의 경계이다”라고 기록한 『증보문헌비고』(1908)는 실록을 보완하는 관찬문헌으로서 200년에 걸친 편찬사업의 소산으로 조선정부의 영유의식이 지속되었다.

(3) 조선지도에 우산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1499)이 최초이고, 이후 오늘날까지 발견된 지도 중에 우산도가 실려 있는 지도는 수백 장이나 된다.

(4) 조선정부는 15세기부터 '竹島=독도'를 우산도로서 자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19세기 말 재차 영유의식을 명확히 했다.

2) “근세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고, 독도를 어로지 및 기항지로 삼았다”에 대한 비판

(1) 경위도를 사용한 일본의 관찬지도인 長久保赤水의 「日本路程輿地圖」(1778)는 일본 본토와 그 부속섬에 모두 채색을 하고 있는데, 竹島와 松島는 조선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2) 1667년 『隱州視聽合紀』에 松島와 竹島가 표기되어 있다. 막부는 울릉도와 竹島가 한국영토인지 모르고 울릉도와 竹島의 도항면허를 주었다.

3) “「竹島一件」(1693 ~ 1699)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의 도항금지와 무관하다”에 대한 비판

(1) 竹島一件 이후 막부는 竹島와 松島를 일본령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고지도에는 竹島와 松島가 없다.

(2) 山陰지방의 민간인 중에는 「竹島渡海之願」(戶田敬義)의 「竹島之圖」처럼 竹島가 조선령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竹島圖說』처럼 「隱岐國 松島」처럼 몰래 松島에 도항하여 松島가 일본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

나 책임이 없는 민간인들의 인식은 영토주권의 귀속에 관계가 없다.

(3) 안용복과 村川·大谷이 충돌했을 때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울릉도와 우산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결국 막부는 1696년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했다. 이로써 독도도항도 자연적으로 금지되었다.

4) “明治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에 대한 비판

(1) 明治정부는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竹島 외 1도」, 즉 그 부속도에 분명히 「松島」라고 표기하여 지금의 竹島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2) 1870년 조선시찰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竹島 松島, 조선부속”이라고 적고 있다.

(3) 公信국장 田邊太一은 개척원의 松島가 우산도라면 개척을 허가할 수 없고, 松島가 소속불명이라면 조선과 교섭할 수 있다고 했다.

(4) 1886년 일본 해군이 제작한 『수로지』의 한·러편 제2권 제2판에 울릉도와 리앙코르열암을 표기했고, 1892년 『일본수로지』는 리앙코르열암은 없고, 조선수로지 1894년과 1899년판에 리앙코르열암이 게재되어 있다.

5) “1905년 일본의 竹島 영토편입은 정당했다”에 대한 비판

(1) 川上은 조선인의 竹島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竹島가 보이지 않고, 竹島를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1899년 9월 울릉도에 파견된 외무성 서기 高雄謙三의 보고에 의하면 2천 명의 토민이 살고 선박을 제조하는 대목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영토편입을 신청한 中井養三郎은 “조선영토로 생각하고”(『島根縣誌』, 1923), “조선영토로 믿고”(『竹島及鬱陵島』, 1906년 3월 25일), “본도 울릉도 부속으로서 한국영토”(『中井履歷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1906년 3월 28일 竹島 시찰조사단의 일원인 島根縣 事務官 神西由太郎이 귀도에 울릉도를 방문하여 竹島 편입 사실을 알리자 다음날 울도군수 심흥택은 신속히 “본군 소속 독도가 …… 일본영지가 되었다”고 중앙에 보고했

고, 참정대신 박제순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될 근거가 없다.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보고는 전국지인 『대한매일신보』(5월 1일)와 『황성신문』(5월 9일)에도 게재되었으며, 황헌(전라도 구례)도 수기 『매천야록』에서 “조선영토 독도를 일본인이 함부로 자국영토라고 한다”고 했다.

3_ 川上·田村 논리를 둘러싼 内藤-池内와 塚本-下條의 공방

최근 일본 국내에서는 한·일 간의 최대 갈등현안인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竹島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下條正男이 島根縣의 지원을 받아 독도관련 사료에 대해 역사학적 해석을 부정하고 내셔널리즘 측면에서 일본영토로서의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内藤正中과 池内宏이 학술적 논증으로 맞서고 있다.⁵⁴⁾

1)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에 대해

(1) 下條는 川上の 논리를 보강하여, 과거의 문헌상 지리적 표기는 육지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실록에 등장하는 ‘相距不遠’, ‘則可望見’, ‘歷歷可見’ 등은 육지와 울릉도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⁵⁾ 또 下條는 한국영토로서의 근거가 되는 『東國文獻備考(輿地考)』의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松島”라는 대목에 대해 ‘우성원은 동해에 1개의 섬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신경준이 2개의 섬’이라고 사료를 개찬했다고 하여,⁵⁶⁾ 松島=우산도라고 하는 한국 측의 문헌적 해석을 부정했다. 『竹嶋紀事』, 『변례집요』에 나오는 “안용복이 우산도(독도)를 발견했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54) 内藤正中, 2007, 「日本の史料から見た獨島の歸屬問題」, 『근대 질서와 영토, 그리고 현재의 독도문제』, 2007년도 독도관련 국제학술회(영남대학교) 발표문, 2007년 10월 25일 참조.

55)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 61쪽.

56) 下條正男, 1999, 「竹島問題」 金炳烈氏に 再反論する, 『現代コリア』 제391호, 50~63쪽.

(2) 塚本은 “기록상으로 오늘날의 竹島(독도)에 처음으로 간 사람은 안용복”이라고 하여,⁵⁷⁾ 17세기 이전에 고지도 및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독도’를 부정했다.

2) “근세일본은 울릉도를 지배했고, 독도를 어로지 및 기항지로 삼았다”에 대해

(1) 국제법을 전공한 塚本은 川上の 松島도항면허 취득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大谷九右衛門의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를 근거로 1656년 또는 그 이전에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막부로부터 도해면허(혹은 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⁵⁸⁾

(2) 池內는 下條와 塚本の 주장에 반박하여 松島(독도)도해 면허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다. 3대의 大谷九右衛門(『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이 공문서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고, 또 1666년 大谷의 배가 조선에 표류했을 때도 竹島 면허는 있었지만 松島면허는 없었다고 했다.⁵⁹⁾ 단지 阿部四郎五郎(幕府 家臣)은 村川이 松島도해를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1658~1660년 사이에 大谷·村川 간의 松島도해의 조정 역할을 하여 결국은 1660년 울릉도에 도해하는 가문이 독도에도 도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661년 大谷이 처음으로 도해했는데,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했다.⁶⁰⁾

(3) 池內는 1618년에 울릉도 도항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川上の 논리에 대해서도, “도해면허에 열거되어 있는 4명은 그때 老中이 아니었고, 4중 모두 老中이 된 것은 1622년이였다. 실제로 면허가 발급된 것은 1625년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도해면허도 ‘이번 도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1회용에 불과했다. 사실 1696년에 도해금지로 막부에 반환했다. 도해면허는 전통적인 對馬와의

57) 塚本孝, 1996,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第289, 3쪽.

58) 塚本孝, 2002, 「竹島領有權をめぐる日韓兩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2002년 6月号, 53; 塚本孝, 1996, 위의 논문, 2쪽.

59) 池内敏, 1999, 「竹島渡海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第1号, 38쪽.

60)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58~261쪽.

61) 池内敏, 2006, 위의 책, 247~250쪽.

관례를 깨고 진미인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여 변칙으로 취득했던 것이다”이라고 했다.⁶²⁾

(4) 下條는 川上の 논리를 답습하여 『隱州視聽合紀』(齋藤豊仙, 1667)의 ‘州’가 ‘島’라는 의미를 논증하기 위해, 안정복(이익의 제자)의 『성호사설』에 “一州의 토를 찾았다”(안용복의 공으로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찾아왔다)는 구절을 지적하여 “一州는 울릉도와 독도(朝鬱兩島監稅將)”라고 했다. 이에 대해 池内는 『隱州視聽合紀』를 바탕으로 증보한 『隱岐國古記』를 근거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이 國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隱岐國임에 분명하다고 했다.⁶³⁾

3) “「竹島一件」으로 울릉도의 도항금지조치는 독도와 무관하다”에 대해 下條는 「竹島一件」에서 안용복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여 독도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본영토론자이지만, 下條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해석했다.⁶⁴⁾ 塚本은 1695년 鳥取藩은 막부에 대해 “竹島(울릉도) 松島(독도), 기타는 양국(因幡國, 伯耆國)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는 사료를 인정했다. 또한 内藤은 “1695년 안용복은 2차로 隱岐에 와서 자신이 그린 「조선팔도지도」에 松島, 竹島를 기록한 뒤 조선영토라며 일본 관리에게 제출했다. 한편 1695년 12월 24일 鳥取藩은 막부의 요청을 받고, “竹島, 松島 그 외 양국 부속섬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鳥取藩, 對馬藩에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다른 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었다고 했다.⁶⁵⁾

4) “明治정부는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다”에 대해 下條는 “竹島 외 1島”의 ‘1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

62) 池内敏, 2006, 앞의 책, 264 ~ 269쪽.

63) 池内敏, 2005, 「『隱州視聽合紀』의 構成·內容·用語法」, 『靑丘學術論集』 第25集, 147쪽.

64) 塚本孝, 1985, 「竹島關係 日鳥取藩文書および繪図(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75쪽.

65) 内藤正中·박명섭, 2006, 『竹島=獨島論爭』, 新幹社, 18 ~ 19쪽.

다. 반면 일본영토론자인 塚本은 1877년 「태정관문서」에 “竹島 외 1도, 즉 松島는 明治정부와 관계없다”는 부분에 대해 명치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하여 사료를 인정하고 있다.⁶⁶⁾ 下條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

5) “1905년 일본의 竹島 영토편입은 정당했다”에 대해

下條는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석도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석도가 독도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조사 때 독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이규원은 ‘송죽, 우산도’를 울릉도에 가까이 있는 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1900년 4월 우용정도 울릉도를 조사했는데, 독도는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 영토의 범위에 대해 1899년 간행한 현재의 『대한지지』의 경우에는 동경 124°에서 130° 35′ 사이, 1907년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에는 울도의 위치가 130° 35′에서 45′까지로 되어 있어서 대한제국은 울릉도까지만 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⁶⁷⁾

이에 대해 池內와 內藤은 “1904년 일본군함 新高號의 항해일지에 리앙크르암을 한인은 독도라고 부른다는 대목이 있다”며 신용하의 논리를 적용하여 “석도는 전라도 사투리로서 독도”라고 했다.⁶⁸⁾ 일본영토론자인 塚本은 “울릉도에 정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竹島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인이 이때부터 독섬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石島가 관음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竹島(독도)라는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석도가 독도임을 반드시 부정하지는 않았다.⁶⁹⁾

66) 塚本孝, 1996, 앞의 논문, 2쪽.

67) 內藤正中·박병섭, 2006, 앞의 책, 143~154쪽.

68) 內藤正中·박병섭, 2006, 앞의 책, 21쪽.

69) 塚本孝, 1996, 앞의 논문, 6쪽.

6)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했다”에 대해

(1) 下條는 SCAPIN 677호를 비롯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조치한 일련의 연합국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로 “1946년 최남선이 저술한 『조선상식문답』(「조선지리상의 위치」)에서 ‘도서를 합하면 동경 124° 11′ 00″에서 130° 56′ 23″’라고 하였다고 하여 한국 도서의 극동을 경상북도 울릉군 竹島(죽섬)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들었다.⁷⁰⁾

(2) 1954년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일본영토론자이자 국제법을 전공한 塚本은 최근 국제사법재판의 기탁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가볍게 논할 문제가 아니다. 영토문제이므로 패소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⁷¹⁾

VI. 맺음말

이상 일본의 독도 선행연구를 4시기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았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연구로서, 1905년 일본영토 편입의 정당한 논리를 계발하기 위해 福原碧雲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竹島연구를 총체적으로 시도했다. 일본제국시대 독도연구의 특징으로는 ① 1905년 2월 영토편입 당시에는 무주지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연구가 있었다. ② 지리학·역사학 등의 학계에서는 독도의 실체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했다. ③ 독도는 山陰 어부들에게 다소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

70) 김병렬, 2001, 앞의 책, 173~173쪽.

71) 塚本孝, 2006, 「냉전중언의 북방영토문제」, 『國際法外交雜誌』 제105권 제1호, 98쪽.

을 갖고 있었다. ④학계에서도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영토로서 조선의 ‘울릉도-독도’, 일본의 오키도라는 인식구조를 갖고 있었다. 한일합병 후에는 동해·일본해의 ‘오키도-竹島(신영토)-울릉도’라는 인식으로 동해의 모든 영역을 같은 공간으로 보았다.

둘째, 평화선선언 때에 일본적 논리를 계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외무성의 입장에서 川上健三의 『竹島の領有』(1953), 島根縣의 입장에서 田村清三郎의 『島根縣竹島の研究』(1954)가 있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1965년 한일협정 때에는 田村清三郎이 『島根縣竹島の新研究』(1965)를, 川上健三이 자신의 『竹島の領有』를 수정·보완하여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를 집필했고, 이를 비판한 山邊健太郎의 연구가 있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영토로서의 논리계발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역사학적 논증으로 일본영토론을 비판하는 연구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넷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1977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로서, 川上健三과 田村清三郎을 비판한 1978년 梶村秀樹의 연구가 있었고, 1983년 6월 이후 川上·田村의 논리를 보강한 塚本孝의 연구가 있었다. 또 1987년 川上·田村의 논리를 비판한 堀和生の 연구가 있었고, 1988년 田川孝三이 川上·田村의 논리를 보강했다.⁷²⁾ 이들 양자 간에 논쟁이 있는 후 소강상태를 거쳐서 1996년 한·일 양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수용함으로써 독도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기록인 『竹島考証』(상·중·하), 田村清三郎의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가 복각되었다. 이들 연구는 초판 발행 이후 이미 30년이 경과한 저작들인데, 이 시기에 잇달아 복각된 것은 竹島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72) 田川孝三, 1989, 「竹島 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제20호, 6~52쪽.

논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⁷³⁾ 최근 川上·田村의 논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국제법 입장의 塚本孝, 역사학 입장의 下修正男이 진력하고 있다.

이와 달리 川上·田村의 논리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内藤正中, 池内敏 등이 새로운 학술적인 논증을 내놓았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일본영토론과 이를 비판하는 연구자 간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영토론자 주장의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73) 内藤正中, 2006, 「연구성과와 과제」, 『독도와 竹島』, 제이앤씨, 24 ~ 26쪽.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endency on Dokdo
in the Field of History

Choi, Jang-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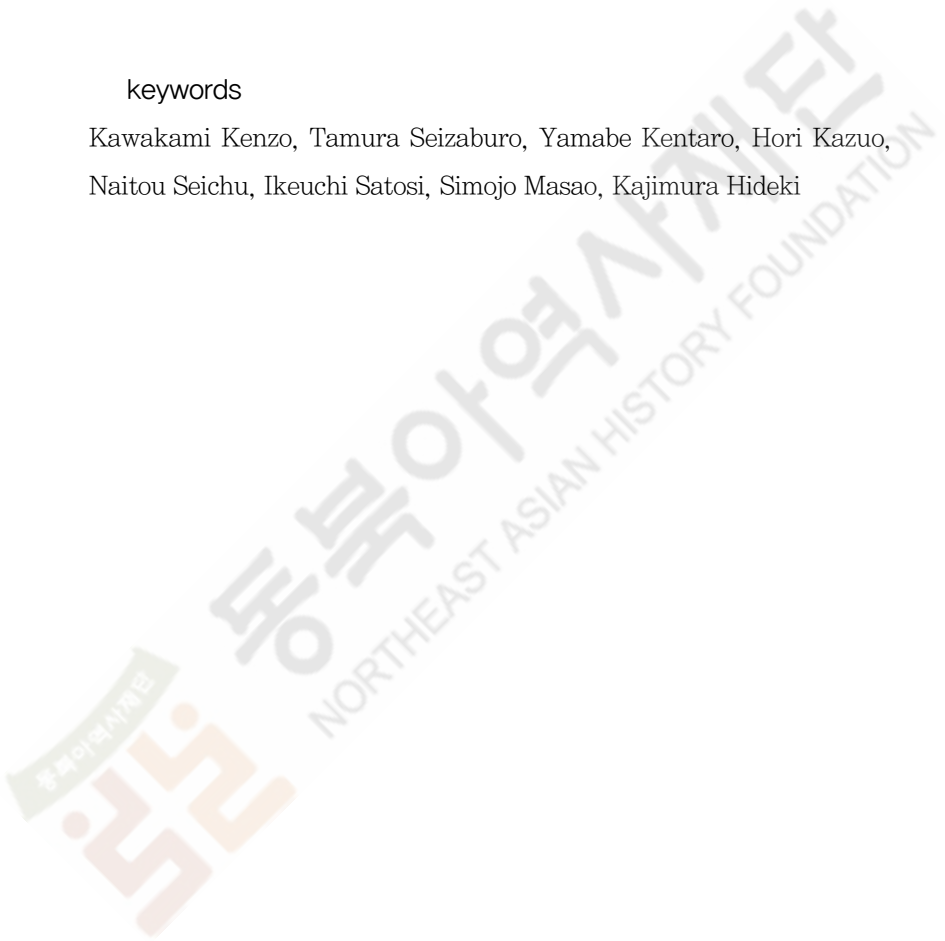
Korea and Japan had several times of heated dispute with Dokdo issue. It first occurred when Korea declared Peace Line in 1952. Second was with the Peace Agreement in 1965. Discussion o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oncerning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came at thi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existing studies of Japanese scholars. I also explored what changes, to keep pace with times, could be made on the existing arguments. For now, Japanese scholars have same opinion as Japanese Foreign Ministry on the territorial claims. 'Japanese scholars' here means nationalist scholars.

In 1951 Japan studi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for the first time. Korea's declaration of Peace Line invited Japan to do that. Japan argued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in either historically or in international law. Japan totally ignored any grounds which pointed Dokdo as Korean territory. Japan deliberately fabricated basis to paint Dokdo as Japanese territory. Kawakami Kenzo and Tamura Seizaburo can be named as representative scholars. They were the first ones to misrepresent the truth on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ir argument as it was. Despite of the 50 years of time, Japan's territorial claim has never changed.

Even though new findings lead new theories, their studies were different from Dokdo's historical ground essentially. It was distorted history of Dokdo.

keywords

Kawakami Kenzo, Tamura Seizaburo, Yamabe Kentaro, Hori Kazuo, Naitou Seichu, Ikeuchi Satosi, Simojo Masao, Kajimura Hideki



『隱州視聽合紀』와 獨島

권 오 엽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I. 머리말

『은주시청합기』¹⁾는 은주의 역사, 지리, 산물, 풍속, 조세 등을 기록한 풍토지다. 은주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유배지로서의 성격이 깊어, 도성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기피했다. 그런데도 『은주시청합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한·일 양국 간에 문제가 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1667년에 그곳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이토 간스케(齋藤勘助)가 부임하여 2개월 만에 써낸 것이 4권 구성의 『은주시청합기』였다. 「서」와 개관을 기록한 「국대기」가 있는 권1과 각지의 특성을 기록한 권2~4로 구성되어 있다. 권4에는 와카(和歌) 11수와 사사(寺社)의 일람, 「다쿠히산 연기(燒火山緣起)」, 「문가쿠론(文覺論)」이 첨가되어 있다. 권1과 권4에 저자의 인식이나 저술의 의미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관리자에 불과하나 관리를 임명받은 이상 효율적

1) 이하에 인용하는 원문은 사사키케본(佐々木家本)을 저본으로 함.

으로 관리해야 했다. 그래서 신불에 기원한다. 사사명을 열거하고 와카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에서는 저자의 인식이 배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극히 한정된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었으며, 특히 죽도를 일본령으로 보았다는 부분이 중시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국을 폄훼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19세기에는 관념적인 신화를 근거로 제국주의 사상을 정당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의 연장이 자료의 기묘한 조합과 해석을 통해 소유를 입증하려는 독도/죽도 문제다. 일본은 『은주시청합기』, 『죽도고(竹島考)』,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등의 기록을 근거로 독도/죽도의 소유를 강변하지만, 그것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일본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우리 자료를 일본이 해독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일본의 자료는 다르다. 상당히 전문화된 특수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본자료는 공개한다 해도 비공개와 다름없다. 공개되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독자의 책임이다.

『은주시청합기』를 근거로 죽도/독도의 소유를 입증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부분의 해석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 전체적인 흐름을 근거로 하는 주장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부분의 해석을 근거로 서로가 그 소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목적이 앞서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기에 급급하다 결국에는 같은 논리와 방법론에 휘말리곤 했다. 그러나 전체를 조감하는 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독도/죽도가 은주의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이미 『은주시청합기』를 근거로 독도/죽도의 소유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검증 보강되어야 한다. 기존 논문들이 간과한 곳도 있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분은 일본의 경계를 이 주로 한다는 의미의 “日本之乾地以此州”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곳의 ‘주(州)’가 ‘송도·죽도’로 표기된

‘도(島)’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 기록을 통해 ‘주’와 ‘도’가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주장과 ‘주’와 ‘도’의 자의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와 그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주장은 저자의 인식을 통해서도 부정당한다. 『은주시청합기』에는 저자가 송도와 죽도를 은주의 속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저자가 은주를 해가 지는 서쪽의 극지라는 의미의 매곡으로 단정한 것이나 서쪽 바다를 보며 강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탄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검토하며 은주를 일본의 극지로 여기는 저자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II. 鬱陵島와 隱州

1. 『은주시청합기』의 등장

울릉도/죽도를 매개로 하는 분쟁은 17세기에도 있었다. 조선이 경제적 가치보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금정책을 실시하는 사이에 일본 어민이 그곳에 들어가 밀렵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조선의 무관심 속에 80년 가까이 도해하던 일본 어민이 그곳에서 조선인을 납치하고 또한 조선에 조선인들의 도해금지를 요구했다. 1693년의 일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그 소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일본이 처음과 달리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후로도 조선의 해금정책은 지속되었다.

그러다 일본이 1905년 2월에 울릉도를 의미하던 죽도를 송도의 새로운 도명으로 하여 시마네켄[島根縣]에 소속시키고 만다. 조선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한 독단적 침탈행위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 침탈당해 항의할 방법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후 일본제국이 멸망하고 한국이 독자적일 수 있게 되었으나,

6·25동란이라는 민족의 고통을 앓고 있을 때 일본은 미국의 모호한 자세를 배경으로 1905년에 행한 침탈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독도/죽도 문제의 발단이었다. 제국주의로 축적한 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공세에, 독립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외교 경험이 일천한 당시의 정부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때 일본이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은주시청합기』였다. 1953년 7월 23일부 일본의 견해나 동년 9월 9일부 한국의 견해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1954년 2월 10일부 일본의 견해에 이 책이 사료로 등장했다.

죽도는 옛날에 송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에게 알려져 일본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 일본인에 의해 항해상 또는 어업상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도쿠가와 3대장군 이에미쓰[家光] 시대에 막부로부터 요나고[米子]의 어민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에 죽도지배가 허가되어, 울릉도로 도항할 때 항상 이 섬이 중계기지로 이용됨과 동시에 동도에서의 어렵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에 관한 문건으로서는 간분[寛文] 7년(1667)에 이즈모번사[出雲藩士] 사이토 아무게[齋藤某]가 편찬한 『은주시청합기』, 엔호[延享] 9년(天和 원년=1681)의 오야 규에몬 타 가노부[大谷九右衛門崇信]의 수기 등이 있고²⁾

라고 일본이 『은주시청합기』와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을 증거로 하여 일본령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그것들이 일본의 울릉도 침략기에 기록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³⁾ 지금 보면 양국 모두가 사실적이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국내 사정상 차분히 대응하지 못한 한국 측의 당혹감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에는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근거로 하는 영유권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며 반복된다. 그것은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기록물의 시대적 배경이나 전체상을 고려하지 않는 논쟁의 되풀이였다.

2) 塚本孝, 2002, 「竹島領有權をめぐる日韓兩國政府の見解(資料)」, 『レファレンス』, 617쪽.

3) 塚本孝, 2002, 위의 논문, 617쪽.

2_ 此州의 해석

문제가 되는 것은 「국대기」의 다음 부분이다.

북서 방향으로 2일과 1야를 가면 송도가 있다. 그곳에서 다시 1일 정도에 죽도가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소다케시마로 대나무나 물고기 감치가 풍부하다. 이 두 섬은 무인의 땅이다. 이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인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것으로 일본 극지의 한계로 한다.

이 중에서도 “이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인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것으로 일본 극지의 한계로 한다(見高麗如 自雲州望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는 부분이 논쟁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그것은 결국 ‘차주’의 해석에 집중된다. 이곳의 ‘차주’가 ‘은주’와 ‘죽도’ 중 어디를 의미하는가의 문제였다. ‘차주’가 은주를 가리키면 그 서쪽에 있는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는 일본령이 아니고, 그것이 ‘죽도/울릉도’를 가리키면 그 양도 모두가 일본령에 속하기 때문이다. ‘차주’를 울릉도/죽도로 해석하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 즉 죽도를 무인도라며 …… 편자는 이 섬으로 일본 서북해에 있는 우리 영토의 극점으로 했다.⁴⁾

죽도는 오늘의 울릉도로, 이것이 나라의 경계라고 편자는 말하고 있다.⁵⁾

1696년의 죽도 1건이 결착되기 이전의 시기 1667년에 정리된 문헌인 이상, 막부의 특별허가를 얻어 죽도 도해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죽도를 일본의 서북경으로 생각하고 기술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⁶⁾

4) 奥原碧雲, 1878,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54쪽.

5) 大熊良一, 1968, 『竹島史稿』, 原書房, 15 ~ 16쪽.

6)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關係史』, 多賀出版; 權靜 역, 2005, 『獨島와 竹島』, 제이앤씨, 163쪽.

이에 대해 ‘차주’를 은주로 보는 설은 다음과 같다.

즉 차주라는 것은 은주인 은기도를 말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은 지금도 차주라는 것은 죽도와 송도로 해석하며, 외교문서에 인용하고 있다.⁷⁾ 일본 측이 이것을 오독하여 ‘전이도(前二島)’를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은주를 일본의 서북부 한계로 한다는 은주시청합기의 기사야말로 정당한 견해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⁸⁾ 그런데 이 일본 측 사료는 발글자의 의도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가 고려(한국) 영토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⁹⁾ 『은주시청합기』의 표현은 한국 측의 주장처럼 은주를 일본의 경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이외에도 ‘차주’가 은주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많다.¹¹⁾ 양쪽의 의견을 접하다 보면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혼란의 원인은 난해한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부분의 해석에 집착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해석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편의적인 해석이 그 원인이다.

이곳의 해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이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이다. 그는 『隱岐國古記』, 『日本輿地路程全圖』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차주’의 의미를 규

7) 黃相基, 1957, 2, 28~3, 5, 「독도 영유권 해설」, 『東亞日報』.

8) 李漢基,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242~243쪽.

9) 慎鏞廈, 1989, 「조선왕조의 독도영유와 일본제국주의의 독도침략」, 『한국독립연구사연구』 3, 49쪽.

10) 梶村秀樹, 1996, 「일본의 토지라는 주장은 팽창·식민주의의 소산」, 『신동아』 439호, 620쪽.

11) 宋炳基, 1985, 「鬱陵島·獨島 영유의 역사적 배경」, 『독도연구』, 200쪽; 崔爽祐, 1985, 「외국의 문헌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290쪽; 白忠鉉, 1985, 「국제법상으로 본 독도분쟁」, 『독도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430쪽; 李熏, 1996,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 다툼」, 『한국논단』 1996년 9월호, 20쪽; 곽창곤, 1996, 「독도영유권 논쟁은 이미 끝났다」, 『한국논단』 1996년 9월호, 235쪽; 金炳烈, 1996,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논단』 1996년 11월호, 194쪽 등.

명하러 했다.¹²⁾ 먼저 그는 “此二嶋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然 則日本乾地 以此州爲限矣”의 ‘此二島’가 의미하는 송도와 죽도가 문장의 해석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는지, 고려를 보는 위치가 2도 중의 죽도라는 것을 인식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며 “此二嶋無人之地”는 위의 문장을 받아 설명하는 것이지 “見高麗” 이하의 주격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맞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地’와 ‘見’ 사이에 ‘自竹島’ 3자를 보충하면 관연해질 것이라 했다. 그러나 죽도를 기점으로 하는 “이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 같다”는 해석 역시 ‘죽도-고려’, ‘운주-은주’의 대응으로 종전의 주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장에 ‘自竹島’를 보충하는 노력까지 했으나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떻게 읽어도 ‘죽도-고려’, ‘운주-은주’의 대응이라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가오는 갑자기 “주는 섬이라는 의미다(州はシマの意である)”라는 주석을 멋대로 삽입하며 ‘차주’가 ‘죽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장은 기록의 의미를 고의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아전인수라 했다.¹³⁾ 부분의 해석에 사로잡힌 결과로, 객관적인 해석보다는 미리 설정한 해석을 구하려는 방법의 한계였다. 이런 한계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감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읽어도 거리가 비슷한 ‘죽도-고려’와 ‘운주-은주’를 대응 비교하는 내용이라, 그것만으로는 차주의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대응하는 것이 ‘隱州’와 ‘松島·竹島’로 ‘州’와 ‘島’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島’와 구별되어 사용된 것이 ‘此州’이므로 ‘此州’의 ‘州’에 대응하는 것은 ‘州’로 표기된 ‘隱州’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此州’에 대응하는 ‘雲州’와 ‘隱州’를 제쳐두고 ‘松島·竹島’를 그것에 대응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12) 藪屋比昆, 1720, 『隱岐國古記』; 長久保赤水, 1775, 『日本輿地路程全圖』.

13) 田川孝三, 1988, 「竹島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20, 41 ~ 42쪽.

3. 誤謬의 全體

신용하씨는 1996년 4월호 『신동아』에 ‘차주’를 ‘은기도’로 해석하고 ‘송도/독도’를 조선령으로 하는 주장을 발표했다.¹⁴⁾ 그러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사료는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료는 역시 일부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읽어야 하는 것 아닐까”, “좀더 신중하게 사료를 읽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을 반복하며 그 주장을 부정하려 했다. 전체적인 조감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듯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며 주장을 전개한다.

조선의 전적까지 인용하는 자세는 전체적으로 조감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시한 그의 해석은 종전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고려(조선)를 보고 있는 위치는 당연히 일본령”이라는 주장 정도다. 조선을 보는 위치가 죽도이기 때문에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이다. 부산에서 대마도를 보면 대마도가 부산의 속지라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미 부정당한 바 있다.¹⁵⁾

그는 ‘차주’를 설명하기 위해 「국대기」의 주나 권4의 「燒火山緣起」만이 아니라 조선의 『지봉유설』, 『성호사설』까지도 인용했다. 사료는 일부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읽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의 실천처럼 보이는 자료의 인용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원의 확대이지 전체의 흐름을 조감하는 일은 아니었다. 『은주시청합기』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의 범위에서 적합한 해석을 해야 했다.

시모조에게는 편의적으로 자료를 선택하고 또 일정한 기준 없이 자료를 인용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보다 더한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은주시청합기』를 논하는 그가 저자명을 혼동한 것도 그것의 하나다. 『은주시청합기』의 저자명으로는 齋藤豊宣·齋藤豊仙·齋藤勘助·齋藤豊宣勘助·齋

14) 慎鏞廈, 1996, 「독도 主權 死活 걸린 민족문제이다」, 『新東亞』 1996년 4월호, 東亞日報社, 594쪽.

15) 金柄烈, 2001, 『독도논쟁』, 다다미니어, 364쪽.

藤豊宣弗緩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래서 池内敏은 2005년 논문에 齋藤豊仙이라 했던 것을 2006년에는 齋藤豊宣으로 교정하며, 豊宣과 豊仙이 부자간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¹⁶⁾ 大西俊輝도 2002년에 齋藤勘助(豊仙)로 했다가, 2007년에는 豊宣 또 弗緩 또는 遊外라 불렀다. 齋藤家の 3대의 이름이 豊仙이었기 때문에 2대의 豊宣과 자주 혼동한다는 것이다.¹⁷⁾

그런데 시모조는 齋藤矛緩(1996년)으로 했다가 후에는 齋藤豊仙(2004년)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齋藤矛緩이 隱岐島를 기점으로 한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나 “순수하게 읽으면 齋藤豊仙의 의도는 분명하다”라는 설명을 근거로 판단하면 豊仙과 矛緩을 동일인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 이 矛緩이 흔히 말하는 弗緩을 의미한다면 저자 豊宣의 이명이고 豊仙의 이명이라면 저자의 아들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矛緩을 豊仙으로 바꾼 것을 보면 矛緩과 豊仙을 동인의 이명으로 본 것이 틀림없다. 그의 이름에 대한 안일한 사고는 元和 4년에 磯竹島로 도해했다는 상인 村川을 村河로 표기한 것에도 나타난다.

『국대기』 竹島의 주 ‘案神書所謂五十猛’을 증거로 저자가 磯竹島를 자국명으로 인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했는데,¹⁸⁾ 여기에도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주는 20여종이나 되는 제본 모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아들 豊仙이 보정했다는 「을본」¹⁹⁾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시모조는 아들의 주를 저자의 인식으로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된다.

또 ‘五十猛’은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시모조는 ‘이소타케루’와 ‘이소다케시마’라는 속명을 연계하여 “울릉도가 속세에서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불려지는 이유를 『일본서기』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소타케루

16) 池内敏, 2006, 『隱州視聽合紀(紀)의解読をめぐって』 주1,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嶽 出版, 398쪽.

17) 大西俊輝, 2007,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5쪽.

18) 이 주장은 「隱州古記集」의 “鬱陵島というあり, 其嶋の丑ノ方に弓嵩とて高山有と見ゆ, 彼嵩を呼んで 曷地の人磯嵩嶋と 謗しならんか”를 근거로 池内敏(전제주12), 金柄烈(2001, 앞의 책, 다다미디어, 365쪽)에 의해 부정됨.

19) 池内敏, 2006, 앞의 논문, 332쪽.

노카미[五十猛神]에서 찾아 齋藤予緩가 고증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소다케시마’의 유래는 따로 있다. 『隱岐古記集』은 죽도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부르는 이유를 “당국에서 옛날부터 이소타케[磯竹]라고 불러오고 있다…… 그 섬의 북동 방향에 이쿠타케[弓嵩]라는 고산이 보인다. 그嵩을 당지인들이 이소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일까”²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은주시청합기』를 전거로 해서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는 『隱岐國風土記』나 『隱岐古記集』에는 ‘五十猛’에 관한 주가 없다. 따라서 주를 근거로 은국이 죽도를 일본령으로 보았다고 결론내기는 어렵다.²¹⁾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권4의 「燒火山緣起」의 “伯耆國의 大商人 村川씨 등은 막부의 朱印을 받아 大船으로 磯竹島에 갔다”를 저자가 그곳을 자국령으로 인식한 증거라 했다. 외국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朱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朱印을 받아 도해하는 곳이 磯竹島였다면 그곳은 이국이기 마련이다. 그것을 일본령으로 단정하려면 그럴 만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또 그는 『성호사설』이 울릉도를 ‘一州’로 표기한 기록이나,²²⁾ 『지봉유설』의 “倭奴가 磯竹島를 占據하다”라는 기술을 인용하여 ‘차주가 울릉도임을 입증하려 했다.’²³⁾ 그러나 『성호사설』의 경우는 그것을 인용하게 된 필요성이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지봉유설』의 경우는 침략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필요에 의한 자의적으로 인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준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용례를 구하기보다는 『은주시청합기』의 용례부터 조사했어야 했다. 이처럼 이루어지는 자료의 인용은 용례의 소개가 될지는 몰라도 일정한 기록상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용어를 포함한 문장의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

20) 大西教保, 1823, 『隱岐古記集』, “특뵈にて古より磯竹と云嚕へあり……其嶋の丑ノ方に弓嵩とて高山有と見ゆ, 彼嵩を呼んで 특地の人磯嵩嶋と방しならん가”.

21) 池内敏, 2005, 「近代代竹島の歴史學的研究序說」, 『靑丘學叢論集』 25, 161쪽.

22) 『星湖僊說』, 鬱陵島條, “抗強敵 折奸萌 息累世之爭 復一州之土.”

23) 『芝峰類說』 권2, 地理部, “近聞倭奴占據磯竹島 或謂磯竹島 卽鬱陵島也.”

그의 결정적인 왜곡은 은기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신용하가 은기도를 일본 서북방의 한계로 규정한 것에서 시점의 기준점을 문제 삼았다. 에도(東京)를 그 중심에 두면 은기도는 서에 해당한다면서, 은기도를 일본의 북서의 한계로 하면 저자가 은기도를 기점으로 한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²⁴⁾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는 주장처럼 보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에도시대의 감각에 의하면 江戸(또는 京都)에서 서방으로 白耆國의 米子(혹은 幡磨 姫路)까지 서방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서북방향으로 白耆國의 米子로 간다, 그곳에서 북으로 향하여 三保關을 거쳐 隱岐島로 나가기 때문에, 서북으로 느끼는 것은 타당하다. 또 보통 에도에서 보아 西方向은 長崎를 말한다. 長崎와의 대비에서도 隱岐島는 서북이 될 수밖에 없다.²⁵⁾ 이러한 사실을 시모조는 몰랐을까.

그 시모조가 말하는 전체의 위험성은 이질적 자료를 편의적으로 편집한다는 데 있다. 그는 목적에 맞는 결론을 얻기 위해 성질이 다른 자료를 모아 윤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조선실록』의 부분을 인용하여

일본 측은 이미 광해군 7년(1614)에 조선 측에 대해 울릉도 탐색의 가부를 알리고 있었으나, 조선 측에서는 정식적인 회답이 없어, 이래 일본 측은 실질적 어로장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경위는 『숙종실록』 20년(1694) 8월 己酉조에, 남구만이 숙종에게 “왜가 이 섬(울릉도)을 어채의 장으로 한 것이 오래”라고, 울릉도 귀속 문제의 경위를 주장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⁶⁾

라고 마치 조선이 울릉도에서의 일본의 어로를 인정하고, 숙종과 남구만이 일본의 점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

24) 下條正男, 1996, 「竹島問題考」, 『現代コリア』 361, 70쪽.

25) 池内敏, 2006, 앞의 논문, 주29, 403쪽.

26) 下條正男, 1996, 앞의 논문, 71쪽.

이 아니다. 광해군 대에는 옛날부터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국경의 구별이 있다는 것과 양국의 왕래는 대마도를 통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그 외의 왕래는 해적으로 단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²⁷⁾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선이 정식으로 회답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시모조다. 남구만이 안용복의 납치사건을 설명하며 태종 이래의 해금정책을 설명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일본 어민이 도해하여 어렵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모조는 그것을 귀속문제로 비약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시모조는 전체를 이야기하며 『은주시청합기』의 여러 곳을 인용하고 조선의 사서까지 인용하고 있었으나, 정작 저자의 은주에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누락시키고 있다. 저자가 은주를 ‘매곡’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서방에는 강토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서방의 극지를 의미하는 ‘매곡’을 은기도에 대응시키고, 서방에 강토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저자가 은기도를 일본의 극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전체적 조망을 주장했던 시모조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보고도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회피한 것일까. 보고도 인용을 회피한 것이라면 그의 인용이 편의적이고, 그가 주장한 전체도 일반적인 의미의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가 타인에게 했던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²⁸⁾

27) 『朝鮮實錄』, 光海君6年9月 辛亥條, “自古及今, 日本與我國, 海嶠州嶼, 各有區別, 分限截然, 而或有往來之事, 惟以貴島爲一路門閤, 此外別便以海賊論斷, 其所以慎關防而嚴禁約之義, 貴島亦豈不知乎.”

28) “李漢基·愼鏞廈의 사료 인용 현대어역을 보아도 下條正男이 지적하는 것 같은 과실이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없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下條正男이 ‘가장 중요한 개소’로 하는 부분 전체를 인용하거나 석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는 있다”. 池內敏, 2006, 앞의 논문, 345쪽.

4_ 州와 島

池內敏은 『은주시청합기』의 ‘州’와 ‘島(嶋)’의 용례를 검색하여 표를 작성했다. ‘此州’가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州’와 ‘島’를 동일시하는 시도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표에 의하면 ‘州’의 전 용례 66례 중 60례가 隱岐國·出雲國을 의미하는 특정의 국명을 隱州 雲州 식으로 약칭한 사례다. 그 외의 6례는 ‘此州’가 4례, ‘隣州’가 1례, ‘一州’가 1례이다. ‘隣州’(국대기)는 ‘隱岐國에 인접하는 出雲國’을 가리키고, ‘一州’(국대기)도 역시 ‘隱岐國’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경우의 ‘차주’는 ‘국’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4례의 ‘차주’ 중 문제의 차주를 제외한 3례를 문장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 ① 聞元就討隱州……以才又朗假元就威以至此州(國代記)
- ② 于漢于和有以矣哉, 又此州之老惑有稱村上天皇之末孫 而방村上某(卷二上西里)
- ③ 其沖に松島あり, 上に松生て樹間に荒園あり, 長事二町ばかり, 昔好事者此州に雉の事を愁て誠に雲州より雌雄を渡して此に放つ, 一年を弄て終に亡くと云(卷二잡木浦).

①은 淸家が 藝州의 元就에게 아들을 인질로 바치고 군사를 빌려 은주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이야기다. 이것이 은주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인 이상 ‘차주’는 은주일 수밖에 없다.

②는 은주에 사는 노인의 유래를 이야기하며 사용된 ‘차주’이기에 역시 은주일 수밖에 없다.

③은 은주의 松島에 꿩이 없어 ‘雲州’에서 꿩을 가져다 ‘차주’에 방목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이므로 이곳의 ‘此州’ 역시 ‘隱州’ 이외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 용례들은 ‘차’에 해당하는 고유명사가 지근거리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후 문장의 흐름으로 그것이 ‘은

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도’의 경우도 전권을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도명이라고 할 수 없는 지명류가 29례, 특정한 도명으로 사용된 것이 76례, 기타 섬을 의미하는 것 21례로 분류했다. 그리고 ‘此’와 결합된 ‘此島·此嶋’가 ‘蓬島’, ‘大守島’, ‘竹島(基島)’를 의미하고 ‘此二島’가 ‘松島와 竹島’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근거로 문제의 ‘차주’의 ‘州’를 ‘島(嶋)’의 의미로 바꾸어 해석하여, 죽도(울릉도)가 일본의 북서(戌亥)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로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했다.³⁰⁾

‘此州’를 울릉도로 할 경우는 ‘州’를 ‘구니’가 아니라 ‘시마’로 읽어야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大西俊輝의 주장이다. 『은주시정합기』에 나오는 모든 ‘州’가 ‘구니’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州’와 ‘嶋’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州’는 원래 강 가운데 생긴 中州를 가리킨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상형문자에서 비롯되었다. 농업을 시작한 옛날에 관개에 편리한 州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사람이 모이면 구니[國]가 생긴다. 상고의 중국에서는 사람이 모인 토지를 ‘州’라 표현했다. 九州(冀州·兗州·青州·幽州·揚州·荊州·豫州·并州·雍州)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전국을 60여주로 표현했다. 安藤廣重의 「六十余州名所圖繪」 등이 그렇다.

한편 ‘島’ 혹은 ‘嶋’는 ‘山’과 ‘鳥’가 합쳐진 회의문자로 철새가 쉬는 바다나 호수의 작은 섬을 말한다. 즉 島嶼로 이곳에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 없다. 그러므로 隱岐나 佐渡나 淡路나 對馬는 州이며 島다. 出雲이나 石見 伯耆는 州이지만 島는 아니다. 松島나 竹島는 島이지 州가 아니다. 松島나 竹島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폭력배들이 차지하는 구역(繩張)을 ‘시마’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 경우의 ‘시마’는 ‘州’이지 ‘島’가 아니다. 갈취할 대상으로서의 거주자가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들

29) 池內敏, 2006, 앞의 논문, 339쪽.

30) 池內敏, 2006, 앞의 논문, 341쪽.

이 생활하지 않는 곳은 폭력배들이 사는 '시마'가 될 수 없다.³¹⁾

이는 태종 이래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금정책을 취한 것에 의해 울릉도가 무인도로 변한 상황에 맞는 설명이다. 조선이 해금정책을 취하는 동안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어럽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 영유권을 제기하려 했던 것이다. '주'와 '도'를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죽도'와 '송도'를 '은주'의 속지로 하려 했으나 『은주시청합기』의 용자법이나 자의상 그같은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Ⅲ. 味谷의 隱州

1_ 朱印의 磯竹島

『隱州視聽合紀』에는 '磯竹島'의 용례가 셋 있으나, 「국대기」 주의 그것이 저자의 아들 齋藤豊仙이 보정한 「을본」에만 존재하므로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둘인 셈이다. 그 두 기록을 보면 그곳으로의 도해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소다케시마에 건너가기 위해 이곳에 머물며 날씨를 가리고 바람을 점친다.³²⁾ 이것은 磯竹島로 도해하려는 자들이 福浦에 머물며 준비하여 도해한다는 것이다. 머물면서 날씨를 살피고 바람을 점친다는 것은 특별한 도해를 위한 준비다. 그 마을에는 弁才天女를 안치한 도리이가 있고 배후에는 中言神社가 있다. 弁財天을 전후에 안치하고 그 수호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신앙이 촌민들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磯竹島에 도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

31) 大西俊輝, 2007, 앞의 논문, 38쪽.

32) “磯竹島に渡るもの是に於て泊して晴れを量り風を占う(南方村)”.

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해를 전후하여 일정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천기를 점쳤다는 사실로도 추정 가능한 일이다. 그런 연후에 행하는 도해가 일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 긴 준비기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원록 6년의 도해일지에 의하면 伯州의 米子를 2월 5일에 출발하여, 동 17일 아침에 出雲의 雲津에 도착하고, 3월 2일에 雲津을 출항하여 隱岐國의 島前の 끝 마을에 당일에 도착했다. 3월 9일까지 동국에 체재한 다음 10일에 島後の 福浦에 도착하여 그곳을 4월 16일에 떠나 17일의 오후 2시에 竹島의 도센가곶에 도착했다.³³⁾ 2월 5일에 출발하여 4월 17일에 도착했으니, 무려 60여일의 항로였다. 그중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45여일을 福浦에 머물며 도해준비를 한 셈이다. 오직 죽도도해만을 위해 45일간을 준비하였는데, 그 사이에 신사의 수호를 기원하고 천기를 점친 것이다. 『은주시정합기』의 여타 항해와 다른 양상이다.

은주의 도해가 어렵다는 것은 後鳥羽院이 유배당할 경우의 “폭풍이 이는데 배는 아직 그 파랑 속에 있다.…… 조류를 따라 표류했다”³⁴⁾는 경우나 원군이 파도 때문에 島前에서 島後로 건너지 못하여 패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서는 도해를 서두르는 긴박감이 있어도 바다가 가라앉는 것을 기원하는 준비된 염원 같은 것은 엿볼 수 없다.

『隱州視聽合紀』의 도해 표현을 보면 “爲清은 동쪽의 정으로 雲州로 출병했다”, “동행하여 隱岐로 건넜다”, “같이 雲州로 건넜다”, “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三保關에 머물며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雲州의 입포에 도착하여 雲州의 동정을 엿보았으나 풍파의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워 이곳에서 며칠을 헛

33) 「大谷九衛門船頭の口上書」, 『鳥取藩史』 제6권, 469쪽, “伯州米子を二月五日に出船仕, 同十七日之朝雲州雲津へ岬着仕, 三月二日ニ雲津を出 船仕, 其時 雲津 島前はし村へ同日に岬着仕, 三月九日 傑同 二逗留仕, 翌十日に島後福浦へ岬着仕申候, 卯月十六日ニ福浦を出船仕, 同十七日の八ッ時分に竹島の岬とうせんが崎へ岬着仕”.

34) 「國代記」, “清以同族之故 乃出張于雲州”, “與俱渡于隱岐”, “而後相引渡乎雲州”, “歸乎隱州 泊待順風”, “到雲州笠浦 於隱州動靜 雖然風波難期 空送數日, 喜而乘舟入今津”, “但州若州之盜賊侵掠”; 「燒火山緣起」, “暴風起波瀾立”.

35) 「國代記」, “義秀者 雲州神門君主之壻也 君主遣兵救義秀 其兵到島前 爲風波不渡島前(島前與島後渡口也) 義秀遂亡”.

되어 보냈다”, “기뻐했다. 배를 타고 今津으로 들어갔다”, “丹州 若州에서 도적이 와 마을을 자주 습격했다” 등이다. 이 중에는 “三保關에 머물며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풍파의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워 이곳에서 며칠을 헛되어 보냈다”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같은 생활권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일 뿐이다. 출항이 천기 관계로 중단된 일상적인 일이다. 磯竹島로 가기 위해 장기간 체류하며 날씨를 헤아리고 점치는 것과는 동질적일 수 없다.

은주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에 있어서도 은주의 美穗關, 伯州의 赤崎, 石州의 溫泉津까지의 거리는 ‘뿔’로 나타내면서 송도와 죽도의 경우는 ‘2日1夜’, ‘1日 정도’라고 ‘日夜’로 나타내고 있는 것도 저자가 송도와 죽도를 특별한 곳 즉 이국으로 인식한 결과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같은 인식은 소화산의 영험을 이야기하는 곳에도 나타나 있다. 燒火山은 신의 소재로, 정상의 거암에 신이 있어 그것을 신의 본체로 본다. 그래서 신의 영험을 기원하는 곳이고 인간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伯耆國의 상인 村川씨 등이 磯竹島로 도해했다 폭풍을 만나 고구려 쪽으로 표류하게 되자 선장이 燒火山을 생각했더니 즉시 漁火가 나타나 포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영험담이다. 이 영험을 이야기하며 저자는 “이국의 영역이라 해도 영험이 없을 리 없다”³⁶⁾라며 磯竹島를 이국의 영역으로 표현했다. 磯竹島를 이국으로 보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村川이 朱印을 소지하고 도해한 사실을 소개한 것과도 부합되는 이야기다.³⁷⁾

2_ 昧谷의 隱州

스키군[周吉郡] 간야무라[元谷村]조에는 일신과 월신을 금은으로 장식하여 3년마다 제사하는 ‘일월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예법으로서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저자는 그것을 ‘매곡’과 연계해서 설명한다.

36) “急故其念神也 實夫念神也 實故其應之忽 雖異域無不驗者是也”.

37) “又白耆國之大賈 村川并氏 自宮賜朱印 致大舶磯竹島 遇左風 落高句麗”.

생각해 보면 이 일월의 제사는 옛날부터 전해온 유잔의 예법일 것이다. 어느 책에 의하면 매곡에는 지는 해를 거두어들였다가, 그 지는 해를 공경하고 보낸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러한 일월의 예를 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인슈는 서북의 극지로, 분명히 어두운 매곡의 땅이다. 원래 음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³⁸⁾

저자가 옛날의 예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은주를 매곡과 연계시킨 고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은주를 일본의 극지로 보는 인식의 표현이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부정하는 설명을 부가했거나 아예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통치하는 은주가 해를 받아들여 공경하고 보내드리는 예를 거행하는 매곡이라는 사실과 그것에 필요한 예를 행했다는 고사에 긍지를 느끼고 그것을 소개한 것일 것이다.

이는 『尙書』의 堯典 등을 인용한 이야기로, 그곳에는 해가 뜨는 곳으로서의 '暘谷'과 그것에 대응하여 해가 지는 곳으로서의 '昧谷'이 기술되어 있다. 『淮南子』는 하루를 해의 위치에 따라 구별한다.

태양은 暘谷에서 나타나, 咸池에서 씻고, 부상을 오른다. 이때를 晨明이라 한다. 부상에 올라, 드디어 운행을 시작하려 할 때, 이것을 曄明이라 한다. (약) 이곳에서 羲和를 멈추게 하고, 六龍을 쉬게 한다. 이때를 縣車라 한다. 虞淵에 이를 때, 이것을 黃昏이라 한다. 蒙谷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을 定昏이라 한다. 이렇게 태양은 [崦嵫로 들어가, 細柳를 거쳐] 虞淵의 汜로 들어가, 蒙谷浦에 밤이 밝아진다.³⁹⁾

이곳의 몽곡이 곧 매곡이다. 해가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매곡으로 오면 매곡에서는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가(納日) 삼가 받들어서(寅) 예를 차려서 보내

38) 『隱州視聽合紀』, 周吉郡, “按此日月之祭 古之遺法歟 書曰 昧谷寅餞納日 本朝亦曾行此禮 唯其遺法歟 隱州戌亥之極地昧暗也 與元音相近也 上古於是地 餞納日”.

39) 『淮南子』 卷3, 1985, 天文訓 12회, 明治書院, “日出於暘谷 浴于咸池 拂于扶桑 是謂晨明. 登于扶桑 爰始將行 是謂曄明 (略) 爰止羲和 爰息六龍 是謂縣車 至于虞淵 是謂黃昏 淪于蒙谷, 是謂定昏. 日[入崦嵫 暵于細柳] 入虞淵之汜 曙于蒙谷之浦”.

드리는 것(餞日)이 예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가 매곡으로 저서 양곡에서 뜬다는 것은 매곡의 보내 드리는(餞日) 의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의 중국 인들은 해가 10개 존재하며 하루에 하나씩 떴다 일몰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매곡으로 일몰한 해가 일정한 통로를 통해 부상의 아래로 돌아오고 나머지 아홉 개의 해들은 扶桑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휴식하며 일출의 순번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는 매곡과 양곡 간에 통하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들이 9일간 휴식하는 부상이라는 나무의 아래가 양곡이면서 매곡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자는 매곡이 해를 거두어 들였다가(納日) 공경하고 보내드린다(餞日)는 것에서 그런 의미를 보려 했을 것이다. 그것이 매곡의 은주를 관리하는 대관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세계관은 “서해의 外, 大荒 중에 方山이 있고, 산 위에 푸른 나무가 있어, 巨格의 소나무라 한다. 일월이 드는 곳이다”, “顛頊은 老童을 낳고, 老童은 童과 黎를 낳았다. 帝는 童에게 上天을 바치게 하고, 黎에게 下地를 누르게 했다. 下地는 噓을 낳았다. 噓은 西極에 있으며 日月星辰의 운행과 정지를 관장했다”⁴⁰⁾는 것과 같은 전적을 배경으로 해서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관이 隱州를 서북의 극지로 했는지, 隱州가 서북의 극지이기에 그러한 근거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자가 隱州를 서북의 극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40) 高馬三郎 역, 2005, 『淮南子』卷16 大荒西經, 平凡社, 162·163쪽.

IV. 西方無疆

신사참배와 와카봉납으로 수호받으려는 것은 막부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의 질서와 영혼의 수호로 은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이기에 해가 지는 극지로서의 매곡에서 자긍심을 구하려 했다. 태양을 수납하여 보내드리는 의례를 통하여 은주의 의미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은주를 기점으로 하는 거리의 표시도 그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거리를 「國代記」에서는 ‘隱州-雲州美穗關’, ‘隱州-伯州赤崎浦’, ‘隱州-石州溫泉津’와 같이 은주를 기점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그 기점을 ‘自雲州望隱州’라고, ‘은주’에서 ‘은주’로 바꾼 다음에 “이 주를 일본 서북의 경계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고 표현하여 일본의 극지가 ‘은주’임을 확인하여, 일본에서의 은주 위치도 확인했다.

그러한 확인이 「燒火山緣起」에서 재연된다. 저자는 신의 거주지라는 다쿠히산의 영험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은주의 존재를 재확인 하는데, 그것은 「국대기」의 그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른 것은 「국대기」의 그것은 객관적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신의 거주지라는 경관에 취했는지,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축문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약간 흥분된 문장이라는 것이다.

은주·백주의 산들이 보인다.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개어 있으면 가리킬 정도로 선명하게 보인다. 아침의 광경과 저녁의 광경이 아름답게 변화한다. 서방을 보면 가로막을 것 같은 경계가 없고 바다가 한없이 흰하게 그저 광대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⁴¹⁾

이 다쿠히산을 기점으로 하는 기술은 은유적이기는 하나 사이고[西郷]를 기점으로 하는 「국대기」의 그것과 맥은 같다.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초출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비교하여 정리하면, 「국대기」의 西向 남쪽 35리의 雲

41) “則雲州伯州之山 或淡或晴可指 朝之晚之時而變化 西方又無疆 海漫漫何爲大哉”.

州 美穗關, 남동쪽 40리의 伯州 溫泉津, 남서쪽 58리의 石州의 溫泉津을 그쳐 '雲州伯州之山'으로 기술하고, 남서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그 대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가시의 상태를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개어 있으면 가리킬 정도로 선명하게 보인다"고 첨가하였다. 다쿠히산에서 바라보는 남쪽 방향의 정경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록 남서쪽은 생략했으나, 은주에서 바라 본 남쪽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국대기」의 그것과 잘 대응한다.

그에 비해 동서북에 대한 기록은 간과하기 쉬운 정도로 간단하다. 「국대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북동 방향(自子至卯)은 갈 곳이 없다(無可往地)라고 설명하고, 서북(戌亥) 방향에 있는 송도와 죽도까지의 거리를 일정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산물과 속명과 양도가 무인도라는 사실까지 설명했다.

그에 대응하는 다쿠히산 기점의 기록은 극히 간단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동북 방향은 생략하고 서방은 '又無疆'으로 처리하고, "가로막을 것 같은 경계가 없고 바다가 한없이 흰하게 그저 광대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의 '又'는 생략된 동북의 정경을 서에 포함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저자는 북서나 북동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북동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 서방을 설명하면서 '又'를 첨가하여 북동도 북서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無疆'에는 「국대기」의 '북동', '북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대기」는 북동에 갈 토지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이곳에서는 서방을 '무강'으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의 기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바로 뒤에 村川가 朱印을 받아 磯竹島로 도해했다는 기술이 있으므로 서방에 「국대기」에서 언급한 송도와 죽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서방을 강토가 없다는 無疆으로 기록한 것이다.

저자는 서북방에, 일본의 극지를 지난 저편에 송도와 죽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항로와 일정까지 알고 있었다. 그런 저자가 서

방을 ‘무강’으로 표현한 것을 그곳에 존재하는 송도와 죽도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기술한 것은 자신이 관리하는 도서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자가 관리하는 영지, 즉 은주에 속하는 영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저자는 송도와 죽도를 일본의 영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섬은 있으나 일본의 영지는 없다는 인식에서 ‘무강’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V. 맺음말

『은주시청합기』는 하나의 풍토지에 지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본에 의해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된 독도/죽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은 일본이 그것을 역사적 자료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667년의 기록이므로 한국의 기록에 비하면 한없이 늦은 기록이지만, 한국 측의 기록은 믿을 것이 못 된다며 마치 19세기 말의 기년논쟁과 같은 주장을 펴는 인사들에 의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현재도 그것을 근거로 역사적 소유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더러 있다. 『삼국사기』 이래 많은 기록들이 신라시대 이래의 소속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기록들 간에 보이는 차이를 확대 해석하며 그 전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다.

『은주시청합기』에는 “은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이 “죽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此州를 일본 서북의 한계로 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극히 간단한 문장임에도 일본 측은 ‘此州’가 ‘죽도/울릉도’라며, ‘독도/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의한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분에 한정되는 해석을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는 사이에 기존의 방법을 강하게 부정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모조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사료비판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논쟁에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전체란 필요한 부분을 이곳저곳에서 모아 목적하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사실까지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어 이미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해 이케우치와 오니시는 『은주시청합기』의 용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차주’가 의미하는 것이 ‘죽도’가 아니라 ‘은주’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케우치가 ‘州’와 ‘島’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통하여 규명한 것에 비해, 오니시는 ‘州’와 ‘島’의 음훈과 그것의 의미를 통해 밝히고 있다. 오니시는 명소 와카를 통해 저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차주’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극지가 은주라는 것과 「국대기」의 ‘차주’가 은주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 그것이 저자의 인식이었다. 그것은 저자가 서방을 보며 무감이라 한 것, 은주를 매곡의 땅으로 단정한 것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해서 『은주시청합기』를 매개로 하는 독도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케우치는 “은기국이 일본 서북의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이상 죽도/독도가 당시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된 것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여운을 남겼다.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판도 외로 할 뿐이지, 죽도/독도가 조선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료를 죽도/독도의 귀속을 나타내는 역사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일·한 양쪽 모두에게 적당하지 않아 그러한 의론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도/죽도가 일본의 소유임을 증명해줄 것이라며 제기했던 기록, 일본의 역사적 소유를 입증한다고 제기했던 기록 『은주시청합기』가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독도/죽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기록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야기하는 독도/송도의 소유는 자명해지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해 나가는 일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Eun-Joo See Chung Hab Ki and Tok-Do

Kwon, O-Yub

Eun-Joo See Chung Hab Ki is only a topographic work. The reason why it draws our attention is that it has been presented as a historical data by Japan, which, she believed, could settle the issue of Tok-Do/Takeshima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it, “to see Eun-Joo in Woon-Joo” is like “to see Koryeo in Takeshima/Wooleung-Do”. There is also the statement “Therefore, Cha-Joo shall be a limit of Japan’s Northwest”. It is a simple sentence without any ambiguity but Japan asserted that Cha-Joo was Takeshima/Wooleung-Do and thus Tok-Do/Takeshima was a Japanese territory. That was not an interpretation based on a consideration of the flow of the whole context. It was a very limited interpretation of one part, which has consequently brought endless arguments.

In the meantime, Ikeuchi and Onishi analyze the terminology in general and prove that “Cha-Joo” does not mean Takeshima but Eun-Joo. Ikeuchi makes a statistical survey of Joo 「州」 and Do 「島」 and examines their functions in the sentences, while Onishi studies the sounds and significances of Joo and Do and their meanings. As a result, it becomes apparent that Keukchi in Japan refers to Eun-Joo and Cha-Joo in KookDaeKi indicates Eun-Joo. And also this is the author’s recognition and intent, for the author, seeing the west, says

there is no territory and he concludes Eun-Joo as the sun-setting land. Nevertheless, the Tok-Do issue related to Eun-Joo See Chung Hab Ki has not been settled yet. Observing that “Eunki Kuk is the end of Japan’s Northwest”, Ikeuchi concludes that the statement accordingly verifies Jook-Do/Tok-Do was excluded from the then Japanese maps. However, it does not mean, he adds, that Jook-Do/Tok-Do was not acknowledged as Chosun Dynasty’s territory. According to him, Eun-Joo See Chung Hab Ki only says that it was not within the Japanese maps, but doesn’t say Takeshima/Tok-Do belonged to Chosun’s territory. Also, he has made a wish that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is document will be used as a historical evidence indicating the reversion of Tok-Do/Takeshima, and thus it should disappear from the scene of discussion.

Eun-Joo See Chung Hab Ki has been presented by Japan as a document to prove that Takeshima/Tok-Do would belong to Japan and also to demonstrate Japan’s historical possession of it. Nevertheless, it, contrary to Japan’s purpose, has become a document verifying that Tok-Do/Takeshima is not part of Japan’s territory. The book tells its own true tale about the possession of Tok-Do/Takeshima. It is our duty to ascertain the truth clearly.

keywords

Eun-Joo See Chung Hab Ki, Tok-Do/Takeshima, Joo (州) and Do (島), The end of Japan’s Northwest, The possession of Tok-Do/Takeshima, Chosun Dynasty’s territory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김 종 건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I. 머리말

백두산 및 간도 관련 연구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1948년 이래 한국과 일본 자료를 이용한 기초적인 사건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간도 문제가 동아시아 외교상 쟁점이 되었던 1900년대 초기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간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였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기에 간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답사가 이루어졌고, 전후에는 간도의 사회경제사적 연구에 치중되었다.

간도 문제는 단순히 영유권 주장을 전제로 한 국익 차원의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간도 연구의 실제적 의미는 간도 문제가 왜 발단하였고 그것이 현재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간도 문제의 역사성을 먼저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그 현실적 중요성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백두산 및 간도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쟁점이나 방향성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연구의 동향이 시기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1948년 이후 백두산과 간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연구물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국가별, 시기별, 주제별로 나누어 통계적 정리를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먼저 각국의 연구 동향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구미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각국 분류의 하위 범주로서 발표유형별로 연구성과 목록을 논문, 저서, 역서, 보고서, 학위논문의 5개 범주로 구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전반을 개괄하려고 한다. 유형별 분류의 하위 범주로 주제별로 연구동향, 간도·백두산 일반, 국경·영토문제, 민족문제, 자료해제의 5개 영역으로 다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이 임의적인 것이지만 간도와 백두산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유효한 면이 있다고 본다.

Ⅲ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연구 성과들의 시기별 동향에 대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동향의 변화를 먼저 국가별로 분석한 다음, 주제별로 나타나는 시기적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주제별 연구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간도 연구의 쟁점이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지만 역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간도의 범위 문제 연구, 백두산 정계비 관련 연구, 간도영유권 관련 연구, 간도지역 민족문제 연구 등의 주제로 대별하여 분석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장차 심화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II. 국가별 연구 동향

한·중 국경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백두산, 간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연구들이다.¹⁾ 이런 유형의 연구는 주로 간도 문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도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간도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개관이나 한·중·일 관계사 또는 각국의 간도에 대한 일반 정책에 관한 분석들이 있다. 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할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차원의 파악을 다룬 연구들과 이와 관련된 외교적 접근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다. 간도 이해를 위한 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근대 국경과 영토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²⁾ 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국제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들이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1) 간도 연구와 관련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성환, 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 『白山學報』 76; 姜昌錫, 2003, 「日帝時期 間島問題에 대한 研究動向과 展望 및 課題」,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있다.

2)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한국에서의 연구 현황은 吳宗祿, 2003, 「朝鮮前期의 北方經營과 疆域」,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고성훈, 2003, 「조선 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 -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철호, 2003,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등에서 검토되었다. 한·중 양국에서의 연구현황을 검토한 것으로는 김춘선, 2002, 「압록, 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가 있으며,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는 김춘선, 2003, 「朝鮮人の 東北移住와 中·朝(韓) 國境問題 研究動向」,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선영, 2004a, 「중국학계의 조선과 청조간 국경영토 논리와 그 한계」,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배성준, 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변방 연구』, 고구려연구재단에서 개관하고 있다. 일

것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조·청 국경 협정과 이후의 영유권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간도 문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민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³⁾ 만주지역에 조선인들이 이주 정착하는 과정부터 조선족 사회가 현지 중국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내 조선족 학자들의 연구 검토가 많다는 특징이 보인다.

다섯째, 자료나 사료를 정리 소개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백두산과 간도를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로 구분되는 연구물들을 본고에서는 국가별, 주제별, 발표유형별(논문, 저서, 역서, 보고서나 자료집 순) 범주의 차례로 중층 구분하여 동양권의 연구는 가나다순으로, 서양권의 연구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다(부록,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물 목록 참조).⁴⁾

본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는 최장근, 1998, 「일본의 한청국경문제 연구와 소속론에 대한 인식」, 『일본어문학』 10, 대한일어일문학회 등이 있다.

3) 간도 지역의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 경향을 주제별로 비교 분석한 박선영, 2003, 「20세기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민족주의 단면: 동아시아 간도 연구의 時空 문제 이해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6; 박선영, 2004b, 「통치와 통제의 상호 이해를 통해 본 간도 문제: 동아시아의 간도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김기훈, 2006, 「韓人의 滿洲移民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白山學報』 76 등이 있다.

4) 연구물들에 대한 조사는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래와 같은 관련 사이트와 자료 목록을 통해 검색한 다음 연구물들에 인용된 자료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취했다. 국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정보(<http://www.krf.or.kr/kci>) 등의 검색창을 통해 '백두산'과 '간도'를 검색하여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백산학회,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동양사학회, 중국사학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완하였다. 중국과 대만 쪽 자료는 中國國家圖書館(<http://www.nlc.gov.cn/GB/channell/index.html>), 漢學研究中心(<http://nclcc.ncl.edu.tw>), 일본 쪽 자료는 日本國立國會圖書館(<http://www.ndl.go.jp>), 서

국가별 분류는 연구자의 국적별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분류하는데 혼란이 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출판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단 영인본의 경우는 원본 출판지 국가로 분류하였다.

발표유형별 분류는 논문(해제, 비평 포함), 저서, 역서, 자료집(보고서, 사료집 포함), 학위논문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필자의 학술적 견해가 포함된 단편은 논문 영역으로 크게 묶었다. 연구논문이라고 보기 곤란한 설립, 연구노트, 서평, 논평 등의 단편도 저자의 논지가 있다고 보이는 글은 논문으로 묶었고 자료에 대한 정리 보고서나 유적 탐사보고 등은 자료집으로 묶었다. 단행본은 저서, 역서, 자료집,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서두에서 정리한 대로 연구동향, 간도 정책 일반, 국경 영토 문제, 민족문제, 자료해제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관련 연구가 많아서 국경문제나 영토문제 등으로 세분하려고 시도해 본 결과 겹치는 연구가 많은 등 오히려 구분이 복잡해진다고 판단하여 크게 묶었다. 국경문제와 관련 없는 정치 외교사적 접근은 간도 정책 일반으로 분류하였고, 간도 지역 조선족 문제와 교육 관련 연구들은 민족 문제로 분류하였다.

본 목록 작업은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인접 학문 영역인 법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영역의 것도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포함하였고 사회과학적 분석의 성격이 아주 분명한 것만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시기적으로 간도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이전의 지역 연구를 포함할 경우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전체를 포괄해야 해 본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것으로 판단하여 청대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만 목록화하였다. 동북공정, 조선족 문제, 중·일관계, 일본의 만주지배, 중국의 만주 통치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한·중·러 영토 영해 문제와 유관한 것, 특히 간도나 백두산 문제와 직접

구 쪽 자료는 미국의회도서관(<http://www.loc.gov/index.html>) 등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 목록들을 바탕으로 『復印報刊資料』, 『漢學研究』, 『東洋史研究』 등에 수록된 자료 및 주요 연구물들에 인용된 자료들을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관련된 것만 추출하였다. 연해주 관련 연구도 백두산이나 간도와 직접 연계되는 연구는 포함하여 정리했으나 순수하게 연해주만을 다룬 연구는 제외하였다.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기사와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들은 학술적인 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 성과 하나하나의 내용까지 일일이 분석하여 정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최근 60년간의 연구 경향을 국가별, 주제별 구분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백두산 및 간도 문제 연구에 있어서 국가별 연구 현황을 현재까지 수합한 수량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국가별)

국가 구분	유형구분	연구동향	백두산, 간도 일반	국경,영토 문제	민족문제 (교육포함)	자료해제	소계	합계	비율 (%)
한국	논문	18	44	79	63	13	217		
	저서	2	15	33	10	6	66		
	번역(서)		1	2		2	5		
	자료집		1	7	4	1	13		
	학위논문		3	17	27		47		
	소계	20	64	138	104	22	348	348	53.1
중국	논문	7	10	41	75	5	138		
	저서		7	3	13	2	25		
	번역(서)						0		
	자료집		4	4	4	1	13		
	학위논문		6	1	5		12		
	소계	7	27	49	97	8	188	188	28.7
대만	논문			3	4		7		
	저서						0		
	번역(서)						0		
	자료집		2				2		
	학위논문						0		
	소계	0	2	3	4	0	9	9	1.4
일본	논문	1	10	15	37	13	76		
	저서		6	1	1	1	9		

(계속)

국가 구분	유형구분	연구동향	백두산, 간도 일반	국경, 영토 문제	민족문제 (교육포함)	자료해제	소계	합계	비율 (%)
일 본	번역(서)			1			1		
	자료집		6		1	2	9		
	학위논문		1	2		1	4		
	소계	1	23	19	39	17	99	99	15.1
구 미	논문		1	3			4		
	저서		1	5			6		
	번역(서)						0		
	자료집			1			1		
	학위논문						0		
	소계	0	2	9	0	0	11	11	1.7
합 계		28	118	218	244	47	655	655	100
비율(%)		4.3	18.0	33.4	37.1	7.2	100	100	

한국에서의 연구가 348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 중국이 188건으로 4분의 1을 상회하는 전체의 28.7%를 점하고 있고, 일본도 99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과 구미에서의 연구는 1%대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연구가 한국, 중국,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백두산과 간도를 매개로 한 국경 문제와 영토적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 비중이 전체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특히 고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별로는 국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138건으로 전체의 39.4%를,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104건으로 29.9%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두 부문을 합하면 283건으로 전체의 69.9%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연구는 주로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경, 영토 문제와 민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국경과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20건이나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의 정리와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표 유형별로 보면 논문이 217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고, 저서가 66건으로 19.0%, 학위논문이 47건으로 13.5%를 기록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학위논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신진들의 학문적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97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한 반면, 국경과 영토 문제를 다룬 연구가 49건으로 전체의 26%로 그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국경이나 영토 문제를 다룬 것보다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많음은 동북 지역 이주민 정책과 조선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영토적 관심보다 오히려 크게 작용해 왔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과의 국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발표 유형면에서는 논문이 138건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의 대부분이 논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서류는 25건으로 1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으나 기타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일본에는 만주나 만주국 및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이 있으나 순수하게 간도에 대한 관심으로 제출된 연구 성과비율은 극히 낮다.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39%로 가장 많고, 백두산과 간도를 개관한 것이 23%로 그 뒤를 이으면서 국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19%)을 앞지르고 있음은 한국이나 중국의 연구경향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한·중 간 국경 문제보다는 대륙침략과 만주 지배기를 중심으로 한 간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파악이 역사적으로 주된 관심이었음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간도 지역 교육 문제를 다룬 연구가 많음이 돋보인다. 발표 유형별로는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논문이 76%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료집과 저서류가 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자료집이 저서와 더불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대만이나 구미권의 백두산과 간도 관련 연구는 9건과 11건에 불과하다. 다

론 주제들도 포괄적으로 개관한 것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백두산과 간도에 관련된 최근 60년간의 연구는 한국을 필두로 한 중국, 일본 등 이해 당사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른 주제도 백두산을 경계로 한 국경과 영토 문제, 그리고 간도 지역 이주민 사회 특히 조선족 사회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Ⅲ. 시기별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최근 60년간 백두산과 간도에 관한 연구의 시기별 추이를 연구 성과가 많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1948년 이후 현재까지 60년을 10년 단위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_ 한국

한국에서 발표된 최근 60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10년 단위 6단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유형별)

유형별	주제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한국 논문	연구동향					2	16	18	
	간도일반		1		9	11	23	44	
	국경문제	2	3	4	18	16	36	79	
	민족문제			1	4	15	43	63	
	자료해제			5	2	2	4	13	

(계속)

유형 별	주제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한 국	소 계	2	4	10	33	46	122	217	62.4	
	비율(%)	0.9	1.8	4.6	15.2	21.2	56.2	100		
	저 서	연구동향						2	2	
		간도일반					4	11	15	
		국경문제			1	4	10	18	33	
		민족문제		1		1	4	4	10	
		자료해제					3	3	6	
		소 계	0	1	1	5	21	38	66	19.0
	비율(%)	0	1.5	1.5	7.6	31.8	57.6	100		
	번 역 (서)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1	
		국경문제				2			2	
		민족문제							0	
		자료해제						2	2	
		소 계	0	0	0	3	0	2	5	1.4
	비율(%)	0	0	0	60.0	0	40.0	100		
	자 료 집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1	
		국경문제			1	1	1	4	7	
		민족문제						4	4	
자료해제						1		1		
소 계		0	0	2	1	2	8	13	3.7	
비율(%)	0	0	15.4	7.7	15.4	61.5	100			
학 위 논 문	연구동향							0		
	간도일반					2	1	3		
	국경문제		1	3		6	7	17		
	민족문제			1	4	15	7	27		
	자료해제							0		
	소 계	0	1	4	4	23	15	47	13.5	
비율(%)	0	2.1	8.5	8.5	48.9	31.9	100			
합 계		2	6	17	46	92	185	348	100	
비율(%)		0.6	1.7	4.6	13.2	26.4	53.2	100		

연구 성과의 전체적인 개황을 보면 광복 이후 20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연

구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연구가 18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5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연구가 최근 급격히 부각된 연구 과제를 말해 주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정치 외교적 상황도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한 광복 이후의 연구 동향은 1960년대까지는 연구의 태동기, 이후 1980년대까지는 연구 확산기, 1990년대 이후는 연구 활성화기로 구분되기도 한다.⁵⁾ 최근 20년간의 연구 성과가 83.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백두산 및 간도 연구는 주로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도에 관한 선구적 연구는 1955년 申基碩의 「間島歸屬問題」란 주제의 논문이고,⁶⁾ 1958년 盧啓鉉의 석사학위논문이 그 뒤를 이었다.⁷⁾ 백두산에 관한 선구적 연구는 1962년 발표된 李宣根의 「白頭山과 間島問題」란 주제의 논문이다.⁸⁾ 후속 연구가 보이지 않던 중 1965년 북한이 소련과 군사경제협조협정을 체결하자 중국이 소련과 북한을 상대로 국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의 관심도 환기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1966년 白山學會가 창립되어 『白山學報』를 간행하게 되었고, 1966년에 朴容玉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1969년에 李漢基의 저서가 출간되

5) 한철호, 2003, 앞의 논문, 287~303쪽 참조. 이 논문은 국경 문제에 대한 시기별 주제별 연구동향을 잘 개관하고 있어서 본고의 정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6) 申基碩, 1955, 「間島歸屬問題」, 『中大30周年紀念論文集』. 이 논문에서는 '백두산정계비' 설립 이후 '간도협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상세히 개관하였고, 한국인이 간도 지방을 개척한 공로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영토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盧啓鉉, 1958, 「동간도 귀속문제를 논함」,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 논문에서는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권을 회복한 한국과 청을 계승한 중국 당국 사이에 외교적 문제로 재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8) 李宣根, 1962, 「白頭山과 間島問題 - 회상되는 우리 疆域의 歷史的 受難 -」, 『歷史學報』 17·18합집. 이 논문에서는 백두산 일대가 우리 영토임을 논증하고 '간도협약'이 불법일권임을 강조하였다.

면서 백두산과 간도 연구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⁹⁾ 1975년 국회도서관이 일본 외무성과 육해군성이 소장하고 있던 문서들 가운데 간도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간행하고,¹⁰⁾ 1979년에 梁泰鎭이 영토관계문헌집을 정리하여 출간¹¹⁾하면서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1981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내에 (영토문제연구실)이 설립되고 1983년부터 『영토문제연구』라는 전문학술지를 간행하게 된 것과, 1983년 국회에서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된 일 등은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¹²⁾

1992년 9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제법적 연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다양한 연구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설립된 영토문제를 주로 연구한 단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土門會(1993), 한국북방학회(1994) 등을 들 수 있다.¹³⁾ 북방 영토와 국경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지의 특집호가 편성되기도 하였고,¹⁴⁾ 관련 학술토론회도 본격적으로 기획되기 시작했다.¹⁵⁾ 2004년에 만주학회가 설립되고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된 데 이어 고구려연구재단이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개편 출범하는 등 최근 학계의 관

9) 朴容玉, 1966, 「間島歸屬問題에 대한 歷史的 考察」, 『時事』 31; 李漢基, 1969, 『韓國의 領土 -領土取得에 관한 國際法的 研究-』, 서울대출판부.

10) 國會圖書館 編, 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國會圖書館.

11) 梁泰鎭, 1979, 『韓國 國境領土關係 文獻集』, 甲子文化社.

12) 『영토문제연구』는 1985년 2호까지 발간한 뒤 중단되었고, 국회의 결의안도 외교적 고려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다(한철호, 2003, 앞의 논문, 295~296쪽 참조).

13) 토문회는 『영토사랑』(1993년 창간), 한국북방학회는 『韓國北方學論集』(1995년 창간)을 통해 관련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14) 대표적인 예로는 이상태, 이일걸, 양태진 등의 논문을 수록한 『한민족공영제』 2호(1994, 해외한민족연구소)를 들 수 있다.

15) 1996년 한국사연구회 주최 '한국사에서의 북방영토 문제', 1997년 백산학회와 한민족연구소 공동 주최의 '한민족의 북방영토의식과 간도영유권문제',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사학회 공동주최의 '한국사에 있어서 북방진출과 영토문제' 등 학술회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이 북방 문제에 한층 더 집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 성과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출판 유형에 근거하여 시기별 경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논문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성과가 논문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연구 성과의 최근 10년간의 연구 성과 비율 53.5%보다 2.7% 상회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서 주제 연구가 그만큼 왕성하게 발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 가운데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43건으로 가장 많고, 국경 문제를 다룬 것이 36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서, 이 둘을 합하면 79건으로 최근 10년간 논문 122편 가운데 3분의 2에 근접하고 있다.

저서의 경우 광복 이후 30년간 발표된 것이 극히 미미하다가 최근 20년간 발표된 것이 전체의 89.4%를 점유하고 있고, 그중 최근 10년간의 발표물이 5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집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최근 10년간 저서들의 주제별 경향을 보면 국경과 영토 문제를 다룬 것이 1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간도 문제를 개관한 것이 1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반해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이 논문의 경우와는 뚜렷이 대조된다. 저서의 경우 여러 문제를 종합한 경우가 많아서 백두산과 간도 지역을 개관한 것으로 분류된 것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이 지표를 보아야 할 것이다.¹⁶⁾

학위논문의 경우 최근 20년간 발표된 것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최근 10년간의 것이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학위논문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다소 줄어든 것은 다소 의외이다. 학위 취득 후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많아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현상이라고 판단된

16) 白山學會 編, 2000, 『大陸關係史論攷』, 白山資料院; 白山學會 編, 1995, 『朝鮮時代北方關係史論考』, 白山資料院; 우영란, 2004, 『중한 변계무역사연구』, 신성출판사 등은 간도 조선족 사회경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포괄적인 간도 연구물이어서 간도 일반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예다.

다. 10년 전까지는 민족 문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로 시기별 경향성을 구분 정리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주제별)

주제별	유형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연구동향	논문					2	16	18	5.8
	저서						2	2	
	번역(서)							0	
	자료집							0	
	학위논문							0	
	소계	0	0	0	0	2	18	20	
	비율(%)	0	0	0	0	10.0	90.0	100	
간도일반	논문		1		9	11	23	44	18.4
	저서					4	11	15	
	번역(서)				1			1	
	자료집			1				1	
	학위논문					2	1	3	
	소계	0	1	1	10	17	35	64	
	비율(%)	0	1.6	1.6	16	26.6	54.7	100	
국경문제	논문	2	3	4	18	16	36	79	39.7
	저서			1	4	10	18	33	
	번역(서)				2			2	
	자료집			1	1	1	4	7	
	학위논문		1	3		6	7	17	
	소계	2	4	9	25	33	65	138	
	비율(%)	1.5	2.9	5.8	18.1	23.9	47.8	100	
민족문제	논문			1	4	15	43	63	
	저서		1		1	4	4	10	
	번역(서)							0	
	자료집						4	4	
	학위논문			1	4	15	7	27	

(계속)

주제 별	유형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한국	소 계	0	1	2	9	34	58	104	29.9	
	비율(%)	0	1.0	1.9	8.7	32.7	55.8	100		
	자료 해 제	논문			5	2	2	4	13	
		저서					3	3	6	
		번역(서)						2	2	
		자료집					1		1	
		학위논문							0	
		소 계	0	0	5	2	6	9	22	6.3
		비율(%)	0	0	22.7	9.1	27.3	40.9	100	
	합 계		2	6	17	46	92	185	348	100
	비율(%)		0.6	1.7	4.6	13.2	26.4	53.2	100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들은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최근 10년간의 것이다. 이는 최근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것의 반영이며, 연구사의 정리를 통해 새로운 연구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최근 단행본도 두 차례나 나왔으나,¹⁷⁾ 나머지가 모두 연구논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경향의 분석은 수시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문의 형태로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하여 개관한 연구의 경우 최근 20년간의 것이 81.3%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것이 54.7%로 절반을 넘는다. 최근 20년 이전의 연구도 12건이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의 발표 유형을 보면 논문이 20건인데 비해 저서가 10건이나 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적으나마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분단과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경과 영토가

17) 한철호 외저, 2003,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동향』, 고구려연구재단.

중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양적으로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비율이 가장 높은 4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다. 최근 10년간의 발표 유형을 보면 논문이 36건으로 55%, 저서가 18건으로 27%를 차지하여 이 둘을 합하면 82%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학위 논문이 13건으로 급증하는 것도 주목된다.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나 최근 20년간의 연구가 88%로 절대적인 지수를 보이고 있고, 그중 최근 10년간의 연구가 58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의 유형을 보면 논문이 43건으로 이 주제 연구의 7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의 이 주제에 관한 학위논문이 22건이나 나오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자료해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1960년대 말 이후 상대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연구물의 비율이 가장 적은 부문이다. 관련 자료의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들의 시기별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 내의 것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논문과 저서 및 자료집의 간행이 늘고 있으며, 연구동향 및 민족 문제, 간도 개관 부문의 연구가 최근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중국에서 발표된 최근 60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10년 단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유형별)

유형 별	주제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주 구	근 년	연구동향				1	4	2	7	
		간도일반				2	3	5	10	
		국경문제				4	8	29	41	
		민족문제				7	29	39	75	
		자료해제		1			3	1	5	
		소 계	0	1	0	14	47	76	138	73.4
		비율(%)	0	0.7	0	10.1	34.1	56.5	100	
	저 서	연구동향							0	
		간도일반					2	5	7	
		국경문제					2	1	3	
		민족문제				3	6	4	13	
		자료해제				2			2	
		소 계	0	0	0	5	10	10	25	13.3
		비율(%)	0	0	0	20.0	40.0	40.0	100	
	번 역 (서)	연구동향							0	
		간도일반							0	
		국경문제							0	
		민족문제							0	
		자료해제							0	
		소 계	0	0	0	0	0	0	0	0
		비율(%)	0	0	0	0	0	0	100	
자 료 집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2	1	4		
	국경문제			1		2	1	4		
	민족문제				1	2	1	4		
	자료해제				1			1		
	소 계	0	0	1	3	6	3	13	6.9	
	비율(%)	0	0	7.7	23.1	46.2	23.1	100		
학 위 논 문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5	6		
	국경문제						1	1		
	민족문제					4	1	5		
	자료해제							0		
	소 계	0	0	0	0	5	7	12	6.4	
	비율(%)	0	0	0	0	41.7	58.3	100		
합 계	0	1	1	22	68	96	188	100		
비율(%)	0	0.5	0.5	11.7	36.2	51.1	100			

중국에서 간도 문제를 비롯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¹⁸⁾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이후 연구 주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¹⁹⁾ 중국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에도 문화대혁명시기까지는 한·중 국경 문제 연구의 침체기에 해당한다. 양국 우호관계의 유지를 우선하는 가운데 국경 문제의 거론을 금기시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학계 전반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3년 中國社會科學院 산하에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설립되면서 국경과 변경지역 연구가 본격화되었다.²⁰⁾ 1992년 한·중 국교 수립을 계기로 연구가 한층 더 활성화되었고,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 역시 간도와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한 연구를 증가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동북공정의 주요 주제들이 고대사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청대 이후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이와 관련되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구물 발표 유형별로 표출되는 시기적 경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문의 경우 최근 20년간 발표된 것이 123건으로 전체 논문의 89.1%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이 76건으로 전체 논문의 56.5%를 점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들의 경우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국경이나 영토문제를 다룬 연구가 2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에서는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심보다

18) 본고의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20세기 초에 발표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로는 吳祿貞, 1908, 『光緒丁未延吉邊務報告』; 宋教仁, 1908, 『間島問題』; 匡熙民, 1909, 『延吉廳領土問題之解決』; 張風台, 1909, 『長白彙征錄』 등을 들 수 있다.

19) 간도협약 이후 발표된 연구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尤其衛, 1917, 『間島問題之過去及將來』, 『學生雜誌』 4-9; 謝彬, 1932, 『間島問題』, 『國防與外交』; 宋漁夫, 1936, 『間島問題』, 『建國月刊』 5-1, 2, 3, 4; 金毓黻, 1941, 『歷史上東北之疆域考』, 『邊疆研究集刊』 1; 谷中喬, 1941, 『我國東北疆域變遷考』, 『東北』 2-3 등을 들 수 있다.

20) 김춘선, 2003, 앞의 논문, 209~212쪽 참조.

동북 지역 이주민 사회 특히 조선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반영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저서의 경우 최근 20년간 발간된 것이 20건으로 저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저서 역시 개혁 개방 이후에 출간되었음을 보여 준다. 최근 10년간의 연구 성과 중 간도 문제를 개관하고 있는 것과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5건과 4건으로 많고, 국경 문제를 다룬 것이 한 건밖에 없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족 문제를 다룬 것이 4건인데 비해 간도 지역을 개관한 연구가 5건으로 더 많은 것은 저서가 포괄적 연구서로 묶여지는 점을 감안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²¹⁾

자료집은 1974년에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滙編』²²⁾을 발간한 이래 각 부문에서 고르게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학위논문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주제별로 표출되는 시기적 경향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주제별)

주제 별	유형별	1948 ~	1958 ~	1968 ~	1978 ~	1988 ~	1998 ~	합계	비율 (%)
		1957	1967	1977	1987	1997	2007		
중국 동향	논문				1	4	2	7	
	저서							0	
	번역(서)							0	

(계속)

21) 常城, 1987, 『東北近現代史綱』,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常城, 1995, 『世界列國與東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徐萬民, 1996, 『中韓關係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楊昭全, 1988, 『中朝關係史論文集』,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楊揚 主編, 1991, 『中國的東北社會』,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張博泉, 1988, 『東北歷代疆域史』, 吉林人民出版社; 陳本善 主編, 1989, 『日本侵略中國東北史』,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등이 모두 한·중 국경 문제와 동북 지역 민족 문제들을 포괄한 연구들이다.

22) 그밖에 주요 자료집으로는 吉林省檔案館,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合編, 2006, 『吉林省檔案館藏 清代中朝關係史料選輯』,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楊昭全, 1993,

주제 별	유형별	1948 ~ 1957	1958~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주 제 구 분	자료집							0		
	학위논문							0		
	소 계	0	0	0	1	4	2	7	3.7	
	비율(%)	0	0	0	14.3	57.1	28.6	100		
	간 도 일 반	논 문				2	3	5	10	
		저 서					2	5	7	
		번역(서)							0	
		자료집				1	2	1	4	
		학위논문					1	5	6	
		소 계	0	0	0	3	8	16	27	14.4
		비율(%)	0	0	0	11.1	29.6	59.3	100	
		국 경 문 제	논 문				4	8	29	41
	저 서						2	1	3	
	번역(서)								0	
	자료집				1		2	1	4	
	학위논문							1	1	
	소 계		0	0	1	4	12	32	49	26.1
	비율(%)		0	0	2.0	8.2	24.5	65.3	100	
	민 족 문 제	논 문				7	29	39	75	
		저 서				3	6	4	13	
번역(서)								0		
자료집					1	2	1	4		
학위논문						4	1	5		
소 계		0	0	0	11	41	45	97	51.6	
비율(%)	0	0	0	11.3	42.3	46.4	100			
자 료 해 제	논 문		1			3	1	5		
	저 서				2			2		
	번역(서)							0		
	자료집				1			1		
	학위논문							0		
	소 계	0	1	0	3	3	1	8	4.3	
비율(%)	0	12.5	0	37.5	37.5	12.5	100			
합 계		0	1	1	22	68	96	188	100	
비율(%)		0	0.5	0.5	11.7	36.2	51.1	100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들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이 1996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 7편 모두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내용면에서는 간도를 비롯한 강역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이 4건이고, 나머지 3건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하여 개관한 연구의 경우 최근 20년간의 것이 81.3%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것이 전체 27건 중 16건으로 59.3%의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의 연구를 합하면 24건으로 88.9%를 차지하게 된다.²³⁾ 최근 10년간의 발표 유형을 보면 논문, 저서, 학위논문이 각각 5건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집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 20년간 발표된 것이 전체 49건 중 44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65.3%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오던 영토와 국경 문제에 대한 연구가 국교 수립 이후 다양하게 연구 주제로 부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발표 유형을 보면 전체 32건 가운데 논문이 29건으로 91%라는 놀라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저서나 학위논문의 발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지만 역시 개혁개방 이후에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최근 30년간 비교적 고르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편이다. 최근 20년간의 연구 실적 비중이 88.7%나 되지만 최근 10년간 실적이 46.4%에 그치면서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의 유형을 보면 논문이 39건으로 이 주제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 編, 2004,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朝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高永一, 1989, 『朝鮮族歷史研究參考資料匯編』,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李澍田, 1987, 『長白叢書: 長白匪徵錄, 長白山江崗志略』, 吉林文史出版社 등이 있다.

23) 董萬倫의 논문(1980)과 『延邊朝鮮族自治州概觀』(1984)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물은 모두 1986년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다.

연구의 86.7%를 차지하여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자료해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196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발표된 연구물의 비율이 가장 적은 부문이다.

3_ 일본

일본에서 발표된 최근 60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10년 단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유형별)

유형 별	주제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일본 논문	연구동향						1	1	
	간도일반			1	1	2	6	10	
	국경문제		1	1		7	6	15	
	민족문제			3	2	3	29	37	
	자료해제		2			1	10	13	
	소 계	0	3	5	3	13	52	76	76.8
	비율(%)	0	3.9	6.6	3.9	17.1	68.4	100	
일본 저서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1			1	3	6	
	국경문제					1		1	
	민족문제					1		1	
	자료해제				1			1	
	소 계	1	1	0	1	3	3	9	9.1
	비율(%)	11.1	11.1	0	11.1	33.3	33.3	100	
일본 번역(서)	연구동향							0	
	간도일반							0	
	국경문제		1					1	
	민족문제							0	
	자료해제							0	
	소 계	0	1	0	0	0	0	1	1.0
	비율(%)	0	100	0	0	0	0	100	

(계속)

유형 별	주제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자료 집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5	6	
	국경문제							0	
	민족문제			1				1	
	자료해제		1			1		2	
	소계	0	1	2	0	1	5	9	9.1
	비율(%)	0	11.1	22.2	0	11.1	55.6	100	
학 위 논 문	연구동향							0	
	간도일반						1	1	
	국경문제						2	2	
	민족문제							0	
	자료해제						1	1	
	소계	0	0	0	0	0	4	4	4.0
	비율(%)	0	0	0	0	0	100	100	
합 계		1	6	7	4	17	64	99	100
비율(%)		1.0	6.1	7.1	4.0	17.2	64.6	100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부터 간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간도 정책과 청·일 교섭과정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²⁴⁾ 1920년대까지는 대체로 통감부가 주도한 청과의 교섭에서 일본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 간도지역 영유권 확보를 위한 일본의 적극적 대외 정책을 이론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의 연구물들이 대거 발표되어 일본에서의 간도 연구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²⁵⁾

24) 1910년대에 출간된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은 總督府 臨時間島派出所 殘務整理所, 1910, 『統監府 臨時間島派出所 紀要』, 東京; 總督府 臨時間島派出所 殘務整理所, 1915, 『間島産業調査書』, 東京; 中井錦城, 1915, 『朝鮮回顧錄』, 東京; 糖業研究會 등이 있으며, 內藤湖南의 보고서 등 당시 외교 및 국방 관련 자료들은 國會圖書館編, 1975, 『間島永有權關係拔萃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25) 그 대표적인 연구물은 篠田治策, 1930, 『間島問題の回顧』, 京城: 中日文化協會; 篠田治策, 1936, 『間島問題の經緯』, 東京: 東亞經濟調査局; 篠田治策, 1938, 『白頭山

주제별로 표출되는 시기별 경향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현황 분류표(시기·주제별)

주제별	유형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연구동향	논문						1	1	
	저서							0	
	번역(서)							0	
	자료집							0	
	학위논문							0	
	소계	0	0	0	0	0	1	1	1.0
	비율(%)	0	0	0	0	0	100	100	
간도일반	논문			1	1	2	6	10	
	저서	1	1			1	3	6	
	번역(서)							0	
	자료집			1			5	6	
	학위논문						1	1	
	소계	1	1	2	1	3	15	23	23.2
	비율(%)	4.3	4.3	8.7	4.3	13	65.2	100	
국경문제	논문		1	1		7	6	15	
	저서					1		1	
	번역(서)		1					1	
	자료집							0	
	학위논문						2	2	
	소계	0	2	1	0	8	8	19	20.2
	비율(%)	0	10.0	5.0	0	40.0	45.0	100	
민족문제	논문			3	2	3	29	37	
	저서					1		1	
	번역(서)							0	
	자료집			1				1	
	학위논문							0	
	소계	0	0	4	2	4	29	39	38.4
	비율(%)	0	0	10.5	5.3	10.5	73.7	100	
자료해제	논문		2			1	10	13	
	저서				1			1	

(계속)

주제 별	유형별	1948 ~ 1957	1958 ~ 1967	1968 ~ 1977	1978 ~ 1987	1988 ~ 1997	1998 ~ 2007	합계	비율 (%)
일본 해 제	번역(서)							0	
	자료집		1			1		2	
	학위논문						1	1	
	소계	0	3	0	1	2	11	17	17.2
	비율(%)	0	17.7	0	5.9	11.8	64.7	100	
	합 계	1	6	7	4	17	64	99	100
	비율(%)	1.0	6.1	7.1	4.0	17.2	64.6	100	

연구 동향 관련 연구는 최근에 1편 나온 데 그치고 있으나 다른 4개 부문은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간도 지역을 개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이 전체 23건 중 15건으로 65.2%나 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전 시기에 고른 분포를 보인다. 국경 문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20년간 발표된 것이 전체 20건 중 17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최근 10년간의 것이 9건에 불과하여 5개 부문 중 최근 10년간 연구의 비중이 가장 낮다. 반면 민족 문제를 다룬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10년간 발표된 것이 전체 39건 중 29건으로 74.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족 사회 파악을 통해 간도 영유권을 모색하였던 20세기 전반기의 상황이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가되었음을 보여 주며, 항일운동이나 교육 문제도 주된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였음을 반영하는 수치다. 자료해제도 최근 늘고 있다.

요컨대 193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일본에서의 백두산과 간도 연구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지부진하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는 국경 문제보다는 간도 지역 조선족 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주제별 연구 동향

전체 655건의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성향을 보면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가 244건으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중 37.3%를 차지하고 있다.²⁸⁾ 이는 연구 성과를 주로 내고 있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지역의 자국민화를 지향하거나 자국민들의 보호를 관심으로 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218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계비 문제나 간도협약 등 국경과 영토 설정에 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았던 결과 연구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과 간도와 관련하여 시대적 지역적으로 개관하고 있는 연구도 118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간도 지역에 대한 포괄적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된 결과들이며 국경 문제나 민족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연구들도 다수 있다.

관련 자료들에 대한 해제도 47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연구도 28건이나 있다. 이는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연구가 최근 급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가 국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연구보다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아시아 3개국 학자들의 간도 문제에 대한 관심에 분명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로 논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연구 시각의 편차를 다음의 몇 가지 세부 주제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8) 앞에 제시한 <표 1>의 자료 참조.

1_ 간도의 범위 문제

간도의 범위는 간도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도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간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은 토문강을 해석하는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청의 封禁 정책과 관련하여 조선인들의 개간 활동의 범위가 유동적이었던 점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간도의 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³⁰⁾

첫째 토문강을 두만강의 지류로 인식하여 간도의 범위를 현재의 海蘭江 이남 정도로 보는 관점이다. ‘백두산정계비’를 국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리적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개화기의 주요 관점이었고,³¹⁾ 현재 간도의 범위를 가장 좁게 파악하는 견해다.

둘째 일본의 間島派出所의 관할 범위를 간도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土門江 이동, 甌山 이남의 범위다. 일본이 청과 러시아의 직접 영유권이 미치지 않으면서 조선인이 밀집한 생활권을 간도파출소를 통해 관할하였던 것이므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견해다.³²⁾

셋째 黑龍江 국경설이다. 이 견해는 1885년 감계 담판시 조선 측 감계사 李重夏의 狀啓나 1899년 함경도관찰사 李鍾觀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토문강을 松花江의 지류로 보고 간도를 토문강과 송화강 이동, 흑룡강 이남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현재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다.³³⁾

넷째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의 봉금 지대, 즉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를

29) 노계현, 2005, 「간도문제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기초인식」, 『간도학보』 창간호, 19쪽 참조.

30) 간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이성환, 2006, 앞의 논문, 618 ~ 628쪽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31) 실학 시대와 개화기의 간도 인식에 대해서는 趙珖, 1983, 「實學 및 開化期の 領土問題 研究」, 『領土問題研究』 창간호 참조.

32) 관련자료는 신각수, 1991, 「국제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2 ~ 273쪽 참조.

충칭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간도 문제를 '백두산정계비' 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조선인의 역사적·지리적 생활권 범위를 최대한 넓게 파악하자는 견해다.³⁴⁾

간도의 범위는 영토 분쟁을 염두에 둔 주장과 한국사 연구의 영역 확장이 라는 차원의 주장 여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 나 1909년 '간도협약'의 효력 인정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향후 다양한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간도의 범주 획정은 '백두산정계비'에 명기된 '土門'을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분기된다.

첫째 정계비의 土門을 두만강으로 보는 견해다. 건립 당시 두만강을 지칭하는 의미로 토문이라 기록했고 조선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 관점이다. 비문에 명기된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상 두만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주장은 현재 우리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³⁵⁾ 그럴 경우 간도에 관한 영토주권적 접근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 견해는 중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³⁶⁾

둘째 정계비의 土門이 두만강과는 별개의 土門江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간도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논거다. 실제 두만강과 토문강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이다. 토문강이 북으로 흘러

33) 이중하의 장계를 비롯하여 관련 주장은 신기석,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참조.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의 홍보물은 <http://www.gando.or.kr> 참조.

34) 박선영, 2006, 「간도, 왜 논란인가?」, 아시아학회, 2쪽, 16~23쪽; 李日杰, 1998, 「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91쪽 등 참조.

35)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논지를 편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석화, 1997,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96; 강석화, 2005,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기전문화연구」 32,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등이 있다.

36) 吳祿貞, 1908, 「延吉邊務報告」, 奉天:學務公所에서는 역사상, 직명상, 비문상, 언어상, 음운학상, 속칭상, 공문서상, 일본자료상의 근거를 들어 圖們, 土門, 豆滿이 하나의 강임을 논증했다. 이후 동일한 강이라는 주장은 楊昭全·孫玉海, 1993, 「中朝邊界史」; 張存武, 1998,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中朝邊界研究論集」 등 참조.

송화강으로 합류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간도영유권과 관련된 우리 학계의 핵심 논리가 되는 셈이다. 다만 정계비 당시 조선과 청이 두만강과 토문강 중 어느 강을 국경으로 인식했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³⁷⁾

셋째 정계비를 세울 당시 강 이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문을 작성하고 비를 세웠다는 이른바 착오설이다. 穆克登이 두만강 원류라고 생각하고 비를 세웠으나 토문강이 별도로 있고 비를 세운 곳도 토문강 분수령이었다는 등 비를 세울 당시부터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주장이다.³⁸⁾ 이 착오설도 한국 학계에서 간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때 주요 논거로 제기되고 있다.

간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연구마다 나름대로 자료차원의 근거나 논리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말 접경 지역이 통치 영역으로서의 확실한 고정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말미암아 자료마다 출입이 많고, 자료가 남겨진 시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정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변화무쌍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유동성이라는 대전제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지도나 현장 보고서 등 새로운 자료들의 개발을 통한 보다 진실보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백두산정계비' 관련 연구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에 관한 연구는 정계비 설립 배경, 정계 추진 과정, 정계비의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³⁹⁾

37) 정계비를 세울 당시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두만강과 토문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박용옥, 1985, 앞의 논문; 강석화, 1997, 앞의 논문 등이 있다.

38) 시노다 지사크, 신영길 역, 1979,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 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126쪽; 신기석,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25쪽 등 참조.

39) 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으로는 고성훈, 2003, 앞의 논문 참조.

먼저 정계비 설립 배경에 관해서는 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분기된다. 첫째 청이 백두산 일대를 국가 발상지로 신성시하면서 백두산 일대의 국경 확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있고,⁴⁰⁾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인삼과 豹皮 등을 대량으로 채취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도 있다.⁴¹⁾ 즉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을 포괄하는 정치적 판단이 정계비 건립까지 이르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백두산정계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에서 청의 경계 조사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조선에서는 청의 북방 경계 조사가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국내 사정의 외부 유출을 막고 청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대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²⁾ 그러나 조선이 기회가 있는 대로 중국 동북 지방에 대한 지리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⁴³⁾ 이밖에 청의 差使 穆克登 일행과 조선의 接伴使 朴權 등 실무자 사이의 관계가 고압적이었는가 우호적이었는가,⁴⁴⁾ 우리 측이 효율적으로 대응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⁴⁵⁾에 초점을 둔 논점도 부각되고 있다.

40) 金奭春, 1997, 「鴨綠·豆滿江 國境問題에 關한 研究」,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5~30쪽.

41) 劉鳳榮, 1972,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13, 77~80쪽; 金慧子, 1982,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研究」, 『梨大史苑』 18·19합집, 65쪽 등 참조.

42) 劉鳳榮, 1972, 앞의 논문; 陸洛現 편, 2000, 『白頭山定界碑와 間島永有權』, 34쪽;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50쪽;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86~87쪽 등 참조.

43) 강석화, 1997, 앞의 논문, 50~51쪽; 이상태, 1999, 앞의 책, 64쪽, 84~86쪽 등 참조.

44) 청 측이 고압적이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李宣根, 1962, 앞의 논문, 558쪽; 강석화, 1997, 앞의 논문, 55~56쪽 등을 들 수 있고, 청 측의 태도가 우호적이면서 온건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상태, 1999, 앞의 책, 91쪽; 朴容玉, 1985, 「白頭山定界碑 建立의 再檢討와 間島 永有權」, 『白山學報』 30·31합집, 226쪽 등 참조.

45) 조선 측이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은 강석화, 1997, 앞의 논문, 55~56쪽; 朴容玉, 1985, 위의 논문 등, 조선 측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능함을 보였다는 주장은

그리고 ‘백두산정계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정계비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호불호간 양국의 경계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정계비로 인정해야 하며 조선과 청국 간 대등한 외교 관계의 결실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⁴⁶⁾ 반면에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세웠으므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이 견해는 ‘백두산정계비’라 지칭하는 대신 ‘白頭山石碑’라 불러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중 국경 문제는 북간도와 서간도를 포괄하여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중국에서는 정계비로 인정하는 견해와 정계비가 아닌 시찰 표지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는 관원을 파견하여 邊界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표기한 것이므로 정계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⁴⁸⁾ 이러한 주장은 정계비의 토문을 두만강으로 간주하면서 현재의 국경 성립의 근거로 파악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 후자는 청 측의 일방적인 변경 시찰을 통해 세운 비로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담판 기록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정계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⁴⁹⁾ 이 주장은 비를 잘못 세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로 인해 두만강 이남의 영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시각까지도 보이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연구는 특히 한국과 중국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 학자들 모두 이 비로 인해 자국 영역이 위축되었다고 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향후 다각적인 검토와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趙珖, 1974, 「朝鮮後期 邊境意識」, 165쪽; 劉鳳榮, 1972, 앞의 논문, 34~35쪽; 金龍國, 1970, 「白頭山考」, 『白山學報』 8, 290쪽 등을 참고할 만하다.

46) 李宣根, 1962, 앞의 논문, 585~589쪽; 金慧子, 1982, 앞의 논문, 81쪽;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劉鳳榮, 1972, 앞의 논문, 62~65쪽 등 참조.

47) 대표적인 주장은 양태진, 1981,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판공사, 129쪽; 노영돈, 1990, 「백두산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李日杰, 1998, 앞의 논문, 91쪽 등 참조.

48) 대표적인 견해는 楊昭全·孫玉海, 1993, 앞의 논문, 193~196쪽; 張存武, 1998, 앞의 논문, 555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대표적인 견해는 王崇時, 1998, 「19世紀中朝東段邊界的變遷」, 『中朝邊界研究文集』, 510쪽; 徐德源, 1997, 「穆克登碑的性質及其鑿立地點與位置述考」,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1, 74쪽 등에서 볼 수 있다.

3_ 간도 영유권 관련 연구

간도 귀속 문제는 간도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간도협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간도 귀속 문제는 시노다 지사크[篠田治策]의 문제 제기 이래 현재 한국에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핵심 과제가 되어 있다. 간도 귀속문제에서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논리는 무주지선점론과 압록·두만 양분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무주지선점론은 간도가 조선인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간도협약 이전에 이미 다수의 조선인이 살고 있으므로 조선에 역사적, 지리적 연고권이 있다는 논리다. 당시 조선 정부가 1901년 회령에 邊界警務署를 설치하고, 1902년 5월 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한 다음 1903년 8월에 이를 북간도관리사로 승격시키는 등 북간도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한편 양분설은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 지역이 모두 무주지였으므로, '西爲鴨綠'으로 서간도를 중국이 차지하면 '東爲土門'으로 간도를 조선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⁵¹⁾ 이 논리에 따르면 정계비의 토문이 두만이 아닌 토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며 토문을 도문으로 간주한 '간도협약'의 논리도 성립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다음, '간도협약'에 관한 논쟁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 문제인 간도 영유권을 두고 청과 일본이 협약으로 결정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간도의 한국 귀속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⁵²⁾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영토를 재확인한 것으로

50) 한말 조선의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이일결과 김춘선의 여러 연구들에서 상론되고 있다.

51) 시노다 지사크가 제기한 정황 논리에 대해서는 시노다 지사크, 신영길 역, 2005, 앞의 책; 이성환, 2006, 앞의 논문, 615~616쪽 참조.

52) 申基碩, 1955, 「間島歸屬問題」, 『中央大學校 30周年 紀念論文集』; 盧啓鉉, 1958,

서 국경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³⁾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역사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연구도 함께 경 주되어야 할 영역이다. 국가 간의 대립각만 세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자 료의 발굴과 협동 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고에서 구체적 검토에서는 제외했으나 최근 동양사학계에서 명 말 중국과 조선 간의 영토문제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연구⁵⁴⁾도 필요할 것이다. 청초 만주 변경지역과 청대 봉금지대 및 유조변 등의 성격 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 연계 연구⁵⁵⁾도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東間島歸屬問題를 論함」,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承濟, 1968, 「間島移民史의 社會經濟史的 分析」, 『白山學報』 5; 劉鳳榮, 1972, 앞의 논문; 朴容玉, 1985, 앞 의 논문; 梁泰鎮, 1990, 『韓國邊境史研究』, 법경출판사; 육락현, 1994, 『韓民族的 間島疆界』, 백산문화; 윤문식, 1995, 「間島 領土問題에 관한 一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燦奎, 1995, 「間島의 領有權」, 『韓國北方學會論集』 창간호; 金旻 春, 1997, 앞의 논문; 강석화, 1997, 앞의 논문; 劉鳳榮, 2000, 앞의 책 등 참조.

- 53) 薑龍範, 1998, 「關於清季中朝邊界交涉의 研究」, 『延邊大學學報』 1998-1; 薑龍範, 1997, 「清代中朝兩國邊界問題의 理論思考」, 『延邊大學學報』 1997-3; 高永一, 1981, 「間島問題의 始末」, 『延邊大學學報』 1981-4; 高永一, 1984, 「清代延邊和間島問題」, 『朝鮮族及延邊史志資料』, 延邊大學古籍研究所; 孫春日, 2000, 「中朝日關於 間島問題의 紛爭」,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4; 孫春日, 2002, 「間島協約締結의 始末」, 『交流與思考』; 孫玉海, 1998, 「中日關於 間島案之 交涉」, 『中國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嚴亞明, 2000, 「清末中日 間島 交涉述論」, 『大慶高等專科學校 學報』 2000-1; 吳忠亞, 1984, 「吳祿貞與所謂 間島 問題」, 『社會科學戰線』 1984-4; 吳忠亞, 1998,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衣保中, 2005, 「間島問題」의 歷史 背景及中日交涉의 歷史 經驗」, 『史學月刊』 2005-7; 鄭毅, 1998, 「略論 間島問題」,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陳朝陽, 1998, 「中漢延吉界 務之 交涉(1882~1909)」,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등 참조.

- 54) 대표적인 최근의 연구로는 徐仁範, 2005,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明清史研究』 23; 李慶龍, 2006, 「명대 지식인의 조선인식과 양국의 防北정책」, 『明清史研究』 25; 南義鉉, 2006, 「明代前期 遼東防禦와 人口變化」, 『明清史研究』 26; 徐仁 範, 2006,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 영토분쟁」, 『明清史研究』 26 등을 들 수 있다.

- 55) 유조변을 주목한 대표적 연구로는 박선영, 2005, 「한·중 국경획정의 과거와 현 재 - 유조변, 간도협약, 북중비밀국경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 『북방사논총』 4, 고 구려연구재단이 있다.

4_ 간도 지역 민족 문제 연구

간도 지역 민족 연구는 특히 조선족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조선족 사회에 대하여 중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악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왕성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원말명초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명말청초설이나 19세기 중엽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⁶⁾

간도 지역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는 농업 이주 정착과정과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의 기지라는 점을 주목하여 접근하고 있고, 교육 문제 및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⁵⁷⁾ 중국 학계에서는 월경 정착을 중국에서 용인하면서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특히 봉금 정책의 해제 이후 조선족의 본격적인 전입 정착 과정을 주목하고, 황무지 개간과 水田 개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이 반영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 간도지역 조선족 사회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악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 대단히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족의 법률적 지위와 국적 문제, 중국과 일본 당국에 의한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간도 지역 주민을 자국민으로 동화시켜 나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 학계에서는 간도파출소의 간도 관리 내역과 만주국 통치기 간도 지배 정책 등의 설명을 지향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왕성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경과

5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춘선, 2003, 앞의 논문, 191~200쪽 참조.

57)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김기훈, 2006, 『韓人の 滿洲移民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白山學報』 76 참조.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간도 지역 조선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간도지역 민족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국경과 영토적 관심에서 접근한 것들을 검토의 주요 대상으로 압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조선족 문제, 간도지역에서의 우리나라 독립운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왕성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주제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백두산과 간도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1948년 이후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대한 각국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일본, 구미 등 각국의 연구 성과를 아우르고 그것의 국가별, 시기별, 주제별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60년이나 되는 긴 시간, 국내외 연구 성과를 집성하는 작업이어서 누락이나 분류상의 무리한 배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거시적 분석을 통해 간도 문제의 연구동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은 우리나라와 중국 쪽에서 많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연구가 급증하여 각급 학회와 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의 큰 맥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연구가 급증했다. 단행본도 적지 않았으나 연구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형식의 연구물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주제별로는 한국의 경우 국경 문제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간도 지역 민족 문제를 다룬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백두산 및 간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연

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중 간의 국경 문제가 총론 없이 세부적인 각론만 연구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각국의 국경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를 찾아봄으로써 한·중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민감한 외교 문제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방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장래 중국과의 민감한 영토 관련 외교에서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미해결 문제로 남겨진 간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정리된 자료가 활용된다면 현재 및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효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최근 60년간 백두산과 간도 문제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포괄적으로 연구동향을 총괄하는 의미를 우선하였다. 따라서 법제사, 민족사, 민중운동사적 연구 가운데 역사학적 접근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연구들이 부득이 검토에서 빠진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계량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분류상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통계적 분석을 우선하였기에 각 연구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추가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차 더 많은 후속 연구 성과가 나와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면서도 균형 있는 새로운 학문적 담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부록〉 백두산, 간도 관련 연구물 목록

1. 한국

1) 논문

(1) 연구동향

- 姜昌錫, 2003, 「日帝時期 間島問題에 대한 研究動向과 展望 및 課題」,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고성훈, 2003, 「조선 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김기훈, 1996, 「근대 중국 동북(만주)사 연구의 동향 : 간도 영유권 문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김기훈, 2006, 「韓人의 滿洲移民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白山學報』, 76.
- 김춘선, 2002, 「압록, 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
- 김춘선, 2003, 「조선인의 동북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 :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박선영, 2004, 「중국학계의 조선과 청조간 국경 영토 논리와 그 한계」,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 박선영, 2004, 「통치와 통제의 상호 이해를 통해 본 간도문제 : 동아시아의 간도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배성준, 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변방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배성준, 2005, 「중국의 간도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민족·변방문제 연구동향』, 고구려연구재단.
- 小林玲子, 2006, 「日本における間島研究の現況」- 「滿洲事變以前の間島問題を中心に」, 『간도학보』 2.
- 신주백, 1995, 「중국 동북지방 역사학계의 연구동향과 자료현황 - 연변지방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 오종록, 2003, 「조선전기의 북방경영과 강역」,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윤휘탁, 2004, 「現代中國의 國家主義 歷史觀과 古代東北邊疆史 認識」, 『북방사논총』 1.
- 尹輝鐸, 2004, 「現代中國의 ‘邊疆’ 研究動向과 ‘邊疆’ 認識: 東北邊疆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재단 2004년도 민족문제팀 정책과제 보고서』.
- 이성환, 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 『白山學報』 76.
- 최장근, 1998, 「일본의 한청국경문제 연구와 소속론에 대한 인식」, 『일본어문학』 10, 대한일어일문학회.
- 한철호, 2003,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2) 간도 일반

- 강창석, 1987, 「통감부의 간도정책 연구 - 통감부의 간도간여를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동いの집』 14, 인문사회과학편.
- 강창석, 1987, 「통감부의 간도정책 연구 - 통감부의 간도적극책을 중심으로 -」, 『동의사학』 3.
- 권구훈, 1992, 「일제의 통감부간도파출소 설치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6.
- 김득황, 1973, 「간도영유권 분쟁시기에 있어서 청의 서간도 개발경영」, 『백산학보』 15.
- 김두현, 1984, 「김일성은 백두산을 더럽히고 있다」, 『북한』 152.
- 김명기, 1993, 「한중수교와 간도문제의 당사자」, 『국제문제』 274.
- 김우준, 2004, 「유럽 사료를 통해 본 서간도 문제」, 『간도학보』 1, 한국간도학회.
- 김주용, 2000, 「일제의 간도 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 김지암, 2005, 「일제에 의해 농단된 간도와 독도」, 『순국』 17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노계현, 2004, 「간도 문제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기초인식」, 『간도학보』 1, 한국간도학회.
- 名和悦子, 2003, 「内藤湖南の近代東アジアへの視覚: 間島問題に對する洞察」, 『中國史研究』 22.
- 박관섭, 1983, 「한민족의 고토 만주 및 실지 간도의 지리적 고찰」, 『건대문화』 12.
- 박선영, 2005, 「간도문제의 시대성: 시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5, 역사교육학회.
- 박선영, 2007, 「동북아균형론과 간도문제」, 『한국의 전망』 4, 새로운 사람들.
- 박용옥, 1983, 「간도문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근대5, 민족문화사.
- 박종현, 1995, 「송교인의 간도 혁명기지론」, 『경상사학』 11, 경상대학교 사학회.
- 배성준, 2005, 「간도 · 간도출병」,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 신승권, 1996, 「1880년대 조·청·러 관계」, 『한국외교사』 I, 집문당.
- 신용하, 2005, 「간도와 연해주」, 『한민족공동체』 13, 해외한민족연구소.
- 썸비르께바 따찌아나, 2002, 「1869~1870년에 진행된 러시아와 조선 간의 경협협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우영란, 2001, 「일제시기 '간도' 와 조선간 무역에서의 문제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 우영란, 2003, 「일제의 경제침략과 간도농업의 상업화」, 『경북사학』 26, 경북사학회.
- 우영란, 2005 「1920년대 후반 일제의 경제침략과 간도지역 농업의 상업화」, 『한국근현대사연구』 34, 한울.
- 이선근, 1960, 「백두산과 간도문제」, 『역사학보』 17~18.
- 이성환, 1999,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日本學誌』 19-1,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일본연구소.
- 이성환, 1992, 「原敬내각과 간도문제: 훈춘사건을 전후한 일본의 간도정책」, 『평화통일연구』 9, 대구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이성환, 2004, 「간도 지배체제 형성을 둘러싼 중·일의 대립: 1910년대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69, 백산학회.
- 이성환, 2005, 「이토 히로부미와 간도문제」, 『일본문화연구』 16, 동아시아일본학회.
- 이왕무, 2005, 「조선후기 「강북일기」에 나타난 만주 지역 인식」, 『북방사논총』 4, 고구려연구재단.
- 이일걸, 2005, 「조선의 대 간도정책」, 『한민족공동체』 13, 해외한민족연구소.
- 이 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152.
- 장세운, 2004,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 『국회도서관보』 41-10, 국회도서관.
- 張存武, 1980, 「間島 說的形成」, 『東方學志』 23~24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 조동걸, 1998, 「1920년 간도침범의 실상」, 『역사비평』 45, 역사비평사.
- 최장근, 1997, 「일제의 간도 '통감부 임시파출소' 설치 경위」, 『한일관계사연구』 7, 한일관계사학회.
- 최장근, 1997, 「일제의 '한국보호국'화 과정에 관한 일고찰: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간도정책 (1904. 5~1909. 9)와 관련하여」, 『한국학보』 89, 일지사.
- 최장근, 1997, 「한국통감부의 간도 침입에 관한 논증」, 『조선사연구』 6.
- 최장근, 1997, 「한국통감 伊藤博文의 간도영사정책 구상과 배경」, 『백산학보』 48.
- 최장근, 1998, 「일제의 간도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관한 고찰」, 『조선사연구』 7, 조선사연구회.

- 최장근, 2005, 「일본 대륙낭인의 간도문제 개입과정」, 『백산학보』 71.
 秋月望, 1982, 「통감부 간도 파출소의 설치 동기」, 『사총』 26.
 하원호, 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동북아역사재단.
 鶴嶋雪嶺, 1986, 「간도의 역사를 찾아서」, 『자유』 151.
 한정숙, 1996, 「제정러시아 제국주의의 만주, 조선정책」, 『역사비평』 35.

(3) 국경 문제

- 강석화, 1997,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96.
 강석화, 2005,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기전문화연구』 32,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강석화, 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강창석, 1988, 「통감부의 간도정책 연구 - 간도영유권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 『동의사학』 4.
 권구훈, 2000, 「역사속의 간도와 영토문제」, 『순국』 116, 순국선열유족회.
 김경춘, 1981, 「두만강 하류의 Korea Irredenta에 관한 일고」, 『백산학보』 30 · 31.
 김경춘, 1985, 「압록강 하류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 하천도서를 중심으로 -」, 『변태섭박사 화갑기념논총』.
 김경춘, 1987, 「조청국경문제의 일시점 - 범월을 중심으로 -」, 『경주사학』 6.
 김근수, 1985, 「백두산 및 간도문제 三官記」, 『한국학』 33,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김영광, 1984, 「민족사적 정통성과 백두산영유권 선언」, 『북한』 152.
 김용국, 1970, 「백두산고」, 『백산학보』 8.
 김우준, 2000, 「한·중 및 한·일간 외교분쟁 - 간도, 독도 및 동해문제 중심으로 -」, 『백산학보』 57.
 김지환, 2005, 「간도협약과 일본의 길회철도 부설」, 『중국사연구』 34, 중국사학회.
 김찬규, 1995, 「간도의 영유권」, 『한국북방학회논집』 1, 한국북방학회.
 김현영, 2004, 「조선 후기 조·청 변경의 인구나 국경인식」,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 문제』, 백산학회 · 국사편찬위원회 공동학술회의논문집.
 김혜자, 1982,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연구」, 『이대사원』 18 · 19합집.
 노계현, 1963, 「간도는 누구 땅이냐?」, 『최고회의보』 24 · 25 · 26, 국가재건최고회의.
 노계현, 1966, 「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논총』 11 - 1.
 노계현, 2002,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연세경제연구』 9 - 1, 연세대학교 경제

연구소.

- 노영돈, 1990, 「백두산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 노영돈, 2005,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한민족공동체』 13, 해외한민족연구소.
- 노영돈, 2005,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 노영돈, 2005,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의 고찰」, 『군사』 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노영돈, 2006, 「간도영유권과 중국과의 국경문제」,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박관섭, 1983, 「한민족의 고토 만주 및 실지 간도의 지리적 고찰」, 『건대문화』 12, 건국대학교.
- 박선영, 2003, 「근대시기 동아시아의 국경의식과 지도제작」, 『만주와 조선, 조선인』, 만주학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 안동대학교.
- 박선영, 2003, 「혈맹과 선린우호의 함수관계 사이에 남겨진 국경문제 : 간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8.
-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2, 중국사학회.
- 박선영, 2005, 「북한과 중국의 비밀국경조약의 실체」, 『경북사회동향』 2005-1.
- 박선영, 2005, 「비밀의 해부 : 조선과 중국의 국경조약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8, 중국사학회.
- 박선영, 2005, 「한중 국경획정의 과거와 현재 - 유조변, 간도협약, 북중비밀국경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 『북방사논총』 4, 고구려연구재단.
- 박용욱, 1985, 「백두산 정계비건립의 재검토와 간도영유권」, 『백산학보』 30·31.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변지관의 변화와 지역민 인식」, 『역사학보』 160.
- 백충현, 1984, 「백두산 천지 양분설의 국제법적 평가」, 『북한』 152.
- 손춘일, 2005,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간도학보』 2, 한국간도학회.
- 신기석, 1955, 「간도귀속문제」, 『중앙대학교 30주년 기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 신기석, 1955, 「간도귀속문제」, 『논문집』, 중앙대학교.
- 신기석, 1983,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건대문화』 12.
- 신영길, 1933, 「간도는 우리 땅이었다」, 『현정』 139.
- 신영철, 1984, 「백두산과 북한·중공의 엇갈린 이해관계」, 『북한』 152.
- 신주백, 2007,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일본문화연구』 21, 동아시아일본학회.
- 심현용, 2005, 「근대 조·러 국경획정과 영토, 이주민 문제 - 영토주권과 역사주권 중심으로

- 로], 『북방사론총』 6, 고구려연구재단.
- 양태진, 1979, 「북괴 · 중공 간의 영토분쟁 - 한 · 만강계의 역사적 고찰 -」, 『북한』 89.
- 양태진, 1981, 「백두산 천지를 위요한 한 · 중국경선」, 『한국학보』 22.
- 양태진, 1984, 「17세기 이후 한국 · 중국의 국경분쟁」, 『북한』 152.
- 양태진, 1984, 「민족지연으로 본 백두산영역 고찰」, 『백산학보』 28.
- 양태진, 1994, 「한국 영토문제의 현상과 대책」, 『한민족공동체』 2.
- 양태진, 1996, 「남북한의 한국영토문제 인식에 관한 고찰: 특히 북한 측의 국경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 양태진, 1996,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 『순국』 64, 순국선열유족회.
- 오상학, 2005,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대중국 인식의 변화」, 『북방사론총』 5.
- 유봉영, 1972,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백산학보』 13, 백산학회.
- 이규수, 2006,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담론』 201, 담론사.
- 이돈수, 2005,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난 북방영토」, 『한국민족공동체』 13, 해외한민족연구소.
- 이민효, 2005, 「국제법상 강박조약의 무효론에 비취본 간도협약의 효력과 간도영유권 논쟁」, 『해양전략』 126, 해군대학.
- 이상태, 1994, 「북방 국경선의 역사적 고찰」, 『한민족공동체』 2.
- 이석우, 2005, 「영토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언」, 『백산학보』 72, 백산학회.
- 이석우, 2005,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74.
-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 회상되는 우리 강역의 역사적 수난」, 『역사학보』 17 · 18, 역사학회.
-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1, 대한정치학회.
- 이성환, 2005, 「을사조약과 간도문제」,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 이성환, 2005, 「일본의 외교문서와 간도문제: 〈만주에 관한 일청협약 체결 1건〉을 중심으로」, 『간도학보』 2, 한국간도학회.
- 이일걸, 1986,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 한 · 만 국경을 중심으로 한 영역문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0, 대한국제법학회.
- 이일걸, 1992,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72.

- 이일걸, 1992, 「한·청변계선후장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7-1.
- 이일걸, 1994, 「동서간도 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체』 2, 해외한민족연구소.
- 이일걸, 1995, 「간도영유권과 중국조선족 문제」, 『국제정치논총』 35,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일걸, 1996,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정치외교사논총』 14.
- 이재돈, 2005, 「간도 영유권문제 고찰」, 『대륙전략』 3, 대륙전략연구소.
- 이재형, 1991, 「간도영토 귀속에 관한 연구」, 『군사평론』 296.
- 李 華, 2003, 「처의 증원 입관 전후 조선인 월경 문제를 둘러싼 조·청 교섭」, 『한국학보』 112.
- 이한기, 1969, 「간도귀속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연구보고서』 28, 문교부.
- 정해변, 1985, 「간도는 우리땅」, 『마당』 42.
- 조 광, 1974, 「조선 후기 변경의식」, 『백산학보』 16.
- 조 광, 1983, 「실학 및 개화기의 영토문제 연구」,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 조 광, 2001, 「압록강과 두만강은 왜 국경선이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7, 신서원.
- 조법중, 2007, 「한반도 유사시 '영토분쟁' 노린 동북공정 : 역사왜곡에 더해 정치·경제·문화적 영역 넓혀가는 국책사업으로」, 『자유공론』 42-3, 한국자유총연맹.
- 최장근, 1996, 「간도협약과 일본의 음모」, 『통일로』 99, 안보문제연구원.
- 최장근, 1998, 「일제의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 체결 주요인」, 『일본어문학』 5, 일본어문학회.
- 최장근, 2003, 「한중일 3국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 :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기(1905년 전후)」, 『일어일문학』 19.

(4) 민족 문제

- 고병철, 2005,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만주 이주와 민족운동 : 간도참변(1920)이전까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고승제, 1968, 「간도이민사의 사회경제적 분석」, 『백산학보』 5, 백산학회.
- 구대열, 1981, 「간도사변과 한인수난사」, 『정경문화』 201, 경향신문사.
- 권 립, 김성호, 2002, 「연변지역 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의 특수성 연구1: 연변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00, 국사편찬위원회.
- 권석봉, 1995, 「청말 간도지방의 월간한민책연구(상)」,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 연구』 23-1.
- 권석봉, 1995, 「청말 간도지방의 월간한민책연구(하)」,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

연구』23-2.

- 권혁수, 1993, 「1920~30년대의 동북지방 조선족 농민의 경제상황에 관하여」, 『명지사론』.
- 권희영, 1999, 「한민족의 노령이주사연구(1863~1917)」,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 김성호, 2002, 「연변지역 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의 특수성 연구2: 1930년대 '민생단 사건'의 일부 문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00, 국사편찬위원회.
- 김우준, 정갑영, 2006, 「조선족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인식 비교」, 『백산학보』 74, 백산학회.
- 김원석, 1992, 「중국 조선족의 천입사에 대한 연구」, 『동아연구』 25.
- 김주용, 1999, 「1920년대 만주에서의 한인청년운동 연구: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 김주용, 2000, 「독립운동상에서의 간도의 위상」, 『순국』 116, 순국선열유족회.
- 김주용, 2001, 「1910~1920년대 간도지역 한인의 경제투쟁: 일화배척운동과 청산리전투를 중심으로」, 『순국』 129, 순국선열유족회.
- 김주용, 2001, 「1910~1920년대 간도지역의 일화배척운동 연구」, 『동국사학』 35·36, 동국사학회.
- 김주용, 2001, 「1920년대 간도 지역 조선인 민회 금융 연구」, 『사학연구』 62.
- 김주용, 2004, 「일제시기 조선은행의 간도침투와 역할: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 김춘선, 1998, 「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토지소유권문제」, 『전주사학』 6, 전주대학교 역사문제연구소.
- 김춘선, 2002, 「간도지역이 왜 독립 운동 기지가 되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8, 서해문집.
- 남정휴, 2000,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 『산업연구』 12-1,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柳承宙, 1978, 「조선후기 서간도 이주민에 대한 일고찰-강북일기의 해제에 붙여」, 『亞細亞研究』 59, 아세아문제연구소.
- 박선영, 2003, 「2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민족주의 단면: 동아시아 간도연구의 時空 문제 이해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6.
- 박성수, 1983, 「간도와 독립운동」, 『건대문화』 12, 건국대학교.
- 박영석, 1995, 「일본 제국주의 하 재만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문제: 1931년 만주사변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 이문사.

- 박주신, 1998, 「滿洲事變以前 日帝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植民地主義 教育扶植 政策」, 『한국교육사학』 20,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 박주신, 1999, 「중국의 간도 한국인에 대한 교육정책과 한국인의 교육적 저항」, 『한국교육사학』 21, 한국교육사학회.
- 박주신, 2000, 「1910년대 간도지방 사립학교의 활동과 성격: 기독교 및 대종교 계통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9,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박주신, 2000, 「1910년대 ~ 20년대 간도 한인 교육기관의 실태와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 22-1, 한국교육사학회.
- 박창욱, 1996, 「19세기 ~ 20세기 초 <간도>와 중국조선족 문제에 대한 중한 양국 간의 쟁단」, 『동북아연구』 13,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 반병률, 2000, 「간도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외대사학』 12, 한국의국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방수옥, 1999,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연변조선족사회」, 『재외한인연구』 8, 재외한인학회.
- 서광일, 1994, 「일제하 서북간도지역 종교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11, 한신대학교 출판부.
- 孫承會, 2004, 「滿洲事變 前夜 滿洲韓人の 國籍問題와 中國 日本의 對應」, 『中國史研究』 31.
- 손춘일, 1997, 「청대 강북개척과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청계사학』 13.
- 신주백, 1993, 「1932 ~ 36년 시기 간도지역에서 전개된 '반(민생단)투쟁' 연구」, 『성대사립』 9, 성균관대학교사학회.
- 신주백, 2004, 「조선군과 재만조선인의 치안문제(1919 ~ 1931)」,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 申奎燮, 2004, 「'만주국'의 協和會와 재만 조선인」, 『만주연구』 1, 만주학회.
- 신규섭, 2004, 「1920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 양태진, 1996,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권회복운동」, 『순국』 71, 순국선열유족회.
- 유문선, 2004, 「일제강점기 간도 이주민의 삶과 이념의 몇 가지 방식: 안수길의 <북간도>」,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 유병호, 2005, 「북간도한인의 국적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교섭에 대한 연구: 통감부파출소 시기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21, 한국중앙사학회.
- 윤병석, 2001, 「조선인의 간도개척과 조선인 사회」, 『한국사시민강좌』 28, 일조각.
- 윤선자, 1996, 「간도 천주교회 설립과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간도 이주」, 『전남사학』 10, 전남사학회.
- 윤휘탁, 1991, 「1930년대 전후의 재만조선인 사회경제적 실태: 간도지방 농민을 중심으로」,

- 『순국』 16, 순국선열유족회.
- 이규태, 1998, 「한중관계에서 조선족 문제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12-1, 한국 세계지역연구협의회.
- 이동진, 2004,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 1.
- 이동진, 2005, 「1872년 ‘江北’의 조선인 사회: 『江北日記』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논총』 8,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환, 2006, 「시데하라(幣原)외교와 간도 5·30사건: 시데하라(幣原)의 간도구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8, 동아시아일본학회.
- 장덕삼, 2004, 「종교교육을 통한 간도한인사회의 민족교육 고찰」, 『교육연구』 23, 원광대학교 교교육문제연구소.
- 장세운, 2004,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 장춘식, 2004, 「간도체험과 강경애의 소설」, 『여성문화연구』 11, 한국여성문화학회.
- 田中隆一, 2004, 「日帝の「滿洲國」統治と在滿韓人問題 - 「五族協和」と「內鮮一體」の相剋 -」, 『만주연구』 1, 만주학회.
- 전해중, 1993, 「韓族의 만주(특히 간도) 이주에 대하여: 19세기 중기까지의 약사와 연구의 문제점」, 『동아연구』 26,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정운용, 1985, 「중국간도의 한인들」, 『북한』 157, 북한연구소.
- 조재복, 1999, 「한국민족의 만주(간도) 이민에 관한 연구」, 『논문집』 36, 목원대학교.
- 조정봉, 2007,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간도 이주와 야학운동」, 『한국교육』 34-1, 한국교육개발원.
- 채희균, 안상현, 2006, 「일제하 간도지역의 기독교계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철학』 30, 한국교육철학회.
- 최경숙, 2006, 「한인의 간도이주 연구(1890~1945)」, 『비교문화연구』 18,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홍종필, 1995, 「만주사변 이후 조선총독부가 간도지방에 건설한 조선인 집단부락에 대하여」, 『명지사론』 7, 명지사학회.
- 홍종필, 2000, 「간도지방 조선인이민의 교육에 대한 중·일 압박에 대하여」, 『실학사상연구』 15·16, 무악실학회.
- 홍종필, 2000, 「간도지방 조선인 이민의 교육에 대한 중·일의 압박에 대하여」, 『귀천 원유

한교수 정년기념논총, 서울: 혜안.

황민호, 1998,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 공산주의자들의 노선전환과 간도봉기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79, 국사편찬위원회.

(5) 자료 해제

김주용, 2004, 「高樂才, 『日本滿洲移民研究』(人民出版社, 2000) - '樂土'에 대한 이상과 현실」,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박선영, 2005, 「북한과 중국의 비밀 국경조약」, 『中國史研究』.

박선영, 2007, 「역사의 운명 - 간도협약 체결의 역사와 현장」, 『중국사연구』 49.

박선영, 2007, 「일본 방위성 사료실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관련 자료에 대하여」, 『중국 근현대사연구』 33, 한국중국근대사학회.

양태진, 1983, 「한국영토관계문헌목록」, 『영토문제연구』 1.

외무부 편, 1972, 「간도: 서북변경 귀속문제관계 사료발췌」, 『백산학보』 12, 백산학회.

외무부 편, 1972, 「간도: 서북변경 귀속문제관계 사료발췌」, 『백산학보』 13, 백산학회.

외무부 편, 1973, 「간도: 서북변경 귀속문제관계 사료발췌」, 『백산학보』 14, 백산학회.

외무부 편, 1973, 「간도: 서북변경 귀속문제관계 사료발췌」, 『백산학보』 15, 백산학회.

정구복, 1994, 「강북일기 해제」, 『한국학자료총서』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강현, 1977, 「강북일기 해제」, 『국학자료』 26,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한국학연구소, 1985, 「백두산 및 간도문제 자료」, 『한국학』 33,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90, 「임시정부 국무원 포고 제3호 간도 동포에게」, 『한국학보』 16-4, 일지사.

2) 저서

(1) 연구동향

한철호 외 저, 2003,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동향』, 고구려연구재단.

(2) 간도문제 일반

강창석, 1995, 『조선통감부연구』, 국학자료원.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김명기 편, 1999,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1. 2』, 아르케.
- 모리야마 시게노리 저, 김세민 역, 1994, 『근대한일관계사연구: 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 현음사.
- 박선영, 2007, 『간도, 왜 논란인가』, 아시아학회.
- 백산학회 편, 1995, 『조선시대 북방관계사 논고』, 백산자료원.
- 白山學會 編, 2000, 『大陸關係史 論攷』, 白山資料院.
- 우영란, 2004, 『중한 변계무역사 연구: 1910~1945년 '간도' 변계무역을 중심으로』, 신성출판사.
- 윤명수, 2006, 『간도의 비밀』, 완안출판사.
- 윤병석,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이윤기, 2005,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화산문화.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임계순, 2002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 최소자, 1997,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3) 국경문제
- 강기석,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의식』, 경세원.
- 김득황, 1987, 『백두산과 북방강계: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 사사연.
- 김득황, 2005, 『만주의 역사와 간도문제』, 남강기획출판부.
- 노계현, 1997, 『조선의 영토: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한국방송대학교 편집부.
- 노계현, 2006, 『간도 영유권분쟁사』, 한국연구원.
- 노영돈 외, 2004, 『한국사론 41: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국사편찬위원회.
-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白山學會 編, 2000, 『間島領有權 問題 論攷』, 白山學會.
- 백산학회, 1998,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 백산학회, 2000, 『간도영유권문제 논고』, 백산자료원.
- 백산학회, 2006, 『간도영토에 관한 연구』, 백산자료원.
- 백산학회, 2006, 『한중 영토의 관한 논고: 간도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 북방문제연구소, 2005, 『한민족의 북방영역 : 오늘과 내일』, 북방문제연구소.
- 신기석,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 양태진, 1981,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판공사.
- 양태진, 1990, 『한국변경사연구』, 법경출판사.
- 양태진, 1991 『한국영토사연구』, 법경출판사.
- 양태진, 1992, 『한국국경사연구』, 법경출판사.
- 양태진, 1996, 『인물로 본 한국영토사』, 다물.
- 양태진, 1999, 『근세한국경역논고』, 경인문화사.
- 유봉영, 2000,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백산자료원.
- 유정갑, 1991, 『북방영토론』, 법경출판사.
- 유철중, 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 육낙현 편, 1994, 『한민족의 간도강계』, 백산문화.
- 육낙현 편, 2000,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백산자료원.
- 이성환, 2005,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출판사.
-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채정 외, 2005,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 한 · 중 · 러 · 일 영토문제 현장』, 동아일보사.
- 최장근, 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 일본의 영토정책사적 고찰』, 백산자료원.
- 최장근, 2005, 『간도 영토의 운명 :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틈새에서』, 백산자료원.
- 해외한민족연구소 · 백산학회, 1997, 『한민족의 북방영토의식과 간도영유권문제』, 해외한민족연구소.

(4) 민족문제

-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 박영석, 1988, 『재만 한인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백산학회, 1996, 『한민족의 대륙관계사』, 백산학회.
- 연변조선족략사 편찬조, 1989, 『조선족략사』, 논장.
- 이상협, 2001, 『조선전기 북방사민연구』, 경인문화사.
- 이선호, 2005, 『세월 속의 서북간도와 조선인, 나의 생활』, 이지북스.
- 정신철, 2000,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한상복, 권태환, 1994, 『중국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상표, 1966, 『간도 독립운동소사』, 한광고등학교.

(5) 자료해제

박종효 편, 2002,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이상태 외,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답사기』, 해안.
이 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이해승, 1988, 『잊어버린 해란강 :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진명출판사.

3) 역사, 번역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문제 일반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1, 『간도에 관한 역사지리자료1』, 외교안보연구원 ; 李澍田,
1987, 『長白叢書 : 長白匯徵錄, 長白山江崗志略』, 吉林文史出版社.

(3) 국경문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0, 『간도의 영유권문제 : 중국의 입장』, 외교안보연구원 ; 李澍
田, 1986, 『光緒丁未延吉邊務報延吉廳領土問題之解決』, 吉林文史出版社.
신영길 역,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 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林.

(4) 민족문제(없음)

(5) 자료해제

심현용 편역, 2004, 『한·러 군사관계 사료집 I, 러일전쟁과 한반도』,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최종범 원저 · 최강현 역주, 2004, 『간도개척 비사 : 강북일기』, 신성출판사.

4) 자료집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문제 일반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8권(間島案),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3) 국경문제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조청국경희담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2004, 『간도·연해주 관계』 1·2, 국사편찬위원회.

國會圖書館, 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 제1집.

양태진, 1979, 『한국 국경영토관계 문헌집』, 갑자문화사.

오세창·김정주 편, 1968, 『간도문제(Ⅰ)』, 한국사료연구소.

한국침략사료집, 1990, 『간도관계1, 2』, 고려서림북각판.

2004, 『간도사건관계서류철』(Ⅱ), 국가보훈처.

(4) 민족문제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중국동북지역편(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중국동북지역편(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1: 중국동북지역편(3)』, 국사편찬위원회.

한준광, 『조선족이주사자료회집』.

(5) 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4, 『江北日記, 江左輿地記, 俄國輿地圖』(한국학자료총서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학위논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문제 일반

강창석, 1990, 「통감부연구」, 영남대학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손춘일, 1998, 「일제의 재만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섭, 1997, 「간도문제와 국제관계」,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3) 국경문제

강석화, 1996,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춘, 1997,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호, 2001, 「국제법상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계현, 1958, 「동간도 귀속문제를 논함」,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동기, 1999,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시우, 1992, 「백두산 지역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정천, 1995,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석사학위논문.

손규성, 1968, 「간도귀속 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일문, 1974,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 : 소련의 유럽지역 국경수정(1939~1950)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금희, 1998,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문식, 1994, 「간도의 영토문제에 관한 일연구 : 서간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월, 2005, 「18세기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영유권 문제」,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부식, 1969, 「한청국경분쟁의 일고찰 : 간도귀속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진, 1999, 「간도의 영유권에 관한 사적, 법적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일걸, 1990,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한중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일청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자, 2003, 「17~18세기 월경문제를 둘러싼 조·청교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명준, 2005, 「간도 영유권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민족문제

고병철, 2005, 「일제하 재만한인의 종교운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1989, 「1910년대 간도한인 민족교육의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배, 1994, 「일제의 간도지역 한인교회 탄압에 관한 연구: 간장암 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용, 2001, 「일본의 대 간도 금융침략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연구: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춘선, 1998,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의 형성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숙, 1991, 「1930년 간도 5·30봉기」에 대한 일연구: 재만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방향전환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정준, 1977, 「재만한국유이민연구: 1860~1945」,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수봉, 1994, 「중국의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 연변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 환, 1990, 「서북간도지역 한인 독립운동 단체 연구: 3·1 운동직후(1919~1920)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금해, 1996, 「북간도민족교육에 관한 일연구: 1905~1920년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신, 1998, 「간도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1910년~1920년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주현, 2003,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세걸, 1980, 「간도에서의 한국독립시위운동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오세창, 1989, 「재한만인의 항일독립운동사 연구: 1910~1920년의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 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철, 1987, 「만주지방 한인민족운동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192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호, 2001, 「재만 한인의 국적문제 연구(1881~1911)」,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구, 1986, 「1930년 전후 만주지역의 민족운동과정에서 전개된 한인 아나키스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북만의 한족 총연합회와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훈, 1985,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의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재, 2000, 「중국 천주교회와 조선천주교회의 연계활동에 관한 연구: 19~20세기 만주 지역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찬, 1988,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이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영서, 1993, 「1910~1920년대 간도한인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민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윤, 1988, 「1930년대 중국 연변(간도) 5·30봉기의 성격」, 성균관대학교 동양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일권, 1994, 「구한말 간도지방 주민에 관한 일연구: 1902년도 변계호적의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경화, 1988, 「일제하 재만한국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1906~1920년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만봉, 1997, 「안수길의 「북간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섭, 1997, 「간도문제와 국제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민호, 1997, 「1920년대 재만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5) 자료해제(없음)

2. 중국

1) 논문

(1) 연구동향

- 建文, 1996, 「論明代對東疆地區的管轄問題: 兼就“北間島”研究駁韓國學者」, 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
- 金相國, 1996, 「中國朝鮮族遷入史研究現況之己見」, 『中國朝鮮族史研究』 1996-3.
- 金春善, 2003, 「中國朝鮮族歷史研究的回顧與展望」, 『北方民族』, 吉林省民族研究所.
- 孫進己, 1985, 「東北民族史研究的回顧與展望」, 『東北地域史研究』 1985-1, 遼寧社會科學院.
- 楊立新, 1996, 「中朝界務論著概述」, 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
- 任熙俊, 1997, 「近代 長白山 및 豆滿江 東部邊境線에 대하여」, 『회고와 전망』, 遼寧省民族出版社.
- 刁書仁, 2001, 「東北邊疆歷史研究的回顧與展望」, 『中國邊疆史地研究』 2001-4.

(2) 간도 문제 일반

- 陶勉, 1999, 「清代鴨綠江右岸荒地開墾經過」, 『中國邊疆史地研究』 1999-1.
- 都首鋒·孔豔春, 1999, 「試析日俄戰後日本對我國延吉地區的侵略」,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9-6.
- 董萬齡, 1980, 「光緒初年吉林東部邊疆的開發」, 『北方論叢』 1980-1.
- 童元秀, 2004, 「試論近代移民對鞏固中國邊疆的作用」, 『黃岡職業技術學院學報』 2004-2.
- 李慧娟·薛朝廣, 2004, 「論總務廳在日本帝國主義對東北實施殖民文化統治中的作用」, 『黑龍江省社會主義學院學報』 2004-4.
- 林世慧, 1987, 「近代東北危機與清末的移民實邊思想」, 『黑河學刊』 1987-2·3.
- 馬東玉·邸富生, 1987, 「論中日東三省五案交涉」, 『北方文物』, 1987-3.
- 張玉芝, 1996, 「間島日本總領事館對延邊的侵略」,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4.
- 鄭玉善, 2000, 「歷史上我國東北與朝鮮半島關係」, 『大連民族學院學報』 2000-2.
- 趙越智, 1988, 「宋 晁仁與“間島問題”」, 『求是學刊』 1988-3.

(3) 국경문제

- 董東平·趙玉潔, 2001, 「“間島”事件始末」, 『縱橫』2001-2.
- 董東平, 2003, 「“間島”事件的來龍去脈」, 『文史精華』2003-5.
- 薑維公·李鳳蓮, 2003, 「關於處理歷史時期中朝邊界問題的幾點建議」, 『長春師範學院學報』2003-1.
- 薑龍範, 1997, 「清代中朝兩國邊界問題的理論思考」, 『延邊大學學報』1997-3.
- 薑龍範, 1998, 「關於清季中朝邊界交涉的研究」, 『延邊大學學報』1998-1.
- 高永一, 1981, 「“間島問題”的始末」, 『延邊大學學報』1981-4.
- 高永一, 1984, 「清代延邊和間島問題」, 『朝鮮族及延邊史志資料』, 延邊大學古籍研究所.
- 龔麗琴, 1999, 「從“延吉籌邊”看吳祿貞的外交思想」, 『長沙大學學報』1999-3.
- 關俊鵬, 1993, 「略論“間島”問題」, 『遼寧師範大學學報』1993-3.
- 陶 勉, 1996, 「清代封禁長白山與派員踏查長白山」, 『中國邊疆史地研究』1996-3.
- 徐德源, 1996, 「長白山東南地區石堆、土堆築設的真相」, 『中國邊疆史地研究』1996-2; 1998,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徐德源, 1997, 「穆克登碑的性質及其鑿立地點與位移述考: 近世中朝邊界爭議的焦點」, 『中國邊疆史地研究』1997-1.
- 徐德源, 1998, 「土門, 豆滿為兩江妄說駁考」, 『中國邊疆史地研究』1998-3; 1998,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孫玉海, 1998, 「中日關於“間島案”之交涉」, 『中國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孫春日, 2002, 「間島協條締結的始末」, 『交流與思考』.
- 孫春日, 2002, 「中朝日關於間島問題的紛爭」, 『中國邊疆史地研究』2002-4.
- 孫春日, 2002, 「清末中朝日“間島問題”交涉之原委」, 『中國邊疆史地研究』2002-4.
- 梁昭全, 1991, 「清代穆克登查邊及中朝兩次勘界」, 『社會科學戰線』1991-3.
- 梁昭全, 1998, 「關於清代穆克登查邊」, 『中朝邊界研究論集』.
- 嚴亞明, 1999, 「間島交涉與民國外交興起」, 『中國近代史』6(中國人民大學復印報刊資料).
- 嚴亞明, 2000, 「“間島”交涉與 日 政府外交形象的轉變」, 『社會科學』2000-8.
- 嚴亞明, 2000, 「清末中日“間島”交涉述論」, 『大慶高等專科學校學報』2000-1.
- 嚴亞明, 2004, 「“間島”交涉與 日 末日本對華擴張」, 『利州師範學院學報』2004-3.
- 嚴志梁, 1997, 「關於“間島”問題」, 『歷史教學』1997-5.
- 吳忠亞, 1984, 「吳祿貞與所謂“間島”問題」, 『社會科學戰線』1984-4; 1998, 『教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王崇時, 1996, 「中朝以圖們江爲東段邊界的歷史回顧: 駁日帝蓄意制造的“間島”謬說」, 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
- 王崇時, 1998, 「19世紀前中期東段邊界的變遷」,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王藝生, 1980, 「所謂間島問題」, 『60年來中國與日本』5卷, 三聯書店。
- 饒嵩喬, 1998, 「吳祿貞—保衛我國領土延吉的“蓋世之傑”」, 『東疆學刊』1998—1。
- 衣保中, 2005, 「“間島問題”的歷史淵源及中日交涉的歷史經驗」, 『史學月刊』2005—7。
- 任熙俊, 1995, 「長白山“定界碑”始末: 兼考圖們江邊界問題」, 『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 1996,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
- 張偉, 2005, 「吳祿貞與中日“間島”交涉」, 『遼寧大學學報』2005—2, 哲學社會科學版。
- 張存武, 1998, 「穆克登所定的中韓國界」,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張存武, 1998, 「清代中韓邊界問題探源」,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張存武, 1998, 「清韓陸防政策及其實施: 清季中韓界務糾紛的再解釋」,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鄭毅, 1998, 「略論“間島問題”」,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刁書仁, 2001, 「中朝邊界沿革史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2001—4。
- 趙興元, 2001, 「徐世昌與延吉邊務報告」, 『中國邊疆史地研究』2001—3。
- 陳朝陽, 1998, 「中漢延吉界務之交涉(1882~1909)」, 『中朝邊界研究文集研』, 吉林省社會科學院。
- 刑煥林, 1983, 「淺論辛亥革命時期吳祿貞的活動性質」,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研』1983—1。
- 黃惠琴, 1998, 「中韓“間島問題”之探討」, 『中朝邊界研究文集研』, 吉林省社會科學院。
- (4) 민족문제
- 董孟山·金淑子, 2001, 「中國朝鮮族的特征和優勢」, 『東疆學刊研』2001—4。
- 董龍範, 1997, 「清代東北的封禁政策與朝鮮流民」, 『朝鮮學韓國學研究論叢』5, 延邊大學朝鮮問題研究所。
- 董龍範, 1999, 「日本對間島朝鮮人的“保護”政策—以統監府間島派出所時期爲中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9—2。
- 董龍範, 2000, 「略論延邊地區朝鮮族早期社會團體」, 『中國邊疆史地研究』2000—2。
- 董龍範, 2000, 「清政府移民實邊政策與中國朝鮮族的形成」, 『社會科學戰線』2。

- 薑龍範·吳成鎬, 2001, 「中, 日圍繞, '間島朝鮮人' 領事裁判權問題的矛盾對立」, 延邊大學中期韓日文化比較研究中心, 『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2, 延邊大學出版社.
- 薑龍範·蔡熙龍, 1999, 「中日〈間島協約〉的簽訂及其對朝鮮人的影響」, 延邊大學出版社, 『史學論叢』, 延邊大學歷史系.
- 薑龍範·崔永哲, 1999, 「'日韓合併' 與間島朝鮮人的國籍問題－兼論中日兩國在朝鮮人國籍問題上的政策紛爭」, 『東疆學刊』1999－4.
- 權立, 1989, 「試論中國朝鮮族在歷史上的法律地位問題」, 『朝鮮族研究論叢』1989－2.
- 權立, 1990, 「中國朝鮮族在歷史上的法律地位」, 『朝鮮學研究』1990－2.
- 權立·李洪錫, 2001, 「試論中國朝鮮族在歷史上的社會地位問題」, 『中國朝鮮族史研究』2001－4.
- 權寧朝, 1991, 「朝鮮族遷入黑龍江歷史真實」, 『民族團結』1991－1.
- 權寧朝, 1995, 「朝鮮族的遷入與黑龍江近代水田開發」, 『北方民族』1995－3.
- 權寧朝, 1996, 「東北解放戰爭中的朝鮮族」, 『黑龍江民族叢刊』1996－1.
- 權赫秀·董文武, 2002, 「朝鮮族最早遷入長春地區之時間考」, 『北方民族』2002－4.
- 金景一, 1994, 「文化視野上的中國朝鮮族遷入史特徵」, 『韓國學研究』1994－2.
- 金城鎮, 1989, 「淺談中國朝鮮族遷入和形成」, 『中國朝鮮族遷入史論文集』,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金成鎬, 1991, 「關於延邊朝鮮族移居歷史的調查研究」, 『民族團結』1991－4.
- 金炳鎬·泰成, 1993, 「中國朝鮮族人口流動與社會問題」, 『黑龍江民族叢刊』1993－3.
- 金澤中, 2001, 「清末移住東北的朝鮮族」, 『文史雜誌』2001－5.
- 金鍾國, 1999, 「對中國朝鮮族的反思及展望」,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9－3.
- 金春善, 1991, 「試論日本帝國主義對朝鮮族的“統制與利用”政策」, 『朝鮮族研究論叢』3, 延邊大學民族研究所.
- 金春善, 2001, 「延邊朝鮮族的百年歷程」, 『當代延邊朝鮮族社會發展對策分析』, 遼寧民族出版社.
- 金春善, 2001, 「19世紀末清朝的移民實邊政策與延邊朝鮮族專墾區的形成」, 東方文化研究院, 『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2, 延邊大學出版社.
- 馬平安, 1997, 「近代朝鮮族移民我國東北線索梳理」,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1997－1.
- 樸吉春, 1991, 「從“東三省政略”看清末朝鮮族移民的法律地位」, 『朝鮮族研究論叢』3, 延邊大學民族研究所.
- 樸昌昱, 1995, 「試論日本帝國主義在東北植民統治時機對朝鮮族農民所實行的“自耕農創定”

- 計劃,『中國朝鮮族歷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
- 樸昌昱,1987,「試論朝鮮族的遷入及其歷史上限問題」,『朝鮮族研究論叢』1,延邊大學出版社。
- 樸昌昱,1995,「朝鮮族遷入我國史程芻議」,『中國朝鮮族歷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
- 樸昌昱,2001,「日本帝國主義對在朝鮮人國籍問題的統制政策」,『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2001-2。
- 方民鎬,1991,「明清歷史變遷中的朝鮮族和它的歷史」,『朝鮮族研究論叢』3,延邊大學民族研究所。
- 徐明勳,1985,「朝鮮族遷移東北過程初探」,『黑龍江民族叢刊』1985-3。
- 孫春日,1992,「論“九·一八”事變前朝鮮族民族教育發展的特點」,『民族研究』1992-5。
- 孫春日,2000,「民國時期東北朝鮮族“雙重國籍”問題的始末」,『東疆學刊』2000-3。
- 孫春日,2000,「“九·一八”事變後日帝對中朝日三民族移民政策之比較」,『東疆學刊』2000-4。
- 孫春日,2001,「清季東疆的經營與朝鮮邊民的冒禁遷入」,『韓國學論文集』9,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 孫春日,2001,「論偽滿時期日本對無籍朝鮮人的救濟措施」,『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1-4。
- 孫春日,2002,「論清政府對犯禁朝鮮墾民的土地政策」,『滿族研究』2002-3。
- 孫春日,2003,「論日偽對朝鮮族學校的整編」,『延邊大學學報』2003-4期,社會科學版。
- 孫春日·樸興鎮,2000,「民國時期東北朝鮮族“雙重國籍”問題的始末」,『東疆學刊』2000-4。
- 孫春日·樸興鎮,2000,「清代越界朝鮮人編入華籍之爭與中國國籍法的制定」,『延邊大學學報』2000-2。
- 孫春日·樸興鎮,2001,「論偽滿滿洲國“國籍法”的難產與在滿朝鮮人的國籍問題」,『東疆學刊』2001-2。
- 안화춘,1989,「略述東北朝鮮族的遷入」,『中國朝鮮族民族遷入史論文集』,黑龍江朝鮮族民族出版社,1989。
- 於逢春,2005,「清末民初中日兩國的朝鮮族教育政策之一側面—以“間島”墾民教育會的教育活動為中心」,『中國邊疆史地研究』2005-4。
- 於海君,1998,「中華民族革命與中國朝鮮族愛國主義精神」,『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8-2。
- 王天姿,2004,「中國朝鮮族民族、國民意識形成初探」,『黑龍江民族叢刊』2004-5。
- 劉秉虎,1992,「朝鮮族遷入史概論」,『中國朝鮮族移民實錄』,延邊人民出版社。
- 劉子敏,2001,「十九世紀朝鮮族移民中國史研究」,『朝鮮族研究論叢』2001-5。

- 衣保中, 2005, 「論 8 政府對延邊朝鮮族移民政策的演變」, 『東北亞論壇』2005 - 6.
- 李光仁, 1989, 「鴨綠江流域朝鮮族遷入狀況」, 『中國朝鮮民族遷入史論文集』,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李 峰, 1986, 「延邊略史」, 延邊歷史研究所編, 『延邊歷史研究』1, 吉林省內部出版資料.
- 李洪錫, 2001, 「論甲午以前清政府對延邊地區“越墾韓民”的安撫政策」, 延邊大學中朝韓日文比較研究中心, 『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2, 延邊大學出版社.
- 李洪錫, 2002, 「試論19世紀60~70年代東疆地區封禁政策的危機」, 『延邊大學學報』3.
- 林世慧, 1987, 「近代東北危機與清末的移民實邊思想」, 『黑河學刊』2 - 3.
- 張 傑, 1994, 「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1994 - 4; 1998,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 張文豪, 2001, 「試論東洋拓植株式會社在延邊地區的土地掠奪和對朝鮮族人民的經濟統治」, 『中國朝鮮族史研究』2001 - 4.
- 趙 剛, 2001, 「解放前東北朝鮮族國籍問題探究」, 『朝鮮族研究論叢』, 2001 - 1.
- 趙興元·都首峰, 2001, 「嚴禁 - 驅逐 - 接納 - 清廷對越境朝民的政策演變」, 『北方民族』2, 吉林省民族研究所.
- 車相助, 1989, 「朝鮮族遷入安圖縣初考」, 『朝鮮族研究論叢』1989 - 2.
- 車成弼, 1986, 「關於清末延邊越墾四堡三十九社的位置」, 『延邊歷史研究』1986 - 1.
- 車成弼, 1993, 「清末和龍 嶺通商局卡始末初探」, 『中國朝鮮族史研究』1993 - 1.
- 車成弼, 1994, 「茂山人早期遷入東北之透視」, 『中國朝鮮族史研究』2, 延邊大學出版社.
- 車哲九, 1994, 「東北亞地區朝鮮族遷移, 分布及其特點」, 『中國朝鮮族研究』1994 - 2.
- 千壽山, 1993, 「論清朝時期朝鮮族的遷入」, 『中國朝鮮族史研究』1, 延邊大學出版社.
- 千壽山, 1999, 「論朝鮮王朝時期邊禁政策和流民犯越」, 『北方民族』4.
- 千壽山, 2001, 「朝鮮王朝時期中朝兩國的邊禁問題」, 『中國朝鮮族史研究』4, 延邊歷史研究所編, 延邊大學出版社.
- 千壽山·洪景蓮, 1995, 「‘九·一八’事變前東北三省朝鮮人的入籍情況」, 『朝鮮族研究論叢』1995 - 4.
- 肖建傑, 1999, 「“九·一八”事變後日本對東北的移民侵略」, 『沈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999 - 5期.
- 崔秀漢, 1990, 「中國東北朝鮮族開拓民的早期歷史初探 - 海州崔氏的移民史」, 『朝鮮學研究』1990 - 3.
- 崔賢彬, 1986, 「延邊地區水田開發歷史初探」, 『延邊史地』1986 - 1.

何溥澐, 1998, 「改革開放初期遼寧朝鮮族的社會變革與進步」,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8-1.

韓俊光, 1989, 「中國朝鮮族遷入史研究提綱」, 『中國朝鮮民族遷入史論文集』,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黃今福, 1986, 「淺談近代延邊地區的水田開發」, 『延邊歷史研究』1986-1.

黃龍國, 2006, 「朝鮮義勇軍的活動與中國朝鮮族歷史的聯系」, 『東疆學刊』2006-2.

黃有福, 1993, 「중국 조선족이민사의 연구」, 『조선학』, 중앙민족학원 조선학연구소.

(5) 자료해제

梁小進, 1996, 「宋教仁《間島問題》略論」, 『常德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996-2.

馬文義, 1961, 「宋教仁與間島問題」,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辛亥革命回憶錄』6, 文史資料出版社.

樸慶輝, 1993, 「吳祿貞與《光緒丁未延吉邊務報告》」, 『東疆學刊』1993-1.

孫健, 1994, 「宋教仁與《間島問題》」, 『鴨綠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1994-3.

馬大正, 2000, 「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的新進展—讀董龍範著《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政策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2000-4.

2) 저서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常城, 1987, 『東北近現代史綱』, 東北師範大學出版社.

常城, 1995, 『世界列國與東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徐萬民, 1996, 『中韓關係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楊昭全, 1988, 『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楊揚 主編, 1991, 『中國的東北社會』, 遼寧人民出版社.

張博泉, 1988, 『東北歷代疆域史』, 吉林人民出版社.

陳本善 主編, 1989, 『日本侵略中國東北史』, 吉林大學出版社.

(3) 국경문제

馬大正·劉蔣, 1998,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楊昭全·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李澍田, 1986, 『光緒丁未延吉邊務報延吉廳領土問題之解決』, 吉林文史出版社.

(4) 민족문제

董龍範, 2000, 『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高樂才, 2000, 『日本滿洲移民研究』, 人民出版社.

高永一, 1986,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延邊教育出版社.

金春善, 2001,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吉林人民出版社.

孫運來·沙允中 主編, 1994, 『吉林省邊疆民族地區穩定和發展的主要問題與對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孫進己, 1989,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孫春日, 2001, 『解放前東北朝鮮族土地關係史研究』上·下, 吉林人民出版社.

沈惠淑, 1992, 『中國朝鮮族聚落地名과 人口分布』, 延邊大學出版社.

劉忠傑, 1993, 『白頭山與延邊朝鮮族: 地理學的研究』, 白山出版社.

李德濱·石方, 1987, 『黑龍江移民概要』, 黑龍江人民出版社.

楊昭全, 1997, 『中國境內韓國反日獨立運動史: 1910~1945』1·2, 吉林社會科學院.

朝鮮族簡史編寫組, 1986, 『朝鮮族簡史』, 延邊人民出版社.

崔聖春, 1997, 『延邊人民抗日鬪爭史』, 延邊人民出版社.

(5) 자료 해제

李述笑, 1986, 『哈爾濱歷史編年』, 哈爾濱市人民政府地方志編纂辦公室出版.

李鴻文, 1987, 『東北大事記』, 吉林文史出版社.

3) 역서(이하 없음)

4) 자료집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吉林省檔案館,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合編, 2006, 『吉林省檔案館藏 清代中朝關係史料選輯』, 吉林人民出版社.

王季平 主編, 1989, 『吉林省編年紀事, 1653 ~ 1949(上)』, 吉林人民出版社.

楊昭全, 1997, 『朝鮮現代史料選輯』, 商務印書館.

1984,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地方誌)』, (中國少數民族自治地方概況叢書), 延邊人民出版社.

(3) 국경문제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 編, 1974, 『中朝, 中蘇, 中蒙有關係約, 協定, 議定書滙編』,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楊昭全, 1993,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 吉林文史出版社.

楊昭全 · 孫玉梅, 1994,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匯集』, 吉林文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 編, 2004,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朝卷』, 世界知識出版社.

(4) 민족문제

高永一, 1989, 『朝鮮族歷史研究參考資料滙編』, 延邊大學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治案館 編, 1990, 『延邊大事記』, 延邊大學出版社.

楊昭全, 1987,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滙編』上·下, 遼寧民族出版社.

金成文 · 梁玉今, 2004, 『黨的民族政策與延邊發展五十年』,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5) 자료해제

李澍田, 1987, 『長白叢書: 長白匯徵錄, 長白山江崗志略』, 吉林文史出版社.

5) 학위논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薑龍範, 1999, 「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研究」, 博士學位論文.

馬平安, 1997, 「近代東北移民問題研究」, 北京師範大學 中國近現代史 博士學位論文.

楊光, 2005, 「論滿州國朝, 日外來民族與“國籍法”的難產」,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金金花, 2005, 「日帝對東北朝鮮族推行的“皇民化”與征兵制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遲豔玲, 2004, 「論解放戰爭時期共產黨對東北朝鮮族實行的土地政策」,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高承龍, 2002, 「滿協和會在間島地區活動狀況之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3) 국경문제

陳慧, 2006, 「中朝圖們江邊界史研究－以穆克登碑問題中心－」,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4) 민족문제

樸宣泠, 1997, 「東北抗日義勇軍之研究」, 南京大學 中國近現代史 博士學位論文.

方民鎬, 1990, 「明清時期朝鮮族歷史研究的幾個問題」, 延邊大學民族研究所編, 『民族史碩士論文集』1, 延邊人民出版社.

孫春日, 1991, 「試論延邊朝鮮族聚居區的形成」, 延邊大學民族研究所編, 『民族史碩士論文集』1, 延邊人民出版社.

奧本廣明, 2003, 「滿時期在東北的朝鮮移民的社會地位及生活狀況」,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劉秉虎, 1991, 「論日本帝國主義向東北的朝鮮人移民政策及其影響」, 『民族史碩士論文集』1, 延邊大學民族研究所.

3_ 대만

1) 논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없음)

(3) 국경문제

張存武, 1971,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近代史研究所集刊』 2, 中央研究院.

張存武, 1972, 「清韓陸防政策及其實施: 清季中韓界務糾紛的再解釋」, 『近代史研究所集刊』 3-下, 中央研究院.

黃惠琴, 1992, 「中韓“間島問題”之探討」, 『韓國學報』 11.

(4) 민족문제

趙中孚, 1972, 「移民與東三省北部的農業開發(1920~30)」, 『近代史研究所集刊』 3-上, 中央研究院.

趙中孚, 1974, 「近代東三省移民問題之研究」, 『近代史研究所集刊』 4-下, 中央研究院.

趙中孚, 1978, 「近代東三省鬻匪問題之探討」, 『近代史研究所集刊』 7, 中央研究院.

胡春惠, 1991, 「延邊的朝鮮墾民及其對日後中韓兩國的景響」, 『韓國學報』 10.

(5) 자료해제(없음)

2) 자료집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張存武, 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商務印書館.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80, 『清季中日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 국경문제(이하 없음)

4. 일본

1) 논문

(1) 연구동향관련

谷川雄一郎, 2001, 「『**檢州事**』以前の**間島朝鮮人管轄**をめぐる若干の再**討**」, 『**東**研究月報』55-4(通
 414 방 638.

(2) 간도 문제 일반

姜龍範, 2007, 「**檢州事**以前の**間島朝鮮人管轄**をめぐる中日間の紛**争**」(特集『**間島資料**』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林正和, 1960, 「間島問題に關する日清交渉の経緯」, 『駿台史學』 通巻 10.
- 文純實, 2002, 「白頭山定界碑と十八世紀朝鮮の疆域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 西重信, 2001, 「豆檢江(豆們江)地域開發における“NET(Natural Economic Territory)”論の意義」, 『環日本海研究』 7.
- 神岡輝夫, 黒屋 敬子, 1991, 「間島領有をめぐる日露の角逐」, 『大分大教育研究紀要』 13-2.
- 神岡輝夫, 黒屋 敬子, 1992, 「初期間島問題における日露間の紛争事件」, 『大分大教育研究紀要』 14-1.
- 神岡輝夫, 黒屋 敬子, 1992, 「吳祿貞と間島問題」, 『大分大教育研究紀要』 14-1.
- 崔長根, 1996, 「韓帝統監伊藤博文の間島領土政策(1)統監府派出所の設置決定の経緯」, 『法新報』 102-7・8.
- 崔長根, 1996, 「韓帝統監伊藤博文の間島領土政策(二・完) - 統監府派出所の設置決定の経緯」, 『法新報』 102-9.
- 崔長根, 1998, 「日本の檢韓政策における間島協約の一考察」, 『中央大社説科研究年報』 通巻 3.
- 秋月望, 1989, 「中朝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 『朝鮮學報』 132.
- 秋月望, 1991, 「朝露國境の成立と朝鮮の對應」, 『國際學研究』 8.
- 秋月望, 2002, 「朝清境界問題における朝鮮の「領域觀」- 「勘界會議」後から日露戰爭期まで-」,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 下條正男, 2005, 「間島問題考」, 『海外事情』 53(10).

(4) 간도 지역 민족문제

- Jin Ting Shi, 2004, 「民衆期の學校カリキュラムに見られる間島朝鮮族の日本語教育」, 『東アジアと日本』 1.
- Jin Tingshi, 2005, 「間島において中露側が設立した語學學校」, 『比較社説文化研究』 18.
- Jin Tingshi, 2005, 「間島における日本人個人による永新學校について」, 『地域文化研究』 3.
- Jin Tingshi, 2005, 「曹洞宗刹大本山間島別院星華女學校について」, 『比較文化研究』 71.
- Jin Tingshi, 2006, 「間島における日本側が設立した補助學校について」, 『比較社説文化研究』 19.
- 角田玲子, 1968, 「抗日武裝をめぐり諸問題 - 1930年前半の間島」, 『朝鮮研究』 通巻 79.
- 槻木瑞生, 1975, 「日本植民地における教育 - 「檢州」および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 『名

- 古屋大學 教育學部紀要』教育學科 (通방 21).
- 槻木瑞生, 1998, 「檢洲 における 校 系の展開 - 間島省の「新制」, 『同朋大 論叢』 通방 77.
- 槻木瑞生, 1999, 「中 間島における朝鮮族 校の展開 - 1910年代から1920年代初頭にかけて」, 『東アジア研究』 通방 25.
- 槻木瑞生, 1999, 「中 近代教育の 生と私塾 - 中 間島における近代的 校の 生」, 『東アジア研究』 通방 24.
- 金美花, 2003, 「檢州 崩 後の延辺朝鮮族自治州の土地改革 - 和龍 村の聞き取り調査を中心に」, 『東アジア研究』 36.
- 金美花, 2005, 「檢洲 期間島における朝鮮人の社 与教育の展開 - 延吉 楊城村の事例を中心に(1932~1936)」, 『東アジア研究』 41.
- 金(テイ) 2003, 「 朝末期の 校カリキュラムに見られる間島朝鮮族の日本語教育」, 『韓 言語文化研究』 5.
- 金(テイ) 2004, 「 末民 期の日本による間島朝鮮族に する教育」, 『比較社 文化研究』 15.
- 金(テイ) 2005, 「間島に設立された普通 校について」, 『韓 言語文化研究』 11.
- 李明玉, 2005, 「間島」におけるコリアン移民をめぐる中日 政府の 与と教育政策 - 1905年から1930年代の書堂教育を中心に」, 『大院 際 報メディア研究科言語文化部紀要』 通방 49.
- 李明玉, 2005, 「1930年代前後の間島地 におけるコリアン移民の教育について」, 『 際教育』 11.
- 白榮 2000, 「二道溝事件」- 間島 居地 朝鮮人の裁判を中心に」, 『東アジア研究』 通방 27.
- 白榮 2002, 「間島協約」と朝鮮人の「 籍」問題」, 『東アジア研究』 34.
- 寺阪誠記, 2004, 「 民教育 による「 化」と「 立」- 1910年代前半の間島朝鮮人の政治意識」, 『鶴山論叢』 4.
- 森川展昭, 1996, 「延辺朝鮮族自治州の成立過程について」, 河合和男 等編, 『論集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明石書店.
- 西重信, 1987, 「北朝鮮ルート論」と朝鮮人の間島移住」, 『 西大 論集』 37 - 4.
- 小林玲子, 2005, 「韓 軀合」前後における間島居住朝鮮人の法的地位と 化政策」, 『朝鮮 報』 197.

- 水野明, 2004, 「朝鮮における義兵について(3)間島における民族獨立運動と民族教育を中心に」, 『愛知大院大教養部紀要』 52(2) (通방 144).
- 申奎燮, 1993, 「日本の間島政策と朝鮮人社 僱 - 1920年代前半までの 僱 政策を中心として (朝鮮近現代史における連 僱 と 僱 換(特集))」, 『朝鮮史研究 僱 論文集』 通방 31.
- 于逢春, 2001, 「中 僱 朝鮮族教育をめぐる中日 僱 僱 の競 僱 - 1905 ~ 31年の「間島」を中心に」, 『アジア文化研究』 8.
- 于逢春, 2002, 「 僱 末民初期, 中日 僱 僱 の朝鮮族に 僱 する教育政策の一側面 - 間島墾民教育 僱 の 僱 育活動を中心に」, 『 僱 島東洋史 僱 報』 7.
- 于 紅, 2003, 「間島日本 僱 領事館の開設と日本の 僱 間島政策の 僱 換」, 『人間文化論叢』 6.
- 井上 謙, 1973, 「日本 僱 僱 主義と間島問題 (朝鮮の民族運動と 僱 史的 僱 件(特集))」, 『朝鮮史研究 僱 論文集』 通방 10.
- 竹中憲一, 2000, 「間島における民族主義組織による朝鮮人教育」, 『東アジア研究』 通방 27.
- 竹中憲一, 「 僱 末民 僱 期中の 僱 の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政策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論集』.
- 蔡 一, 1986, 「韓 僱 現代小 僱 における間島(僱 州) 僱 僱 について - 1945年までの作品を中心に」, 『朝鮮 僱 報』 通방 118.
- 명 滿, 2007, 「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について - 1930年前後を中心にして(特集 『間島資料』 公刊記念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研究』 47.
- 鶴嶋雪嶺, 1979, 「韓 僱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の報告書を通してみた間島の朝鮮人農民」(山崎武雄先生退職記念 僱), 『甲南 僱 本 僱 論集』 19 - 4.
- 許春花, 2004, 「 僱 洲事 僱 以前の間島における朝鮮人の 僱 籍問題」(特集 僱 間から視る朝鮮近代), 『朝鮮史研究 僱 論文集』 42.
- 許 僱 童, 2002, 「日本の在 僱 朝鮮人教育政策 1932 ~ 1937 - 間島の朝鮮人私立 僱 校を中心に」, 『一橋研究』, 27 - 2(通방 136).
- 許 僱 童, 2003, 「間島における日本人教育 - 僱 洲事 僱 前を中心に」, 『朝鮮史研究 僱 論文集』 41.

(5) 자료해제

- Li Sheng, 馬大正, 2007, 「東北三省と延邊 僱 案館所 僱 的 中華民 僱 期 僱 案に 僱 する 僱 述」(特集 『間島資料』 公刊記念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研究』 47.
- 君塚仁彦, 2005, 「東北アジア · 僱 史を逆なでする」(博物館(5)老頭溝万人坑遺跡 - 忘却しえない間島(チェンタオ)侵略の傷跡), 『前夜』 第1期(5).

- 宮田節子, 相場 豊, 近藤 清一 他, 2001, 「安重根・間島問題(1959. 4. 22)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 係者白音記白(2)東洋文化研究所所長 友邦文庫 朝鮮統治における「在檢朝鮮人」問題), 『東洋文化研究』 3.
- 金美花, 2000, 「書評「間島史料」と間島研究『檢洲事 據前夜における在間島日本總領事館文書上』大阪 法科大 間島資料研究 編, 『大阪 法科大 آسی아フォーラム』 通방 21.
- 大畑篤四郎, 1993,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 間島をめぐる日中朝 係の史的展開」李盛煥, 『백國際政治』 通방 102.
- 名和 聡子, 2000, 「藤湖南と「間島問題」に関する新聞論調, 『岡山 大 文化科 研究科紀要』 通방 9.
- 白榮 亮, 2001, 「間島問題」研究における 較史 案 - 延辺 案館所長 史料の紹介, 『News letter』 13, 近現代東北 آسی아地域史研究 編.
- 白榮 亮, 2002, 「紀行文「間島」 較史 遺跡の探訪, 『大阪 法科大 آسی아フォーラム』 通방 24.
- 松重充浩, 2007, 「大阪 法科大 所長「間島問題資料」の射程 - 外務省外交史料館所長 史料との 連を中心」(特集「間島資料」公刊記念シンポジウム), 『東 آسی아研究』 47.
- 伊東祐之, 2000, 「書評 芳井研一著『環日本海地域社 容 - 「滿蒙」・「間島」と「裏日本」』, 『新潟史』 45.
- 田中隆一, 2001, 「書評 芳井研一著『環日本海地域社 容 - 「滿蒙」・「間島」と「裏日本」』, 『 آسی아 』 42-8.
- 内藤 戊申 編, 1963, 「藤湖南・間島吉林旅行談(下)附間島問題私見, 『立命館文學』 通방 222.
- 内藤 戊申 編, 1963, 「藤湖南・間島吉林旅行談 - 上 -, 『立命館文學』 通방 216.

2) 저서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 芳井研一, 2000, 『環日本海地域社會の變容: 滿蒙, 間島と裏日本』, 青木書店.
- 藤藤 藩吉, 2004, 『近代東 آسی아의 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栗原健, 1966, 『對滿蒙政策史の一面：日露戰後より大正期にいたる』, 原書房.
 李鍾鼎, 1993, 『間島事情』, 以文堂; 1993, 나라문화사(영인본).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滿洲編)』, 東洋文庫刊.
 黃文雄, 2001, 『滿洲國の遺産：歪められた日本近代史の精神』, 光文社.

(3) 국경문제

- 李盛煥, 1992,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間島をめぐる日中朝關係の史的展開』, 錦正社.

(4) 민족문제

- 鶴嶋雪嶺, 1997, 『中國朝鮮族の研究』, 關西大學出版部.

(5) 자료해제

- 志賀勝, 1986, 『アムール中ソ國境を驅ける：滿洲、シベリア鐵道紀行』, 研文出版.

3) 역사

(1) 연구동향(없음)

(2) 국경문제

- 前田壽夫 譯, 1968, 『中共の國境問題』, 時事通信社; Francis Watson, 1966, *The Frontiers of China*, New York, Washingt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3) 민족문제(이하 없음)

4) 자료집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 미상, 『間島の概況』, 기타 미상

- 檢洲별 別務院文教部, 1976, 『間島省の古蹟』(檢洲別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3編), 別書刊
 行彔.

大阪 府 法 科 大 學 間 島 史 料 研 究 會, 1999, 『檢 州 事 揀 前 夜 に お け る 在 間 島 日 本 總 領 事 館 文 書 上』(ア ジ ア 研 究 所 研 究 叢 書 1), 大 阪 府 法 科 大 學 間 島 史 料 研 究 會, 大 阪 府 法 科 大 學 ア ジ ア 研 究 所, 大 阪 府 法 科 大 學 ア ジ ア 研 究 所.

大阪 府 法 科 大 學 間 島 史 料 研 究 會, 2006, 『檢 州 事 揀 前 夜 に お け る 在 間 島 日 本 總 領 事 館 文 書 下』(ア ジ ア 研 究 所 研 究 叢 書 1), 大 阪 府 法 科 大 學 ア ジ ア 研 究 所.

牛 丸 潤 亮, 村 田 愨 彦, 2002, 『最 近 間 島 事 情』(韓 鮮 軻 合 史 硯 究 資 料 37), 龍 溪 書 院, 復 刻 版.
日 本 外 務 省, 陸 海 軍 省 編, 2000, 『日 本 の 韓 國 植 民 地 政 策 』 35, 國 학 資 料 院(英 文 本).

(3) 국경문제(없음)

(4) 민족문제

滿 洲 移 民 史 研 究 會 編, 1976, 『日 本 帝 國 主 義 下 の 滿 洲 移 民』, 龍 溪 書 院.

(5) 자료해제

日 本 外 務 省, 1965, 『日 本 外 交 年 表 並 主 要 文 書』, 原 書 房.

今 西 春 秋, 1992, 『滿 和 蒙 和 對 譯 滿 洲 實 錄』, 刀 水 書 房.

5) 학위논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小 林 玲 子, 2004, 『韓 鮮 軻 合 前 後 の 間 島 問 題』, 一 橋 大 學 博 士 學 位 論 文.

(3) 국경문제

白 榮 亮, 2004, 『間 島 協 約 と 裁 判 管 轄 權』, 明 治 大 學 博 士 學 位 論 文.

高 士 華, 2003, 『近 代 中 韓 に お け る 韓 境 意 識 の 形 成 と 日 本』, 東 京 大 學 博 士 學 位 論 文.

(4) 민족문제(없음)

(5) 자료해제

名 和 仁 子, 2000, 『關 東 湖 南 の 近 代 東 ア ジ ア へ の 視 角』, 岡 山 大 學 博 士 學 位 論 文.

5_ 구미

1) 논문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Whiting, Allen S., 1972, "The Use of Force in Foreign Policy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 국경문제

Park, Sunyoung, 2003, "The Representation of Nationalism and Cartography: A study on the Kando Dominion Problem in East Asia,"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Cartography*, Harvard Univ. and USM.

Simmons, Robert R. 1971, "China's Cautiou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ndochina," *Asian Survey*, vol. 4, no. 7.

U. S. Department of State, 1962, *China - Korean Boundary*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no. 1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4) 민족문제(이하 없음)

2) 저서

(1) 연구동향(없음)

(2) 간도 문제 일반

Chang, Luke T., 1982, *China's Boundary Treaties and Frontier Disputes*, Oceana Publication.

George Alexander Lensen, 1966,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 ~ 1904, Florida : The Diplomatic Press.

Hinton, Harold C., 1970, *China's Trubulent Quest : An Analysis of China's Foreign Relations since 1945*, London : Macmillan Co.

НиколайМилеску Спафарий, 1960, *СибирьиКитай*, Кишинев.

(3) 국경문제

Chung, Chin Wee, 1978,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 North Korea's Involvement in Sino - Soviet Dispute, 1958 ~ 1975*, Alabama : The Univeristy of Alabama Press.

FitzGerald, C.P., 1969, *The Chinese View of Their Place in the Worl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Francis Watson, 1966, *The Frontiers of China*, New York, Washington :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J. R. V. Prescott, 1987, *Political Frontiers and Boundaries*, London : Unwin Hyman.

Tsuyoshi Hasegawa, 1998, *The Northern Territories Dispute and Russo - Japanese Relations*, Volume 1 · 2,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4) 민족문제(이하 없음)

3) 자료집

(1) 연구동향(없음)

(2) 국경문제

The Geographer Department of State, 1962, "China - Korea Boundary," *International Boundary*, No.17, June 29.

(3) 민족문제(이하 없음)

[ABSTRACT]

The Analysis of Historical Study
Trend on Baekdu Mountain and Gando Area(1948-)

Kim, Jong-Geon

The study on Baekdu Mountain and Gando region in Korea was focused on primitive examinations of cases based on Korean and Japanese materials. The study on this topic was performed mainly in 1900s, when issues on Gando region appeared as diplomatic debates in East Asia, and 1990s, maintaining mainly based on Korean materials that Gando area belongs to China. In Japan Gando problem was dealt with in early 1900 and treated in socio-economic respect after war.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ces in tendency and aspect of study on Baekdu Mountain and Gando Area among scholars of three nations. And few systematic studies have been performed up to this time. So in this essay first I made a synthetic arrangement existing studies according to nationalities, topics and periods by using given lists of texts, analyzing main contents and methodological features of writings of important scholar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study on this issue was carried through mainly by Korean scholars and Chinese scholars. In Korea it began to be studied very activ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guryo-Research Foundation, and in China the study of this issue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the big contexts of Dongbei Work after 1990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composed of books, essays and reports. The most important subjects of the study were about boundary deba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light of Gando agreement. And there are not a few studies on ethnic peoples in this area.

We can more deeply understand the Korea – Sino relations in the respect of study-trend on this problem by inclusively examining the researches on Baekdu Mountain and Gando region of schol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Furthermore, this analysis will help to take systematic measures on sensitiv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two na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essay will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ore of the case in Korea where the importance of Gando area is largely forgotten.

keywords

Baekdu Mountain, Gando, Gando Area, Korea – Sino relations

논문



三國 ~ 統一新羅時代 城郭의 鐵器生産과 管理

차 순 철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I. 머리말

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신라 그리고 가야가 각각 고대국가로 발전하던 시기로 서로의 패권을 끊임없이 겨루던 혼란기였다. 점차 ‘一統三韓’이라는 목적 아래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전쟁결과 양국의 접경지대의 전략적인 요충지에는 산성이 축조되어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육군과 수군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상전이 주종을 이루던 당시 전쟁에서는 기동성을 앞세운 기마병과 보병의 역할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산성을 통과해야만 했다. 따라서 고대의 전쟁을 살펴보면 평지에서의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산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고, 특히 요동지방에서 중국 隋, 唐과 각각 2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치른 고구려의 경우만 보더라도 몇몇 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방전이 전체 전쟁의 승패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성곽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대의

전쟁은 산성과 토성을 비롯한 여러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많은 철제 무기가 출토되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주둔했던 군대와 관련된 건물지, 창고, 저장구덩이 등과 같은 여러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며, 특히 전쟁에 사용되는 철제 무기를 직접 만들거나 수리하기 위한 대장간, 병기고(창고), 식량창고와 작업장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시설물이 위치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성곽 안에서 직접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공방이나 병장기를 보관했던 창고와 같은 시설물의 존재를 통해서 당시에 이루어진 철제 무기의 수리와 제작이나 병장기의 보관 및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유적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요동지방에 소재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성곽에서 철제 무기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된 사례를 조사·정리하고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에 성곽 안에서 철제무기를 직접 제작했던 대장간을 비롯한 작업장과 병기고 그리고 철제 병기와 갑주 등을 땅 속에 묻어놓은 매납유구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인용된 여러 유적들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들 중 철기생산과 관련된 鐵冶具와 철재(slag) 등을 통한 추론을 하려고 한다.

필자는 전고인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¹⁾와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²⁾에서 우리나라(삼국~통일신라시대)의 단야구 출토현황을 개관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이때 다루어진 자료는 대부분 삼국시대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들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한 상태였고, 한강유역과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백제지역의 단야구는 그 출토사례가 적어서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삼국시

1) 차순철, 2003,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 『文化財』 第36號, 국립문화재연구소, 157~178쪽.

2) 차순철, 2004,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 『北方史論叢』 제2호, 고구려연구재단, 97~121쪽.

대의 산성에서 발견된 단야구 또는 철기생산유적의 존재는 산성 안에 존재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최근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 일원,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역에 소재한 산성에서는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된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³⁾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변의 산성들에서는 단야구나 대장간과 같은 철기생산유구의 존재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성곽유적 가운데 발굴조사로 드러난 철기제작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단야구 등의 존재를 통해서 당시 성곽 내부에서 이루어진 철기생산문제와 공방이나 장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요유적

1_ 고구려

고구려의 산성은 중국과의 전쟁과정에 방패 삼아 축조된 여러 산성을 기초로 한 방어체계를 유지하였다. 요동·요서지방에 축조된 200여 곳의 성곽과 임진강~한강유역에 축조된 100여 곳의 성곽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가 성곽을 방패 삼아 방어와 지방지배를 유지했음을 알려준다.⁴⁾

3)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편,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소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연천 호로그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아차산제4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아차산시루봉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4) 여호규, 2005, 「압록강~요하유역의 고구려 성곽 방어체계」,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48~63쪽; 백종오,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29~47쪽.

1) 國內城

국내성은 중국 吉林省 輯安縣에 위치한 평지성으로 규모는 둘레 2,686m, 높이 약 6m의 석성으로 6개의 성문이 있다. 성벽에는 雉를 설치했고 모서리 부분에는 角樓가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고구려의 도읍지로 초기에는 토성으로 축성된 후 다시 석성으로 쌓았고, 이후 여러 시기에 걸쳐서 보축이 이루어졌다.⁵⁾ 성벽과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시기의 대형 건물지들과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지만, 철기생산과 관련된 작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철기생산과 관련된 유물로는 쇠망치 1점이 출토되었다.⁶⁾ 망치는 단야작업 외에도 석공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바로 대장간의 존재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성 내부에서 대형 건물지가 다수 확인되므로 철기제작공방이 발견될 가능성은 많다고 판단된다.

2) 老城溝山城

노성구산성은 중국 遼寧省 岫岩縣 老城溝에 위치한 산성으로 상세한 조사내용은 알 수 없다. 성 내부에서 제철작업의 존재를 알려주는 鐵滓가 출토되었으므로 철 생산과 관련된 작업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⁷⁾

5)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의 調査와 試掘」, 『文物』 1期,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a, 『國內城 - 2000 ~ 2003 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 文物出版社.

6) 외이춘청 지음, 신용민 옮김, 1996,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15쪽, <도 16-1> 참조.

7) 楊永芳·楊光, 1994, 「岫岩境內五座高句麗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2期; 孫泓, 2001, 「遼寧省에서 發掘된 高句麗 遺物에 대한 綜合考察」, 『高句麗研究』 12輯, 高句麗研究會, 369쪽.

3) 泊沟城

박작성은 중국 遼寧省 丹東市 虎山에 위치한 산성으로, 성 내부에서 망치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⁸⁾

4) 五女山城

오녀산성은 遼寧省 桓仁縣에서 북동쪽으로 8.5km 떨어진 渾江 오른쪽에 위치한 해발 806.32m 지점의 산꼭대기와 허리를 감아도는 모습의 포곡식산성이다. 발굴조사 결과 시기가 서로 다른 주거지 23동과 대형건물지 1동, 철기교장 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반지하식 건물로 기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건물 내부에는 모두 온돌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일부 주거지는 수혈 벽을 따라서 흙으로 만든 벽체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철기제작과 관련된 시설은 <표 1>과 같다.

<표 1> 오녀산성의 철기생산 관련 시설

번호	유구	규모(cm)			조사내용
		길이	너비	깊이	
1	F29호 주거지	440	310	30	말각방향의 수혈주거지. 'ㄱ'자형의 온돌시설, 주거지 둘레에는 높이 0.2m, 너비 0.9~1.2m 정도의 토단이 있음. 출토유물 - 망치 1, 화살촉 1.
2	F32호 주거지	440	390	30	말각장방향의 수혈주거지. 'ㄱ'자형의 온돌시설, 내부에는 초석으로 추정되는 2매의 할석. 출토유물 - 끌 1
3	F38호 주거지	390	390	20	말각방향의 수혈주거지. 'ㄱ'자형 온돌시설, 중앙부에 모루로 추정되는 대형 판석. 출토유물 - 화살촉 1
4	F54호 주거지	(110)	630	40	장타원형에 가까운 수혈주거지, 초석 잔존. 출토유물 - 화살촉 2, 손칼 1, 쟁기 1, 금구 1 등.

(계속)

8) 馮永謙, 1994, 「高句麗泊沟城址的發現与考證」,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孫泓, 2001, 위의 논문, 高句麗研究會, 358쪽.

번호	유구	규모(cm)			조사내용
		길이	너비	깊이	
5	JC교장	140	140	60	원형수혈로 내부에는 철솥(鐵釜) 1점이 정치됨. 솥 위에는 비늘갑옷(札甲)편을, 바깥에서는 재갈 1점을 두었고, 내부에는 철기 300여점(화살촉 191, 발걸이, 재갈, 도끼, 낫, 망치 2, 못 1, 끌 1, 줄 1, 췌기 1, 穿孔器 1 등)을 매납.
6	J2호 건물지	2,450	1,600		장방형 건물지로 서·남·북쪽 벽은 할석으로 석축했고, 동쪽은 굴착한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함. 석축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며 현재 1~4단 정도 잔존. 내벽 석축의 중간부분에는 한 단 낮게 돌출된 길이 2.7m의 출입시설 잔존, 양곡창고로 추정함.

오녀산성 내부에서 출토된 망치, 췌기, 끌, 줄, 천공기와 같은 철기들은 모두 하나의 단일 유구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구 전체를 모두 대장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거지 내부에서 함께 출토된 유물이 철촉(F29 - 망치, F54 - 췌기), 각종 토기와 철촉(F32 - 끌) 등인 점으로 볼 때, 이들 유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기물을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기 위한 도구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된다. 특히 모루로 추정되는 대형 판석이 확인된 F38호 주거지는 작업공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JC교장유구는 쇠솥 안에 많은 유물을 보관한 시설로 생활용구, 생산공구, 車馬具, 병기, 형구 등과 같은 제품들이 낫, 도끼, 쇠스랑과 같이 자루가 착장되어야만 사용가능한 철기들과 함께 들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철기들은 모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 시 바로 꺼내서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반제품을 임시로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함께 출토된 발걸이와 재갈 등의 존재는 이들 철기가 무기보관과 관계될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병기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오녀산성의 사용시기는 F32호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把手附直口甕과

9) 차순철, 2004, 앞의 논문.

直口壺, 쟁반(盤), 동이 등의 토기편으로 볼 때, 서울 구의동 보루유적 출토품, 몽촌토성 출토품과 유사하므로¹⁰⁾ 5세기 말 ~ 6세기 초로 추정된다.

5) 古爾山城

고이산성은 중국 遼寧省 撫順市 북쪽 渾江 북안 2km에 소재한 고이산(해발 230m)에 있는 산성으로 고구려의 新城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고이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38년 日滿文化協會에서 이케우치 히로시 [池内宏] 등이 행한 발굴조사결과 동문지 남쪽의 석축 옆에서 원형으로 만든 도가니로 시설이 확인되었다. 문지 안쪽에 노지가 위치한 점은 노지의 사용시기에 있어서 문제로 남지만, 작업을 위해서 주변에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198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주성인 동성 내부에서는 수십 층의 계단상으로 조성된 택지가 확인되었고 주거지에서는 비늘갑옷(札甲), 종장관주 등을 비롯한 많은 무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6) 峨嵯山 堡壘城(사적 제4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구리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아차산은 남쪽으로 한강 이남의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고구려가 남진하던 시기에 백제·신라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곳으로 고구려의 보루성 16개소¹²⁾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아차산성이 산 남쪽에 위치한다.¹³⁾

10) 崔鍾澤, 2003, 「高句麗 土器의 編年에 대하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55쪽, <삽도 16> 고구려토기 기종별 편년표 2 참조.

11) 三上次南·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古爾山山城-高句麗「新城」의 調査』, 中央公論美術出版; 撫順市文物工作隊, 1964, 「遼寧撫順古爾山古城址 調査簡報」, 『考古』 12期; 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古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期.

12) 심광주·윤우준, 1994, 「문화유적」,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아차산 일대에 소재한 고구려 보루성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결과 성벽, 雉, 각종 건물지, 작업장, 토기가마, 집수정 등과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1) 峨嵯山 第3堡壘

아차산 제3보루는 아차산의 주능선 최고봉(해발 292.5m)에 위치한다.¹⁴⁾ 2005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규모는 전체둘레 431m에 내부면적은 10,543㎡로 여러 보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다. 조사결과 성벽과 건물지 9동, 저장시설과 방앗간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비늘갑옷을 비롯한 각종 무기류와 토기 등이다.

(2) 峨嵯山 第4堡壘

아차산 제4보루는 아차산의 주능선에서 용마봉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위치한 작은 봉우리의 정상부(해발 285m)에 위치한다.¹⁵⁾ 규모는 성벽둘레 210m, 성벽높이 4m 정도이며 동쪽과 서쪽에 각각 치가 조사되었다. 보루성 내부에는 모두 7동의 건물지와 2기의 집수정이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는 내부에 온돌이 시설된 건물지로 중앙부에 원형초석(50×80 cm, 두께 15cm)이 1점 위치하는데, 건물의 보를 받치는 주초석이라기보다는 오녀산성의 F38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대형 판석과 같이 모루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야구인 망치 1점과 끌 6점이 1호 건물지와 2호 집수장 주변에서 출토된 점, 그리고 1호 건물지와 인접한 2호 건물지 내부에서 많은 토기가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1호 건물지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공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보루 내부에서 모두 31점의 숫돌이 출토되었는데, 철기의 인부를 마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성 - 시굴조사보고서 -』; 任孝宰·尹相惠, 2002, 「峨嵯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淸溪史學』 16·17輯(悠山姜仁求教授 停年紀念 - 東北亞古文化論叢), 청계사학회·강인구교수정년기념논총편찬위원회.

14)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5a, 『아차산3보루 1차조사 약보고서』.

15)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앞의 책.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단조공방은 보루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3호 건물지 북서쪽에서 확인되었다. 오녀산성과 같이 고구려의 성 안에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조공방이 운영되었음을 다시금 알려준다. 출토유물은 외날도끼, 양날도끼, 도끼, 살포, 끌, 비늘갑옷투구 등과 같은 많은 무기류가 있다.

(3) 峨嵯山 시루봉 堡壘

아차산 시루봉 보루는 성벽둘레 길이 약 205m, 성벽높이 3~4m의 석성으로 구릉을 따라서 좁고 길게 타원형상으로 만들어졌다.¹⁶⁾ 유적의 사용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보루성 내부에서는 모두 9동의 건물지와 집수정이 조사되었는데, 보루 중앙에는 창고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와 66.4m²의 저수량을 가진 집수정이 위치하며 그 주변에는 온돌이 달린 소형의 수혈건물들이 배치되었다. 출토유물 중 61점에 달하는 숫돌의 존재는 철제 무기에 대한 간단한 마연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북쪽 성벽 트렌치에서 출토된 끌 2점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저탄소강을 고온에서 빠른 속도로 냉각처리를 한 것으로 철판을 끊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4) 서울 紅蓮峰 堡壘

홍련봉 보루는 아차산 줄기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독립구릉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긴 땅콩모양이다. 남쪽 정상부(해발 125.1m)에는 제1보루가, 북쪽에는 홍련봉 제2보루(해발 126.3m)가 위치한다.

홍련봉 제1보루에서는 아차산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보루들 중에서 유일하게 4점의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¹⁷⁾ 내부에서는 건물지 3동과 집수 시설, 13개의 온돌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홍련봉 제2보루에 대한 조사결과 성벽은 지형을 따라 타원형으로 쌓았고

16)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앞의 책.

17)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홍련봉 1보루 발굴조사 약보고」.

전체 길이는 190m 가량으로 추정되며, 보루의 북서쪽 출입시설 주변에는 치로 보이는 시설이 있다. 보루 내부에서는 건물지 3동과 2기의 집수시설, 추정 토기가마와 출입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에는 많은 양의 철기가 확인되는데 창, 도끼, 화살촉, 물미, 비늘갑옷편 등의 무기와 낫, 호미와 같은 농기구 그리고 집게와 같은 공구, 솥 등이다. 특히 집게는 아차산 일대의 여러 보루 중에서 처음 출토된 유물로 이곳에서 단조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차산 제4보루에서 확인된 단조공방과 함께 살펴볼 때, 각각의 보루성에서 직접 철제 무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한편 ‘官窰’, ‘庚子(520)명 토기편’ 그리고 재소성된 토기편과 불에 구워진 점토덩어리 등으로 볼 때, 홍련봉 제2보루는 방어용 보루이기 보다는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창고시설로 추정된다.¹⁸⁾

7) 九宜洞 遺蹟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95번지에 소재한 구릉 정상부(해발 53m)에 위치한 보루성이다.¹⁹⁾ 규모는 지름 14.8m, 전체둘레 46m 정도의 석축을 쌓고, 성 안쪽에는 지름 7.6m의 수혈을 파고 건물을 세웠다. 성벽에는 2개의 치가 설치되었고 내부에는 온돌, 배수구, 방형의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많은 양의 토기와 철기, 특히 칼 2점, 창 8점, 도끼 4점, 화살촉 3,000여점 등과 같은 무기가 출토되었는데, 보루에 거주했던 군인들의 숫자는 12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출토된 철기의 종류와 수량을 통해서 보루성에서 머물렀던 군인들의 숫자와 무기 보유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18)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2005b, 『紅蓮峰2堡壘 1次發掘調查 略報告』.

19)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團, 1977·1978,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查報告』; 구의동보 고서간행위원회 편, 1997, 앞의 책.

8) 남성골 유적

남성골유적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5리(남성골)에 위치한 토성으로 둘레는 300m 정도이다. 토성은 약 4.2m의 너비로 세운 2열의 목주를 세운 목책과 돌출된 치를 만들었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성토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환호, 기둥구멍(柱穴), 석축부 등이 확인되었고 성안쪽에서는 저장구덩이와 굴입주건물지, 온돌건물지, 토기가마 등이 확인되었다.²⁰⁾ 이 유적은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거점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제에 의해서 점령된 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기생산과 관련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들 집터에서 모루로 추정되는 철기(6.95×4.7×5.6cm)와 대형 솥돌이 출토되었고, 호 2에서 철착 1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유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솥돌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단조작업을 통한 철기제작 및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표 2〉 고구려 성곽 출토 철기생산 관련 유물 현황표

番號	內容 遺蹟	性格	出土遺物										其他		
			망치(鎚)			집게(鉗)			줄	끌 (鑿)	뿔 (楔)	모루 (砧)		철재 (鐵滓)	
			大	中	小	特	大	中							小
1	國內城	山城			1										
2	老城溝山城	山城	1											○	製鐵(?)
3	泊沟城	山城	1												
4	五女山城	F29	山城												
		F32	山城							1					
		F52	山城							1					
		窖藏(JC)	山城	2						1	1				貯藏施設
	T41	山城		1											
5	古爾山城	山城													鍛造工房
6	峨嵯山 第4 堡壘	堡壘	1							1					鍛造工房 文물 31

(계속)

20)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番號	內容 遺蹟		性格	出土遺物								其他				
				망치(鎚)			집게(鉗)			줄	골(鑿)		뿔기(楔)	모루(砧)	철재(鐵滓)	
				大	中	小	特	大	中							小
6	峨嵯山	시루봉	堡壘									1				숯들 61
		紅蓮峰 第2堡壘	堡壘					1								
7	清原 南城谷遺蹟	木柵·土城												1(?)	1(?)	
	計		21	7	1				5	1	1	2	4			

※ 망치(鎚)는 大(15cm 前後)·中(10cm 前後)·小(6cm 前後)로 구분했다.
 ※ 집게(鉗)는 特(50cm 前後)·大(25cm 以上)·中(17cm 前後)·小(10cm 以下)로 구분했다.
 ※ 출토사례는 알려져 있으나 상세한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했다.

2. 백제

백제의 성곽은 주로 평지성들이 많이 알려졌으나 최근의 조사결과 산성도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주로 고구려와 마주치는 국경지역에 성곽이 위치했으나 웅진천도 이후부터는 각지에 산성들이 세워진다. 주목적은 침입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되지만 지방행정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한강유역에 소재한 산성들은 백제에 의해서 초축이 되었지만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점령하면서 계속 수축하여 사용했음이 확인된 바 있다.

1) 夢村土城(사적 제29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성백제시기의 평지성이다. 南漢山에서 뺨어 내려온 자연구릉(해발 44.8m)을 이용하여 만든 토성으로 남북 730m, 동서 570m의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다.²¹⁾ 성벽은 판축으로 축조되었고 부분적으로 나무울타리(木柵)가 확인된다. 성의 규모는 북서쪽

2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5, 『夢村土城 發掘調査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 1987, 『夢村土城-東北地區 發掘調査報告』; 서울大學校博物, 1988, 『夢村土城-東南地區 發掘調査報告』; 서울大學校博物, 1989, 『夢村土城-西南地區發掘調査報告書』.

617m, 북동쪽 650m, 남서쪽 418m, 남동쪽 600m로 전체 길이는 2,285m이다. 기저부의 너비 50~65m, 높이 12~17m, 상부 너비 7.5~10.5m 정도이다.

몽촌토성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는 대부분 한성백제시기의 것으로 수혈주거지 9기, 저장공 31기, 방형유구 2기, 적심유구 7기, 연못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고구려와 관련된 유구는 적심석을 갖춘 지상건물지 1동과 版築盛土臺地 1개소 등이다. 수혈주거지에서는 창, 물미(鐔), 칼 등의 무기가 출토되어서 성의 방어와 관계된 건물로 추정된다. 저장혈 내부에서는 대호 등의 저장용기와 함께 뼈비늘갑옷, 말 발걸이(鎧子) 등이 출토되어 무기를 보관했다고 추정되며, 출토된 솥들로 볼 때 간단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북서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양 끝부분이 비정형으로 잘려 나가면서 굵은 막대형 철기(길이 9.1cm, 너비 1.5~1.8cm, 두께 1.1~1.4cm)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 철의 재질은 탄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純鐵로 고온에서 단조작업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철기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철기를 만들기 위한 소재이거나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²²⁾ 따라서 몽촌토성에서는 단조공방에서 철소재를 이용하여 직접 철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2) 風納土城(사적 제11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평지성으로 한성백제시기의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형태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으로 현재 한강변에 연한 서벽을 제외하고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 있는데 유실된 서벽을 포함한다면 전체 길이는 약 3.5km에 달한다. 규모는 성벽너비 약 40m, 높이 9m 이상이다. 풍납토성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3종의 환호유

22) 崔鍾澤·張恩晶·朴長植, 2001, 『三國時代鐵器研究－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 製作技術體系』, 서울대학교박물관, 192쪽.

구와 평면형태 6각형의 한성백제시대 집자리 19기, 토기가마 1기, 기타 토기 산포유구 4기 및 수혈유구 40여 기 등이 조사되었고, ‘뭍’자형 주거지와 ‘大夫’명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²³⁾

출토유물 중 철기생산과 관련된 단야구가 일괄로 출토되었는데, 이는 백제 지역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로 성 내부에서 철기생산과 가공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가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솥들은 철기의 인부 마연작업이 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지역에서 가장 빠른 연대를 지닌 단야구가 확인된 점은 삼국시대 철기제작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AMS연대측정결과(B.C.199년 ~ A.D.231년)로 볼 때, 풍납토성의 사용시기는 최소한 기원을 전후한 한성백제시기로 추정된다.

〈표 3〉 백제 풍납토성 철기생산 관련 유물

번호	유구	규모(cm)			조사내용
		길이	너비	깊이	
1	가7호 주거지	670	670	30	육각형의 수혈주거지. 출입구시설은 길이 1.9m, 너비 1.7m. 터널형 노지, 부뚜막, 출토유물 - 솥들 1, 철정 1(길이 14.0cm, 너비 4.5cm, 두께 0.5cm).
2	N2E1 주거지	440	390	30	출토유물 - 끌 1, 대팻날(철정?)

3) 六溪土城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평지성으로 임진강이 사행곡류하여 북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의 안쪽에 위치한다. 임

23) 金元龍, 1967,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科;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風納土城 I』; 國立文化財研究所, 2002, 『風納土城 II - 東壁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風納土城 III』;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風納土城 IV - 慶堂地區 中層 101號 遺構에 대한 報告』; 國立文化財研究所, 2005, 『風納土城 V - 삼표산업 사옥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진강을 경계로 삼은 방어유적으로 성 안에는 취락유적인 파주 주월리유적이 위치한다.²⁴⁾ 평지에 입지한 토성으로 축조방법은 2~4단 정도로 치석된 장방형의 화강암과 현무암을 섞어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흙을 판축으로 성토하여 만들었다. 성의 둘레는 외성벽이 1,958m이고 내성벽은 85m 정도 잔존한다. 성벽의 너비는 기단부 29.5m 상부 5~6m이고 높이는 외벽이 6~8m, 내벽은 1.5~6m 정도이다.²⁵⁾

성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결과 다수의 주거지와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고, 1996년과 1997년에 경기도박물관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성 내부의 취락유적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백제)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다수 조사되었고, 주조도끼와 철제 비늘갑옷편, 삼각판 갑옷 그리고 집게 등이 출토되었다. 비록 성 안에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조공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업에 사용되는 집게와 숫돌 등이 출토되어서 철기의 제작과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지역에서는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육계토성은 한성백제시기에 만들어진 이후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고구려 성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야구의 소속문제는 좀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望夷山城(경기도 기념물 제138호)

충청북도 음성군 덕양리에 위치하며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백제시대에 축조된 토성과 통일신라시대에 외곽에 축조된 석축산성의 존재가 밝혀졌다.²⁶⁾

24) 京畿道博物館, 1999, 『坡州 舟月里 遺蹟』.

25) 京畿道博物館, 2006,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2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

2001년 12월에는 성 안에 위치한 봉수대 남쪽 경사면에서 철제갑옷 1벌과 쇠술, 주조도끼,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²⁷⁾ 유물이 출토된 지점은 마이산 정상부 남쪽의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등산로 주변지역으로 정상부 남쪽 약 50m 떨어진 약수터 주변지역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견 직후 이루어진 현지조사에서 백제토기편이 다수 채집된 점으로 볼 때, 당시에 매납된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구려 오녀산성의 JO교장유구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철술과 같이 땅속에 철제 갑옷을 묻은 점으로 볼 때, 이 유물들이 단순하게 폐기된 것이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묻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철술이 출토된 지점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기보다는 매우 험한 지세인 점으로 볼 때, 특수한 목적에 따라 매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안 죽막동유적에서²⁸⁾ 대호 안에 각종 철기 등과 석제모조품(갑주, 거울, 무기 등)을 넣은 후 제의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이산성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은 일반적인 보관시설이기보다는 제의행위에 제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제의유구로 추정된다.

5) 雪城山城(경기도 기념물 제76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에 소재한 설성산(해발 290m)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사용되었다. 산의 형태는 성과 외성으로 쌓은 이중성으로 북문지, 서문지(懸門式), 동문지가 있고, 봉우리 정상에는 봉수대터가 있다. 성벽 축조방법은 양쪽으로 돌들을 쌓아올리고 그 중간에는 흙

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望夷山城 - 忠北 區間 地表調査報告書 -』.

27) 권상열·윤종균·성재현, 「望夷山城 出土遺物の 性格」, 『考古學誌』 第1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87 ~ 113쪽.

28)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國立全州博物館, 1998,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을 채운 협축법이다. 성벽의 규모는 둘레 1,095m, 높이 10m로 내부에서는 건물지 12동, 동문지, 서문지, 목곽고, 수혈저장공 18기, 장대지 1곳 등이 조사되었다.²⁹⁾ 건물지 중 통일신라 말기인 8~9세기에 만들어진 2동을 제외한 나머지 13동은 모두 한성시기에 만들어진 수혈주거지로 중앙에는 온돌시설을 갖추었다.

한성백제시기의 각종 토기와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수혈저장공은 모두 풍화암반층을 원형이나 장방형으로 파서 만들었다. 단면 형태는 주머니형과 원통형으로 구분되며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성 내부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는 성을 방어하기 위한 병사들의 숙소로 추정되며, 내부에서는 온돌시설과 함께 철제 무기 등이 출토되었다.

〈표 4〉 백제 성곽 출토 철기생산 관련 유물 현황표

番號	內容 遺蹟	性格	出土遺物										其他		
			망치(鎚)			집게(鉗)			줄	끌(鑿)	뿔(楔)	모루(砧)		철재(鐵滓)	
			大	中	小	特	大	中							小
1	夢村土城	土城													鐵素材 숯돌
2	風納土城	土城	1						1				1		숯돌
3	六溪土城	土城													
4	望夷山城	土城													祭祀遺蹟
	計	7	2			2				1			1		1

※ 망치(鐵鎚)는 大(15cm 前後)·中(10cm 前後)·小(6cm 前後)로 구분했다.
 ※ 집게(鐵鉗)는 特(50cm 前後)·大(25cm 以上)·中(17cm 前後)·小(10cm 以下)로 구분했다.
 ※ 출토사례는 알려져 있으나 상세한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했다.

2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a,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3_ 신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 많은 산성들을 축조하였다. 또한 통일 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거점지역에 위치한 산성 안에 관청과 군대를 배치하고 지방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1) 南山新城(사적 제22호)

남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능선의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 포곡식산성이다. 성벽의 전체길이는 둘레길이 약 4,850m, 내부 최대너비는 동서 1,150m, 남북 1,430m이다. 체성벽의 축조수법은 주로 내탁법으로 축조하였으나, 골짜기와 저지대는 협축법을 사용한 곳도 있고, 일부에서는 일정 높이까지는 내탁법을 쓰고, 그 위로는 협축법으로 축조한 곳도 있다. 성 내부에는 창고지를 비롯한 문지, 망대, 수구, 우물 등의 시설물이 확인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무왕 19년(678)에 남산성을 만들었고,³⁰⁾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평왕 13년(591)에 주위 2,854보의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³¹⁾ 남산신성 내부에 위치한 창고는 문무왕 3년(663)에 만든 것으로 성내 북편의 평탄지에서 3개소가 확인된다. 장창은 산성 내부에 만들어진 창고로 중창, 좌창, 우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右倉에는 곡식과 병기를 보관하였다고 한다. 혜공왕 2년(767)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³²⁾

30)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文虎王 法敏條, “別本云 建福八年辛亥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31)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四, 眞平王 13年條, “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

32)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文虎王 法敏條, “王初卽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 貯米穀兵器 是爲右倉 天恩寺西北山上 是爲左倉 別本云 建福八年辛亥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則乃眞德王代始築 而至此乃重修爾”;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六, 文武王 上條, “三年 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 十九年 春正

2) 尉禮山城 (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운용리 산 61번지에 소재한 성거산(해발 525.9m) 위에 쌓여진 테피식 산성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능선을 따라서 긴 타원형으로 만들어졌다. 산성의 규모는 성벽 둘레 950m, 높이 4m 정도이다.³³⁾ 성 내부에서는 백제의 삼족토기와 승석문 호,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와 기와편, 開元通寶 등이 출토되었고, 성벽 주변에서는 망치 1점이 출토되었다. 망치의 용도는 단야구로 볼 수도 있지만 인부가 심하게 균열된 점으로 볼 때, 오랫동안 석공 작업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大母山城 (경기도 기념물 제143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와 백석면 방석리 사이에 위치한 산 정상부(해발 210m)를 둘러싼 성벽둘레 410m의 테피식 산성으로 동문, 서문, 북문 등 3개의 성문과 내부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가 되었다.³⁴⁾ 체성은 內外夾築으로 쌓았고 규모는 성벽 너비 6.15~7.95m, 높이 4m 정도이다. 성벽은 여러 차례 보축이 되었는데 북문지 동쪽 측벽의 외벽 하단에서는 보조석축이 확인되었다. 성 안에서는 모두 9동의 건물지가 조사되었고, 북문지 바깥쪽에서는 저장혈로 추정되는 원형수혈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각종 철제 무기(화살촉, 창, 도끼) 箭車 등이다. 산성 내부에서는 철기 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철제 집게 1점이 1981년 조사구역의 1호 건물지(정면 6칸, 측면 3칸, 내부면적 120

月……增築南山城”：『三國遺事』卷第二，紀異第二，惠恭王條，“七月三日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郡並九十六角干相戰大亂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新城張倉火燒……”。

33) 서울大學校人文學研究所, 1997, 『天安 慰禮山城 - 試掘 및 發掘調査報告書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2003, 『위례산성』, 서경.

34)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 동문지·서문지 -』.

m²)의 토기호 안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현청에서 사용했던 관인³⁵⁾ (「○○○縣之印」)과 「德部舍」, 「德部」 등과 같은 문자기와가 다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양주 대모산성은 당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했다고 추정된다.

4) 半月山城(사적 제403호)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성벽은 구읍리와 상성북리 그리고 하성북리에 걸쳐 있는 청성산 정상(해발 285.3m)을 중심으로 만든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동서 490m, 남북 150m, 둘레 1,080m의 긴 반달 모양이다. 발굴조사결과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산성이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동문, 남문, 북문 등 3개의 성문과 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와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³⁶⁾ 또한 성 내부에서 출토된 「馬忽受解空口單」 문자기와로 인해 고구려의 馬忽郡이 이곳에 위치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Ⅱ 확장지구 조사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등자와 같이 출토된 단조철기(봉형철기)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철의 재질은 탄소함량이 4.3%에 미치지 못하는 아공정 백주철로 확인되었다.³⁷⁾ 이 단조철기는 직접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철기를 만들기 위한 소재이거나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철소재는 고온에서 단조작업을 하면 손쉽게 강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철기제작을 위한 중간소재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포천 반월산성에서는 성 내에서 직접 단조작업을 통해서 강제품의 철기를 생산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5) 『삼국사기』에는 신라 문무왕 15년(675)에 “봄 정월에 구리로 각 관청 및 주·군의 인장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三國史記』新羅本記 第七, 文武王下, “十五年 春正月 以銅鑄百司及州郡印 頒之”.

3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b, 『포천 반월산성 - 종합보고서』.

37) 박장식, 2004, 「포천 반월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미세조직에 나타난 철기 및 청동기 기술」,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 종합보고서』, 441~443쪽.

5) 雪峰山城(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일대에 위치한 설봉산(해발 394.4m) 주변의 계곡을 둘러싼 포곡식 산성으로 주성과 부속성 2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굴조사결과 한성백제기에 산성이 처음 축조된 이후 신라에 점령된 이후 여러 차례 수축되었고 신라 진흥왕 29년(568)에는 南川停이 설치되었다.³⁸⁾

성의 규모는 둘레 1,078m, 성벽 높이 2~3m 정도이며, 성벽과 문지 4개소, 건물지 15동, 치성 7곳, 추정 집수정 2곳 등이 조사되었고, 성 내부에서는 한성백제기에 축조된 수혈식 원형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한성백제와 신라의 각종 토기, 무기 등과 '咸通六年(867)명 석제벼루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현청에서 사용했던 관인으로 추정되는 청동도장과 '大寺', '天', '田', '南' 등의 글자가 양각된 문자기와의 다수 출토되었다.

설봉산성에서는 철기생산 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형 철제집게 1점이 가지구 확장조사갱의 5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복주머니 형태의 지하 저장시설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 내에 통일신라시대의 관청이 위치한 점과 철제 집게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이천 설봉산성은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6) 鷄足山城(사적 제3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해발 423m의 계곡산 정상부에서 북

3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유재은·박장식, 2002, 『利川 雪峰山城 出土 別鬲과 鬲鬲의 製作 技法 및 用度 비교』, 『文化史學』 18, 文化史學會, 71~88쪽.

동쪽으로 길게 발달된 능선을 따라 약 1.3km 지점에 해당하는 봉우리(해발 431m) 위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다.³⁹⁾ 산성의 둘레는 약 1,037m이며 성벽은 남벽, 서벽, 북벽은 능선의 정상부 바깥부분을 내탁 또는 협축하였고, 동벽은 낮은 계곡부를 감싼 모습이고 협축으로 쌓았다. 외성벽의 잔존 높이는 6~10m, 내벽의 높이는 2~4m, 체성의 너비는 6~8m이며, 체성 기반부의 바깥쪽에는 보조석축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문지는 동벽, 서벽, 남벽에서 각각 1개소가 조사되었다. 동문지와 서문지는 다락문(懸門式)으로 추정되며, 남문지는 남벽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성문을 'S' 자형으로 우회하여 출입하게 만들었다. 성 내에는 북쪽에 2개소, 서쪽에 3개소, 동쪽에 1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동벽 안쪽에서는 길이 11.6m(추정길이 17.4m), 너비 5.2m의 목곽으로 만든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백제시기의 토기편, 기와편과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 등과 같은 6세기경의 신라유물이 다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백제 때 축조된 이후 신라가 점령하여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 내부에서 제철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鐵滓와 대형모루⁴⁰⁾ 그리고 제2차 저수지 하층에서 '土' 자가 새겨진 망치 1점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8~9세기경에는 계족산성 안에서 제철·제련작업을 통해서 철을 생산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⁴¹⁾

7) 陽村里遺蹟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 해발

39)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005, 『鷄足山城』.

40) 국립중앙박물관, 2003, 『特別展 統一新羅』, 161쪽, No. 177 참조.

41) 박장식, 2005, 「계족산성 출토 철기관련 유물에서 발견되는 철기기술에 관한 연구」, 『鷄足山城』,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97~316쪽.

366.3m인 망월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완만한 구릉의 정상부(해발 142.7m)에 위치한다.⁴²⁾ 발굴조사결과 건물지 1동, 주거지 1동, 추정 문지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막새기와를 사용한 건물로 구릉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점으로 볼 때, 일반 주거용 건물이기보다는 창고 또는 관방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건물지 남쪽에 위치한 수혈유구에서 집게와 솥돌과 작업대로 추정되는 모루돌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이곳에서 철기를 수리하거나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적이 상당부분 사평된 관계로 작업장과 관련된 시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유적의 시기는 출토된 주름무늬병과 암막새, 평기와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대로 추정된다.

〈표 5〉 신라 성곽 출토 철기생산 관련 유물 현황표

番號	內容 遺蹟	性格	出土遺物										其他		
			망치(鎚)			집게(鉗)			줄	끌(鑿)	뿔기(楔)	모루(砵)		철재(鐵滓)	
			大	中	小	特	大	中							小
1	慰禮山城	山城	1												
2	大母山城	山城						1							
3	半月山城	山城													鐵素材
4	雪峰山城	山城						1		1					
5	鷄足山城	山城	1										1		鐵滓
6	陽村里遺蹟	堡壘(?)						1					1(石)		솥돌2
	計	9	2			3				1		2		2	

※ 망치(鐵鎚)는 大(15cm 前後)·中(10cm 前後)·小(6cm 前後)로 구분했다.
 ※ 집게(鐵鉗)는 特(50cm 前後)·大(25cm 以上)·中(17cm 前後)·小(10cm 以下)로 구분했다.
 ※ 출토사례는 알려져 있으나 상세한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했다.

42) 中央文化材研究院, 2003, 『清原 陽村里遺蹟』, 61쪽, 도면32 - ⑤.

Ⅲ. 철기의 생산과 관리문제

삼국 ~ 통일신라시대까지 운영된 평지성과 산성 그리고 보루성에서는 병사들의 숙소, 창고 그리고 철기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 시설 등이 확인된 사례가 많다. 망치, 집게, 모루, 끌 등과 같은 鍛冶具와 슬래그(鐵滓), 대장간의 화덕으로 추정되는 爐址 그리고 야외용 모루, 줄, 썰기, 천공기(송곳), 숫돌 등과 같은 도구가 주거지 혹은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단조작업과 관련된 시설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성 내부에서 어떻게 철기를 제작하거나 수리·가공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토된 유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성 안에서 철기를 직접 제작했는가? 아니면 완성된 철기를 보수하였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성곽유적에서 대장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조공방이 확인된 경우는 대부분 고구려 성곽들이다. 오녀산성 F38호 주거지(판석), 아차산 제4보루 제1건물지(판석), 흥련봉 제2보루 등에서는 모두 단야작업과 관련된 시설 혹은 도구가 출토되었고, 특히 모루들로 추정되는 판석의 존재는 철기제작 혹은 수리작업이 현지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입증한다. 다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단조박편과 같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논리의 전개를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성곽 내에 철기제작과 관련된 작업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철기제작 또는 수리작업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살펴보고자 하겠다.

1_ 개인에 의한 단순한 수리작업

개인에 의한 단순한 수리작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이루어진 작업형태이다. 철기를 소지한 개인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갑옷의 비늘을 새로 연결하거나 구멍을 메우거나 무기의 날을 세우는 작업을 행한 것으로, 평소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무기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

는 도구는 망치, 끌, 줄, 송곳, 숫돌 등으로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철제 연장들이 1~2점씩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장을 개인이 소유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단 공동으로 관리하던 연장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녀산성의 F29호 주거지와 F32호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망치와 끌은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사용했던 연장으로 추정되므로, 이들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당시 대장간 혹은 작업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는 JC교장유구가 확인된 T504 조사구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F38호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대형판석이 모루돌로 추정되므로 연장을 보관하였던 작업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녀산성과 서울 아차산 보루성 등에서 출토된 단야구를 비롯한 각종 연장들은 개인이 무기를 수리·정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보수작업은 철기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전문 기술자에 의한 수리작업

전문 기술자에 의한 수리작업은 단조기술을 지닌 기술자에 의해서 직접 철기가 제작되거나 수리된 것을 의미한다. 산성에서 대장간이 확인되고 함께 단야구가 출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단야구와 끌, 송곳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 기술자가 무기의 제작 및 수리작업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보루인 서울 아차산 제4보루와 흥련보 제2보루에서는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시설과 단야구인 집게가 나왔고,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남토성에서도 단야구가 일괄로 출토되었다. 한편 신라시대에 축조된 대전 계족산성에서는 제철의 존재를 알려주는 鐵滓와 함께 철제 모루가 출토되었는데, 산성 안에서 이루어진 철기 생산의 존재를 알려준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관방유적인 천안 위례산성의 망치와 청원 양촌리유적에서 출토된 망치와 집게는 산성 안에서 이루어진 철기단조작업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성곽 내부에서 출토된 덩이쇠(鐵錠)나 막대상의 鐵棒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들 철기가 철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로 확인되어서, 대장간이 조사되지 않았어도 철기제작이 이루어진 사례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산성과 같은 관방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장간 외에도 단야구, 철소재의 발견 등을 통해서 철기제작의 새로운 사례가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유물의 존재로 볼 때 성곽 내부에서 확인된 대장간과 단야구는 철기 제작을 위한 전문기술자의 존재를 알려주며, 이들의 생산작업을 통해서 철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공방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단조작업공방이 확인된 아차산 제4보루는 병참기지로서의 위치를 보여주며, 동시에 전문공인이 상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구려는 성곽 내에서 체계화된 보급구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개 유적뿐만 아니라 이를 총괄하는 철기생산 및 관리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경우도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단야구 일습을 통해서 전문 공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성 내부에서 확인된 각종 고풍관이나 철재(slag)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철 또는 제련작업과 같은 철생산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철기제작은 먼저 일정한 형태의 철소재를 제작한 후 이를 가지고 가공하는 모습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는 전문공인의 존재를 알려준다. 특히 남한지방에서 확인된 단야구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유물이 도성유적에서 확인된 점은 백제의 철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라의 성곽 내부에서 단야구나 철 생산 관련 유적이 확인된 경우는 소수이다. 대전 계족산성에서 출토된 철 모루와 철재의 존재는 산성 내부에서 철기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망치나 집게만 출토되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단조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다만 철기 제작을 위한 중간소재로 추정되는 봉상철기가 성곽 내부에서 확인된 점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삼국 모두 성 내부에서 철기를 가공할 수 있는 공방시설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도성이나 변방의 산성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_ 무기 보관창고

산성 등의 성곽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하며, 성 안에는 각종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시설이 존재한다. 고구려 오녀산성에서 확인된 JC교장유적에서는 대형 철술 안에 생활용구, 생산공구, 거마구, 병기, 형구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철기유물들이 넣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철기들 중에는 낫, 도끼, 쇠스랑과 같이 자루가 착장되어야만 사용가능한 철기들과 함께 화살대 없이 축신만 넣어진 많은 양의 철촉(191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무구와 함께 출토된 철제 교구는 안교의 좌목금구를 구성하는 금구로 추정되며, 말 발걸이와 재갈이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일단 무구를 보관하기 위한 소규모의 야외창고로 추정된다. 또한 JC교장유구 주변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F38, F39, F63)를 군인용 막사로 추정하고 있는 점⁴³⁾은 이들 유물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무기로 완성할 수 있는 반제품을 보관했던 창고의 가능성이 많다. 망치와 천공기, 끌, 줄 등과 같은 도구들은 반제품 상태로 보관되어오던 것을 나무나 가죽 등에 부착하여 완성된 형태의 무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벌목구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2점의 양날도끼와 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고 자루의 표면을 다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낫과 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철기 제작에 필요한 도구 일습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⁴⁾ 그러므로 오녀산성의 JC교장유구에서

4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 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査發掘報告 -』, 文物出版社, 168쪽.

44) 양날도끼는 고구려 벽화고분(안악 3호분, 약수리 벽화무덤, 평양 역전 2실묘)에 표현된 행렬도와 수문장의 모습에서 확인된 '부월수'가 도끼를 어깨에 둘러메거나 양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과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서울 구의동 보

출토된 단야구는 대장간에서 작업에 쓰이던 도구이기보다는 전쟁 때 바로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차산 보루이나 구의동유적에서는 철기를 전용으로 보관했던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창고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이 확인되지만 이는 작업장이나 막사 등으로 보여진다. 이는 오녀산성에서 확인된 주거지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것과 유사한 모습이므로, 대부분의 보루는 군막사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흥련봉보루처럼 지휘부 혹은 보급창고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므로 당시에 보루에서 거주한 병사들은 자신들이 휴대할 수 있는 양을 보루에 보관하는 정도였다고 추정되며, 이는 구의동유적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JC교장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에 단순히 철기(무기)를 비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 제작에 필요한 연장도구를 함께 보관하였던 모습이므로, 인접한 장소에 작업장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의 몽촌토성과 설봉산성에서는 지하 저장공 안에 뼈갑옷과 무기를 보관한 모습이 확인되며, 문지 주변의 능선 위에 만들어진 주거지에서는 많은 무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성곽을 방어하기 위한 병사들의 숙소로 추정되고 있고 동일한 시설은 다른 여러 유적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같이 백제에서는 성벽 주변에 초소시설을 만들고 일정규모의 무장한 병사들이 거주하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거지 내부에서 솥돌 이외에 철기 수리를 위한 각종 연장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고구려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조공방의 존재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의 조

루유적에서 출토된 4점의 도끼도 양날이 아닌 외날도끼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김성태는 고구려에서 도끼는 장군을 상징하는 무기 또는 신의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JC교장유구에서 확인된 양날도끼는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별목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김성태, 1994, 「高句麗의 武器(2) - 鐵矛, 戟, 弩, 도끼 -」, 『文化財』 第27號, 文化財管理局, 240 ~ 242쪽.

사내용으로 본다면 간단한 마연작업을 통한 철기의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라의 성곽 내부에서 창고가 확인된 경우는 남산신성에서 확인된 장창을 들 수 있다. 장창은 산성 내부에 만들어진 군수창고로 중창, 좌창, 우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고의 바닥을 지면 위에서 뜬 마루바닥으로 한 점은 곡물과 무기 등을 습기로부터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탄화된 쌀과 보리 등과 같은 곡물의 존재는 양곡을 비축한 창고로서의 기능을 확인시켜준다.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조공방의 존재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계속산성에서 확인된 철재(slag)와 각종 단야구의 출토 정황으로 볼 때, 전문적인 철기제작 공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4_ 단독으로 출토되는 철기 매납유구의 성격

성 내부에서 종종 철기를 매납한 유구가 확인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들 유구의 존재에 대해서는 함께 공반된 철기유물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유물이 매납된 지형적인 위치 등에 의해서 저장시설 혹은 제의유구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녀산성에서 확인된 JC교장유구의 경우 큰 쇠술 안에 많은 철기를 비축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지만,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매납유구의 경우에는 독립적 위치로 볼 때 산성 내에서 이루어진 제의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의 산성 내에서는 산신들에게 제사를 봉행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사사례를 보면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성곽 안 건물지에서 파손된 철제 말이나 토제 말이 출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큰 바위 주변이나 능선 주변에 철솥을 묻고 그 안에 갑옷이나 무기를 묻는 제의유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그 사례가 적지만 한성백제시기의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제의유구는 실전용무기인 갑옷을 제물로 사용한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비록 석제 모조품이지만 부안 죽막동유적

에서 출토된 석제 소형갑옷과 창, 칼 등과 같은 제의구를 들 수 있다.⁴⁵⁾ 부안 죽막동유적에서는 향아리, 독, 그릇받침 등을 제기로 사용하였고 그 안에 별도의 공헌물로 철제 무기와 말갖춤(馬具) 등을 넣어서 제물로 사용했다. 그리고 제당 주변에는 토제 말과 석제 모조품 등을 사용하여 제의를 행했는데 유적의 시기는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고구려 환도산성에서는 사당으로 추정되는 대형 팔각형건물지 2동과 그 건물 안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제 무기류가 다수 출토된 바 있다.⁴⁶⁾ 이들 금동제 무기들은 그 형태로 볼 때 실제로 사용되기보다는 건물 내부를 장식하거나 제의를 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로 볼 때 고대 제의에서는 공헌물로 무기가 사용되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안성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철제갑옷 역시 부안 죽막동유적과 같은 성격의 제의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곽 내부에서 아무런 시설 없이 무기가 출토된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폐기가 아닐 경우에는 제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팔각형건물지 주변에서는 머리를 자르거나 발을 부러뜨린 토제 혹은 철제 말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이들 유물 역시 모두 성곽 내부에서 이루어진 제의행위 혹은 건물을 축조하면서 행한 地鎮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⁷⁾

45) 國立全州博物館, 1994, 앞의 책.

4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b, 『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47) 현재까지 토제 말은 신라가 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성 당성, 광주 이성산성, 포천 반월산성, 천안 위례산성, 월성 해자, 양주 대모산성과 통일신라시대에 행해진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청동제 말은 양주 대모산성과 익산 미륵사에서 발견되었고 철제 말은 하남 이성산성, 원주 거둔사지, 포천 반월산성, 부여 무량사지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의 역원지로 추정되는 통영 안정리유적에서는 철제 말 7점이 건물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제물로 사용된 토제 말이 최대로 출토된 유적은 광양 마로산성으로 토제 말 285점과 청동제 말 5점, 철제마 1점 등 모두 291점이 보고되었는데, 그 사용시기는 고려 말 ~ 조선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성곽유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라만의 특징적인 제의행위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호 안에 갑옷, 창 등과 같은 무기를 담아서 묻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⁴⁸⁾ 백제와 신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제의모습을 가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곽 안에서 무기가 매납된 유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확인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그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제의행위에 바쳐진 제물의 종류와 성격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철기제작과 매납유구의 특징

앞의 장에서는 삼국 ~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져서 운영된 여러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이 가운데에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유적들을 중심으로 철기의 제작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서로 유사한 모습도 있지만 성곽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따라 점에 의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 성 내부에 소재한 주거지 안에서 솥돌로 철기의 날을 세우거나 갑옷의 끈을 연결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작업은 공동 연장을 이용해서 수리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 주거지 안에서 확인된 단조작업을 위한 모루의 존재, 철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인 대장간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용된

48) 완동 청해진유적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제사유적 사례를 살펴보면 수혈 안에 철제 방형 탁자(盤)를 반으로 잘라서 다른 기명(토제 편병, 청동제 병)들과 함께 묻은 매납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將島青海鎮遺蹟 發掘調査報告書 I』.

연장인 단야구의 출토로 볼 때, 성안에는 철기를 만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에서 확인된 창고, 대형 집수정, 대장간, 토기가마 등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당시 고구려 군 내부에는 이러한 기술자들이 편재되어서 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오편산성에서 확인된 JC교장유적처럼 필요한 철기 반제품을 임시로 보관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무기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기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철기제작 및 보관, 관리부분은 성곽마다 배속된 기술자가 철제 무기, 농공구 그리고 토기 등을 만들었고, 필요한 군수품은 일정량씩 보관해서 전쟁에 사용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곽 안에서 확인된 창고들은 무기와 식량, 자체적으로 생산된 토기, 철기 등을 보관하던 장소로 볼 수 있다. 결국 고구려는 이러한 물품들을 보급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공인집단이 군내부에 편재되어 있었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철기 생산과 관리업무에 종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에는 조사된 유적의 제한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살피기는 어렵다. 한성백제시기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한강 유역의 여러 산성에서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곽 내부에 대장간을 갖추고 직접 철기를 제작하고 보관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평지성이 아닌 산성에서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적들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본다면, 고구려처럼 모든 성곽에서 철기를 생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산성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 안에서는 많은 무기가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지하저장고를 무기창고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철기를 보관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성 안에서 이루어진 제의행위에 바쳐진 공헌물로 철제 갑옷을 사용했는데, 이는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백제만의 특징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안 죽막동유적에서 확인된 제의행위와 동일한 모습으로 볼 때, 철제 무기를 의기로서 신성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신라의 경우에는 산성 내에서 확인되는 대형 건물지의 존재를 통해서 지방 행정기구와 창고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경주 남산신성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창고 안에는 철제 무기와 곡식이 보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고는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창고에 사용된 기와에서는 관인, 벼루와 함께 ‘○○部舍’, ‘○○部’, ‘國’, ‘官’, ‘官草’, ‘城’, ‘椽’ 등과 같은 문자기와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한편 창고를 표시한 ‘官椽’,⁴⁹⁾ ‘新椽’⁵⁰⁾ 등과 같은 ‘椽’명 문자기와는 관청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사용된 기와를 표시한 것으로 성 안에 설치된 창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⁵¹⁾ 또한 함께 출토된 철재(Slag)와 단야구 등의 존재를 통해서는 제철행위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는 고구려처럼 자체적으로 철기생산과 제작을 행하였고, 만들어진 제품은 성 안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삼국시대에는 모두 성곽 안에서 철기생산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제철이나 제련작업을 행하였고, 일부에서는 소규모이지만 단조작업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 내에는 철제무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규모는 성곽의 상황에 따라서 전용창고 혹은 개인보관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고, 숫돌 등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삼국시대 성곽 내에서 철기를 퇴장한 매납시설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사용가능한 도구를 의도적으로 매납한 점에서 볼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

49) 구문회, 2000, 「武珍古城出土 銘文資料와 統一新羅期 武州」,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129~142쪽; 구문회, 2001, 「광주(光州) 무진고성(武珍古城) 출토 명문와(銘文瓦)의 검토 - 9세기 후반 신라 지방사회와 관련하여 -」, 『생활문화연구』 제3호, 국립민속박물관, 27~45쪽.

50) 金秉模·金娥官, 1998, 『唐城 1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華城郡; 裴基同·朴晟喜, 2001, 『唐城 2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華城郡.

51) 車順喆, 2002, 「「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 第5輯,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90~130쪽.

러 오녀산성에서 확인된 JC교장유적의 경우에는 다량의 철기를 보관한 점에서 볼 때 임시 보관장소의 기능이 크다고 추정된다. 이는 한성백제시기 몽촌토성의 수혈식 저장고에서도 철기나 저장용 토기를 보관했던 모습이 확인된 점에서 볼 때 이곳이 보관창고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매납유구는 쇠솥과 短甲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 매납유구는 험준한 지역에 의도적으로 철기를 매납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관기능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제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접한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요 산천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통일기가 되면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⁵²⁾ 이에 따르면 산성 내의 주요 봉우리와 연못을 대상으로 한 제의행위가 행하여진 모습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신라 성곽 안에서 확인되는 팔각형건물지는 고구려 환도산성에서 확인된 제의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유적으로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토제 말과 철제 말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역시 제의행위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공헌품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의 성곽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므로 앞서 비교한 망이산성이나 부안 죽막동유적과는 구분되는 신라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백제에서 철제 갑옷과 창 등 무기와 석제모조품 등을 이용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신라에서는 토제 말 혹은 철제 말을 사용한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52) 鄭義道, 「祭場으로서 山城 研究: 鎭山을 中心으로」, 『文物研究』 제12호,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원, 31~103쪽.

V. 맺음말

한반도와 중국 요동지방에 소재한 삼국 ~ 통일신라시대의 성곽유적들을 중심으로 성 내부에서 철제 무기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된 사례를 조사·정리하고, 성곽 내부에서 확인된 유적들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당시 성곽 안에 존재했던 대장간을 비롯한 철기 제작공방과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시설 그리고 철기 매납유구(임시보관 시설 혹은 제의유적) 존재가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곽들에 대해서는 출토된 유물들 중 철기생산과 관련된 단야구의 존재를 통해서 당시의 대장간 규모와 철기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성곽 안에서 이루어진 철기생산과 관련된 작업은 개인에 의한 단순한 수리 작업과 전문 기술자에 의한 수리작업으로 구분되며, 제철유적과 대장간을 통해서 각종 철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완성된 철기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무기고에 보관하였는데, 일상적인 보수작업에 사용된 연장들은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이 소지한 무기 등에 대한 간단한 보수작업은 소유자가 직접 했지만, 성 내부에서 확인된 대장간과 단야구의 존재로 볼 때 별도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 철기의 제작과 수리 등과 같은 일련의 관리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또한 완성된 철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존재를 통해서 당시 만들어진 철기가 어떻게 보관되었고 전쟁에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대형 창고에서 확인된 문자기와는 건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창고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삼국 ~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방어시설인 산성 내부에 존재했던 대장간과 철기가공기술을 가진 전문공인의 존재와, 성곽 안에서 이루어진 무기관리와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곽 내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땅에 묻는 제의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의행위는 삼국 사이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는

데, 이는 철제 무기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의에 공헌할 목적으로 매장된 철제 무기의 존재 등을 통해서, 그 기능적인 목적 외에도 제의행위에 공헌물이나 장엄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Castle Ironware in the Three Kingdom & Unified Silla Era

Cha, Soon-Chul

The ancient castl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its state, and most of war broke out centering around hill castles or plain castles. Many iron weapons were excavated from surveys of castles relics. Furthermore, such diversified relics were identified to be related to the troops stationed within castles, I. e. beds, warehouses, storages, etc. Among them are such facilities as forges or storing facilities (warehouses) that were used to make or repair iron weapons.

This study focused on surveying and arranging those relics which were related to iron weapons in castl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iaodong, China, particularly in the unified Silla era. As a result, many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forges, used to make or store iron weapons and other relics were found to be made in relation to sacrifices, or to pray for war victory. As for those excavated relics on which no surveys have been prosecuted, the existence of forged instruments indicates the scale of forges and iron weapon production capacity.

Work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ironware in the castles may be classified into repair by individuals and technical repair by technicians. All sorts of ironware were produced in ironworks and forges. Finished ironware was used for private uses or kept in

armories. Moreover, at times such sacrificial acts were carried out in which weapons are buried underground for certain purposes. Those tools used for the repair of ironware are more likely to have been kept with combined efforts than owned by private persons. Simple repair works were made by the individuals who owned the ironware but the existence of forges and forged instruments within the castles points out the existence of technicians, via whom ironware was presumably produced.

Furthermore, via the existence of the warehoused in which finished ironware was kept as well as that of iron weapons buried for a sacrificial purpose, we can assume how much value the ironware in the Silla era had. In addition to it, through the aforementioned survey results we can identify the existence of forges, representative protective facilities in the unified Silla era and concurrently with this that of skilled craftsmen with special ironware-forging skills.

keywords

Three Kingdom, Castle, production of ironware, smith tool, storages

『歷代年表』와 『三國遺事』를 통해 본 一然의 발해 인식

이 효 형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고려시대 후기 普覺國尊(師) 一然(1206~1289)은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연의 저서는 麟角寺 普覺國尊碑에 등장하는 것처럼 『偈頌雜著』 3권을 비롯해 100여 권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비문에서는 빠져 있는 『三國遺事』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연의 발해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의 발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발해사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크게 소개되지 않은 『歷代年表』의 내용을 『삼국유사』보다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歷代年表』는 『삼국유사』에 앞서는 1278년 인흥사에서 일연이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발해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료상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일연의 발해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연구가 있었다. 신라인들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려는 일환에서, 또는 고려시대 사서에 실린 발

해 관련 기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三國遺事』 靺鞨渤海條를 자세히 분석한 글이 있었고,¹⁾ 최근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일연의 발해 인식을 그려 내려는 연구가 있었다.²⁾ 그리고 고려시대 발해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연의 발해 인식을 아주 간단히 언급한 경우도 있다.³⁾ 이러한 글들은 내용의 長短을 떠나 일연이 발해 또는 말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럼에도 일연의 발해 인식을 논하는 글들이 대개는 『삼국유사』 말갈발해조를 근거로 분석한 것으로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이루어진 『歷代年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⁴⁾ 『歷代年表』가 널리 소개된 자료가 아니었고 발해 관련 내용이 너무 적어 자료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발해사 연구에서 늘 제기되는 자료의 한계성에 비춰본다면 『歷代年表』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필자는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 부분에 대해 늘 관심을 갖는 한편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와 비교하며 일연의 발해 인식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⁵⁾ 그런데 그동안 판독이 불가능하던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 부분이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게 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아무튼 여기서는 발해사 연구에 작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歷代年表』와

-
- 1) 宋基豪, 1988,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韓國史論』 19; 鄭鎭憲, 1999, 「渤海史 史料와 渤海史 認識의 變遷 - 高麗時代의 史書에 실린 渤海 記事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6.
 - 2) 朴眞淑, 2005, 「一然의 발해사 인식과 三國遺事」, 『三國遺事研究』 창간호, 一然學研究院.
 - 3) 石井正敏, 1978,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 - 新羅 ~ 李朝」,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盧明鎬, 1998, 「高麗 支配層의 渤海遺民에 대한 認識과 政策」, 『汕耘史學』 8.
 - 4) 『歷代年表』의 존재와 발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각주에서 처리한 경우는 있다. 宋基豪, 1988, 앞의 논문, 103쪽;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3쪽.
 - 5) 李孝珩, 2004a, 「渤海 遺民史 研究 - 高麗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釜山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72 ~ 177쪽; 李孝珩, 2004b, 「고려시대 발해·발해 유민 인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53, 18 ~ 23쪽.

『三國遺事』의 발해 관련 내용을 서로 비교·보완함으로써, 무신란 이후 대몽 항쟁기를 거쳐 元 간섭기로 이어지는 고려 후기의 대내외 격동기에 禪僧이자 최고 지식인이던 일연의 발해 인식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본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歷代年表』의 발해 인식

1. 『歷代年表』 개요

『歷代年表』의 판목은 현재 해인사 寺刊板殿에 소장되어 있는데 보물 제734-20호이다.⁶⁾ 이 판목의 본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歷代年表』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해인사의 命名에 의하면 『歷代王朝年表』로 표기하기도 한다.⁷⁾ 소장처가 제시하는 이름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歷代年表』에는 이미 왕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일본에도 『歷代年表』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상태이므로,⁸⁾ 여기서는 기왕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歷代年表』는 현재 2板木이 남아 있는데, 앞·뒷면 4張으로 되어 있다. 각 張의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2·3張은 비슷하고 마지막 4張의 크기가 작다. 이는 앞의 3張까지는 각 張이 3단으로 된 데 비해 끝나는 부분인 4張

6) 『歷代年表』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각판 중 하나이다. 고려각판은 불교경전과 유명한 승려의 저술·시문집 등을 나무판에 새긴 것으로 모두 54종 2,835판이다. 이중 28종 2,725판이 국보 제206호로, 26종 110판이 보물 제73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諸經板)'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歷代年表』는 제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7) 합천군·법보종찰해인사, 1997, 『해인사 사간판 보수사업 보고서』와 해인사 성보박물관 개최(2007) 목판특별전 목록에는 『歷代王朝年表』(袖珍本)라 되어 있다.

8) 藤田亮策, 1991, 『海印寺雜板攷』(一), 『朝鮮學報』 138, 96쪽.

은 1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⁹⁾ 서체는 楷書이다. 4張 끝부분에 ‘至元十五仁興社開板’이라는 刊記가 있어 至元 十五年, 즉 1278년 仁興社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歷代年表』는 1274~1278년에 걸쳐 자료 수집과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삼국유사』의 王曆과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¹⁰⁾ 『삼국유사』 찬술의 선행작업 중 하나로 만들어진 예비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근거는 형태상 『歷代年表』와 『삼국유사』 왕력편의 기재양식이 일치한다는 점, 중국의 정통왕조로 파악된 역대 왕조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일 연이 『歷代年表』를 간행하기 1년 전에 인흥사에서 운문사로 옮겨갔지만 『歷代年表』를 간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간행처인 인흥사에서 14년간 주석했다는 점 등이다.

『歷代年表』에는 중국과 그 주변 민족에 의해 건국된 諸國의 역대 왕명과 연호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 정통왕조와 중국 주변 민족에 의해 건립된 왕조들을 旁峙諸國으로 구분하여 이들 왕조에 대한 역대 왕명과 연호, 또 그 사용 횟수를 정리하고 이에 덧붙여 신라-고구려-백제-고려의 순서로 당시까지 존재한 우리나라 역대 왕명과 그 재위 年數를 밝힌 것이다. 중국에 해당되는 내용은 광범위한 자료 섭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특히 삼국의 경우는 『삼국사기』에만 의존하였다.

『歷代年表』의 전체 내용을 순서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맨 첫 부분은 중국의 정통왕조로 파악된 역대 왕조의 연표이다. 여기에는 周와 大宋의 항목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어느 시기부터 정통왕조의 시초로 파악하였는지, 또 정통왕조가 어떻게 계승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둘째 부분은 旁峙諸國이라 하여 중국의 주변 민족에 의해 건립되었거나 아니면 정통왕조로 인식되지 아니한 諸國의 왕명과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5

9) 『歷代年表』의 제원에 대해서는 합천군·법보종찰해인사, 1997, 앞의 책, 61쪽 참조.

10)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 15, 229~231쪽; 河廷龍, 2005, 『삼국유사 사료 비판』, 民族社, 248쪽.

胡16國·北朝期の諸國·5代10國 등의 왕조를 다루고 있다.

셋째 부분은 중국의 역대 연호를 밝히고, 그 사용 기간을 細註로 정리하였다. 이 부분은 마멸이 심해 많은 부분이 판독하기 힘든 형편이지만 광범위한 자료 섭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연호 중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연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넷째 부분은 7왕조를 다루고 있다. 차례로 契丹-大金-蒙古의 항목까지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역대 왕명, 연호, 연호의 사용 기간, 연호 사용의 첫 해에 해당되는 干支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하는 신라-고구려-백제-고려의 순서로 역대 왕명과 재위 年數만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海東諸國置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의 신라·발해·마진(태봉)의 역대 연호와 일본의 연호 8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연호 다음에는 간격을 많이 띄운 후 ‘至元十五仁興社開板’이라는 刊記를 명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일연은 고려 사회가 이민족인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시점에 중앙 정계 실력자의 후원에 힘입어 화려하게 각광받으며 불승으로서의 최고 지위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이민족의 지배가 가져온 민의 고통과 참담한 사회상황은 선종 승려인 일연으로 하여금 사상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결과 그가 귀착한 세계는 현세구원적인 관음신앙의 표방과 민중의 삶을 역사성의 형태로 승화한 『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다. 1278년 인흥사에서 간행된 『歷代年表』는 『삼국유사』를 만들기 위한 선행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歷代年表』 역시 『삼국유사』의 찬술과 같은 사상적 경향 속에서 간행된 것이다.¹¹⁾

위에서 『歷代年表』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정리했다. 여기서는 『歷代年表』

11) 『歷代年表』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예컨대 『歷代年表』가 『三國遺事』 王曆을 찬술하기 위한 전단계 작업이었는데, 일연의 독자적인 간행인가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글의 『歷代年表』 개요는 다음의 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하면서 필자가 보완하였다. 蔡尙植, 1986, 「至元 15년(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蔡尙植, 1988, 「한국의 역사가, 一然」, 『韓國史 市民講座』, 一潮閣; 蔡尙植,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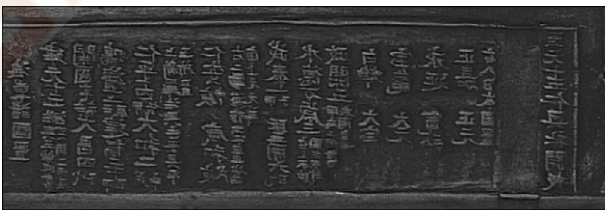
를 둘러싼 더 깊이 있는 문제, 예컨대 인흥사의 성격이나 간행을 전후한 시기의 일연의 행적, 간행하게 된 사상적 배경과 같은 문제까지 깊이 있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일연의 역사인식, 그 가운데서도 주로 발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2. 『歷代年表』의 발해 인식

『歷代年表』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발해사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내용이 서술된 것이 아니다. 『歷代年表』에서 발해와 관련된 것은 ‘海東諸國置’(해동 여러 나라에서 설치한 연호)라는 제목 아래의 내용이다. 신라-발해-마진(태봉)-일본의 순서로 연호가 각각 관각되어 있으며, 연호가 처음 사용된 해의 干支를 비롯해 연호 사용기간 및 연호와 관련된 약간의 細註를 가하기도 하였다. 발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모두 합쳐 21자에 불과하다.



〈그림 1〉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 부분 板本



〈그림 2〉 『歷代年表』 내 海東諸國置 부분 사진



〈그림 3〉 海東諸國置 부분 사진(이해를 돕기 위해 뒤집은 것임)

위의 『歷代年表』 내 海東諸國置 부분 두 사진과 판본을 토대로 감정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²⁾ 판목에 새겨진 연호명의 판독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 판독이 어려운 것은 연호명보다는 細註이다. 細註는 하나의 연호 혹은 한 국가 전체의 연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것인데, 음미할 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판독이 쉽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

海東諸國置¹³⁾

建元十五(法興王 …… 二丙辰) 開國十七(辛未) 大昌四(戊子) 鴻濟十二(壬辰) 建福三十(甲辰) 仁平十四(甲午) 大和二(戊申) 上新羅法興王 …… 眞平王所置 仁安(庚申) 咸和(庚戌) 右二渤海祚榮置當唐(庚) 上元元年 武泰一(甲子) 聖册六(乙丑) 水德萬歲三(辛未) …… 泰封 政開三(甲戌) …… 白雉 大寶 寶龜 大元 永延 寬弘 正嘉 正元 右八日本國置¹⁴⁾

12) 〈그림 1〉은 해인사 寺刊板殿에 소장되어 있는 『歷代年表』의 판본이다. 이는 부산대 사학과 蔡尙植 教授로부터 입수해 편집한 것이다. 〈그림 2〉는 寺刊板殿에 소장된 목판 『歷代年表』를 촬영한 사진 중 海東諸國置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다. 〈그림 3〉은 〈그림 2〉의 사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상 뒤집은 것이다. 사진 촬영을 허락하고 더 좋은 사진을 보내주며 계재를 허락한 해인사 성보박물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13) 蔡尙植 教授는 기존의 글(198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에서 『歷代年表』 내에 해동 여러 나라의 연호가 기록된 부분의 제목을 '海東諸國年號'로 판독하였으나 『歷代年表』 사진을 보고 '海東諸國置'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새로운 견해를 따라 수정하였으며 발해 연호 다음의 細註 13字의 판독은 채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右二渤海祚榮置當唐上元元年" 중 渤, 祚榮, 唐(庚?)으로 판독한 글자는 필자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독이 그러다면 필자의 책임이다.

14) 海東諸國置의 내용 판독을 시도한 학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藤田亮策이 『歷代年表』를 간략히 소개하는 글에서 제목은 '海東諸國置'로 정확히 판독했으나 일

위에서 보듯이 신라-발해-마진(태봉)-일본의 순서로 연호가 나열되어 있다. 신라 7개, 발해 2개, 마진(태봉) 4개, 일본의 연호가 8개이다. 일단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일본 연호는 우리나라 연호와 달리 특정 연호의 사용 횟수 뿐 아니라 연호가 시작된 해의 干支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일연이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처리했다기보다는 일본 연호는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구려의 연호가 빠져 있다. 金銅佛像에 새겨진 延嘉나 永康, 建興이라는 연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구려는 광개토왕 시기에 永樂이라는 연호를 20년 넘게 사용하였는데 이를 누락하였다.¹⁵⁾ 영락이라는 연호는 廣開土王陵碑文이나 德興里古墳墨書銘을 통해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했음이 확인된 만큼 고려시대 일연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일연이 많이 참고했을 『삼국사기』의 연표나 광개토왕조에 영락이라는 연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백제 역시 일본 石上神宮에 보관되어 있는 七支刀의 명문에 나오는 泰和를 그 독자적인 연호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주요 사서에 연호를 사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므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신라의 연호는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신라는 법흥왕대에 建元이라는 연호를 처음 제정한 이래 진덕여왕 원년(647)에 제정한 太和를 끝으로 당과의 외교관계가 밀접해지고 그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일연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통일기 이후 822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국호를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慶雲이라고 한 적이 있었지만 일연이 이를 거론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라 진덕여왕의 연호와 재위 연수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본 연호의 細註를 ‘右八日本國道’로 판독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된다. 藤田亮策, 1991, 『海印寺雜板放』(一), 『朝鮮學報』 138, 97~98쪽.

15) 『삼국유사』 왕력편에도 “第十九廣開(土)王 名談德 壬辰立 治二十一年”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연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있다. 眞德女王的 연호는 太和인데, 판목에는 大和라 되어 있다.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국사기』든 『삼국유사』든 판본상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국유사』의 판본 가운데는 太和가 아니라 大和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다.¹⁶⁾ 문제는 재위 기간이다. 진덕여왕의 재위 기간이 2라 되어 있으나 원래는 이보다 더 길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太和 戊申 六”이라 하여 재위 기간을 6년으로 보았으므로 4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 원년에 연호를 고쳐 太和라 하였다가 4년에 당 태종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비로소 당의 연호 永徽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므로,¹⁷⁾ 二도 아니고 六도 아닌 四가 되어야 한다.

이는 『歷代年表』 海東諸國置조 내의 오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歷代年表』의 전체 내용 가운데는 사실과 다르거나 誤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고려의 왕명과 재위 연수를 표기하는 가운데 왕명 중 顯宗을 現宗으로 처리하였다. 海東諸國置 내의 일본 연호 大元도 사실은 天元(978~982)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여러 오류는 一然의 착오나 판각자의 실수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歷代年表』 海東諸國置조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일연의 발해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海東諸國置라는 제목 아래 발해의 연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海東은 중국을 기점으로 동쪽 방향을 의미하는데 渤海灣 이동을 가리키는 지역의 통칭이다. 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칭하는 이름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一然 이전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여러 자료에 그 용례가 나온다.

예컨대 김부식은 進三國史記表에서 삼국을 해동삼국으로 부르면서 역사가 장구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연표에서도 우리나라를 해동이라

16) 『三國遺事』 卷1, 王曆1; 崔南善 編, 1946, 『三國遺事』, 民衆書단, 21쪽.

1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女王 4年條.

표현하면서 국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¹⁸⁾ 그 외에 『대각국사문집』에도 『海東三國史』라는 서명이 보이고 있고, 각훈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불교유통과 행적을 기술한 서명이 『海東高僧傳』인 것을 보면 13세기 고려시대에 와서도 계속 海東이 우리나라를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요컨대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라는 이름 아래 발해 연호가 수록된 것은 일연이 발해를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삼국사기』가 발해를 배제한 것과 비교한다면 역사인식의 엄청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일연이 발해 연호를 거론한 것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다. 연호란 군주의 治世에 붙이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다. 『삼국사기』의 “후세에서 연호를 쓰는 것은 통일을 크게 하고 백성의 視聽(耳目)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²⁰⁾라는 지적처럼 국가 통치 차원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우리 역사상에는 고구려, 신라, 태봉(마진), 고려, 조선도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이었다. 반면에 발해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심지어 발해유민들이 세운 부흥국가에서조차 연호를 제정해 사용하였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고왕 대조영 시기의 연호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대 무왕부터 11대 대이진왕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12대부터 마지막 왕 대인선 시기까지도 연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일단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혼란기 속에서 사료가 散逸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의 연호는 법흥왕에서 진흥왕을 거쳐 진덕여왕대까지 사용된 7개 전부를 제시하였다. 마진(태봉)의 것 4개 역시 모두 소개하였으나 발해는 10개 가까운 연호가 있었음에도 2개만 제시하였다. 일본의 연호도 다수가 있었으나 8개만 제시하였다.

18) 『三國史記』進三國史記表; 『三國史記』卷29 年表 上.

19) 김정배, 2004, 「中國史書에 나타나는 ‘海東三國’」, 『北方史論叢』 창간호.

20)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眞德女王 4年條 史論.

〈표 1〉 발해 및 유민 국가의 연호²¹⁾

왕	연호	사용 기간
1대 高王	미사용	
2대 武王	仁安	719 ~ 737
3대 文王	大興 寶曆	737 ~ 774, ? ~ 793, 774 ~ ?
4대 大元義	불명	
5대 成王	中興	793? ~ 794
6대 康王	正歷(正曆)	794 ~ 809
7대 定王	永德	809 ~ 812
8대 僖王	朱雀	812 ~ 817?
9대 簡王	太始	817? ~ 818
10대 宣王	建興	818 ~ 830
11대 大彝震	咸和	831 ~ 857
12대 大虔晃	불명	
13대 大玄錫	불명	
14대 大瑋瑳	불명	
15대 大謹讓	불명	
定安國	元興	976 ~ 981년 이후
興遼國	天慶(天興)	1029 ~ 1030
大渤海	隆基(應順)	1116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다수의 발해 연호 가운데 仁安과 咸和 두 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仁安 바로 다음에는 庚申, 咸和 다음에는 庚戌이라는 즉위한 해의 干支를 표기하였다. 仁安의 庚申은 720년이며, 咸和 다음의 庚戌은 830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仁安과 咸和만 거론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얼핏 보면 현전하는 발해 연호의 처음과 마지막 연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안은 무왕대의 것이고, 함화는 대이진대의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왕 大武藝는 대조영의 아들로서 국가 초창기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

21) 宋基豪, 1995, 앞의 책, 179쪽.

할을 하였다. 특히 732년에 張文休로 하여금 당의 登州를 공격케 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11대 大彝震代 역시 당나라와의 경제·문화 교류에 힘썼으며, 일본과도 많은 교류를 행하여 10대 선왕 이래 계속되는 발해 융성기를 이끌었다. 이때는 이른바 海東盛國이라 칭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발해에는 많은 연호가 있었지만 발해사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두 시기를 택해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조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유사』에 “사사ροι 연호를 고쳐 마침내 海東성국이 되었다”²²⁾는 구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어쨌든 두 연호만 수록한 것은 一然이 단순히 그것만 알았던 데서 연유한 것은 아니다. 발해의 연호 사용이나 발해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이 바탕이 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발해사에서 크게 발전하던 두 시기의 연호가 수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발해의 두 연호 왼쪽에 새겨진 細註를 깊이있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細註에는 “右二渤海祚榮置當唐(庚?)上元元年” 등 모두 13자가 새겨져 있는데 판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다. 실제로 祚榮과 唐이 애매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더한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右二渤海祚榮置當唐(庚?)上元元年”으로 판독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국호에 대한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발해의 이칭이 渤海靺鞨, 靺鞨渤海, 北狄, 北國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 細註에서는 고유의 渤海라고만 하였다. 이는 일연이 발해의 국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발해라는 국호 다음에 祚榮이라는 건국자의 이름을 새겼다. 연이어 해석하면 “오른쪽 2개의 연호는 발해 조영이 설치한 것”이라는 의미다. 물론 발해의 대조영대에 두 연호가 사용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인안과 함화가 제정될 당시의 干支가 입증하고 있다. 조영은 발해의 건국자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본다면 해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22) 『三國遺事』 卷1, 紀異1, 靺鞨(一作勿吉)渤海條.

해석이 어려운 것은 사실 當唐(庚?)上元元年 부분이다. 연호 인안과 함화가 사용된 시기와 당나라 상원 원년과는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나라에서 上元이라는 연호가 사용된 것은 두 번이다. 高宗대의 상원 원년은 甲戌 674년이다. 발해 건국 전이다. 다음은 肅宗대의 庚子 760년이다. 이때는 발해 문왕대로서 문왕의 연호는 大興으로, 760년은 대흥 24년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當唐上元元年 중 唐이 아닌 庚으로 판독한다면 약간의 해석이 통할 수 있다. 이때의 庚은 발해 연호 仁安이 처음으로 사용된 해의 干支인 庚申의 庚을 약칭한 것이라면 발해가 연호를 사용한 원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글자의 모양상 庚으로 판독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안과 함화의 간지인 庚申과 庚戌의 庚과는 판각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에 들어 있는 발해의 연호가 가지는 의미와 세주의 판독 및 해석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일연은 발해의 존재와 연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발해를 한국사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歷代年表』의 海東諸國置조 바로 앞 부분에 신라 - 고구려 - 백제 - 고려의 순서로 역대 왕명과 재위 연수를 기록하였으나 발해는 빠져 있다. 이와 연계해 설명한다면 일연은 발해를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삼국의 세 나라나 고려와 같은 수준이나 위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삼국유사』 왕력편에 발해가 누락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Ⅲ. 『三國遺事』의 발해 인식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서로서 그에 대한 사학사적 의의는 너무나 크고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찬술자나 찬술 시기, 체제상의 문제점 등 다수의 해결과제가 있다.²³⁾ 여기서는 이왕의 연구 성과나 과제를 다시 검토할 여유는 없으므로, 『삼국유사』를 크게 체제·내용상의 측면에서 발해와 관련지어 서술하려고 한다.

1_ 체제를 통해 본 발해사 이해

1) 王曆편

『삼국유사』의 王曆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年表에 해당한다. 王曆은 처음에는 난을 다섯으로 나누어 중국의 연표와 함께 신라·고구려·백제·가락에 대해 수록하였다. 맨 앞에는 연호가 기록되고 그 아래의 칸에 각 나라의 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역대왕의 가계, 즉위, 치세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지만 더러 저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곳도 있다. 『삼국사기』 年表와 비교하면 시기는 처음(중국은 전한 孝宣帝, 한국은 신라 박혁거세)과 끝(중국은 후진 石敬瑭, 한국은 후백제의 멸망과 후삼국 통일)이 같으나 내용은 王曆이 훨씬 자세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 年表와 마찬가지로 『삼국유사』 王曆에도 고구려와 백제, 가락이 멸망한 이후에는 중국과 신라만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의문은 '발해사가 왜 누락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반면에 후삼국시대에 이르면

23)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상현,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1권(한국고대사연구 100년),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一然學研究院, 2005, 『三國遺事研究』 창간호; 신종원, 2006, 「『三國遺事』와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 신서원.

중국과 신라 이외에 다시 후고구려와 후백제에 대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

〈표 2〉 『三國遺事』 王曆편 수록 국가 변화

중국(前漢 ~ 唐)		중국(唐)		중국(唐 ~ 石晉)
新羅	→	新羅	→	新羅
高句麗				後高(句)麗
百濟				後百濟
駕洛				

『삼국유사』는 遺事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내용을 서술했다 하더라도 고조선에서 후삼국에 이르는 긴 시간을 담은 역사서이다. 일연 역시 고려 후기가 지 전해 내려오는 중국과 한국의 많은 역사서와 지리서 등을 참조하여 서술했었다. 이 때문에 일연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의 한반도 남부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대동강 이북에는 발해가 병립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에 鞞鞫(一作勿吉)渤海條를 설정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王曆에서는 발해사에 대한 독립적인 공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신라란에도 발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적어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사실이나 732년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자 뒤이어 신라가 출병한 일, 발해의 멸망과 대광현의 고려 내투 문제 등은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王曆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닐 수 있다. 王曆이 주로 왕의 혈연관계나 즉위, 재위 햇수 등을 수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중간 역사적 사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므로 발해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발해에 대한 난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표면상 발해사를 한국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歷代年表』 내 海東諸國置에는 발해의 연호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鞞鞫(一作勿吉)渤海條까지 설정한 사실 이외에 중국 사서를 인용해 발해의 시호와 연호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

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王曆편이 왕의 순서와 재위기간, 연호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발해가 굳이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王曆편에서 발해사가 누락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발해 관련 기록이 미미한 데서 오는 국가 설정의 어려움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발해사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연구자료의 부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3세기 일연의 시대에도 발해사 관련 저서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사실 『신당서』와 『구당서』에도 발해왕 15대의 재위 연수와 순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신당서』 발해전만 하더라도 14대와 15대의 왕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 기록의 부재에서 본다면 駕洛도 渤海와 비슷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王曆편에서는 가락에 대해 독립된 난을 만들었고, 국호에서부터 首露王을 시작으로 仇衡王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돼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발해사 기록의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음은 『삼국유사』의 왕력이 『삼국사기』 연표를 토대로 작성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서명에서 보듯이 두 사서 모두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고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처럼 불교적인 내용 이외에 역사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신라사 위주의 서술이다. 특히 연표와 왕력은 시간 범위의 처음과 끝이 일치하고 있다. 왕력이 최치원의 『帝王年代曆』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여지도 있으나,²⁴⁾ 『삼국사기』 연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면 발해사를 누락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익히 아는 대로 『삼국사기』는 발해를 한국 역사권 밖으로 인식한 사서다. 어쨌든 『삼국유사』가 앞서 나온 『삼국사기』를 크게 참고한 흔적이 역력하고 왕력도 연표를 크게 참조했다면 발해사의 위치는 왕력에서 표면화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해는 왕력편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일연은 발해를 한국사의 범주로 인정하면서도 신라와 발해를 비슷한 비중으로 위치지우는 이른바 南北國時代論과 같은 역사인식의 단계에는 이

24) 崔南善 編, 1946, 「三國遺事解題」, 『三國遺事』, 民衆書단, 23쪽.

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력의 찬자가 일연이 아니라는 견해를 수용하더라도, 이를 『삼국유사』의 한 편목으로 포함시킨 것은 일연의 역사인식, 발해 인식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紀異편

기이편은 대체로 神異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삼국사기』와 견주어 보면 본기에 해당한다. 그 시간적 범위는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에 이른다. 발해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靺鞨(一作勿吉)渤海條²⁵⁾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이다. 58항목에 달하는 기이편의 대부분이 신라사로 구성되었음에도 발해사에 해당하는 靺鞨渤海條가 『삼국유사』에 확실하게 들어 있다는 것은 일연이 발해를 한국사 속에 이해하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자세는 『삼국사기』와는 크게 대비된다. 『삼국유사』에는 靺鞨(一作勿吉)渤海條 외에 직접적으로 발해와 관련된 항목은 없다. 중간중간 말갈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큰 의미를 찾기란 힘들다.

더불어 기이편을 통해 한국사 체계 속에서 발해의 계승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기이편에 등장하는 첫 국가는 古朝鮮(王儉朝鮮)이다. 이어서 魏(衛)滿朝鮮, 馬韓, 二府, 七十二國, 樂浪國, 北帶方, 南帶方, 靺鞨渤海, 伊西國, 五伽耶, 北扶餘, 東扶餘, 高句麗, 卞韓百濟, 辰韓, 新羅, 南夫餘·前百濟, 後百濟 순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의 국가나 정치세력에 대한 배열이 어떤 원칙이나 서로간의 관련성이 내재하는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순서가 국가 혹은 정치세력의 등장 시기에 맞춘 것도 아니다. 고조선-삼한-삼국의 체계를 잡은 뒤 나름의 배열과 설명을 가한 것 같은데 확신하기는 어렵다. 靺鞨渤海條는 아홉 번째다. 바로 전후의 남대방이나 이서국과는 상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25)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靺鞨(一作勿吉)渤海.

따라서 일연이 어떠한 체계와 근거를 가지고 이들 국가들을 배열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이편에 등장하는 국가나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고조선-삼국-통일신라·발해와 같은 역사계승 틀을 설정해 발해를 한국사 체계 가운데 하나로 잡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어쨌든 靺鞨渤海條라는 항목을 기이편에 넣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학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3) 餘他편

『삼국유사』에는 王曆과 紀異 외에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 등이 있으며 다 합치면 9편목이다. 흥법편은 불교의 수용과정과 고승들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탑상편은 寺記와 탑, 그리고 불상의 유래에 관한 내용으로서 31항에 달한다. 의해편은 원광을 비롯한 유명한 승려들에 대한 것이다. 이하 나머지 편도 대개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내용이다.

왕력과 기이를 제외한 나머지 편의 내용이 불교에 대한 것이고 신라에 대한 것이라 할 때 발해의 불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발해도 신라 못지않게 불교가 번성하였다. 발해의 불교 발전과 관련된 여러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해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三國遺事』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신라의 불교와 승려에 대한 것이다. 백제에 대한 것도 극히 적으며 발해 불교의 원류이자 토대인 고구려에 대한 것도 일부만 소개되었다. 요동성의 육왕탑과 고구려의 영탑사에 관한 것이다.

발해의 불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발해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민이 내투하였지만 그들이 남긴 사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에 고려시대 후기 13세기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철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발해의 불교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같은 사정이 『삼국유

사』의 불교 관련 서술에 반영되었을 것이나, 현재 발해의 승려 및 불교 자료가 전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발해의 승려에 대한 약간의 자료를 일연이 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성격상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이는 『海東高僧傳』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발해의 불교와 승려를 배제한 『삼국유사』식의 서술은 바로 이전에 편찬된 각훈의 『해동고승전』과 다르지 않다. 1215년(고종 2년) 覺訓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고승들의 전기 『해동고승전』은 현재 流通篇 2권만 전하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지만, 1권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외국의 傳來僧 등 모두 11명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2권에는 求法을 목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유학한 22명의 승려들의 행적이 실려 있다. 그런데 발해의 승려에 대한 사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저서명 『해동고승전』에서의 海東은 통상 우리나라라는 의미가 내재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저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삼국을 지칭할지는 몰라도 발해까지 내포된 것은 아닌 듯하다. 이것은 고려시대 3대 사료라 칭하는 『해동고승전』(1215)이 시기적으로 『삼국사기』(1145)와 『삼국유사』(1285) 사이에 저술된 중요한 사료이지만 13세기 초에도 여전히 발해는 ‘우리 역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삼국유사』 시기에도 『해동고승전』의 인식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던 듯싶다.

요컨대 왕력과 기이 이외의 7편에서 그 내용이 신라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 반면에 발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일단 자료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일연의 역사 인식과 발해 인식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2_ 내용을 통해 본 발해사 이해

“三國遺事は 어느 의미로 말하면 朝鮮上代를 혼자 담당하는 문헌이라고도 할 만하니 조선의 생활과 문화의 源頭와 古形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이 책이 있을

따름이라”는 지적이 있다.²⁶⁾ 이 지적은 『삼국유사』의 역사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의미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해사 관련 사실만 하더라도 수록된 내용의 분량이 너무 적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일연의 발해사 인식에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다. 그렇지만 靺鞨(一作勿吉)渤海條를 설정해 발해사 이해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을 달래 준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靺鞨(一作勿吉)渤海條 이외에 특별히 발해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발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갈 또는 발해와 관련된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갈과 관련된 기사는 卷1 紀異1 馬韓條에 1회, 樂浪國條에 2회, 太宗春秋公條에 1회, 卷3 塔像4 黃龍寺九層塔條에 1회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말갈은 하나같이 백제 온조왕 시기부터 발해 건국 전의 삼국시대 말갈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의 말갈과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말갈과의 관계 해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일단 발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음은 발해를 지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사여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開元 21년 癸酉에 당나라 사람들이 北狄을 치려 하여 신라에 군대를 청해왔다. 이때 사신 604명이 신라에 왔다가 돌아갔다.(卷2 紀異2 孝成王條)
- 天授 4년 癸巳 3월에 夫禮郎은 무리를 거느리고 金蘭에 놀러 갔는데 北溟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狄賊에게 사로잡혀 갔다. 문객들은 모두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돌아왔으나 홀로 安常만이 그를 쫓아갔으니 이때는 3월 11일이었다.(卷3 塔像4 百栗寺條)

개원 21년은 733년이고, 천수 4년은 693년이다. 신라 입장에서 보면 전

26) 崔南善 編, 1946, 앞의 책.

자, 즉 효성왕조의 北狄은 발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대로 발해가 무왕대에 당나라의 등주를 정벌하자 당나라가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부를 공격하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발해를 北狄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발해는 말갈인의 나라이다”라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⁷⁾ 하지만 이것은 사실의 단순한 소개로 봐야지 일연의 발해 인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백률사조에 등장하는 狄賊은 발해가 아니라 말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93년이라면 발해가 건국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번역서에서는 譯註에서 狄賊은 靺鞨이라고 하였다.²⁸⁾ 다만 지명 金蘭과 北溟이 지금의 강원도 북방의 통천과 원산을 말한다면 나중에 발해의 영토에 포함되었을 여지는 있다. 따라서 위의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말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698년 건국한 발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靺鞨(一作勿吉)渤海條 이외에 『三國遺事』 내 발해 또는 말갈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았으나 발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찾기란 어려웠다. 이제 『三國遺事』 靺鞨(一作勿吉)渤海條를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이 글이 추구하는 일연의 발해 인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원문을 내용에 맞춰 편의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靺鞨(一作勿吉)渤海

② 通典云 渤海本粟末靺鞨 至其酋祚榮立國 自號震旦 先天中(玄宗壬子) 始去靺鞨號 專稱渤海 開元七年(己未)祚榮死 諡爲高王 世子襲立 明皇賜典冊襲王 私改年號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後唐天成初 契丹攻破之 其後爲丹所制(三國史云 儀鳳三年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 開元二十年間 明皇遣將討之又聖德王三十二年 玄宗甲戌 渤海靺鞨 越海侵唐之登州 玄宗討之 又新羅古記云 高麗舊將祚榮 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伯山南 國號渤海

27) 石井正敏, 1978, 앞의 논문;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32쪽.

28) 말갈 대신 발해라 해석한 경우도 있다. 李載浩 역, 1982, 『三國遺事』, 養賢閣, 379쪽, 주6.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 按指掌圖 渤海在長城東北角外) 賈耽郡國志云 渤海國之鴨綠南海扶餘靺鞨城四府 並是高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地理志 朔州領縣 有泉井郡 今湧州) 至靺鞨城府三十九驛

- ③ 又三國史云 百濟末年 渤海靺鞨新羅分百濟地(據此則靺鞨海又分爲二國也) 羅人云 北有靺鞨 南有倭人 西有百濟 是國之害也 又靺鞨地接阿瑟羅州 又東明記云 卒本城地連靺鞨(或云今東真) 羅第六祗麻王十四年(乙丑) 靺鞨兵 大入北境 襲大嶺柵 過泥河 後魏書 靺鞨作勿吉 指掌圖云 挹婁與勿吉 皆肅慎也
- ④ 黑水沃沮 按東坡指掌圖 辰韓之北有南北黑水 按東明帝立十年 滅北沃沮 溫祚王四十二年 南沃沮二十餘家來投新羅 又赫居世五十二年 東沃沮來獻良馬 則又有東沃沮矣 指掌圖 黑水在長城北 沃沮在長城南.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해에 대한 기록, 말갈에 대한 것, 흑수·옥저에 대한 것이다. ④黑水沃沮 이하의 글은 원제목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흑수 원래 독립된 항목이었는데 후대에 다른 항목에 잘못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²⁹⁾ 이 때문에 본고에서 굳이 흑수·옥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 발해 인식 내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목 ①靺鞨(一作勿吉)渤海를 통해 본 발해 인식이다. 이유는 내용과 연결지어 靺鞨(一作勿吉)渤海가 바로 국명을 의미하는지, 靺鞨과 渤海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三國史記』의 발해 관련 기사에는 발해에 대한 지칭으로 渤海靺鞨, 靺鞨渤海, 渤海, 靺鞨, 凶殘, 夷俘, 北國, 北狄 등이 등장한다. 물론 모두가 고려시대의 표현은 아니다. 인용한 자료에 등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세기 초 이래 국가의 공식적인 이름인 발해 대신 발해에 말갈을 앞뒤로 붙여 표기하거나 단순히 말갈이라 칭한 이유는, 신라가 발해를 말갈계 국가로 인식했

29)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堉書房, 26쪽.

거나 아니면 발해와의 대결적 상황에서 신라가 발해를 낮추어 부른 것이다.

그런데 위의 제목 靺鞨(一作勿吉)渤海는 대조영이 세운 국가 이름 발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말갈과 발해를 서로 분리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체 내용의 후반부에는 상당한 분량이 단지 말갈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목은 발해를 비하하는 의미의 ‘靺鞨渤海’가 아닌 ‘靺鞨과 渤海’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앞서 살펴본 『歷代年表』에서도 靺鞨渤海니 渤海靺鞨과 같은 국명 대신에 단지 渤海라는 이름으로 두 연호를 거론한 것에서 입증된다. 그러므로 일연은 국호의 표현을 통해서 발해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의 제목 아래 발해와 말갈을 연이어 설명했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인용 자료를 통해 본 일연의 발해에 대한 이해 수준의 깊이 문제이다. 중국 측의 참고자료는 『통전』, 『지장도』, 『고금군국지』, 『후한서』, 『후위서』 등이며, 한국 측은 『삼국사』, 『신라고기』, 『동명기』가 등장한다. 『삼국사』는 이른바 『구삼국사』인지 『삼국사기』인지 논란이 있는데, 다른 서명들 역시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발해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구당서』(발해말갈전)와 『신당서』(발해전)의 자료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인용서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인용된 내용도 서술이 잘못된 것이 있다. 게다가 국명은 물론 연대에서조차 여러 곳에서 착오가 보인다.

일례로 글 첫머리에 『通典』의 내용을 수록하였다지만 “通典云” 이하의 글들은 『통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³⁰⁾ 실제로 『통전』에는 渤海傳이 없다. 이는 도리어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판각상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震旦은 振國(『구당서』) 혹은 震國(『신당서』)이

30) 송기호는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通典』이 杜佑(735~812)가 편찬한 것이 아닌 동일한 이름의 다른 책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宋基豪, 1988, 앞의 논문, 73쪽.

옳다. 게다가 “又聖德王三十二年 玄宗甲戌”이라 하였지만 이 역시 연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이편의 靺鞨渤海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일연의 발해사 정리 노력은 자료 수집과 서술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난다. 만약 일연이 간단한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靺鞨渤海條를 설정하여 서술했다면 『삼국유사』의 발해 관계 기사는 정확성에 많은 의문이 든다. 서명처럼 삼국시대의 逸事遺聞적인 내용을 모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일연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연의 발해사 이해에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일연이라는 한 인물의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13세기 일연이 살아가던 시대 전체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②의 발해사 관련 내용을 통해 본 일연의 발해 인식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데, ②의 발해에 대한 내용은 연원, 건국과정, 왕위계승, 연호, 해동성국, 지방제도, 지리, 교통로, 멸망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매우 넓다. 물론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거나 가지런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위에 제시된 원문 중 『通典』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渤海本粟末靺鞨” 부분과 이에 대한 夾註는 일연의 발해 인식을 살피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이 부분은 발해의 연원이나 국가의 성격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가 여러 자료를 인용해 서술하였지만 본문 중에 夾註나 按說을 통해 그의 발해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인용한 기록 다음에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라 한 부분은 주목된다.

많은 자료 중 대조영의 출자나 발해의 건국 과정에 대해 高麗別種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³¹⁾ 『武經總要』(前集16下)처럼 夫餘의 別種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靺鞨別種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삼국유사』 이외에는 없

31) 宋基豪, 1995, 앞의 책, 35쪽.

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표기에 해당한다. 일연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가 인용한 사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⑤ 『通典』(『新唐書』)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다. 그 추장 대조영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스스로 震旦이라 했다. 선천 연간에 비로소 말갈이란 이름을 버리고 발해라 하였다.”
- ⑥ 『三國史』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그 餘黨을 모아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지해서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 ⑦ 『新羅古記』 “고구려의 옛 장군 대조영의 성은 대씨이다. 그는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⑤는 중국 측의 사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라 하였으므로 발해가 말갈계 국가임을 암시하는 입장이고, ⑥과 ⑦은 한국 측 사서를 인용한 것으로 발해가 고구려 계통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런데 일연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이상의 여러 글을 살펴보면 발해는 바로 말갈의 별종으로서 다만 開合이 같지 않을 뿐이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연의 견해인 靺鞨別種은 한국 측의 고구려 계승국가로서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통전』(『신당서』)의 견해를 많이 수용한 듯하다. 그렇지만 ‘別種’과 ‘但開合不同而已’³²⁾라는 말이 말갈 다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해를 고구려 계통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보고 있는 『삼국사』나 『신라고기』의 기록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므로 靺鞨別種이라는 의미에는 발해가 『통전』(『신당서』)식의 순수한

32) ‘但開合不同而已’에서 開合의 의미를 송기호는 종족간의 이합집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성시는 건국과 멸망으로 해석하였다. 그중 송기호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宋基豪, 1995, 앞의 책, 37쪽; 李成市, 1999, 「토론문: 「정진현, 발해사 사료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에 대해서」, 『고구려연구』 6, 학연문화사, 69쪽.

33) 石井正敏은 “按上諸文의 諸文은 『三國史』와 『新羅古記』만 지칭하며, 靺鞨別種은 두 사서에서 추론한 결론이 아니고 一然 혹은 협주를 붙인 자의 뇌리에 발해는 말갈인의 나라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石井正敏, 1978, 앞의 논문, 56~57쪽.

말갈계 국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삼국사』, 『신라고기』식의 순수한 고구려 계통의 국가도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발해가 고구려계 국가인가, 아니면 말갈계 국가인가에 대한 일연 나름의 고민이 묻어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단 靺鞨別種이라는 일연의 발해 인식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은 그가 이해한 靺鞨은 과연 무엇이며, 別種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靺鞨渤海條 내에 중국 측의 자료를 통한 말갈과 한반도 내의 말갈이 소개되고 있으나, 오늘날 발해사 연구의 최대 현안인 말갈의 실체를 일연이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문 가운데 말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연의 설명이 없고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면서 말갈을 소개했으므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넷째, 발해와 말갈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말갈에 대한 ③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일연은 한반도 내의 말갈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였고, 중국 측 자료도 인용하며 말갈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숙신→읍루→말갈로 이어지는 말갈의 계보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전체 내용으로 미루어 일연은 발해와 함께 말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비록 말갈사의 이해와 문제 해명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말갈을 우리 민족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항목을 靺鞨渤海, 즉 말갈과 발해로 지어 한국사의 한 부분에 포함시켰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³⁴⁾

다섯째, 『삼국유사』의 발해 관련 기록의 특징 중 하나는 발해 유민에 대한 언급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발해 멸망 전부터 시작된 유민의 고려 내투는 약 200년 가까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내투 사례는 『고려사』 등에 자세히 나오고 있으며, 그 내투민의 수도 수만을 헤아린다. 1117년을 기점으로 이후의 내투 사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연이 살아가고 『삼국유사』가 찬술되던 13세기에는 유민 후예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太集成(大集成)이다.

34) 宋基豪, 1988, 앞의 논문, 78쪽.

1232년의 강화도 천도는 일부 지배층의 정권 보전을 위한 것이든, 단호한 대몽항쟁의 결의이든 발해 유민의 후예 태집성의 뜻이 크게 반영되어 최우에 의해 단행된 것이다. 태집성은 대장군·서북면병마사·어사대부·재추·수사공 등을 거쳤으며, 태집성의 女는 최우와 혼인하는 등 태집성가는 최우 정권기에 권력의 최정상에 도달하였다.³⁵⁾

일연은 대몽항쟁기와 원간섭기를 직접 체험한 인물로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들은 그의 사상과 역사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강화도 천도와 개경 환도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팔만대장경이 최씨정권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최우의 측근인 태집성이 발해계 인물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연은 발해 유민 또는 그 후예에 대해 나름대로는 파악이 가능하였던 시기에 살았다. 『삼국유사』보다 약간 뒤에 나온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발해 유민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일연이 발해 유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의 발해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 『삼국유사』의 발해 인식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발해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가 지니는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현전 사서 중 처음으로 발해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유사』는 발해 관련 내용의 소략함을 떠나 사학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은 발해를 한국사 체계에 넣어 설명하려는 일연의 목차상 의도와 발해를 靺鞨別種으로 보려는 그의 발해 인식이 외관상으로는 서로 尙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靺鞨別種이라는 단어가 발해라는 나라의 모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서의 체제와 인식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의 발해 인식을 대표하는 ‘靺鞨別種’은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

35) 李孝珩, 2000, 「고려시대 渤海遺民 後裔의 사회적 지위 - 大氏系 인물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5, 178 ~ 182쪽.

려의 옛 장군이지만 그 이전에 말갈 계통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옛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라는 표현과는 매우 대조적인 발해 인식이다.

IV. 맺음말

위에서 『歷代年表』와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하여 일연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연이 살았던 13세기 후반 고려시대의 정치·사회·사상사의 변동과 연계하여 발해 인식을 깊이 있게 그려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歷代年表』를 통해 본 발해 인식의 문제이다. 『歷代年表』는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예비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는 서로 떼어내 설명할 수 없다. 『歷代年表』에는 海東諸國置라는 제목 아래 발해의 두 연호가 판각돼 있으며 연호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이 새겨져 있다. 두 연호는 발해 무왕대와 대이진대에 사용한 仁安과 咸和이다. 발해가 크게 발전하던 두 시기의 연호를 제시한 것은 일연이 발해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발해를 한국사 내에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삼국유사』를 통해 본 일연의 발해 인식에 대해서는 체제와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사서의 체제면에서 볼 때 王曆에서 발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일연의 발해 인식에 주목되는 부분이지만 그의 역사 인식이 신라사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이편에 靺鞨渤海條를 설정한 것은 그가 발해를 한국사로 이해한 대표적인 증거이다. 하지만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이름이나 내용을 통해 발해를 한국 고대사의 역사계승체계에 위치

36) 李孝珩, 2004a, 앞의 논문, 177쪽.

지우기는 어렵다. 예컨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식의 계승체계는 도저히 자리잡을 수 없었다. 나머지 편은 발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없어 발해 인식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용적인 측면은 靺鞨渤海條를 여러 방향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靺鞨渤海條는 크게 발해, 말갈, 흑수·옥저의 세 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흑수·옥저 이하는 다른 항목이 잘못 붙여진 것으로 보고 논외로 하였다. 제목은 발해를 비하하는 뜻에서 '말갈발해'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상 '말갈과 발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음 일연이 인용한 사서명을 보면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여러 자료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발해사 연구의 기본 사서이자 그 출발인 『구당서』와 『신당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발해 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靺鞨渤海條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발해는 이에 靺鞨別種인데 다만 開合이 不同할 따름이다”라는 일연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다. 일연이 말하는 靺鞨別種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발해가 순수한 말갈계 국가로서 한국사와 동떨어진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歷代年表』에서 海東諸國置라는 제목 아래 발해의 두 연호를 제시하였고, 『삼국유사』 기이편에 靺鞨渤海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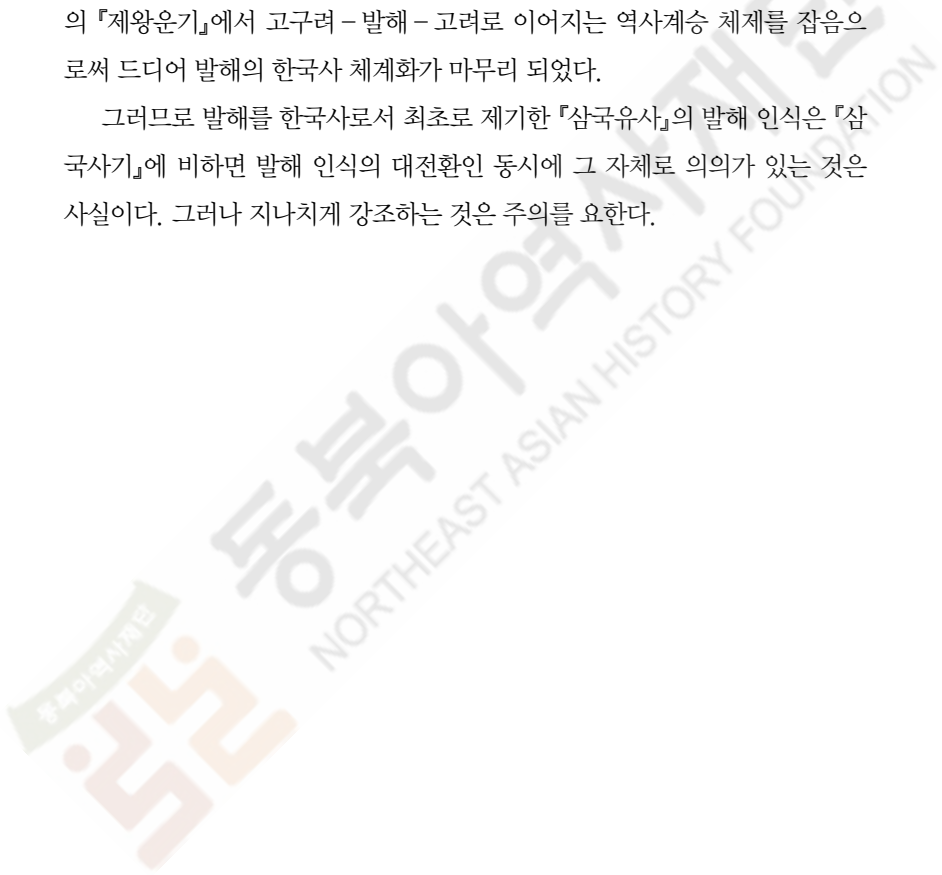
요컨대 고려 후기 13세기를 살다간 승려이자 역사가 일연이 발해를 한국사의 범주에 넣어 이해한 것은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전하는 사서 가운데 靺鞨渤海라는 하나의 항목을 넣어 발해사를 서술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해 인식에서 한계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 한계성이라는 것은 일연이라는 한 개인의 한계성일 수도 있지만, 13세기 고려가 처한 현실에서 나온 한계성일 수도 있다.

『삼국유사』는 내용 구성상 신라사와 불교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발해사는 왕력에서 배제되었으며, 기이편에서는 아주 조그만 하나의 항목만을 차지하였고, 여타 편목에서는 발해라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 없다. 일연이 발해를 한국사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라와 비슷한 비중을 부

여하는 남북국시대와 같은 역사 인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일연의 발해 인식은 '발해는 신라 북방에 있던 靺鞨別種의 국가'였다. 그렇다고 발해의 주체민족이 말갈이라는 식의 말갈계 국가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해가 한국사로 온전히 자리잡는 단계의 역사 인식이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였다. 『삼국유사』보다 몇 년 뒤에 나온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고구려 - 발해 -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 체제를 잡음으로써 드디어 발해의 한국사 체계화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므로 발해를 한국사로서 최초로 제기한 『삼국유사』의 발해 인식은 『삼국사기』에 비하면 발해 인식의 대전환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ABSTRACT]

Iryon's Awareness on the History of Balhae through
Yeokdaeyeonpyo and Samgukyusa

Lee, Hyo-H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how Iryon, a monk of the late Koryo dynasty, had been aware of Balhae. It has been a few studies on Iryon's awareness of Balha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gardless of their length, these studies provide us with a clue to the problem how Iryon had been aware of Balhae or Malgal.

While it is said that Iryon wrote a number of books, few books are survive today. Only one of his survives is Samgukyus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tents on Balhae showing in the book closely in order to grasp Iryon's view of history. It is helpful to consider the contents of Yeokdaeyeonpyo(Chronological table of History) prior to studying Samgukyusa. This is because it is known that Yeokdaeyeonpyo was published by Iryon at Inhungsa in 1278. Although there are not enough contents about Balhae in Yeokdaeyeonpyo, it h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to consider in its own way.

Yeokdaeyeonpyo is about the records of Balhae's era names rather than describing many things about Balhae such as general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There are about 10 era names of Balhae but only two era names, or Inan and Hamhwa are presented in this wooden board. This is not because Iryon did not know the other era names but because he would like to select two era names in

two prosperous eras of Balhae : King Daehummu and King Daeyjin. To sum up, Iryon knew of the existence and era names of Balhae through *Yeokdaeyeonpyo*. He also had the historical awareness that Balhae could be included in the history of Korea.

Next,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Balhae through *Samgukyusa*. *Samgukyusa* has the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basic historical book to study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Also, the existing results of studying this have reached a significant level. In this paper, awareness of Balhae was made by dividing *Samgukyusa* two aspects, that is, systems and contents.

There is an article named Malgal-Balhae in *Samgukyusa* and the content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y are about Balhae, Malgal and Heuksu and Okjeo, respectively. The contents are characterized by close relationship between Balhae and Malgal.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ryon, the author of *Samgukyusa*, insisted that Balhae was a branch of Malgal. This description is not found in any other historical book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Balhae was founded by Malgal tribesmen. This is considered that Balhae was neither the country of Malgal by descent nor that of Goguryeo by descent.

Based on the above statements, it is *Yeokdaeyeonpyo* possible to sum up the study on Iryon's awareness of Balhae through *Yeokdaeyeonpyo* and *Samgukyusa* as following.

Considering detailed matters, not all Iryon's way of understanding Balhae is perfect. Nevertheless, it is no wonder that Iryon regarded Balhae as a part of Korean history. Balhae was considered as a country of Korea in *Yeokdaeyeonpyo*, in which Balhae's era names were mentioned. Furthermore, *Samgukyusa* is the first book where

Balhae was included in the history of Korea by setting up the article of Malgal-Balhae. This fact is very important. While Iryon considered Balhae as a part of Korean history, he did not see Balhae as important as Samguk and Koryo in its level and status. In particular, comparing Balhae with Silla, he placed the higher value on Silla than Balhae. It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much more contents on Silla than those on Balhae in analyzing Samgukyusa.

keywords

Iryon, Yeokdaeyeonpyo, Samgukyusa, the late of Koryo dynasty, awareness on Balhae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指掌圖』

임 상 선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옛 땅에 건국되었다. 발해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한국사 중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심지어 중국 학계는 발해사가 중국사의 일부라 주장하고, 최근에는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가기관도 발해사의 자국사 편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발해는 건국과정에서 다수의 고구려인이 참여하고, 건국 후에도 스스로 부여의 遺俗을 이어받고 고구려의 옛 땅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國書에서 스스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천명하고, 그 왕은 ‘高麗國王’이라 자칭하였고, 상대편인 일본도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¹⁾

또한 발해는 건국 초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건국을 알렸고, 대외교통로 중

1) 한규철, 2004a,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33; 韓圭哲, 2004b, 「高句麗의 繼承性을 통해 본 渤海國의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고구려연구재단, 2005,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연구총서 7).

에 新羅道가 있었다는 것을 중국 측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한때 양국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 730년대에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은 더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²⁾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신라나 그 이후의 고려가 이웃 나라인 발해에 대하여 남긴 기록이나 인식은 발해를 이해하는 데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려시대 기록 중 발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帝王韻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각 사서에는 다른 곳에 없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一然이라는 불교 승려에 의한 기록으로서 후자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발해는 紀異篇 靺鞨渤海조에 전제되어 있는데, 일연이 현존하지 않는 기록 등을 참고로 하여 발해를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발해의 건국, 발해의 영역, 그리고 발해의 건국자 말갈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기왕의 연구에서도 말갈발해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나타난 일연의 발해 인식, 혹은 다른 자료를 비교하여 기사 내용의 신빙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인 『삼국유사』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갈발해조 전체적인 문맥이나 일연의 발해 인식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발해 당시의 정황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地圖類에 주목하고자 한다.

2) 宋基豪, 1989, 「東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市民講座』 5, 一潮閣.

3) 송기호, 1988,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韓國史論』 19,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鄭鎮憲, 1998, 「渤海史史料와 渤海史認識의 變遷」, 『高句麗研究』 6, 高句麗研究會; 朴眞淑, 2005, 「一然의 발해사인식과 三國遺事」, 『三國遺事研究』 창간호, 一然學研究院; 三品彰英 撰, 1975, 『三國遺事考証』 上, 株式會社 塙書房.

II. 말갈발해조의 인용자료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서 일연은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기왕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말갈발해조⁴⁾의 내용을 인용서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와 인용서

『삼국유사』		비고
순서	靺鞨(혹은 勿吉) 渤海 조	인용서 ⁵⁾ (관련사서)
①	『通典』에서 이르길, 渤海는 본래 粟末靺鞨이다. 그 추장 祚榮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震旦이라고 하였다. 先天 중(玄宗 壬子)에 비로소 靺鞨이란 칭호를 버리고 오로지 渤海라고 칭하였다. 開元 7년(己未)에 祚榮이 죽으니, 시호를 高王이라 하였다. 세자가 왕위를 이으니, 明皇이 典冊을 주고, 왕위를 계승하여 사사roi 年號를 고쳤다. 드디어 海東盛國이 되니, 그 땅에 5京·15府·62州가 있었다. 後唐 天成 초에, 契丹이 공격하여 무찌르고, 그 후 거란의 지배를 받았다.	통전 『新唐書』 발해전 『舊唐書』 발해전
②	『三國史』에 이르길, 儀鳳 3년 高宗 戊寅에 高麗의 殘孽이 무리지어 북쪽으로 太伯山 아래에 의지하고, 國號를 渤海라 하였다. 開元 20년에 明皇이 장수를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또 聖德王 32년 玄宗 甲戌에 渤海靺鞨이 바다를 건너 唐의 登州를 공격하니, 玄宗이 이를 토벌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사
③	『新羅古記』에 이르길, 高麗의 옛 장수 祚榮은 姓이 大氏이고, 패잔병을 모아 大伯山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國號를 渤海라 하였다고 하였다.	신라 고기

(계속)

4) 『삼국유사』 제1권, 紀異 권제1, “靺鞨(一作勿吉) 渤海, 通典云渤海, 本粟末靺鞨, 至其酋祚榮立國, 自號震旦, 先天中(玄宗壬子)始去靺鞨號, 專稱渤海. 開元七年(己未)祚榮死, 諡爲高王. 世子襲立, 明皇賜典冊襲王, 私改年號,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後唐天成初, 契丹攻破之, 其後爲丹所制. (三國史云儀鳳三年,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 開元二十年間, 明皇遣將討之; 又聖德王三十二年, 玄宗甲戌, 渤海靺鞨越海侵唐之登州, 玄宗討之. 又新羅古記云高麗舊將祚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伯山南, 國號渤海.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 按指掌圖, 渤海在長城東北角外) 賈耽郡國志云渤海國之鴨綠南海扶餘羅城四府, 並是高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地理志, 朔州領縣有泉井郡, 今湧州)至羅城府, 三十九

『삼국유사』		비고
순서	『靺鞨(혹은 勿吉) 渤海』 조	인용서 ⁵⁾ (관련사서)
④	위의 여러 글을 살피건대, 渤海는 곧 靺鞨의 別種인데 단지 開습이 같지 않을 뿐이다.	일연 의견
⑤	『指掌圖』를 살피건대, 渤海는 長城의 東北角 바깥에 있다.	지장도
⑥	賈耽의 『郡國志』에 이르길, 渤海國의 鴨綠·南海·扶餘·樞城의 4府는 모두 高麗의 옛 땅이다. 新羅 泉井郡으로부터 樞城府에 이르도록 39驛이 있다.	군국지 가탐은 '발해국'이라고 함
⑦	新羅 泉井郡(『地理志』에 朔州의 領縣에 泉井郡이 있는데, 지금의 湧州이다)	지리지
⑧	『三國史』에 이르길, 百濟 말년에 渤海靺鞨·新羅가 百濟의 땅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신라인이 말하길, 북에 靺鞨이 있고, 남에 倭인이 있고, 서에 百濟가 있으니, 이것이 나라의 흠이라고 하였다. 또 靺鞨의 땅이 阿瑟羅州와 접하였다.	삼국사
⑨	百濟 말년에 渤海靺鞨·新羅가 百濟의 땅을 나누었다.	
⑩	이것에 근거하면, 渤海는 또 나누어 2國이 된다.	일연 의견
⑪	『東明記』에 이르길, 卒本城 땅이 靺鞨(혹은 지금 東眞이라 한다)과 잇닿아 있다고 하였다. 신라 제6대 祗麻王 14년(乙丑)에 靺鞨兵이 대거 北境을 침입, 大嶺柵을 습격하여 泥河를 지났다고 하였다.	동명기
⑫	『後魏書』에 靺鞨은 勿吉이라 한다.	후위서
⑬	『指掌圖』에 이르길, 挹婁와 勿吉은 모두 肅慎이다.	지장도
⑭	黑水·沃沮. 東坡의 『指掌圖』를 살피건대, 辰韓의 북쪽이고, 南北 黑水가 있다.	지장도
⑮	살피건대, 東明帝 즉위 10년 北沃沮를 멸망시켰다. 溫祚王 42년, 南沃沮의 20여家が 來投하였다. 新羅는 또한 赫居世 53년, 東沃沮가 와서 良馬를 바쳤으니, 즉 東沃沮가 있는 것이다.	기타 일연 의견
⑯	『指掌圖』에 黑水가 長城 북에 있고, 沃沮는 長城의 남에 있다.	지장도

驛。又三國史云百濟末年，渤海靺鞨新羅分百濟地。(據此，則渤海又分爲二國也) 羅人云：北有靺鞨，南有倭人，西有百濟，是國之害也。又靺鞨地契阿瑟羅州。又東明記云：卒本城地連靺鞨(或云今東眞)。羅第六祗麻王十四年(乙丑)，靺鞨兵大入北境，襲大嶺柵，過泥河。後魏書靺鞨作勿吉；指掌圖云：挹婁與勿吉皆肅慎也。黑水沃沮，按東坡指掌圖，辰韓之北，有南北黑水。按東明帝立十年滅北沃沮溫祚王四十二年南沃沮二十餘家來投。新羅又赫居世五十三年東沃沮來獻良馬，則又有東沃沮矣。指掌圖，黑水在長城北，沃沮在長城南”。

5) 三品彰英 撰, 1975, 앞의 책, 354 ~ 363쪽 참조.

‘말갈발해조’에 보이는 인용서와 그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通典』 1회, 『三國史』 2회, 『新羅古記』 1회, (東坡)『指掌圖』 4회, (賈耽)『郡國志』 1회, 『地理志』 1회, 『東明記』 1회, 『後魏書』 1회이다. 전거를 밝히지 않은 내용의 상당 부분도 『신당서』 혹은 『구당서』의 발해전을 참조하고 있다. 심지어 일연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신당서』 발해전과 거의 동일하고, 『신당서』의 내용을 논지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이다.⁶⁾ 이와 같이 다수의 사서를 참고하며, 전거를 밝힌 것은 발해에 대한 내용이 저자 일연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인용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장도』이다. 이것은 일연이 말갈발해조에서 발해의 지리적 공간을 파악하는 데 『지장도』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장도』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알려져 왔을 뿐인데, 그중에서도 三品彰英撰 『三國遺事考証』 上의 주석이 주목된다.

指掌圖: 방위, 지리를 기록한 핸드북 같은 것이었을까. 혹은 略地圖의 類인가.

長城: 발해국은 장성의 동북각 바깥에 있다고 하는 『지장도』의 장성은 고구려, 신라, 왕씨 고려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장의 말미에 ‘옥저는 장성 남에 있다’고 하였다. 옥저의 거주지로 생각하여 이 장성은 분명히 고구려의 장성이다.⁷⁾

黑水: 黑水沃沮 4자는 이하의 기사에 대한 항목 표제어적인 어구이다. 前段의 ‘말갈발해’ 항의 기사라 한다면, 흑수는 흑수말갈(흑수를 지명이라 본다면, 그들의 거주지를 흐르는 흑룡강)을 가리키는 것인데, 後段의 기사로 보아, 이 ‘흑수’는 현재의 咸興을 본거지로 당말에서 역사상에 이름을 드러낸 黑水三十部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⁸⁾

6) 朴眞淑, 2005, 앞의 논문, 107~108쪽.

7) 三品彰英撰, 1975, 앞의 책, 358쪽.

8) 三品彰英撰, 1975, 앞의 책, 361~362쪽.

東坡指掌圖: 동파는 宋의 文人 蘇軾인데, 『內閣文庫圖書第二部漢書目錄』에는 『歷代地理指掌圖』(1권, 西漢 이하 欠, 宋 소식 明版) 4책, 『역대지리지장도』 明版 1책이라 있고, 『宋書』 예문지, 地理類의 部에는 『指掌圖二卷』이 보이는데, 이것에는 저자명이 빠져 있다. 일본에는 久安 6년(1150)에 宋의 商客 劉文冲이 가져오고, 藤原賴長에게 『五代史記』 『唐書』와 함께 준 것이 『宇槐記抄』에서 볼 수 있다.⁹⁾

앞의 『三國遺事考証』 上에서는 『지장도』를 방위·지리를 기록한 핸드북 혹은 略地圖의 類로서 소식의 『지장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이 西漢 이후가 없기 때문에 원본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長城을 옥저의 거주지를 근거로 고구려의 장성으로 단정하고, 흑수를 함흥 일대의 흑수삼십부로 비정하고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도 있다.

송기호도 “‘按指掌圖, 渤海在長城東北角外’는 일연이 『지장도』를 보고 발해의 위치를 찾아 기술한 데에 불과하여 그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 곳이다”라 하고, 또한 “소동파가 지은 『지장도』도 지리도서이기 때문에 그 위치만 명기하였을 뿐 발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 바가 있다.¹⁰⁾ 기왕의 주장을 좇아 『지장도』를 지리도서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왕의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 대한 설명은 『지장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갈발해’조를 해석하고, 나아가 일연의 발해인식까지도 추정하였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9) 三品彰英 撰, 1975, 앞의 책, 363쪽.

10) 송기호, 1988, 앞의 논문, 75쪽 및 78쪽.

III. 『역대지리지장도』 중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지장도』에 대해서는 송대 蘇軾의 저작이라는 것만이 알려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것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필자가 『삼국유사』의 『지장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송대 『지장도』를 국내학계에 처음으로 본격 소개한 아래의 글을 접하고부터였다.

지도에 나타난 송대 고려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구역을 나타내는 『歷代地理指掌圖』에 수록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서 한반도에는 옥저, 고려, 평양, 신라, 백제를 명기하였다.

고구려와 관련된 지도로 남송 紹興 6년(1136) 10월에 석각된 「華夷圖」가 있다. 「화이도」에서의 우측 상단의 상황을 보면 장성 이북, 요수 이동으로 渤海, 女眞, 女安, 定安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부여와 읍루가 표시되어 있다.¹¹⁾

위의 글에서 『역대지리지장도』와 「화이도」를 고구려와 관련지어 주목하였다. 특히 『歷代地理指掌圖』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지리도집이고, 저자는 북송의 蘇軾보다는 촉사람 稅女禮가 북송 元符 시기(1098~1100)에 편찬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였다. ‘고구려와 관련된 지도’로 남송 紹興 6년(1136) 10월에 석각된 「華夷圖」는 거란의 ‘大遼國’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1117~1125년 사이로 추정되며, 당대 賈耽의 「海內華夷圖」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특히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화이도」가 당대 가탐의 「해내화이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가탐은 당대의 재상으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字가 敦詩이고 滄州 南皮人으로 貞元 9년(793), 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를 역임하였다. 그는 地理學을 좋아하여 四夷의 사

11) 박인호, 2007, 「전통시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고구려인식」, 한국사학사학회 제 65회 연구발표회자료집, 10~11쪽.

신이나 그곳에서 돌아온 사신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 그 산천과 토지의 終始를 묻고, 이것으로 九州의 夷險과 百蠻의 土俗을 구분하고 源流를 갖추어 연구하였다. 정일 17년(801)에 『海內華夷圖』와 『古今郡國縣道四夷述』 40권을 찬술하였다. 工人에게 「해내화이도」 1軸을 그리게 하니, 너비가 3丈에 가로가 3丈 3尺이고, 대략 1寸이 100리가 되었다. 아울러 찬술한 『고금군국현도사이술』 40권의 경우 中國은 禹貢을 머리로 하고, 外夷는 차례를 정하여 역사가 시작되고, 郡縣은 그 增減을 실마리로 삼고, 번이 부락은 그 성하고 쇠함을 서술하였다. 지난날 郡國의 제목은 검게, 지금의 州縣의 제목은 붉게 표시하니, 보기에 간편하였다. 후에 진봉되어 위국공(魏國公)이 되었다고 한다.¹²⁾

1_ 「역대지리지장도」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

앞에서 말한 「지장도」는 바로 송대에 만들어진 『歷代地理指掌圖』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리학 역사가인 曹婉如¹³⁾의 연구에 의하면 「역대지리지장도」는 중국의 역대 政區 연혁을 표시한 역사지도집으로, 현존하는 가장 이른 것 중 하나이다.¹⁴⁾ 지도와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도는 44폭이고, 매 폭의 지도에는 「箋注」라고 하여 문자 설명이 붙어 있다.

「역대지리지장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稅安禮설, 蘇軾설, 혹은 작자 미상설이 있다. 세안례가 「지장도」의 작자라고 하는 기록은 南宋 陳振孫의 저작인 『直齋書錄解題』 권8 지리류¹⁵⁾를 시작으로 元初 馬端臨(1254 ~

12) 『舊唐書』 권138, 列傳 제88 및 『全唐文』 권394, 賈耽 「進海內華夷圖及古今郡國縣道四夷述表」 참조.

13) 艾素珍, 2003, 「紀念著名地理學家曹婉如教授80誕辰座談會」在京召開, 『中國科技史料』 2003年 1期 참조.

14) 「역대지리지장도」에 관한 아래의 내용은 曹婉如, 1999a, 「『歷代地理指掌圖』研究」, 曹婉如·鄭錫煌·黃盛璋·鈕仲勛·任金城·鞠德源 編, 『中國古代地圖集』(戰國—元), 文物出版社, 31 ~ 34쪽 참조.

15) 曹婉如, 1999a, 위의 논문, 31쪽, 「地理指掌圖一卷, 蜀人稅安禮撰, 元符中欲上之朝, 未及而卒. 書肆所刊, 皆不著名氏, 亦頗闕不備. 此蜀本有涪右任礎序, 言之頗詳」.

1323)의 저술 『文獻通考』와 명대 楊慎이 지은 『丹鉛總錄』¹⁶⁾에서 보인다.

작자가 소식이라고 하는 주장은 남송본 『역대지리지장도』 첫 쪽에 ‘역대지리지장도序’가 있는데, 그 끝에 “眉山蘇軾謹序”라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남송 趙亮夫도 순희 12년(1185)에 쓴 한편의 서문에서 “東坡先生이 일찍이 지리를 취하여 시대별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指掌이라 하였다. 위아래로 수천년이 실리고, 離合分并과 增省廢置가 갖추어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하고,¹⁷⁾ 또한 王應麟(1223~1296)도 “蘇軾이 만든 지장도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인 帝嚳으로부터 송대에 이르도록 무릇 44도가 있다”고¹⁸⁾ 하였다. 작자가 어느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朱子語類』 권138에 보이고, 王重民 편찬의 『中國善本書提要』 史部, 地理類 등에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44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북송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¹⁹⁾

『역대지리지장도』는 송대에 이미 5~6종 내외가 있었고, 오늘날 일본 東洋文庫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중의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宋刻본이다.²⁰⁾ 그 밖의 것은 대부분 명대에 만들어진 明刻본이며,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도 바로 명각본이다.²¹⁾ 『역대지리지장도』 44폭 지도는 주로 구역의 연혁을 표시한 것이며, 위로는 帝嚳으로부터 아래로는 宋朝에 이르는 각 시대별 지도가 적게는 1폭, 많게는 5폭이고,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다. 송각본 『역대지리지장도』의 구성과 수록된 각 지도의 명칭과 그 분량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6) 曹婉如, 1999a, 앞의 논문, 32쪽.

17) “東坡先生嘗取地理, 代別爲圖, 目之曰指掌. 上下數千載, 離合分并, 增省廢置, 靡不該備. 此絳胸中元自有名山大川, 是以直寄筆墨如此易也. 余假守桐廬, 觀書籍中舊有此圖, 字劃漫不可考, 乃加校勘, 命工鍍木, 續有升改, 亦并足之”.

18) 『玉海』 권14, “祥符州縣圖經”; 曹婉如, 1999a, 앞의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蘇軾爲指掌圖, 始帝嚳迄聖朝, 爲圖凡四十有四. 其序曰”.

19) 책의 마지막의 ‘總論’ 부분은 남송대 혹은 조량부가 增補한 것이라고 한다(曹婉如, 1999a, 앞의 논문, 32쪽).

20) 曹婉如, 1999a, 앞의 논문, 31쪽. 동양문고본의 영인본으로는 1989, 『宋本歷代地理指掌圖』, 上海古籍出版社 본이 있다.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훤古朝 61~65)은 표제가 ‘指掌圖’로서 필사본이다. 간기는 미상이고 전체 54장, 길이 54.9×너비44.9cm 크기이다.

〈표 2〉 『역대지리지장도』 수록 지도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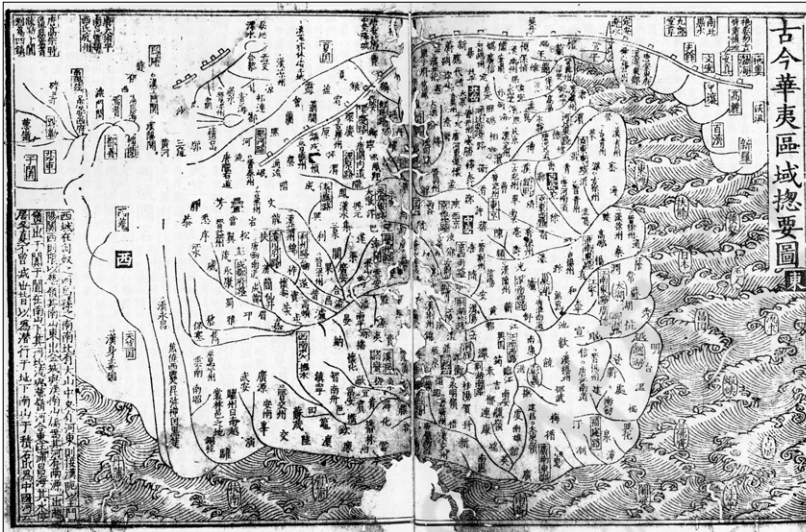
지도 순서	지도명	영인본 페이지	비고
	역대지리지장도서(歷代地理指掌圖序)	2	
	역대지리지장도목록(歷代地理指掌圖目錄)	5	
제1도	고금화이구역총요도(古今華夷區域總要圖)	6 ~ 8	설명8 ~ 9쪽
제2도	역대화이산수명도(歷代華夷山水名圖)	10 ~ 11	
제3도	제곡구주지도(帝嚳九州之圖)	12 ~ 13	
제4도	우순십유이주도(虞舜十有二州圖)	14 ~ 15	
제5도	우적도(禹迹圖)	16 ~ 17	
제6도	상구유도(商九有圖)	18 ~ 19	
제7도	주직방도(周職方圖)	20 ~ 21	
제8도	춘추열국지도(春秋列國之圖)	22 ~ 25	
제9도	칠국양지도(七國壤地圖)	26 ~ 27	
제10도	진군현천하도(秦郡縣天下圖)	28 ~ 29	
제11도	유항중분도(劉項中分圖)	30 ~ 31	
제12도	서한군국도(西漢郡國圖)	32 ~ 33	
제13도	한이성팔왕도(漢異姓八王圖)	34 ~ 35	
제14도	한오초칠국도(漢吳楚七國圖)	36 ~ 37	
제15도	동한군국지도(東漢郡國之圖)	38 ~ 39	
제16도	삼국정치도(三國鼎峙圖)	40 ~ 41	
제17도	서진군국도(西晉郡國圖)	42 ~ 43	
제18도	동진중흥강좌도(東晉中興江左圖)	44 ~ 45	
제19도	유송남국도(劉宋南國圖)	46 ~ 47	
제20도	소제남국지도(蕭齊南國之圖)	48 ~ 49	
제21도	소양남국지도(蕭梁南國之圖)	50 ~ 51	
제22도	남진남국도(南陳南國圖)	52 ~ 53	
제23도	원위북국도(元魏北國圖)	54 ~ 55	
제24도	고제북국도(高齊北國圖)	56 ~ 57	
제25도	후주북국도(後周北國圖)	58 ~ 59	
제26도	수씨유국도(隋氏有國圖)	60 ~ 61	
제27도	당십도도(唐十道圖)	62 ~ 63	

(계속)

22) 1989, 『宋本歷代地理指掌圖』, 上海古籍出版社 참조.

지도 순서	지도명	영인본 페이지	비고
제28도	당군명도(唐郡名圖)	64~65	
제29도	당십오채방사도(唐十五採訪使圖)	66~67	
제30도	이당번진강계도(李唐藩鎮疆界圖)	68~69	
제31도	주량급십국도(朱梁及十國圖)	70~71	
제32도	후당급오국도(後唐及五國圖)	72~73	
제33도	석진급칠국도(石晉及七國圖)	74~75	
제34도	유한급육국도(劉漢及六國圖)	76~77	
제35도	곽주급칠국도(郭周及七國圖)	78~79	
제36도	천상분야도(天象分野圖)	80~81	
제37도	이십팔사진차분야도(二十八舍辰次分野圖)	82~83	
제38도	당일행산하양계도(唐一行山河兩戒圖)	84~85	
제39도	역대잡표지명도(歷代雜標地名圖)	86~87	
제40도	태조황제조조지도(太祖皇帝肇造之圖)	88~89	
제41도	태종황제통일지도(太宗皇帝統一之圖)	90~91	
제42도	성조원통구역도(聖朝元通九域圖)	92~93	
제43도	본조화외주군도(本朝化外州郡圖)	94~95	
제44도	성조승개폐치주군도(聖朝升改廢置州郡圖)	96~97	
	총론(總論)	98~101	

『삼국유사』의 '말갈발해조'와 관련하여 『역대지리지장도』에서 관심을 끄는 지도는 당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제1도인 「古今華夷區域總要圖」이다. 『지장도』 맨 앞에 배치된 이 지도는 다른 시대별 지도가 1폭인 것과 달리 2폭의 總圖이다. 이 지도에는 송대 전국의 27路和古今의 州郡이 표시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朝鮮, 日本, 南洋諸島와 印度 등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림 1〉 古今華夷區域總要圖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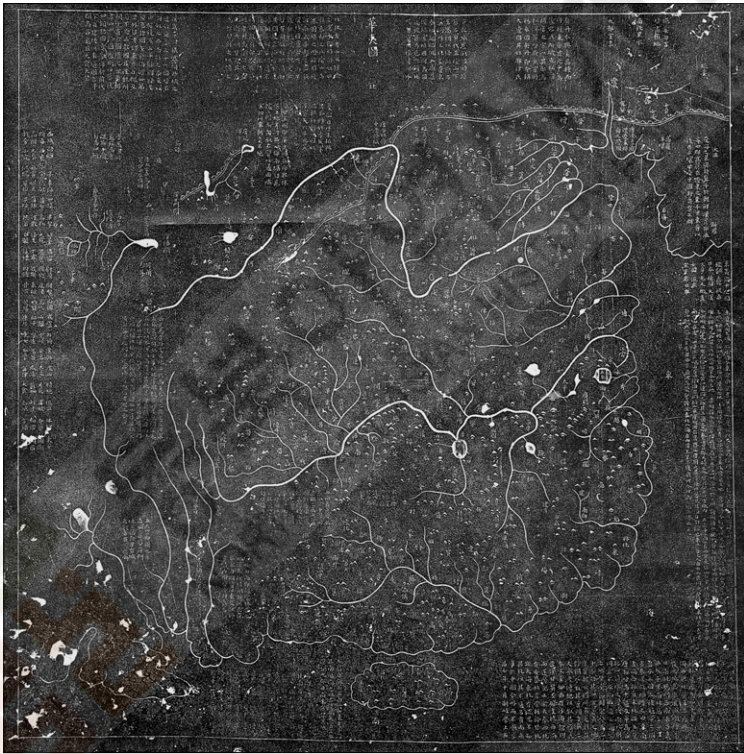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는 지도에 덧붙여 ‘箋注’라고 하여, 지도에 표시된 국가 혹은 종족의 성쇠, 혹은 지리비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글이 붙어 있다. 辦契丹, 辦長城, 辦北狄, 辦西域, 辦夏國, 甘涼五州, 辦遼東, 辦東夷, 溪洞蠻, 辦日南, 辦天竺, 西南夷, 辦五嶺, 西羌盛衰, 西域國名, 海南國名, 辦古今州郡區域, 古今地理廣狹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유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華夷圖」와의 비교가 유용하다.

「화이도」는 현재 중국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방형의 돌로 된 판석에 ‘阜昌七年十月朔岐學上石’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²⁴⁾ 그 반대편에는 劉豫 阜昌 7년(1136) 4월에 새긴 ‘禹迹圖’가 있다. 지도 판석의 길이 약 90 cm, 폭 88cm, 두께 18cm이고, 두번째 지도는 각각 길이 약 79cm, 폭 약 78 cm, 지도 테두리에서 바깥 변까지 각각 약 5cm이다. 도석 상하는 모두 碑頭와 碑座

23) 1989, 『宋本歷代地理指掌圖』, 上海古籍出版社, 6~7쪽.

24) 이하의 「화이도」에 대한 설명은 曹婉如, 1999b, 「有關華夷圖問題的探討」, 曹婉如·鄭錫煌·黃盛璋·鈕仲勛·任金城·鞠德源 編, 『中國古代地圖集』(戰國-元), 文物出版社, 41~45쪽 참조.

가 없다. 이 도석을 세워서 보면, 陽面의 우적도가 正圖이고, 陰面의 「화이도」는 거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도석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쇄를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략 1117~1125년 사이에 唐代 지도학자 賈耽이 만든 「海內華夷圖」²⁵⁾를 바탕으로 삼아 줄여서 그린 것일 가능성이 높고,²⁶⁾ 지도학 발전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인쇄기술 역사상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림 2〉 「華夷圖」²⁷⁾

25) 「해내화이도는 '廣三丈 縱三丈三尺' (『구당서』, 賈耽傳)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그 내용은 「화이도」에 비하여 풍부한 것 같다(曹婉如(1999b), 앞의 논문, 41쪽). 「해내화이도」를 비롯한 가탐의 저술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하고 있다.

26) 圖 우하방 주기 「四方蕃夷之地, 唐賈魏公圖所載凡數百餘國, 今取其著聞者載之」 참조.

27) 曹婉如, 1999b, 앞의 논문, 61 「화이도 탁본」.

「화이도」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는 모두 가탐의 「해내화이도」를 바탕으로 삼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고금화이구역총요도」는 「화이도」에 비하여 변형된 부분이 많고, 조잡한 편이다. 「고금화이구역총요도」 뒤에는 19개의 箋注가 있고, 「화이도」에도 18개의 文字注記가 지도상의 네 주위와 빈 곳에 배열되어 있다.²⁸⁾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箋注에서 본고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고금화이구역총요도」 箋注

순서	내	용
1	契丹 판별: (생략)	
2	長城 판별: 古長城은 대개 戰國時 趙가 쌓고 代와 陰山에서 아래로 高關까지 胡에 대비하였다. 燕도 또한 媯州의 북으로부터 쌓아서 遼東에 이르렀고, 秦世에는 臨洮로부터 高麗에 이르렀다. 漢은 만리장성(변방의 성벽)을 따라 河를 건고함으로 삼았다. 後魏는 馬邑六鎮을 쌓았고 隋는 靈州 懷遠 河北에 쌓았다. ²⁹⁾	
3	北狄 판별: 北狄은 지난날 山戎 獯豸의 근심이 있었고, 七國時에는 匈奴가 차츰 強해지고, 秦이 그것을 물리쳐 陰山으로 塞를 삼았다. 劉項의 즈음에, 점점 河南을 침범하니, 武帝가 그것을 무찔러 모두 漠北으로 옮겼다. 桓靈 시기에 鮮卑, 後魏 때 蠕蠕, 西魏 때 突厥이 있었는데, 모두 지난 날의 匈奴 故地였다. 隋初에 그 國이 어지러워 투항해 오니, 그들을 夏勝朔 3州의 사이에 거처하게 하였고, 隋末에 다시 강해지니, 唐太宗이 頡利를 回紇別部로서 멸망시키고, 磧北에 흩어지게 하고, 瀚海□府□□ 등의 州를 벌려 놓고, 모두 그 추장을 都督刺史로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했다. ³⁰⁾	
4	西域 판별: (생략)	
5	夏國 판별: (생략)	
6	甘涼五州: (생략)	
7	遼東 판별: 遼東의 東, 周가 箕子를 朝鮮에 봉하였고, 漢이 樂浪을 설치하고, 四郡을 쌓았다. 高麗는 遼東의 동쪽 千里에 있는데, 東晉 이후 平壤에 거주하고, 대대로 中國의 封爵을 받고, 正朔을 사용하였다. 本朝 建隆 이래 高麗·女眞·定安이 모두 內屬하기를 청하였다. ³¹⁾	

(계속)

28) 「화이도」 注記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 箋注 비교는 曹婉如, 1999b, 앞의 논문, 42~45쪽 참조.

29) “辦長城: 古長城蓋戰國時趙築之自代并陰山下至高關以備胡燕亦築媯州之北至遼東秦世起臨洮入高麗漢緣塞垣因河爲固後魏築馬邑六鎮隋築靈州懷遠河北”.

30) “辦北狄: 北狄古有山戎獯豸之患七國時匈奴始強秦却之以陰山爲塞劉項之際稍以侵河南武帝擊之盡徙漠北桓靈世有鮮卑後魏蠕蠕西魏突厥皆古匈奴故地隋初其國亂來降居之夏勝朔三州之間隋末復強唐太宗滅頡利以回紇別部散在磧北者列爲瀚海□府□□等州皆命其酋爲都督刺史以領之”.

순서	내 용
8	東夷 辨別: 東夷는 海中의 國, 濊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이고, 本朝에 이르는 자는 日本國이다. ³²⁾
9	溪洞蠻: (생략)
10	日南 辨別: (생략)
11	天竺 辨別: (생략)
12	西南夷: (생략)
13	五嶺 辨別: (생략)
14	西羌盛衰: (생략)
15	西域國名: (생략)
16	海南國名: (생략)
17	古今州郡區域 辨別: (생략)
18	古今地理의 廣狹: 禹가 九州를 나누고 …… 唐初에 나누어 十道를 만들고, 高昌을 평정함에 이르러 四鎮을 개척하였다. 이것을 漢代와 비교하면, 南北은 같고, 東은 미치지 못하고, 서는 넘어섰다. 羈縻의 땅은 모두 節制를 받았고, 本朝의 土宇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盛하였고, 대체로 使者가 다스리던 바가 나뉘어 23路가 되었으니, 모두 圖에 나타난다. 그 四方蕃夷의 땅은 唐 賈魏公이 기재한 바가 무릇 數百餘國인데, 지금 그중에서 著聞한 것을 늘어놓았다. 또한 傳記를 참고하여 그 盛衰本末의 차례를 매기고, 예를 들어, 西로는 江海諸國과 西北의 奄蔡와 北의 骨利幹은 모두 북쪽으로 大海와 거리가 있었다. 東北의 流鬼는 다른 것은 알지 못하니, 그 공물에 대하여 이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中國에 근심되지 않으니, 지금 생략하여 실지 않았다. ³³⁾

먼저 長城 辨別에서는 古長城은 대개 戰國 시기 趙가 쌓았다 하고, 秦 시기에 臨洮로부터 高麗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미 漢 이전에 고려가 있었고, 장성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北狄 辨別에서는 북적은 지난날 山戎, 獯豸의 근심이 있었고, 七國時에는 匈奴가, 桓靈世에 鮮卑, 後魏 때 蠕蠕, 西魏 때 突厥이 있었는데, 모두 지난날의 匈奴故地였다고 하였다. 隋初에 그 나라가 어지러워 투항해 오니, 그들을 夏勝朔 3州 사이에 거처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31) “辨遼東: 遼東之東周封箕子于朝鮮漢置樂浪築四郡高麗在遼東之東千里東晉以後居平壤世受中國封爵用正朔本朝建隆以來高麗女眞定安皆請內屬”.

32) “辨東夷: 東夷海中之國濊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本朝至者日本國”.

33) “古今地理廣狹: 禹別九州 …… 唐初分爲十道及平高昌拓四鎮 比之漢代 南北則同 東不及而西過之 羈縻之地 皆受節制 本朝土宇與古齊盛 凡使者所部 分爲二十三路 具見於圖 其四方蕃夷之地 唐賈魏公所載 凡數百餘國 今列其著聞者 又參考傳記 以敘其盛衰本末 至如西有江海諸國 西北有奄蔡 北有骨利幹 皆北距大海 東北有流鬼 不知

遼東 판별에서는 요동에서는 箕子를 거쳐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고려가 東晉 이후 평양에 거주하였다 한다. 특히 송대 建隆(960~963) 이래 高麗·女眞·定安이 모두 內屬하기를 청하였다고 한 기록을 통하여,³⁴⁾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10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東夷 판별에서는 東夷를 海中의 나라라 하고, 濊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삼국 이전의 국가를 열거하고 있다.

古今 地理의 廣狹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本朝, 즉 송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성하다 하고, 23路는 지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방 蕃夷의 땅은 당대 賈魏公이 기재한 것은 수백여 나라이지만, 여기서는 그중에서 저명한 것만을 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변이의 땅, 즉 23로 이외의 지역은 가탐의 지도를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화이도」는 일부 내용에서 서로 가감이 있지만, 2자는 당대 가탐의 「해내화이도」의 장점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가령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바다를 물결무늬로 표시하고, 바다 속에는 扶餘, 日本, 流求, 昌國 등이 타원형 곶 안에 표시되어 있지만, 「화이도」에는 이러한 무늬나 국명이 없다. 이와 같은 표시는 「고금화이구역총요도」 箋注에서 “四方蕃夷之地 唐賈魏公所載凡數百餘國 今列其著聞者” 등의 말을 참고로 하면, 가탐의 「海內華夷圖」의 문양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화이도」를 서로 비교하면, 해안선·하류·산악·호수 등의 표시는 「화이도」가 사실적이지만, 고금화이구역의 연혁의 표시에 있어서는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자세하다.³⁶⁾

其他 以其不名貢而無患於中國 今略而不載”.

34) 「화이도」에는 “本朝建隆以來高麗女眞定安皆請內屬”의 부분이 없다. 文化社 참조.

35)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참고한 가탐의 저작이 지도라는 것은 「화이도」에서 “그 사방 蕃夷의 땅은 唐 賈魏公의 圖에 실려 있는 것이 무릇 數百餘國인데, 지금 그 著聞한 것을 취하여 신는다”(其四方蕃夷之地 唐賈魏公圖所載 凡數百餘國 今取其著聞者載之)한 것에서 알 수 있다.

36) 曹婉如, 1999a, 앞의 논문, 32쪽

「화이도」 注記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 箋注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로 같으나, 전주의 撰寫가 먼저이고 주기는 뒤에 기록된 것이다.³⁷⁾ 「화이도」상의 네 변과 빈 곳의 주기는 대체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전주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³⁸⁾ 「화이도」와 『역대지리지장도』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모두 당대 가탐의 「해내화이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들 지도에 있는 내용은 발해 당시의 당나라의 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_ 「고금화이구역총요도」상의 遼東지역

앞에서 「화이도」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모두 당대 가탐의 「海內華夷圖」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중에서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바로 『역대지리지장도』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서 사방 蕃夷의 땅에 있다고 한 나라들은 송나라 시기가 아니라 당나라 시기 가탐의 지도(「해내화이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사방 변이의 땅에 표시된 나라들은 당나라 시기 국가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지도를 찬찬히 살펴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遼水 동쪽이다. 지도에서는 長城이 북서쪽에서 동북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箋注에서는 戰國 趙나라가 처음 쌓기 시작하여 秦세에는 臨洮로부터 高麗에 이르렀다고 하였다(표 3-2 참조). 이어서 遼水 동쪽에는 이곳에 있던 국가, 종족, 혹은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장성 북쪽에 ‘定安’ ‘九部室韋’ ‘南北黑水’ ‘挹婁勿吉皆肅慎地’가 있고, 그 밑의 장성 북쪽에 임박하여 서쪽으로부터 ‘夫餘’ ‘文安’ ‘女真’ ‘渤海’ ‘挹婁’가

37)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달리 「화이도」는 고금지리광첩의 끝 부분에 “阜昌 7년 10월 초하루에 岐學上石(阜昌七年十月朔岐學上石)”이라고 하여, 「화이도」 제작연월을 밝히고 있다.

38) 曹婉如, 1999b, 앞의 논문, 45쪽.

사각형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수 동쪽의 장성 남쪽에는 “唐安東府漢遼東郡舜之營州”를 비롯하여 그 서쪽으로 ‘平壤’ ‘高麗’ ‘沃沮’가 장성 표시 바로 밑에 기입되어 있고, 그 남쪽에 ‘百濟’ ‘新羅’ 국명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사방 번이의 땅에 표시된 나라들이 당나라 시기의 위치라고 할 때, 앞의 국가나 종족은 바로 당나라 시기의 것이 된다.



〈그림 3〉 「古今華夷區域總要圖 동북부」 - 그림 1 일부

그러나 당대가 아닌, 그 이후의 국가·종족이나 지역명도 보인다. 정안, 구부실위, 문안, 여진은 당 멸망 이후의 것이다. 또한 지도와 전주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가령 동이에 대한 전주에는 동해, 즉 황해 바다의 나라로서 濊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가 있다고 하였으나,³⁹⁾ 지도에는 濊貊·弁韓·女國이 없다. 반면에 전주에 없으나 지도에만 있는 나라도 있으니, 昌國이 그것이다.

이것은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어떤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지도 하나만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23로 등은 송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송대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혹은 그 이전 시기의 지리비정은 송대 이전의 자료를 인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장성 동북 지역은 송대 이전 이곳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표시하면서 바로 당대 가탐의 지도인 「해내화이도」를 참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비교

1_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 지장도의 관계

이상에서 송대에 만들어진 『역대지리지장도』 속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동북지역에 있는 국가와 종족명은 당대 가탐의 「해내화이도」를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제기한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지장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말갈발해조에 언급된 『지장도』와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많은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표 4〉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와 인용서

구분	『삼국유사』 靺鞨 渤海 조	「고금화이구역총요도」		비고
		지도상	본문	
㉠	『指掌圖』를 살펴건대, 渤海는 長城의 東北角 바깥에 있다.			「고금화이구역총요도」상의 발해 위치를 기술한 것임

(계속)

39) “辦東夷：東夷海中之國滅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本朝至者日本國”.

구분	『삼국유사』 靺鞨 渤海 조	「고금화이구역총요도」		비고
		지도상	본문	
㉠	『指掌圖』에 이르길, 挹婁와 勿吉은 모두 肅慎이다.	挹婁勿吉皆肅慎地		지도상의 기록을 인용
㉡	黑水·沃沮. 東坡의 『指掌圖』를 살펴건대, 辰韓의 북쪽이고, 南北黑水가 있다.	南北黑水		지도상의 南北黑水와 옥저의 위치를 기술한 것임
㉢	『指掌圖』에 黑水가 長城 북에 있고, 沃沮는 長城의 남에 있다.	黑水 沃沮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임
㉣		‘고려’, ‘평양’ 표시 있음	高麗는 遼東의 동쪽 千里에 있는데, 東晉 이후 平壤에 거주하고	
㉤		‘扶餘’ ‘日本’ ‘倭奴’ ‘毛人’ ‘蝦蟇’ ‘流求’ ‘昌國’ 있음 *단, 濊貊·弁韓·女國 없음	東夷는 海中의 國이니, 濊貊·弁韓·扶餘·日本·倭奴·毛人·蝦蟇·女國·流求이고	

㉠에서 일연은 『지장도』를 보니 발해는 장성의 동북각 바깥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것은 지도상의 발해 위치를 기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에서 『지장도』에서 읍루와 물길은 모두 속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발해’ 표시 바로 윗부분에 ‘挹婁勿吉皆肅慎地’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 흑수는 장성 북에 있고, 옥저는 장성의 남에 있다는 것은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 표시된 흑수와 옥저의 위치와 일치한다.

이상의 사실과 현존하는 자료를 감안하면,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지장도』가 송대에 만들어진 『역대지리지장도』이고, 구체적으로는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의 『지장도』 기술은 일연이 『역대지리지장도』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_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새로운 이해

『삼국유사』의 『지장도』 기술이 『역대지리지장도』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때, 말갈발해조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의 ㊸과 ㊹은 말갈과 발해를 언급한 앞 부분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기술이며, 모두 黑水와 沃沮가 『지장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다. ㊸은 일반적으로 “흑수와 옥저는 동파의 지장도를 살펴보면, ‘辰韓의 북쪽에 남북의 黑水가 있다’고 하였다”⁴⁰⁾로 해석하고 있는데, 흑수와 옥저 중에서 흑수만의 위치를 말하고, 그 위치가 진한의 북쪽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지장도』가 참고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서 각각의 위치를 보면, 흑수가 옥저의 북쪽에 있고, 옥저는 진한(신라)⁴¹⁾의 북쪽에 있다. 그러므로 앞의 ㊸은 “黑水·沃沮, 東坡의 『指掌圖』를 살펴건대, (옥저는) 辰韓의 북쪽이고, (흑수에는) 南北 黑水가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듯하다.

둘째 ㊹에서 흑수와 옥저의 위치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長城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옥저의 거주지를 근거로 고구려의 장성이라 하고, 흑수도 오늘날의 咸興 일대로 비정하였다.⁴²⁾ 그러나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 의하여 장성은 중국 측의 장성이고, 흑수는 바로 흑룡강 일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셋째 일연은 말갈발해조에서 말갈발해가 하나라는 기록과 말갈과 발해가 별개라는 두 개의 상이한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서 말갈과 발해가 별개라는 주장은 편명을 靺鞨(一作勿吉) 渤海라고 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⁴³⁾ 이밖에 본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百濟末年, 渤海靺鞨新羅分百濟地⁴⁴⁾’라는 『三國史』의 기록을 인용하고, 이어서 ‘이것에 따른다면, 발해는 또한 나뉘어 두 나라가 된 것이다’라고 발해가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譯註 三國遺事』 I, 182쪽 참조.

41) 진한이 신라를 의미한다는 것은 『삼국유사』, 기이편, 辰韓條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42) 三品彰英 撰, 1975, 앞의 책, 358쪽 및 361~362쪽.

43) 말갈을 앞에 쓰고 뒤에 발해를 쓴 것은 말갈에서 비롯해서 발해로 발전해 간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鄭鎮憲, 1998, 앞의 논문, 56쪽).

아야 한다고 하였다. 앞의 『삼국사』의 기록을 ‘발해·말갈·신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갈은 ‘後魏書靺鞨作勿吉’이라 하고, 또한 ‘指掌圖云 挹屢與勿吉皆肅慎也’라고 「지장도」를 인용하며 읍루·물길·말갈은 모두 숙신의 땅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 ‘지장도운’ 이하의 부분은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서는 오른쪽 위 모퉁이에 사각형 테두리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남쪽에 발해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는 말갈(지도에서는 물길 혹은 읍루)과 발해가 별개의 존재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갈과 발해를 별개로 표시한 원인은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발해와 말갈에 관한 신구당서 발해전 등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추정해 본다면, 읍루·물길·말갈은 숙신의 땅에 있었고, 발해는 숙신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던 것이 일연의 의도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일연이 생각하고 있던 발해의 땅은 다름 아니라 고구려의 땅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연이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서 발해의 영역 중에서 가탐의 『고금군국지』를 인용하고, 그중에서도 압록부·남해부·부여부·책성부 4부만을 열거한 것은 그곳이 바로 고구려 영토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⁴⁵⁾ 그러나 일연이 이해한 바와 같이 말갈과 발해를 그들이 있던 위치와 관련하여 말갈과 숙신, 발해와 고구려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신당서』 발해전에는 숙신의 옛 땅에 발해의 수도였던 上京이 있는 등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

넷째 일연은 말갈발해가 하나라는 기록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의 발해는 말갈 중 고구려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가령 『通典』의 기록 등을 인용하고 ‘渤海는 곧 靺鞨의 別種인데 단지 開舍이 같지 않을 뿐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단지 開舍이 같지 않을 뿐’이라는 표현은 말갈 민족의 이합집산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개합’의 대상이 말갈만인

44) 『三國史記』 권제28, 百濟本紀, 義慈王조의 “儀鳳中, 以隆爲熊津都督帶方郡王, 遣歸國, 安輯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 以統之. 時新羅強, 隆不敢入舊國, 寄治高句麗死. 武后又以其孫敬襲王, 而其地已爲新羅渤海靺鞨所分, 國系遂絕”; 『구당서』 권199상, 百濟傳의 “其地自此爲新羅及渤海靺鞨所分 百濟之種遂絕”; 『신당서』 권220, 百濟傳의 “其地已爲新羅渤海靺鞨所分 百濟遂絕”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45) 朴眞淑, 2005, 앞의 논문, 110 ~ 111쪽.

지 아니면 고구려민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후의 문맥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말갈 중 고구려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 발해라는 해석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⁴⁶⁾ 이 발해가 지장도에 의하면, 장성의 동북각 바깥에 있다고 하였다.⁴⁷⁾

종래에는 『삼국유사』 말갈발해조가 여러 인용문을 바탕으로 발해의 성격을 피력하고 있을 뿐, 확고한 발해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⁴⁸⁾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말갈과 발해, 그리고 흑수와 옥저 등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본 결과, 일연의 발해사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말갈과 발해에 대한 기록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심지어 필자인 일연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일연은 말갈이나 흑수 등을 발해나 옥저와 전혀 상관없는 집단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⁴⁹⁾ 그리하여 말갈과 발해, 흑수와 옥저를 우리 민족의 역사계통의 일부라 하여 紀異篇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드러난 일연의 발해를 비롯한 북방인식은 발해를 친족 혹은 친척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던 고려 초의 인식과 일정 부분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⁵⁰⁾

46) 『구당서』, 渤海靺鞨傳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이나 『신당서』, 渤海傳의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는 기록도 참고가 된다.

47) 발해와 말갈을 하나로 간주하면서 지장도를 인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장도에는 분명히 발해와 말갈이 달리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48) 송기호, 1988, 앞의 논문, 79쪽.

49) 이와 달리 말갈이 이민족이지만 한국고대사에서 일찍부터 영향력을 행사한 독립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 포함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朴眞淑, 2005, 앞의 논문, 118쪽), 재고의 여지가 있다.

50) 고려 초 발해와의 관계는 林相先, 1993, 「高麗와 渤海의 關係 - 高麗 太祖의 渤海認識을 중심으로 -」,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 歷史學論叢』, 民族文化社 참조.

V. 맺음말

이상에서 『삼국유사』 紀異篇 ‘靺鞨渤海’조에 인용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특히 발해 당시의 정황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장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서 일연이 이용한 자료에는 『通典』, 『三國史』, 『新羅古記』, (東坡)『指掌圖』, (賈耽)『郡國志』, 『地理志』, 『東明記』, 『後魏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지장도」이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지장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갈발해’ 조를 해석하고, 나아가 일연의 발해인식까지도 추정하였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 고대의 지도집으로서 송대에 만들어진 『歷代地理指掌圖』에 수록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남송 紹興 6년(1136) 10월에 석각된 「華夷圖」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지도 모두 당대 가탐의 「海內華夷圖」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중에서 「고금화이구역총요도」가 바로 『역대지리지장도』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遼水 동쪽에는 장성이 북서쪽에서 동북방으로 표시되어 있고, 요수 동쪽에는 이곳에 있던 종족, 국가, 혹은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장성 북쪽에 ‘定安’ ‘九部室韋’ ‘南北黑水’ ‘挹婁勿吉皆肅慎地’가 있고, 그 밑의 장성 북쪽에 임박하여 서쪽으로부터 ‘夫餘’ ‘文安’ ‘女真’ ‘渤海’ ‘挹婁’가 사각형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수 동쪽의 장성 남쪽에는 ‘唐安東府漢遼東郡舜之營州’를 비롯하여 그 서쪽으로 ‘平壤’ ‘高麗’ ‘沃沮’가 장성 표시 바로 밑에 기입되어 있고, 그 남쪽에 ‘百濟’ ‘新羅’ 국명이 있다.

이러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지장도」를 비교해 보니, 양자 간에 많은 일치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渤海는 長城의 東北角 바깥에 있다’와 ‘黑水가 長城 북에 있고, 沃沮는 長城의 남에 있다’, 그리고 ‘挹婁와 勿吉은 모두 肅慎이다’라는 『삼국유사』의 기술은 「고금화이구역총요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과 현존하는 자료를 감안하

면,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지장도』에 대한 서술은 송대에 만들어진 『역대 지리지장도』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를 보고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의 『지장도』 기술이 『역대지리지장도』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때, 『삼국유사』의 말갈발해조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의 『삼국유사』의 黑水와 沃沮에 대한 기록은 『지장도』가 참고한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서 각각의 위치를 보면, 흑수가 옥저의 북쪽에 있고, 옥저는 진한(신라)의 북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흑수와 옥저의 위치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長城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옥저의 거주지를 근거로 고구려의 장성이라 하고, 흑수도 오늘날의 咸興 일대로 비정하였지만,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 의하여 장성은 중국 측의 장성이고, 흑수는 바로 흑룡강 일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셋째, 「고금화이구역총요도」에는 말갈(지도에서는 물길 혹은 읍루)과 발해가 별개의 존재로 나타나 있고, 일연이 염두에 두었던 발해의 땅은 다름 아니라 고구려의 땅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연은 ‘말갈발해가 하나’라고 할 때의 발해는 말갈 중 고구려민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일연은 말갈이나 흑수 등을 발해나 옥저와 전혀 상관없는 집단으로는 치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말갈과 발해, 흑수와 옥저를 우리 민족의 역사체통의 일부라 하여 紀異篇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ABSTRACT]

About 『Jijangdo(指掌圖)』 of the MalgalBalhae
Article in 『SamgukYusa』

Lim, Sang - Sun

I investigate the historical materials quoted in MalgalBalhae Article of the Giipyeon(紀異篇) in 『SamgukYusa(三國遺事)』, and review especially 『Jijangdo(指掌圖)』 which is well known for reflecting the situation of Balhae.

There are many historical materials used by Ilyon(一然 1206 ~ 1289), such as 『Tongjeon(通典)』, 『Samguksa(三國史)』, 『Sinnagogi(新羅古記)』, 『Jijangdo(指掌圖)』 by Dongpa(東坡, 蘇軾 1036 ~ 1101), 『Gunjukji(郡國志)』 by Gatam(賈耽 730 ~ 805), 『Jiriji(地理志)』, 『Dongmyeonggi(東明記)』, 『Huwiseo(後魏書)』 in MalgalBalhae Article in 『SamgukYusa』. Among them is 『Jijangdo(指掌圖)』 the most quoted record. In historical studies of the past, however, MalgalBalhae Article have been interpreted not considering 『Jijangdo(指掌圖)』, and the perception of Ilyon about Balhae has been also estimated, so that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lots of uncertainty whether it is true or no.

By the way, while comparing 『Gogeumhwayiguyekchongyodo(古今華夷區域總要圖; the past and present general drawing about China Song(hwa) and nation of around China (yi))』 which is contained 『Yeokdaejiri Jijangdo (歷代地理指掌圖)』 made on the period of Song as the map collection of ancient China and 『Hwayido (華夷圖)』 carved at

October, 1136(Soheung 6) on the period of NamSong , I can find out the facts that both 『Gogeuḡhwayiguyekchongyodo』 and 『Hwayido』 were drawn up by referring Gatam's <Haenaehwayido (海內華夷圖)> of Tang Dynasty, and 『Yeokdaejiiri Jijangdo』 is where 『Gogeuḡhwayiguyekchongyodo』 is contained.

By comparing 『Gogeuḡhwayiguyekchongyodo』 and 『Jijangdo』 quoted in Article MalgalBalhae in 『SamgukYusa』, I realize that there are lots of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Especially, the statements of 『SamgukYusa』, 'Balhae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edge of Jangseong(長城)', 'Heuksu(黑水) is located in the north of Jangseong and Okjeo(沃沮) in the south of Jangseong' and 'Both Eupnu (挹婁) and Mulgil(勿吉) belong to Suksin(肅慎)' are consistent with the records of 『Gogeuḡhwayiguyekchongyodo』.

Considering this facts as stated above and existing materials,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description of the 『Jijangdo』 of the Article MalgalBalhae in 『SamgukYusa』 is recorded by referring to 『Gogeuḡhwayiguyekchongyodo』 of 『Yeokdaejiiri Jijangdo』 which was made on the period of Song.

Supposing that the statements about 『Jijangdo』 in 『SamgukYusa』 are written by referring to 『Gogeuḡhwayiguyekchongyodo』 of 『Yeokdaejiiri Jijangd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rticle MalgalBalhae in 『SamgukYusa』.

First of all, in respect to the recording of Heuksu and Okjeo in 『SamgukYusa』, as looking into those states from 『Gogeuḡhwayiguyekchongyodo』 point of view referred by 『Jijangdo』, it is possible to say that Heuksu is located in the north of Okjeo and Okjeo is in the south of Jinhan(Silla).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Jangseong , the standard which is used to explain the location of Heuksu and Okjeo,

according to the past historical studies, they have indicated that the Jangseong is Koguryo's based on the residence of Okjeo and defined Heuksu as today's area of Hamheung.

However, according to 「GogeuMhwayiguyeokchongyodo」, it can be amended that Jangseong is that of China's and Heuksu is around the Amur River(黑龍江). Third, in 「GogeuMhwayiguyeokchongyodo」, it is considered that Malgal (Mulgil or Eupnu in the map) is one thing and Balhae is another, and territory of Balhae that llyon had interested in is more likely to be the center of territory of Koguryo. Forth, when llyon mentioned that 'MalgalBalhae is the one state', it seems that he have thought that Balhae is a group that is related to specially Koguryo people.

According to the facts stated above, we can interpret that llyon did not regard Malgal and Heuksu as groups that is not related Balhae or Okjeo at all, and by that way he seems to have included Malgal, Balhae, Heuksu and Okjeo in Giipyeon(紀異篇) as the part of Korean history.

keywords

SamgukYusa, Jijangdo, Yeokdaejiri Jijungdo, Haenaehwayido, MalgalBalhae

일본제국주의와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

- 만주영화협회를 중심으로¹⁾ -

이 준 식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I. 머리말

20세기는 영화의 시대였다.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대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화를 통해 이윤획득을 지향하는 영화산업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의 정서에 즉각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영화만 갖고 있던 특징 때문에 영화는 곧 선전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1) 이 논문의 초고를 제출한 뒤 일본에서 川崎賢子, 2006, 「'外地'の映畫ネットワーク - 1930~1940年代における朝鮮・滿洲國・中國占領地域を中心に」, 『岩波講座 '帝國' 日本の學知 第4卷 メディアのなかの '帝國』, 岩波書店가 발표된 것을 알았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영화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통한다. 다만 일제의 '외지'를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上海가 대륙영화정책의 '중심'이었다고 보는 데 비해 나는 적어도 대륙영화정책이 처음 출현했을 때만 해도 만주가 중심이었으며 일제의 침략전쟁 추이에 따라 그 중심이 만주에서 상해로 옮겨간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가와사키는 '외지 영화네트워크'의 귀결로 大陸映畫聯盟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처음 구상되고 결국에는 완전한 실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1940년 전후에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영화생산국이었다. 이는 영화라는 새로운 근대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자본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영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것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전쟁을 주도한 군부와 '혁신관료'들은 전시동원의 유력한 수단으로 영화를 주목했다. 1939년 일본 최초의 문화입법으로 영화법이 제정되고 이를 계기로 영화통제체제가 출현하면서 영화는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식민지·점령지의 피지배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간주되었다.

일제는 식민지·점령지에 대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글은 그러한 선전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가 어떻게 식민지·점령지의 영화를 통제하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의 초점은 만주국의 유일한 국책 영화회사인 滿洲映畫協會(이하 만영)²⁾이다.

만주국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사실상 일제의 점령지였다. 일본에서 영화통제정책이 실시된 것은 1939년 이후였고 식민지조선에서도 영화법을 적용한 조선영화령이 시행된 1940년부터 영화통제체제가 성립되었다.³⁾ 그런데 만주국에서는 일본보다 2년이나 앞선 1937년에 이미 국책영화회사가 만들어지고 일제의 '제국판도' 안에서 처음으로 영화법이 제정되는 등 일찍부터 영화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2) 영화는 중국어로 電影이다. 그런데 만영이 회사 이름에 전영을 쓰지 않고 일본어인 영화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만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영이 자회사 滿洲雜誌社를 통해 발간하던 잡지의 제목을 『滿洲映畫』에서 『電影畫報』로 바꾼 것이 1941년이고 역시 만영의 자회사로 배급업무를 전담하는 滿洲電影總社를 설립한 것도 1941년이다. 곧 1941년 무렵이면 일본식인 영화와 병행해 중국식인 전영을 사용할 정도의 인식전환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끝내 만영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3) 이준식, 2004, 「일제파시즘기 선전영화와 전쟁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4집을 볼 것.

만주국은 대륙침략의 교두보였다. 영화도 마찬가지였다. 만영은 일제의 동아시아 영화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제의 군부와 혁신관료세력이 꿈꾼 국책영화론이 실현되어 영화통제가 처음 시작된 곳도 만주였다. 그리고 만영은 만주국에서의 영화통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영을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맥락에서 다룬 연구는 드물다.⁴⁾ 만주국의 영화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보여주는 저작이 출간되기는 했다.⁵⁾ 그렇지만 만영에 대한 종래의 저작은 기본적으로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한 영화회사로서의 만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만영의 설립과정이나 만영이 제작한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영에서 활동한 개개인, 보기를 들어 이사장인 아마카스 [甘粕正彦]나 배우인李香蘭(본명은 아마구치[山口淑子]) 등의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⁶⁾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지배라는 맥락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안에서의 영화통제정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자본의 저항에 부딪쳐 국책영화회사의 실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데 비해⁷⁾ 만주국에서는 처음부터 이윤추구보다는 국가에의 공헌을 내건 국책회사로 만영이 출범해 생산과 배급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

4) 실제로 중국학계의 주류에서 만영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李道新, 2000, 『中國電影史 1937~1945』, 首都師範大學出版社 정도를 꼽을 수 있다. 1945년 이전 일본영화사에 대한 연구의 붐을 주도한 피터 B. 하이, 2001, 『帝國의銀幕 十五年戰爭と日本映畫』, 名古屋大學出版會; 加藤厚子, 2003, 『總動員體制と映畫』, 新曜社; 古川隆久, 2003, 『戰時下の日本映畫』, 吉川弘文館 등도 만영에 대해서는 일제의 문화침략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5) 대표적인 보기로 坪井與, 1984, 「滿洲映畫協會の回想」, 『映畫史研究』 19; 佐藤忠男, 2004, 『キネマと砲聲』, 岩波書店; 山口猛, 1989, 『幻のキネマ滿映: 甘粕正彦と活動屋群像』, 平凡社; 胡祿·古泉, 1999, 『滿映 國策映畫の諸相』, パンドラ; 山口猛, 2000, 『哀愁の滿洲映畫』, 三天書房 등을 볼 것.

6) 山口猛, 1989, 앞의 책; 四方田犬彦 編, 2001, 『李香蘭と東アジア』, 岩波書店 등을 볼 것.

7) 일본의 경우 제작부문에서는 중소영화사가 쇼치쿠[松竹], 도호[東寶], 다이에이[大映]의 세 회사로 통합되었고 배급부문에서만 映畫配給社라는 단일회사가 만들어졌다.

는 만영을 내세워 중국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국에서의 경험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획득한 새로운 점령지에서 영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준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과정에서 일제의 제국판도 안에 영화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구상이 출현했다는 데 주목해 만영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와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의 관계를 논하려고 한다.

II. 만주국 초기의 영화정책과 만주영화협회의 설립

일제는 만주국을 건국할 때부터 영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영화는 “국내 민중에 건국의 진의를 알리는”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당시 만주국 영화계의 실상은 민중교화라는 의도와 배치되고 있었다. 영화시장이 미국영화와 중국영화(특히 상해영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대도시에서는 미국영화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중국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만영이 설립된 1937년만 해도 영화시장은 미국영화 60%, 중국영화 25%, 일본영화와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었다.⁹⁾ 특히 대중이 좋아한 영화는 ‘동방의 할리우드’라고 불리던 상해¹⁰⁾에서 만들어진 영화였다.¹¹⁾ 대도시에서는 20%, 중도시에서

8) 甘粕正彦, 1942a, 「滿洲映畫の性格と滿映」, 『昭和十七年版 滿洲行政經濟年報』, 189쪽.

9) 滿洲國通信社, 1937, 『康徳四年版 滿洲國現勢』, 449쪽.

10) 루홍스·슈사오밍, 2002, 『차이나시네마: 중국영화 백년의 역사』, 동인, 99쪽.

11) 상해사변 이후 한동안 만주의 중국영화관에서는 한 편의 일본영화도 상영되지 않은 반면에 상해의 항일영화가 상영되어 중국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桑野桃華, 1934, 『水のながれ』, 聯合演藝通信社, 297쪽.

12) 平塚敏, 1938, 「支那の映畫種別しらべ—支那映畫の現狀」, 『滿洲映畫』 2권 6·7호, 63쪽.

는 50%, 소도시에서는 70%였다는 기록¹²⁾이 있을 정도로 소도시로 갈수록 중국영화의 비중이 높았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중국영화의 내용이었다. 당시 중국영화의 중심이던 상해에서는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으로 이어진 일제침략에 자극을 받은 영화인들에 의해 항일과 결합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¹³⁾ 초기의 항일 영화는 『抗日戰線』, 『上海抗日血戰史』, 『中國鐵血軍戰史』 등의 기록영화였다. 그리고 기록영화보다 조금 늦게 항일극영화도 출현했다. 『共赴國難』, 『奮鬪』, 『戰地歷險記』, 『만주의 두 여자(東北二女子)』, 『民族生存』, 『肉搏』, 『掙紮』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만주의 두 여자』(1932)는 만주사변 이후 상해에 온 두 명의 만주여성이 같은 남자를 사랑하다가 상해사변 이후 그 남자와 함께 항일전선에 나선다는 줄거리의 영화이다. 그리고 『민족생존』(1933)은 만주사변으로 상해에 온 만주난민들이 상해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 이제 총을 들고 전선에 나선다는 줄거리의 영화이다. 두 영화 모두 만주와 상해를 연결시키면서 중국민중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항일전선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제 항일은 상해영화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1933년 초부터 영화를 통해 중국사회를 변혁하고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자는 목표 아래 진행된 新興電影運動에 의해 더 확고해졌다.¹⁵⁾ 그리고 1935년 일제가 화북사변을 일으키자 상해영화계의 항일 분위기는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신홍전영운동은 國防電影運動으로 고조되었다.

13) 1930년대 중반까지 상해영화계의 항일분위기에 대해서는 程季華 主編, 1998, 『中國電影發展史 第一卷』 2편, 中國電影出版社; 皇甫宜川, 2005, 『中國戰爭電影史』 2장, 中國電影出版社를 볼 것.

14)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보기를 들어 1937년에 제작된 『十字街頭』에서는 인텔리 출신 실업청년들이 '북에 간 학우'를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북에 갔다'는 것은 만주에서 항일전선에 참가했다는 의미이다. 佐藤忠男, 1995, 『日本映畫史 2』, 岩波書店, 129 ~ 130쪽.

15) 신홍전영화운동에 대해서는 루홍스·슈사오밍, 2002, 앞의 책, 69 ~ 85쪽; 倪駿, 2004, 『中國電影史』, 中國電影出版社, 29 ~ 39쪽; 陸弘石, 2005, 『中國電影史 1905 ~ 1949』, 文化藝術出版社, 61 ~ 75쪽 등을 볼 것.

일제는 만주국으로 수입되는 상해영화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지만¹⁶⁾ 반만항일이라는 영화의 기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¹⁷⁾ 일제로서는 만주국 국민이 일본이나 만주국보다 상해영화에 묘사된 중국을 사랑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일본문화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본영화를 보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중국어로 된 영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것이 선전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만영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일제는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영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¹⁸⁾ 그 가운데서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이하 만철)의 활동이 주목된다.¹⁹⁾ 만철의 영화사업은 관동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만철이 제작한 영화는 주로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곧 '일·만협화'를 선전하고 관동군의 공적을 찬양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만철의 영화에서는 일본점령 아래 만주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때를 향수하고 있으며 관동군과 만주국군이 이러한 상태를 보증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선전영화를 만들어도 관동군과 만철이 전면에 나서는 한 만주국 민중에 다가서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는 선전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독자적인 영화통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²⁰⁾ 1933년에 들어서면서 관동군에서 영화통제기구를 만들자는 안이 나왔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滿洲映畫國策研究會가 결성되었다. 회장은 만주국 실업부 총장인 張燕卿

16)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83쪽.

17) 滿洲國通信社, 1938, 『康徳五年版 滿洲國現勢』, 滿洲國通信社, 491쪽.

18) 만영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木津安五, 1939, 『滿洲映畫史－覺書』, 『宣撫月報』 4권 7호를 볼 것.

19) 만철의 영화제작과 상영에 대해서는 吉岡俊雄, 1939, 『滿鐵映畫について』, 『キネマ旬報』 694; 『滿鐵映畫製作所』, 1942, 『映畫旬報』 55; Moya Maria de los Angeles, 2001, 『滿洲占領(1931~45年)下の日本のプロパガンダ』, 『社會學研究科年報』 8; 小關和弘, 2004, 『滿鐵記録映畫と 滿洲－異郷支配の視線』, 岩本憲兒 編, 2004a, 『映畫と 大東亞共榮圈』, 森話社 등을 볼 것.

20) 이하 만영 이전 만주국에서의 국책영화 논의에 대해서는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22~31쪽을 볼 것.

이었지만 관동군사령부 參謀副將인 오카무라[岡村寧次] 소장이 부회장을 맡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관동군 및 만주국의 일본인 관리들이 핵심을 이루었다.²¹⁾ 1936년부터는 국책으로서의 영화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결과 映畫國策審議會와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영화국책심의회 위원장은 관동군 참모장 이타가키[板垣征四郎]²²⁾ 소장이었고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관동군 참모 하나야[花谷正] 중좌였다. 두 위원회 역시 관동군의 주도 아래 있었던 것이다.²³⁾

1937년 8월 14일 주식회사만주영화협회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에 따라 같은 달 21일 만영이 출범했다. 만영의 설립에 이어 같은 해 10월 7일에는 영화법이 공포되었다. 영화법의 핵심은 허가제(“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조] 및 “영화의 수출, 수입 및 배급은 국무총리대신이 지정한 자를 제하고 이를 행할 수 없다” [4조])였다.

이제 “만주국 문화진흥의 핵심”²⁴⁾인 영화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완료되었는데 그 핵심은 만영이었다. 만영은 국책회사였다. 만영의 자본(500만 원)은 만주국과 만철의 공동투자자로 조성되었다.²⁵⁾ 만영은 법에 의해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을 독점했다. 심지어 일본영화의 중국대륙에서의 배급은 물론이고 일본을 포함한 제국관도 안에서의 독일영화(프랑스영화 포함)의 수입, 배급도 만영이 독점할 정도²⁶⁾로 일제는 만영에 힘을 실어주었다.²⁷⁾

21) 관동군사령부 참모인 고바야시[小林隆] 소좌 등이 중요 멤버였다. 市川彩, 『アジア映畫の創造及建設』, 國際映畫通信社·大陸文化協會, 126쪽;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22쪽.

22) 이타가키는 관동군 고급참모로 이시하라[石原莞爾]와 함께 만주사변의 발발을 주도했다. 1938년 6월 陸相이 되었다가 1939년 6월 支那派遣軍 총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선에 복귀했다. 堀幸雄, 1991, 『右翼辭典』, 三嶺書房, 36~37쪽.

23) 당시 한 일본의 문화지식인은 “만영 창립은 관동군 참모장 이타가키 장군과 신문반 시바노[柴野] 소좌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 近藤春雄, 1943, 『大陸日本の文化構想』, 敵文館, 226쪽. 실제로 시바노는 만영 설립을 앞두고 도쿄에서 일본영화계와 구체적인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滿洲日日新聞』, 1937. 3. 29.

24) 滿洲國通信社, 1939, 『康徳六年版 滿洲國現勢』, 滿洲國通信社, 479쪽.

25) 滿洲事情案内所, 1939, 『滿洲國策會社綜合要覽』, 滿洲事情案内所, 255~262쪽.

26) 滿洲日日新聞社, 1939, 『昭和十五年版 滿洲年鑑』, 滿洲日日新聞社, 419쪽. 한편 만

만영의 초대 이사장은 황족인 金壁東이었지만 실권을 장악한 것은 만철 출신 전무이사 하야시[林顯藏]였다.²⁸⁾ 초기 만영사원은 대부분 만주국 홍보처, 문교부, 협화회, 신문사, 만철 출신의 일본인이었다.²⁹⁾ 따라서 만영의 영화제작은 양과 질 모두에서 부진했다. 그러던 가운데 1938년 6월 일본의 닛카쓰[日活] 다마카와촬영소[多摩川撮影所] 소장이던 네기시[根岸寛一]가 이사 겸 제작부장으로, 그리고 네기시와 더불어 닛카쓰 전성시대를 이끈 바 있으며 ‘일본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키노 쇼조[牧野省三]의 아들인 마키노 미쓰오[牧野満男]가 제작부 차장으로 취임하고 이들의 영향 아래 일본에서 유능한 스태프가 입사하면서 영화제작은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³⁰⁾

영이 독일영화 수입을 독점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軍一郎生, “獨滿映畫協定論”, 『滿洲日日新聞』, 1937. 12. 26을 볼 것. 이 글의 필자는 관동군 관계자인 것으로 보인다.

27) 이 당시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영화 수입업자는 도와상사[東和商社]의 가와기타[川喜多長政]였다. 만영 때문에 외국영화 수입권을 잃은 가와기타는 나중에 만영과 대립하게 된다.

28)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33쪽을 볼 것. 이는 만주국의 영화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 애초에는 영화통제정책은 총리의 통제 아래 놓인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화통제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중국인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만주국에서의 영화통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이었다.

29)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2~3쪽.

30)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46쪽. 이후 만영에 입사한 일본인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의 패전 이후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홍콩 등지의 영화계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일본의 도에이[東映]에서 대표적인 시대극영화 감독으로 활동한 우치다[內田土夢], 홍콩에서 胡金銓 감독의 『방랑의 결투(大醉俠)』와 부르스 리(李小龍)가 출연한 『猛龍過江』, 『死亡遊戲』의 촬영감독으로 활약한 니시모토[西本正] 등이 유명하다. 鈴木尙之, 2000, 『私説 內田吐夢傳』, 岩波書店; 山田宏一·山根貞男,

III. ‘아마카스체제’의 성립과 만주영화협회

1939년 11월 2대 만영 이사장으로 아마카스가 취임했다. 아마카스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헌병대위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大衫榮]를 살해함으로써 자유사상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상징하던 인물이었다.³¹⁾ 출옥 후에는 이타가키의 부탁으로 ‘溥儀공작’ 곧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면서 집정으로 내세운 부의를 국민당의 영향 아래 있던 天津에서 탈출시키는 공작을 주도했고 만주국경찰의 최고책임자인 민정부 警務司 司長을 지냈다.³²⁾ 경무사 사장을 사임한 이후에는 만주국협화회 총무부장으로 “전국 4천만 민중에게 지도 호령을 내리며 철완을 휘두르던”³³⁾ 인물이었다.

아마카스를 만영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만주국 총무청 홍보처장 무토 [武藤富男]와 총무청 차장 기시[岸信介]였다.³⁴⁾ 두 사람은 모두 대표적인 혁신 관료였다. 관동군의 최고실력자인 이타가키를 비롯해 만주국정부에 포진한 일본인 혁신관료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아마카스는 영화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만영의 체제를 변화시켜 나갔다.³⁵⁾ 세간에 “아마카스 이사장이 곧 만영, 만영이 곧 아마카스 이사장”³⁶⁾이라고 알려질 정도였다. 그리고 이른바 ‘아마카스개혁’³⁷⁾의 결과 만영은 국책에 부합하는 거대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아마카스는 영화와 만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

31) 角田房子, 2005, 『甘粕大尉』, 筑摩書房; 山根倬三, 1997, 『問題の人 甘粕正彦』, 大空社.

32)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93~94쪽; 山口猛, 1989, 앞의 책, 85~90쪽; 太田尚樹, 2005, 『滿洲裏史: 甘粕正彦と岸信介が背負つたもの』, 講談社, 223~266쪽.

33) 李台雨, 1938, 『滿洲國映畫界近況』, 『朝光』4권 8호, 251쪽.

34) 아마카스의 이사장 취임과정에 대해서는 武藤富男, 1988, 『私と滿洲國』, 文藝春秋를 볼 것.

35) ‘아마카스체제’ 이후 관동군이 영화통제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육사 출신인 아마카스의 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36) 清水千代太, 1942, 『滿映印象記』, 『映畫旬報』55, 39쪽.

37) 岩崎昶, 1998, 『根岸寛一』, 大空社, 143쪽.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화는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만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아마카스는 만영의 활동에 관한 글이나 담화를 자주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영화에 대해 그가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마카스 본인도 영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³⁸⁾ 아마카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란 만영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영화를 국책선전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 “만영의 근본임무란 한마디로 만주국에서 문화정책의 첨병으로 국책수행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³⁹⁾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국가의 요구”⁴⁰⁾를 떠난 영화, 만영이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만영 이사장이 된 데 대해 항간에서 “협화회정신의 만영이식”⁴¹⁾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영화관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영화를 통해 만인대중에 오락을 주는 것”⁴²⁾을 중시했다. 그가 볼 때 중국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는 어디까지나 오락영화였다. 극영화의 경우 “만주의 현상과 민족에 적응해 명랑을 주제로 하는 동시에 크게 만계의 창의를 발양시키는 것”⁴³⁾이어야 한다고 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넷째 영화를 이윤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철저히 배격했다. 그는 국책회사로서의 만영이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기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만영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⁴⁴⁾라는 말에 잘 함축되어 있다. 만영이 만주국의 영화 제작, 배급을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이익은 “사업으로서의 재산 외의 제작과 전국 상영망의 확충 확립에 전용되고

38) 甘粕正彦, 1943, 「大東亞映畫の理想に就いて」, 『映畫旬報』 100, 16쪽.

39) 甘粕正彦, 1943, 「滿洲映畫の任務と滿映」, 『滿洲行政經濟年報 昭和十八年版』, 日本政治問題調査所, 203쪽.

40) 甘粕正彦, 1942b, 「滿人のために映畫を作る」, 『映畫旬報』 55, 13쪽.

41) 清水千代太, 1942, 앞의 논문, 40쪽.

42) 甘粕正彦, 1942b, 앞의 논문, 13쪽.

43) 甘粕正彦, 1942a, 앞의 논문, 191쪽.

44) 甘粕正彦, 1942b, 앞의 논문, 13쪽.

다시 넓게는 만주예문(藝文)의 발전 촉진에 사용”⁴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영화관, 만영관을 갖고 있던 아마카스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본이 900만 원으로 증자⁴⁶⁾된 데서 드러나듯이 만영의 노선은 크게 바뀌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더 많은 대중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데올로기공세를 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변화는 제작과 상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제작과 관련된 변화의 핵심은 중국인 대중을 위한 영화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광활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전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작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영은 빠른 속도로 영화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인을 위한 영화제작의 확대라는 방침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된 것은 1940년 12월의 조직개혁이었다. 제작부를 극영화 담당의 娛民映畫部和 문화영화 담당의 啓民映畫部로 분화시킴으로써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다졌다.⁴⁷⁾

연출, 각본, 편집, 미술, 촬영, 녹음 등 각 분야의 스태프를 육성하기 위해 만영양성소가 설립된 것도 같은 1940년 12월이었다.⁴⁸⁾ 만영이 기르고자 한 스태프는 주로 중국인이었다. 동시에 만영은 유능한 중국인을 일본에 단기간 유학을 보내 대형 영화회사나 유명한 감독 밑에서 배우도록 했다.⁴⁹⁾ 중국인을 육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본식 영화체제 아래 영화제작에 임하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그리하여 1940년부터는 중국인이 극영화 감독을 맡기 시작했다.⁵⁰⁾ 이후 극영화에서는 중국인이 쓴 각본을 중국인이 연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그러면서 오민영화는 중국인, 계민영화는 일본인이 스태프를 담당하는 형

45) 甘粕正彦, 1942a, 앞의 논문, 189쪽.

46)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95쪽.

47) 胡昶·古泉, 1999, 앞의 책, 98~100쪽.

48) 清水千代太, 1942, 앞의 논문, 42쪽; 天野太郎, 「滿映養成所」, 『映畫旬報』, 55(1942), 64~66쪽.

49) 보기를 들어 왕칙(王則)은 1940년 쇼치쿠에 3개월 동안 파견되었으며 장천사(張天賜)도 반년 동안 마키노 미쓰오의 형이자 당시 일본영화계의 거물이던 마키노 마사히로[マキノ正博] 밑에서 사사했다.

50) 최초의 중국인감독은 1940년에 『風潮』를 연출한 周曉波였다.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18~19쪽.

태로 제작의 이원화가 이루어졌다.⁵¹⁾

선전정책의 책임자이던 무토가 지적한 것처럼 “만인 즉 漢민족에 국가관념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생활감정에 쉽게 직결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⁵²⁾ 선전전의 도구인 영화를 정작 그 대상인 민중이 이해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었다. 중국인이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본영화, 아니면 일본영화의 흉내에 지나지 않는 만영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였다.⁵³⁾ 만주국의 중국인은 결코 일본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만주의 생활풍습을 모르는 일본인이 이국정서라는 시각에서 기획한 초기 만영영화도 마찬가지였다. 설령 중국배우가 중국어로 연기해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일본인이 미안할 때 입버릇처럼 자주 쓰는 “고멘나사이(ごめんあい)”가 중국어로 옮겨져 영화에서는 수없이 “뚜이푸치(對不起: 마주 대할 수 없다, 미안하다)”란 말이 튀어나왔다. 중국인들은 ‘만영의 영화를 마주 대할 수 없다’는 뜻을 겸해 ‘뚜이푸치 영화’ 곧 볼거리가 못 되는 영화라고 험담을 했다.⁵⁴⁾

이에 만영은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극영화를 만들어 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아마카스의 이사장 취임 직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용스튜디오가 준공됨으로써 대량생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고 실제로 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극영화, 문화영화, 뉴스영화가 대거 쏟아져 나왔다. 극영화의 경우 1938년에는 9편, 1939년에는 8편이 제작되었지만 1940년에는 19편, 1941년에는 26편, 1942년에는 19편이 제작되었다.⁵⁵⁾ 그런데 이보

51) 일부 일본스태프가 오민영화의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지만 계민영화의 경우 중국스태프 특히 연출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52) 武藤富男, 1942, 『滿洲は世界一の映畫國になる』, 『映畫旬報』 55, 11쪽.

53) 보기를 들어 1938년 만주국에서 법의 신성함을 선전하기 위해 일본인의 연출로 만들어진 『국법무사(國法無私)』는 일본영화인 『검사와 누이동생(檢事とその妹)』의 변안물이었다.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9쪽.

54) 山口猛, 1989, 앞의 책, 132~133쪽; 요모타 이누히코, 2000, 『일본영화의 이해』, 현암사, 133~134쪽.

55) 목록은 山口猛, 1989, 앞의 책, 346~375쪽; 李道新, 2000, 앞의 책, 248~258쪽을 볼 것.

다 더 활기를 띤 것은 문화영화의 제작이었다. 초기 3년 동안(1937~1939) 60편이 제작된 데 비해 1940~1942년에는 110편으로 급증했다.⁵⁶⁾ 극영화의 제작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가장 유력한 홍보수단”⁵⁷⁾이 되는 문화영화의 제작이 활발했던 것이다.

상영과 관련된 변화의 핵심은 영화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막대한 이윤을 상영망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다시 영화관의 증설과 순회상영의 확대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아마카스 스스로 “상설관의 도시편재를 방지하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입지 못하는 중요한 지점에는 채산을 무시하고서라도 계획적으로 직영관을 건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⁵⁸⁾ 실제로 영화관의 수입 전액이 영화관을 새로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할 정도였다.⁵⁹⁾ 만영은 오지에서 영화관을 신설하는 사업을 위해 1941년 11월 자회사로 만주전영총사를 설립한 뒤 영화관의 신설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⁶⁰⁾ 그 결과 1935년에 95개이던 영화관이 1940년에는 156개, 1941년에는 165개, 1942년에는 201개, 1943년에는 312개로 증가했다.⁶¹⁾ 그것도 애초에는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심이었지만 점차 지방의 중소도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만영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영화관의 급증은 “영화문화의 도시집중을 싫어하고 영화문화를 숲滿에 보급하는 것”이 “아마카스 이사장과 네기시 이사의 숙원”⁶²⁾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56) 목록은 山口猛, 1989, 앞의 책, 376~378쪽을 볼 것. 단지 제작편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루는 제제도 확대되었다. 군대, 산업, 관광, 日滿친선행사 외에도 정치활동, 황제와 궁정의 행사, 풍물, 학교, 개척민, 위생병원, 폐물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문화영화가 제작되었다.

57) 甘粕正彦, 1942a, 앞의 논문, 190~191쪽.

58) 甘粕正彦, 1943, 앞의 논문, 205쪽.

59)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35쪽.

60) 英清次, 1942, 「康徳八年 滿洲映畫」, 『映畫旬報』 37, 67쪽.

61) 극장수의 추이는 胡禔·古泉, 1999, 앞의 책, 176~180쪽, 237~242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62)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34쪽.

한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순회영사⁶³⁾도 더 확대되었다. 만영은 애초에 移動興業隊라는 이름 아래 농촌지역에서의 순회영사를 구상하고 있었다.⁶⁴⁾ 1938년 8월 만영은 만주 전역에 순회영사반을 설치하자는 ‘전만 縣旗公署영화반 설치에 관한 건’을 만주국 홍보처에 제출했다. 그리고 홍보처에서는 이 안을 바탕으로 각지에 영화반을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省縣旗市영화반 설치안’을 발표했다.⁶⁵⁾

‘아마카스체제’ 성립 이후 순회영사는 본궤도에 올랐다. 아마카스는 순회영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만영은 1941년 여름 국무원 홍보처, 협화회와 함께 중앙순회영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마카스였다.⁶⁶⁾ 실제로 만영 상영부 순영과에 중앙순회영사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만영이 실제로 중앙순회영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순회영사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순회영사의 핵심은 만영이었다.⁶⁷⁾

63) 순회영사에 대해서는 이준식, 「일제의 영화통제정책과 만주영화협회: 순회영사를 중심으로」(미발표논문)를 볼 것.

64) 國務院總務廳弘報處, 1997, 『宣傳の研究 第1輯』, 國務院總務廳弘報處, 100쪽.

65) 田中公, 1938, 「映畫工作の組織化と16耗トーキー映畫の利用に就て」, 『宣撫月報』 3권 11호; 平塚敏, 1939, 「十六耗による國民映畫網の建設」, 『滿洲映畫』 3권 5호.

66) 日本映畫雜誌協會, 1943, 『昭和十八年版 映畫年鑑』, 日本映畫雜誌協會, 607쪽.

67) 大塚有章, 1943, 「滿洲國における巡迴映寫」, 『映畫旬報』 92, 28쪽; 市川彩, 1941, 앞의 책, 146쪽.

IV. 대륙영화연맹 구상과 좌절

1. 만주영화협회의 화북진출

만영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만영의 힘을 중국대륙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⁶⁸⁾ 실제로 만영의 설립을 주도한 관동군의 시바노 소좌는 만영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만주국 및 支那⁶⁹⁾에 대한 일본國情 그중에서도 일본정신의 보급”을 꼽았다.⁷⁰⁾ 곧 만영은 처음부터 중국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화회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가 애초에 일본영화의 중국대륙 배급권을 만영에 귀속시킨 것도 만영이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데 교두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⁷¹⁾

따라서 만영은 자체 제작한 영화를 중국에 보급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조선에 수출하는 데도 전력을 다했다. 보기를 들어 1939년 8월 경성에서는 만영의 『鐵血慧心』이 공개되었다.⁷²⁾ 대만의 경우 만주국 홍보처와 대만총독부를 통해 대만영화협회와 滿臺滿映配給組合을 결성하고 이 조합을 통해 1939년 8월부터 만영의 영화를 대만에 배급했다.⁷³⁾ 일본, 조선, 중국 대륙, 대만과의 합작영화도 추진되었다.⁷⁴⁾

68) 특히 이 문제는 만영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 가토[加藤厚子]가 최근 만영의 중국대륙 진출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다만 가토는 이를 만영의 시장확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그 이면에 존재하던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 구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加藤厚子, 2003, 『總動員體制と映畫』, 新曜社, 제5장을 볼 것.

69) 여기서 지나는 중국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인이 사용하던 지나라는 말에는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현재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용어로 그대로 표기한다. 북지, 中支, 南支도 마찬가지이다.

70) 柴野少佐, “明日の映畫”, 『滿洲日日新聞』, 1938. 1. 3.

71) 『滿洲日日新聞』, 1938. 1. 16.

72) 滿洲日日新聞社, 1939, 앞의 책, 419쪽.

73) 滿洲日日新聞社, 1939, 앞의 책; 『泰東日報』, 1939. 8. 6.

74) 대표적인 보기로 조선과의 합작인 『福地萬里』, 대만과의 합작인 『사용의 중(サヨンの中)』

이 과정에서 당시 만영의 최고 스타인 이향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향란은 원래 일본인이었지만 중국을 무대로 한 일본영화⁷⁵⁾에서 일본남성을 사랑하는 중국여성 역할을 주로 맡으면서 중국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향란은 상해 中華電影股份有限公司(이하 중화전영)과의 합작영화인 『만세유방』, 조선에서 제작된 『그대와 나(君と僕)』, 대만에서 제작된 『사용의 중』 등에도 출연했다. 이향란은 일본, 만주, 중국, 조선, 대만에서의 영화출연을 통해 만영의 이향란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향란으로 떠올랐으며 역으로 만영은 이향란이라는 상품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만영의 이름을 알리는 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공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영 스스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제의 중국침략과 관련해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아마카스체제 이전에 이미 만영은 만주국 밖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만영이 설립되기 8일 전에 일어난 중·일전쟁이 빠르게 중국대륙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영의 해외진출 전략도 구체화되었다. 만영은 일본군이 장악한 중국대륙에 대한 진출을 모색했다. 이는 결국 영화를 통해 일본의 세력을 중국 전역에 넓히려는 것으로서 일제의 대륙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중국대륙을 향한 최초의 움직임은 점령지인 화북에서 나타났다.⁷⁶⁾ 만영은 일본의 영화회사와 영화배급에 관한 계약을 했는데 그 관할은 만주국뿐만 아니라 화북까지 포괄했다. 화북은 처음부터 만영의 배급권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만영 북경출장소의 성격을 띤 新民映畫協會가 1938년 2월에 출범하면서 만영의 주도 아래 이 지역에서의 영화를 통한 선전활동은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만영은 화북에 진출하면서 그 목표를 “일본의 지도에 의한 만주국의

の鍾), 일본과의 합작인 『迎春花』, 상해와의 합작인 『萬世流芳』 등을 들 수 있다.

75) 도호의 대륙영화 3부작(『백란의 노래(白蘭の歌)』, 『열사의 맹서(熱砂の誓ひ)』, 『중국의 밤(支那の夜)』), 쇼치쿠의 『소주의 밤(蘇州の夜)』이 그것이다.

76) 이하 화북 관련 서술은 田中公, 1941, 『華北電影の現状』, 『映畫旬報』 28; 田中公, 1942, 『昭和十六年度 華北映畫の足跡』, 『映畫旬報』 37; 東武郎, 1942, 『華北映畫界新體制』, 『映畫旬報』 56; 奥田久史, 1942, 『華北の映畫史』, 『映畫旬報』 64; 池田一郎, 1942, 『華北電影の現状』, 『映畫旬報』 64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가통일이 건국 6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점”을 “갱생 중국민중”에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했다.⁷⁷⁾ 만주국에서의 경험을 중국대륙 전체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만영의 구상이었던 것이다.

신민영화협회는 영화에 의한 대륙정책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구로 규정되었다.⁷⁸⁾ 그리고 만영은 신민영화협회를 통해 영화관을 건립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38년 8월까지 북경, 天津, 상해 등지에 28개의 영화관을 세운 것이 확인된다.⁷⁹⁾ 특히 화북지역이 아닌 상해, 漢口, 武昌에까지 상영망을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상해의 경우 가장 많은 7개의 영화관을 설립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처음부터 만영이 중국대륙 전체를 염두에 둔 채 화북에 진출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렇지만 애초에 신민영화협회는 화북에서 영화를 배급하고 상영관을 정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1938년 4월에 북경에 친일괴뢰정권으로 수립된 중화민국임시정부, 일본정부의 식민지·점령지 전담부서인 興亞院, 북지파견군, 그리고 만영에 의해 華北映畫事業研究會가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만영이 25만 원, 홍아원이 20만 원, 일본의 여러 영화회사가 도합 10만 원, 중화민국임시정부가 25만 원을 출자해 새로운 영화회사를 만들 것이 결정되었다. 출자금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영은 화북에서의 영화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1939년 11월에는 신민영화협회가 해소되고 華北電影股份有限公司(이하 화북전영)가 설립되었다. 화북전영의 설립 역시 만영이 주도한 것이었다.⁸⁰⁾

그런데 화북전영은 만영과는 달리 극영화보다는 문화영화의 제작, 일본 영화와 만영영화의 배급, 그리고 중국민중을 상대로 한 순회영사 개최에 주

77) 1938, 「映嚮による平和建設を目指し, 新民映嚮協謁北京に成立す」, 『滿洲映畫』 1938년 3월호, 13쪽.

78) 滿洲日日新聞社, 1939, 앞의 책, 378쪽.

79) 滿映總務部宣傳課, 1938, 「滿洲映畫協會現況」, 『宣撫月報』, 4권 7호, 75쪽.

80) 화북전영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홍아원의 마쓰이[松井眞二] 대좌와 만영의 후루카와[古川信吾] 배급부장이었다고 한다. 滿洲日日新聞社, 1939, 앞의 책, 425쪽.

력했다. 중국어 극영화는 만영이 제작한 것을 상영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도 만영이 중국대륙으로의 진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북에서의 만영영화 상영은 예상보다는 저조한 관객동원 실적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대륙침략에 부합하는 영화를 보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점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 1941년부터 1942년 사이에 실시된 북지파견군의 치안강화운동이었다. 화북전영은 이 운동에 적극 호응해 군이 중심이 되어 실시된 순회영사에 필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⁸¹⁾

화북에서의 만영의 주도권은 194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아마카스체제 이후 주력사업이 된 순회영사의 경우 1942년 한 해에만 화북의 河北省과 山東省에서 북지노동자유치반을 운용한 것이 확인된다.⁸²⁾ 관동군의 관할범위 밖까지 만영이 직접 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지파견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영으로서는 화북전영의 가장 큰 가치는 중국대륙을 모두 망라한 영화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만영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후술하듯이 만영의 아마카스 못지않게 일제 특히 일본군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와기타⁸³⁾와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일 때 만영을 지지하는 우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38년 여름에 만영은 “日滿支 합변 영화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만영 이사로 부임한 네기시가 7월 1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상

81) 여기에 대해서는 村尾薰, 1941, 「日本映畫の現地報告 - 日本映畫を支那側に上映した成果」, 『映畫評論』 1권 12호; 1942, 「華北映畫通信」, 『映畫旬報』 46, 39쪽; 村尾薰, 1942, 「燕京影片片片」, 『映畫旬報』 50; 村尾薰, 1942, 「北支軍と巡廻映寫隊」, 『映畫旬報』 64; 1942, 「華北治強運動と映畫工作」, 『映畫旬報』 64 등을 볼 것.

82) 日本映畫雜誌協會, 1943, 앞의 책, 608~609쪽.

83)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가와기타가 자신들의 이론적, 정신적 지주였다고 회상했다. 대표적인 보기로 清水晶, 1995, 『上海租界映畫私史』, 新潮社; 辻久一, 1998, 『中華電影史話』, 凱風社 등을 볼 것.

해로 출장을 갔고 상해에 새로운 국책영화회사가 설립되면 신민영화협회는 해산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⁸⁴⁾ 적어도 1930년대 말에 만영의 본거지인 新京과 상해, 그리고 북경을 하나로 엮는 영화네트워크 구상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후술하듯이 이 무렵 상해의 일본군은 만영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상해의 유력한 중국영화인을 포섭해 상해영화계에 친일세력을 부식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자 만영도 일단 만주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화북에 북지파견군의 협력을 얻어 만영의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실천에 옮겨나갔다. 화북전영의 설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상해와의 주도권 싸움은 아마카스체제 이후 더욱 가시화되었다. 아마카스를 비롯해 만영의 일본인들은 만주국이 일제의 제국판도에서 적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신체제탄생의 연대로부터 말하면 만영이 연상이지만 대동아공영권의 정신에서 볼 때 일본영화가 당연히 그 아버지이며 만영이 장남”⁸⁵⁾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영이 일제의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야 하며 실제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 ‘동아신질서’ 구상과 그에 뒤이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이었다. 만영도 이러한 구상을 전후해 이미 만주 밖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만영은 상해에 새로 형성된 세력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84) 滿洲日日新聞社, 1939, 앞의 책, 378~379쪽.

85) 天野太郎, 1942, 「文化財の配給」, 『映畫旬報』 55, 48쪽.

2. 만주영화협회와 상해의 대립

1939년 6월에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南京에서 中華電影股份有限公司(이하 중화전영)이 설립되었다.⁸⁶⁾ 설립된 곳은 남경이었지만 아직은 ‘항일의 고도(孤島)’로 남아 있던 상해의 영화배급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이 화중, 화남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1930년대 말부터는 상해가 대륙영화정책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지파견군 보도부, 흥아원, 내각정보국은 상해에 영화공작의 국책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⁸⁷⁾

상해는 상해사변 이후 항일영화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상해 조계 영사관경찰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항일적 성격을 띤 영화가 만들어져 중국 각지의 민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로서는 중국민중이 항일전선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화사업의 차원에서 상해의 영화계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⁸⁸⁾ 중화전영이 설립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만영으로부터 화중의 일본영화 배급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대만총독부 안의 共榮會가 갖고 있던 화남의 일본영화 배급권도 중화전영으로 귀속되었다. 아울러 일본영화의 수입도 만영을 거치지 않고 일본의 영화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⁸⁹⁾ 중국대륙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만영의 계획은 중화전영이 설립되는 순간 좌절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86) 동사장은 국민정부 외교부장인 諸民誼, 부동사장은 가와기타가 맡았다. 동사는 이사의 중국어 표현이다. 중화전영에 대해서는 日本映畫雜誌協會, 1942, 『昭和十七年版 映畫年鑑』, 日本映畫雜誌協會, 15-23~15-24쪽을 볼 것.

87) 清水千代太, 1943, 『對支映畫工作に望むことあり!』, 『映畫旬報』 69, 29쪽.

88) 이는 당시 일본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 초기 일제는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표방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중국 국민정부 안의 친일파를 유인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1938년 11월 ‘동아신질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2월에는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 제휴’의 세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전환은 汪兆銘을 중심으로 한 친일괴뢰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89) 日本映畫雜誌協會, 1942, 앞의 책, 15-23쪽.

만영의 배후에 관동군이 존재했듯이 상해의 영화공작에는 중지파견군이 개입하고 있었다. 상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영화산업이 꽃을 피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만주국이나 화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영화를 통한 선전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것은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지나통, 지나영화통”⁹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가와기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가와기타와의 교섭에 나선 것은 중지파견군 참모본부에서 선전공작을 담당하던 제4과 과장 다카하시[高橋坦] 대좌였다. 가와기타를 추천한 것은 내각정보국의 의뢰를 받은 일본영화업계의 수뇌들이었다.⁹¹⁾ 군과 영화업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인물로 가와기타가 지목된 것이다. 일본군부는 화중, 화남의 영화산업 재편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까지 가와기타를 포섭하려고 했다.⁹²⁾ 그렇다면 가와기타가 지목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와기타의 아버지인 가와기타 다이지로[川喜多大治郎]는 일본육사 출신으로 청국정부에서 세운 北洋軍官學校의 교관으로 있으면서 중국혁명에 직접 관여하다가 ‘매국노’로 간주되어 일본헌병에 의해 암살된 인물이었다.⁹³⁾ 특히 그는 북양군벌의 핵심인 袁世凱를 비롯해 나중에 대표적인 친일군벌이 되는 段祺瑞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의 동료나 제자 가운데는 나중에 군벌의 일원이 되는 인물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가와기타 자신도 아버지를 이어 ‘중국에의 꿈’⁹⁴⁾을 갖고 북경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중

90) 清水千代太, 1943, 앞의 글, 29쪽.

91) 清水晶, 1986, 「中華電影と川喜多長政」, 『講座 日本映畫 4 戦争と映畫』, 岩波書店, 273쪽.

92) 가와기타가 요구한 것은 새로 만들어질 영화회사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고 군은 일절 개입하지 말 것과 회사의 경영방침이 군의 근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경영자에게 일임하라는 것이었다. 川喜多長政, “私の履歷書”, 『日本經濟新聞』, 1980. 4. 23; 辻久一, 1998, 앞의 책, 46~50쪽.

93) 이하 가와기타 다이지로에 대한 서술은 本峯洋一, 「李香蘭と川喜多長政(東滅東和創業者), その父川喜多大治(砲兵大尉)」, <http://homepage3.nifty.com/hongo/mokuji2.htm>; 清水晶, 1986, 「付 初めて語られた父の死の秘密」, 『講座 日本映畫 4 戦争と映畫』,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94) 佐藤忠男, 2004, 앞의 책, 21쪽.

국사정에 밝았다.

또한 가와기타는 독일유학 후 독일의 대표적인 영화회사인 우파(UFA : Universum Film AG)의 일본 측 대리인을 거쳐 서양영화 수입회사인 도와상사[東和商社]를 설립했다. 1930년에는 상해에 도와상사 지사를 설치함으로써 상해영화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⁹⁵⁾ 1937년 독일 감독 판크(Arnold Fanck)를 초대해 독일과의 합작영화인 『새로운 땅(新しき土)』을 만든 것⁹⁶⁾도, 1938년 중·일전쟁 직후 중국에서 중국민중을 보호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그린 중·일합작영화(실제로는 일본영화) 『동양 평화의 길(東洋平和の道)』⁹⁷⁾을 제작한 것⁹⁸⁾도 가와기타였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 내세우는 간판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화인이 가와기타였던 것이다.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중국인맥에다가 능통한 중국어, 영화사업가로서의 위상⁹⁹⁾이 더해져 일본군부는 가와기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여기에 가와기타는 ‘同文同種’ 관 곧 일본인과 중국인의 문화와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강한 반미주의적 성향도 품고 있었다.¹⁰⁰⁾ 1938년에 쓴 글에서는 “동양에서 영화로 비롯되는 아메리카니즘을 막는 일” 곧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95) 市川彩, 1941, 앞의 책, 79쪽.

96) 『새로운 땅』은 만주라고 지칭되지는 않지만 누가 보아도 만주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광활한 땅에 일본인 청년남녀가 진출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서구에서는 나치 선전영화라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일제의 만주침략을 합리화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각각 배척을 당했다. 『새로운 땅』에 대해서는 千葉伸夫, 2001, 『原節子』, 平凡社, 59~110쪽; 山本直樹, 2004, 『風景の(再)発見』, 岩本憲兒 編, 2004b, 『日本映畫とナショナリズム 1931~1945』, 森話社를 볼 것.

97) 이 영화에는 “일화(日華) 곧 일본과 중국 - 글쓴이) 양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정애와 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동양평화의 길”이라는 제작자의 변이 자막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일본과 중국 두 나라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중국인이 볼 때는 일제침략을 합리화하는 영화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인에게는 다큐멘터리형식의 중국풍경이 생경했기 때문이었다.

98) 이 영화에 대해서는 晏妮, 2007, 『戰時下の日中映畫交々 - その史的展開をめぐる』, 一橋大學 博士學位論文, 3장 2절을 볼 것.

99) 만영의 초기 실세이던 하야시, 나중에 만영의 전권을 장악한 아마카스가 모두 영화에는 문외한이나 마차가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화전문가라는 점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100) 晏妮, 2007, 앞의 논문, 2장 3절 1항을 볼 것.

에서 서구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대신에 일본의 세력을 부식하는 것이 일본영화업계의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었다.¹⁰¹⁾ 이는 당시 일제가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동일한 것이었다. 일본군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와기타는 일제의 대륙침략 구상에 어울리는 사상적 배경마저 갖추고 있던 최고의 적임자였다.¹⁰²⁾

일제가 상해의 책임자로 가와기타를 선택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영과 아마카스가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만주지상주의자”인 아마카스는 관동군의 후원 아래 상해에 만영의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¹⁰³⁾ 그러나 중지파견군이 관동군과 아마카스의 의도대로 움직일 리 없었기 때문에 이는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중지파견군은 오히려 아마카스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가와기타에게 상해의 영화계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처음부터 만영의 의지를 꺾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가와기타는 일제의 대륙정책, 그 가운데서도 영화정책에 대해 만영이나 아마카스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종일관 만주와 상해가 대립하는 요인이 되었다.

먼저 영화통제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영과 가와기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만영은 법에 의해 출범한 국책회사였다. 아마카스와 만영 관계자들은 법에 기초한 영화통제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것은 중화전영의 설립 직전에 네기시가 중국에서도 영화법이 제정되고 국가에 의한 영화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¹⁰⁴⁾ 이에 비해 가와기타는 일본에서 영화법이 실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영화법이 외국영화의 무조건 수입금지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¹⁰⁵⁾

101) 川喜多長政, 1938, 「映畫輸出の諸問題」, 『日本映畫』 3권 12호, 19~25쪽.

102) 이와 관련해 한 영화인이 가와기타를 코스모폴리탄이면서도 “열렬한 지사적 야마토혼(大和魂)에 불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岡田眞吉, 1943, 「川喜多長政論」, 『日本映畫』 8권 5호, 31쪽.

103) 岩崎昶, 1998, 앞의 책, 152~153쪽.

104) 根岸寛一, 1939, 「滿洲から一草」, 『日本映畫』 4권 3호, 30~31쪽.

105) 川喜多長政, 1938a, 「映畫法と外畫輸入業者」 3권 5호, 22~25쪽.

외국영화의 수입규제 문제는 일본영화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가와기타는 상해에 가기 전부터 만주국의 영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만영이 만주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배급권을 독점하면서 미국영화의 상영이 사실상 금지된 데 대해 “만주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영화정책을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¹⁰⁶⁾고 본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가와기타가 볼 때 미국영화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지가 아니라 미국영화보다 사랑받을 수 있는 만주영화를 만드는 데 있지만 만영의 영화정책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영화통제체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더 표출되지는 않았다. 가와기타로서도 일본정부와 군부에 협력하고 있는 한 통제체제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영과 가와기타 사이의 차이는 좀더 구체적인 문제, 단적으로 말하면 영화전문가 특히 중국영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드러났다.¹⁰⁷⁾ 가와기타는 만영이 만주국민에게 사랑받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일본인의 조직인 만영이 일본인의 눈으로만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적어도 아마카스체제 아래 만영도 중국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와기타는 그러한 영화도 중국인 자신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만영의 새로운 노선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와기타는 “일본영화계가 기계를 빌려주고 기술을 파견”하고 여기에 중국영화인의 노력이 더해질 때 진정 중국민중이 볼 만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¹⁰⁸⁾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영화에 일본인은 배우는 물론이고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로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중국인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만영

106) 川喜多長政, 1938b, 「映畫輸出の諸問題」, 『日本映畫』 3권 12호, 24쪽.

107) 清水晶, 1995, 앞의 책, 74쪽.

108) 川喜多長政, 1938b, 앞의 논문, 25쪽.

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중심인 조직이었다. 특히 아마카스개혁 이후 만영의 중요 보직에는 협화회 출신의 일본인이 대거 진출한 반면에 영화인들은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배제되었다.¹⁰⁹⁾ “오민영화부장 마키노, 계민영화부장 아카미네[赤嶺義臣]를 예외로 하고 배급부장 이케다[池田桑作], 경리부장 사카가미[坂上休次郎]는 협화회 출신으로 과장급에도 협화회 출신의 인재가 많다”고 할 정도였다.¹¹⁰⁾ 그런데 아카미네도 사실은 협화회 출신이었다는 점¹¹¹⁾을 감안한다면 영화인의 입지는 더욱 좁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영화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민영화에 스테프나 배우로 참여하는 데 국한되었다. 만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중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가와기타는 중화전영의 기본방침으로 “중국인의 주권존중”¹¹²⁾을 표방하고 있었다. 상해의 일본군도 이러한 가와기타의 방침을 수용했다. 이는 회사 이름에 영화가 아니라 전영을 사용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시미즈 아키라[清水晶]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가와기타는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영화”를 지향했다.¹¹³⁾ 설사 항일적 성격을 띤 영화라도 중국인이 원하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와기타의 생각이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는 통상적인 선전영화를 갖고는 중국인에게 다가갈 수 없으며 결국 중국인을 일본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¹¹⁴⁾ 따라서 가와기타는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 상해에서 중국영화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영화제작을 앞두고 비밀리에 중경(重慶)의 국민당정부에 사실상 사전심의를 받는 것도 묵인할 정도였

109) 岩崎稔, 1998, 앞의 책, 143쪽.

110) 清水千代太, 1942, 앞의 논문, 40쪽.

111) 坪井與, 1984, 앞의 논문, 21쪽.

112) 山口猛, 2000, 『上海シネマと銀座カライライス物語 波瀾万丈, 柳田嘉兵衛の八十年』, 集英社, 127쪽.

113) 清水晶, 1995, 앞의 책, 85쪽.

114) 가와기타는 나중에 “만영에서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중국 영화는 만주 내에서도 불평이 심해 중국에서의 상영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회상했다. 川喜多長政, 1980, 앞의 논문.

다.¹¹⁵⁾ 한때 방입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일적 성격이 강하던 상해의 중국영화인들을 일제 쪽으로 견인하는 데 성공한 것¹¹⁶⁾은 상해의 일본군인이 가와기타의 노선을 계속 지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역으로 정치지향적인 아마카스가 볼 때 가와기타의 노선은 본말이 전도된 것 곧 일본의 對중국 문화공작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영화공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중화전영의 자본금은 모두 100만 원이었는데 남경의 유신정부가 반을 출자하고 나머지 반은 만영과 일본영화업자들이 다시 반분하는 형태였다. 곧 중화전영의 설립에도 만영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화전영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중지파견군의 지지를 얻은 가와기타였다.¹¹⁷⁾ 중화전영의 설립이 추진될 때부터 일본군부는 화중과 화남에 대한 선전공작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중화전영의 설립을 앞둔 1939년 2월 육군성이 남지파견군에 대해 상해에 설립될 ‘영화 특수회사’(곧 중화전영 - 글쓴이)로 하여금 남지파견군 관할 대만총독부의 영화선전공작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서도 확인된다.¹¹⁸⁾

가와기타는 상해의 중국인 영화제작회사는 온존시킨 채 배급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는 것으로 중화전영의 활동 방향을 정했다. ‘가와기타정책’¹¹⁹⁾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대륙지배를 위해서는 친일중국인과 제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중화전영이 처음으로 배급한 『木蘭從軍』은 중화전영 설립 이전에 항일영화로 제작된 작품이었고 따라서 군 일부에서 반대했지만 가와기타는 과감하게 이 영화를 제1호 배급작품으로 선정했다.¹²⁰⁾ 일제의 대외영화정책에서 일본은 자본과 기술만 제공하고 사람은 현지인을 써야

115) 清水晶, 1986, 앞의 논문, 277~278쪽; 清水晶, 1995, 앞의 책, 92쪽; 久一, 앞의 책, 85쪽.

116) 岡田眞吉, 1943, 앞의 논문, 33쪽.

117) 만영의 이사인 네기시가 중화전영의 취체역으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8) JACAR Ref. C04120751200 昭和14年「陸支受大日記 第8號 2/2」(陸軍省 - 陸支密大日記 - S14 - 7 - 96) 防衛廳防衛研究所 소장.

119) 黃天始, 1990, 「中國映畫史の忘れられた部分」, 『映畫史研究』 23, 83쪽.

120) 辻久一, 1998, 앞의 책, 86~87쪽.

한다는 생각¹²¹⁾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1940년 3월 왕조명정권이 수립된 뒤 같은 해 12월 중화전영의 개조가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중화민국 국민정부 선전부 소속의 국책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다.¹²²⁾ 지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정부의 출자가 51%로 늘어난 데 비해 일본영화업자들의 출자는 24%로 줄어들었다. 만영의 출자지분은 여전히 25%였다. 비록 1%의 차이이긴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중국의 출자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중화전영이 중국회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중, 화남에서의 모든 영화(일본영화를 포함한 외국영화까지)의 배급독점권이 국민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중화전영은 국민정부 유일의 독점적 영화배급회사의 지위를 공인받은 것이다.¹²³⁾ 역으로 화중, 화남에 진출하려는 만영의 구상은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중화전영의 개조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달 도쿄의 참모본부, 육군성, 해군성, 내각정보국의 알선으로 쇼치쿠, 도호, 도와상사, 그리고 중화전영의 공동출자(자본금 18만5천원)로 '남방' 곧 동남아시아에서의 선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南洋映畫協會가 출범했다.¹²⁴⁾ 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가와기타였다. 곧 1940년 말이면 가와기타는 일본 군부와 왕조명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륙영화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굳게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파시즘 영화이론가인 쓰무라[津川秀夫]가 대동아 영화정책의 핵심을 남방권에서의 영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남방영화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중화전영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는 데 시사적이다.¹²⁵⁾

실제로 중화전영 측은 이제 “대동아공영권 영화계의 중심”¹²⁶⁾이 되었다고

121) 川喜多長政, 1942, 「中國映畫の復興と南方進出」, 『映畫旬報』 43, 7쪽.

122) 日本映畫雜誌協會, 1942, 앞의 책, 15~24쪽.

123) 野坂三郎, 1942, 「中華映畫の性格とその責任」, 『映畫旬報』 50.

124) 日本映畫雜誌協會, 1943, 앞의 책, 326~327쪽, 708쪽.

125) 津村秀夫, 1942, 「大東亞映畫政策の基礎條件」, 『日本映畫』 7권 4호, 9쪽.

126) 轟見恒夫·辻久一 외, 1942, 「大東亞映畫政策を語る現地座談會 中日合作映畫の將

자임했다. 하즈미[糺見恒夫]는 만영의 신경스튜디오를 의식한 듯 대동아공영권의 지리적 중심인 상해에 대촬영소를 건설해 여기에 대동아공영권의 영화인들을 모두 참가시켜 세계시장을 석권할 영화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¹²⁷⁾ 하즈미는 도와상사에서부터 시작해 상해에 이르기까지 가와기타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하즈미의 생각은 가와기타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중화전영 측에서는 만영의 노선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제기했다.¹²⁸⁾

3. 대륙영화연맹 결성의 움직임

개조 이후 중화전영은 지금까지 만영이 독점하고 있던 만주국과 화북에까지 배급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중화전영에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던 만영은 오히려 중화전영을 만영의 산하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1941년 5월 남경의 지나파견군 총사령부¹²⁹⁾는 가와기타를 소환해 중화전영의 운영방침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가와기타는 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도쿄로 돌아갔다.¹³⁰⁾ 지나파견군에서 요구한 방침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지 군, 흥아원 모두 만주 측의 裏面공작 일체를 배격하고 귀하(가와기타 - 글쓴이)를 절대지지하는 방침으로 만주 측도 형세가 불리한 것을 알고 조용히 말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아마카스씨도 밝혔습

來], 『映畫評論』 2권 4호, 38쪽.

127) 糺見恒夫, 1942, 「大東亞映畫建設の夢と現實」, 『新映畫』 2권 2호, 50쪽.

128) 보기를 들어 중화전영 업무부 부부장인 고이데(小出孝)는 상해영화계를 소개하는 글에서 중화전영이 “만영이 밝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小出孝, 1941, 「上海映畫界解説 2」, 『映畫旬報』 19, 31쪽.

129) 화북의 북지나방면군과 화중의 중지파견군은 각각 북경과 남경에 중화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유신정부라는 괴뢰정부를 설치하는 등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중지파견군 사령부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한 것이 지나파견군 총사령부였다. 곧 위계상으로는 지나파견군이 북지나방면군의 상급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나파견군과 북지나방면군은 여전히 대립적이었다. 후지와라 아키라, 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242쪽.

130) 辻久一, 1998, 앞의 책, 150 ~ 154쪽.

니다”라는 기록¹³¹⁾에 비추어볼 때 만영이 중화전영으로 하여금 모종의 양보를 하도록 압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압박을 가한 주역은 아마 아마카스와 가까운 이타가키였을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가와기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화중, 화남에서 영화공작의 실패를 두려워한 군이 만영을 설득해 중화전영을 만영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었던 일로 되었다.¹³²⁾

1941년 봄에 일어난 만영과 중화전영의 대립은 아마카스와 가와기타의 대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군부 안에서의 미묘한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관동군 출신으로 만주사변의 주역이던 이타가키는 1939년 9월에 설치된 지나파견군 총사령부의 참모장으로 부임하면서 만영과 아마카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군부 안의 중국통세력은 중·일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중국인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격을 지닌 중국인세력을 활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던 가와기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가와기타와 중화전영을 지원하고 있었다.¹³³⁾

이 대립에서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화북전영과 중화전영의 설립을 통해 중국대륙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편입시키려던 만영의 방침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군이 상해에 진주하면서 만영과 중화전영의 위상에는 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 해 4월 중화전영의 주도에 의해 중국인이 경영하던 新華, 藝華, 國華의 3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자본금 300만 원 규모의 中華聯合股份製片公司(이하 중화연합)가 설립되었다.¹³⁴⁾ 중화연합의 설립을 통해 상해의 영화제작회사는 일원화되었다. 이제 만영이 그러했듯이 제작을 독점하는 대형 영화회사가 등장한 것이다. 중화연합

131) 중화연합 總經理 이시카와[石川俊重]가 가와기타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이다. 清水晶, 1995, 앞의 책, 82쪽.

132) 加藤厚子, 2003, 앞의 책, 198쪽.

133) 이에 대해서는 本嵜洋一, 앞의 논문을 볼 것.

134) 중화연합에 대해서는 1942, 「中華聯合製片公社の設立と現況」, 『映畫旬報』 56; 清水晶, 1942, 「中華聯合製片公社の増資に寄せて」, 『映畫旬報』 64; 清水晶, 1943, 「中國映畫界の新出發 - 中聯の誕生」, 『映畫旬報』 76 등을 볼 것.

의 실세는 가와기타(부동사장)였고¹³⁵⁾ 실질적 책임자는 총경리인 張善琨이었다.¹³⁶⁾ 중국인과의 적극적 제휴를 내건 가와기타의 방침이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만영과 중화전영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는 중화연합 설립 직후인 1942년 6월부터 만영, 중화전영, 그리고 화북전영까지 포함해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데서 확인된다. 대륙영화연맹의 구상을 누가 처음에 발의했는지는 현재 분명하지 않다. 자료에 따라서 관동군과 만영이 원동력이었다는 설¹³⁷⁾과 “군과 홍아원”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는 설¹³⁸⁾이 있으며, 가와기타가 주도했다는 기록¹³⁹⁾도 있다.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회의는 같은 해 7월 만영의 본거지인 新京, 화북전영의 본거지인 북경, 중화전영의 본거지인 남경, 상해를 순회하면서 이루어졌다.¹⁴⁰⁾ 당연히 각 회사의 관계자도 참여했지만 일본정부와 일본군 관계자도 참석했다.¹⁴¹⁾ 이는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작업에 일제의 의도가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륙영화연맹이 결성되는 데까지

135) 동사장은 국민정부 선전부장인 林栢生이었다.

136) 장선근은 당시 상해영화계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중국인협력자를 찾던 가와기타와 연대한 뒤 상해의 영화인들을 중화연합에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重慶의 국민당정부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마이클·바스켓, 2004, 「映畫人たちの‘帝國’-‘大東亞共榮圈’の諸相」, 岩本憲兒 編, 2004a, 앞의 책, 161~164쪽을 볼 것.

137) 辻久一, 1998, 앞의 책, 204쪽.

138) 清水晶, 1995, 앞의 책, 94쪽.

139) JACAR Ref.B04012460300 活動寫真‘フィルム’關係雜件 第2卷(I-12-0-002) 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이 자료는 1942년 8월 10일자로 남경의 일본대사관이 외무성으로 보낸 문서이다. “중화영화(중화전영-글쓴이)의 가와기타 부사장이 도쿄에서 관계방면과 협의한 결과 중화, 화북, 만영의 3사로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해 생필품의 배급, 영화제작의 할당, 남녀배우의 공동이용 등을 협의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는 가와기타가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쿄의 정부 및 군당국과 밀접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40) 여기에 대해서는 辻久一, 1998, 앞의 책, 204~228쪽을 볼 것.

141) 정보국, 내무성, 육군성 보도부, 해군성 군무국, 對滿사무국 등에서 참석했다. 清水晶, 1995, 앞의 책, 95쪽.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본정부나 군도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7월의 연쇄회의를 통해 중국대륙에서의 영화제작의 기본 방침, 중국대륙의 영화를 일본과 남방에 수출하는 문제, 일본과 제휴해 영화를 제작하는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경에서의 첫 회의부터 “중국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만영과 상해 측 사이에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신경의 회의에는 만영의 네기시, 마키노 등과 중화전영의 가와기타, 하즈미 등 외에 만주국 홍보처장인 무토와 관동군 보도부장도 참석했다. 관동군의 요구가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만영이 일제의 중국지배라는 목적 아래 영화정책을 펼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상해 측은 “절망적인 침묵”으로 항변했다고 한다.

만영과 중화전영 사이의 차이는 북경회의, 남경회의에서도 거듭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만영과 중화전영이 각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합의한 것은 만영의 이향란이 출현하는 합작영화를 만들기로 한 것뿐이었다. 『만세유방』이 그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영화도 이름만 합작이지 사실상 상해 측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합작영화를 통해서라도 상해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던 만영의 의도는 다시 한 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만영과 아마카스로서는 후발주자이자 스스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여기던 중화전영이 대륙영화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마저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제의 침략전쟁이 이미 만주와 화북을 벗어나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데 이어 동남아시아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주를 기반으로 한 만영이 대륙영화연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구상이 일제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군부와 영화계의 관심은 새로운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그것은 1942년 초부터 ‘대동아영화권’ 담론이 널리 유포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1942년 2월 남방 전문가인 야마네[山根正吉]는 大東亞映畫聯盟의 결성을 주장했다.¹⁴²⁾

이제 대륙영화연맹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영화네트워크가 구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영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던 내각정보국 제5부 제2과 과장이던 후와[不破祐俊]도 “대동아영화공영권의 건설”이 일본 영화계의 당면 과제라고 밝힘으로써 대동아공영권 안에서의 영화네트워크의 구축이 사실상 일제의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했다.¹⁴³⁾ 후와가 보는 ‘대동아영화공영권’의 요체는 “남방영화공작” 곧 영화를 통해 새로 획득된 점령지민중에 대해 선전활동을 펴는 데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와는 새로 출범한 남양영화협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남양영화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상해영화계가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에 일제의 제국판도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만주국을 기반으로 한 만영의 위상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대륙영화연맹의 좌절

1930년대 말부터 계속된 만주영화협회와 상해의 대립에 대해 도쿄의 일본정부와 군부가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일본의 영화통제체제를 지지하고 있던 영화인들의 글을 통해 그 일단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핵심은 만영에 대한 비판의 고조로 정리될 수 있다.

일본정부가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공개한 1940년 8월 1일¹⁴⁴⁾ 시점 전후만 해도 일본의 영화계는 중국대륙(특히 만주국) 외에 다른 대동아공영권 지역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만영에 대해서는 가와기타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영화인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호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만영이 대륙영화정책의 선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영의 성공이

142) 山根正吉, 1942, 「大東亞映畫圈確立の急務」, 『映畫旬報』 38, 4쪽.

143) 不破祐俊, 1942, 「大東亞映畫建設の目標」, 『映畫評論』 2권 4호, 16쪽.

144) 이 날 고노에 2차내각의 외상인 마쓰오카[松岡洋右]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일본영화가 중국대륙에 진출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만영이 수입과 배급을 독점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영화계가 배제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바뀌기 시작했다. 다만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만영에 대한 불만은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화전영의 설립 그리고 상해에서의 가와기타의 성공은 결국 만영에 대한 비판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42년 무렵에는 만영의 노선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해 초에 이루어진 日本映畫人聯盟 시찰단의 만영 방문이었다.

이 무렵 만영은 일본영화계와의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영화인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었다. 직접 아미카스를 만나 만영 입사 교섭을 받은 미도리카와[碧川道夫]의 회고에 따르면 아미카스는 “세력을 만주에서 남지까지 뻗기 위해” 일본영화인의 참여를 부탁했다고 한다.¹⁴⁵⁾

일본영화인연맹의 시찰단은 사무국장 시미즈 도시오[清水敏夫]를 비롯해 기타가와[北川鐵夫]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장은 당시 만철 총재이던 오무라 다쿠이치[大村卓一]의 아들인 오무라 에이노스케[大村英之助]였다.¹⁴⁶⁾ 이는 시찰단의 방문에 만철과 만영의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작 시찰단의 일원이던 시미즈 도시오와 기타가와는 일본에 돌아온 뒤 만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만영의 방식을 중국대륙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로 여겨진 것은 중국인을 배제한 채 일본인 중심으로 만영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기타가와는 만영의 경영진이나 제작진이 거의 만주 문화에 무지한 상황에서 “滿系연출자가 연출할 때는 日系연출자가 지도”하고 “일계연출자가 연출하는 경우에는 조수격으로 만계연출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타가와는 그런 영화가 상해로부터 온 중국영화에 압도되고

145) 山口猛 編, 1987, 『カメラマンの映畫史 碧川道夫の歩んだ道』, 社會思想社, 148~150쪽.

146) 山口猛 編, 1987, 위의 책, 150쪽.

있다고 보았다. “제작기획과 작품내용은 일본이 몇 년 전에 쓴 줄거리의 베끼기 아니면 외국물의 번안에 만주의 의상을 입힌” 영화로는 도저히 중국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⁴⁷⁾

시미즈 도시오는 아예 “만영은 실패”라고 단언했다. 실패의 이유는 만영을 주도하는 일본인이 만인에게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인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만영에서 일본식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지도자를 배제하고 만계에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든지 만영의 실패 경험이 중국대륙이나 남방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¹⁴⁸⁾

이러한 생각은 다른 영화인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만영을 방문한 시미즈 지요다[清水千代太]는 심지어 『映畫旬報』의 만영 특집호에 기고한 글에서조차 만영을 비판했다. 그는 만영영화를 “일본영화의 만주판”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영화를 따라잡았다는 식의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만주현실과 동떨어진 가짜 만주영화라는 의미였다. 準일본적 소재를 갖고 중국인 아마추어배우를 써서 일본영화류로 연출한 만영영화는 상해영화의 중국적 감정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만주민중이 상해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었다.¹⁴⁹⁾ 만영에서 만든 영화를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영화를 더빙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를 아마카스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영의 체제에서 찾았다. 영화의 비전문가인 아마카스가 만영에서 영화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일류영화인인 네기시가 “네기시류의 재능”¹⁵⁰⁾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북지파견군 보도부 소속으로 화북전영과 손을 잡고 화북에서 순회 영사에 종사하던 무라오[村尾薰]까지 만영 비판에 가세했다. 무라오는 1942

147) 北川鐵夫, 1942, 「滿洲映畫界の印象」, 『映畫旬報』 50, 33쪽.

148) 清水敏夫, 1942, 「大東亞に於ける映畫政策」, 『映畫評論』 2권 4호, 29~32쪽.

149) 清水千代太, 1942, 앞의 논문, 39쪽.

150) 清水千代太, 1942, 앞의 논문, 43쪽.

년에 만영이 이항란을 내세워 일본과 손잡고 의욕적으로 제작한 『영춘화』에 대해 일본인에게 보여주는 영화이지 만주인과 중국인에게 보여줄 영화는 아니라고 보았다.¹⁵¹⁾ 나아가 무라오는 만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만영이 ‘대동아영화’ 곧 일제의 영화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만주가 중국대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일본의 도호쿠[東北]나 홋카이도[北海道]와 같으며 그래서인지 시골 냄새가 나는 만영영화로는 도저히 중국대륙 전체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라오가 상해를 도쿄, 북경을 교토[京都], 신경을 센다이[仙台] 또는 삿포로[札幌]에 비유한 것은 당시 일본영화인들의 만영관, 중화전영관을 이해하는 데 시사적이다.¹⁵²⁾

1943년 들어서도 만영 비판론은 계속되었다. 상해 측의 하즈미는 이 해에 만영이 야심차게 제작한 『碧血艶影』이 “지나적이지보다 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영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중국인이 연출한 만영영화조차 일본과 중국의 혼혈영화 그것도 일본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 혼혈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⁵³⁾ 이러한 맥락에서 하즈미는 상해에 질적으로 뒤처지는 만영에서 빌릴 만한 것은 이항란밖에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¹⁵⁴⁾

한편 시기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도호의 간부인 모리[森岩雄]가 중화전영 안에서 만영의 주도권 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가와기타와 네기시를 중재했다고 한다. 이후 네기시가 아마카스의 측근이자 만영 도쿄지사장인 모기[茂木久平]와 함께 아마카스의 방침을 수정해 가와기타가 對중국 영화정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기록¹⁵⁵⁾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일본영화계를 대신해 모리가 네기시에게 양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영화계의 주된 흐름이 상해 지지로 바뀌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상해 측은 화복을 자신들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시

151) 村尾薫, 1942a, 「日本映畫の地位」, 『映畫旬報』 64, 21쪽.

152) 村尾薫, 1942b, 「大東亞映畫の構想」, 『映畫評論』 2권 5호, 43~44쪽.

153) 糺見恒夫, 1943, 「上海から歸つて-日華提携映畫序論」, 『映畫旬報』 95, 10쪽.

154) 茂木久平·糺見恒夫 외, 1943, 「大東亞映畫の構想」, 『映畫旬報』 95, 15쪽.

155) 岩崎昶, 1998, 앞의 책, 154쪽.

키겠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했다. 특히 1943년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만리장성을 경계로 상해와 신경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만주국과 중화민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영의 경계를 만주국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⁵⁶⁾ 중화전영연합의 상무동사이자 총경리를 맡음으로써 제작의 장선곤과 함께 중국인 측의 쌍두마차가 된 馮節¹⁵⁷⁾도 화북의 영화계를 중화전영연합의 관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영을 통해 상해영화를 화북에 배급하는 것은 변태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중국영화계 전부를 우리 회사가 일원화”하고 “북경에 있는 화북전영의 촬영소는 중화전영연합의 한 단위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었다.¹⁵⁸⁾ 여기에는 북경정부와 남경정부는 두 괴뢰정부의 대립, 일본군 내부의 대립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만영과 상해 측이 손을 합해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해 측의 주장은 일본영화계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일본영화인들은 만영과 상해 측이 제휴하는 것이 아예 어렵다고 보거나 제휴하더라도 만영이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무라오였다.

무라오는 만주국과 중국이 형식상 별개의 독립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 있는 영화회사가 합동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했다. 당시 추진되고 있던 대륙영화연맹 구상에 대해서도 “동아 전 지역”을 염두에 둔 취지는 좋지만 만영이 중심이 되어 다른 회사를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만주는 세계 첫 번째의 영화국”¹⁵⁹⁾이라는 무토의 말도 만주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상만을 위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영은 자본상으로는 화북전영, 중화전영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중국 측을

156) 堀見恒夫, 1943, 앞의 논문, 10~11쪽.

157) 풍절은 국민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겸 국민정부 선전부 駐辭辨理處 처장을 맡고 있었다. 辭는 상해의 다른 지명이다.

158) 馮節, 1943, 「中國映畫の使命と中日合作」, 『映畫旬報』 92, 19쪽.

159) 武藤富男, 1942, 앞의 논문.

지도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라오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는 대륙영화연맹을 주도하겠다는 만영의 구상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나아가 “대륙의 영화사업은 상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만영의 입장을 고려해 상해 측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중국에 대한 영화정책의 중심을 도쿄에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화북전영을 만영에서 독립시킨 뒤 중화전영과 합병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중화전영인가? 그 이유는 간단했다. 만영과는 달리 중화전영이 도쿄의 영화전문가 집단과 상해영화인들의 결합에 의해 잘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⁶⁰⁾ 가와기타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인 셈이었다.

이제 힘의 균형은 상해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만영과 중화전영 사이의 차이는 양측의 합작으로 1943년에 『만세유방』이 제작될 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이향란과 陳雲裳은 각각 만영과 중화전영을 대표하는 여배우였다. 만영은 당연히 신경에 세워진 동양제일의 스튜디오에 진운상이 와서 촬영에 임해주시기를 원한 반면에 상해 측은 이향란이 상해에 올 것을 원했다. 상해 측은 진운상이 만주에 갈 경우 漢奸 곧 민족반역자로 몰릴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상해에서의 영화촬영 의지를 관철시켰다.¹⁶¹⁾

이처럼 만영과 상해 측의 입장이 뒤바뀐 가운데서도 1942년 말까지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이는 1942년 10월 말 대륙영화연맹의 결성과 관련된 관계자 좌담회가 열린 데서 확인된다.¹⁶²⁾ 좌담회에 참석한 것은 중화전영의 가와기타, 만영의 모기, 화북전영의 기타무라[北村三郎]였다. 그런데 이 좌담회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결성하는 데는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

그리고 1943년 초가 되면 대륙영화연맹 결성 움직임은 “어떤 사정”¹⁶³⁾으로

160) 村尾薫, 1942b, 앞의 논문, 43~44쪽.

161) 清水晶, 1995, 앞의 책, 137쪽.

162) 川喜多長政·茂木久平·北村三郎, 1942, 「大陸映畫聯盟の結成をめぐる座談會」, 『映畫旬報』 64.

“유야무야 해산”¹⁶⁴⁾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가 전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필품의 배급을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중국에도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만영에 연간 24종 프린트 각 3편, 중화전영에 연간 20종 프린트 각 3편, 화북전영에 연간 10종 프린트가 제공되었는데 전체 48종 프린트만 제공되는 것으로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생필품을 분배하는 것이 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다시 만영, 화북전영, 중화전영 사이에 대륙영화연맹을 결성하기 위한 협의가 재개되었다.¹⁶⁵⁾ 그러나 초기와는 상황이 바뀌었다. 만주와 화북을 포함해 중국대륙 전체에서 중화전영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커진 반면에 만영과 화북전영의 영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했다.

따라서 이제 만영보다는 중화전영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와기타는 애초에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에 소극적이었다. 가와기타가 입장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생필품 할당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가와기타는 모기, 기타무라와 함께 1943년 2월부터 도쿄에서 대륙영화연맹 결성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일제의 식민지·점령지 담당 기구인 대동아성도 원칙적으로 결성에 찬성했다. 그러는 와중에 생필품을 만영에 18종, 중화전영에 24종, 화북전영에 6종씩 분배하기로 결정되었다. 만영과 중화전영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측은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을 환영했지만¹⁶⁶⁾ 만영은 달랐다. 만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화북전영까지 합해도 중화전영과 동일한 분량의 생필품만 제공받게 된 것이다. 이는 만영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영은 대륙영화연맹의 결성을 보이콧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63) 堀見恒夫, 1943, 앞의 논문, 11쪽.

164) 岡田眞吉, 1943, 「國民映畫論」, 『映畫評論』 3권 5호, 21쪽.

165) 1943, 「大陸映畫聯盟の一步前進」, 『映畫旬報』 74, 7~8쪽.

166) 당시 상해 측은 입장을 반영한 한 기사에는 “대륙영화연맹이 점차 확실해진 것은 매우 즐겁다”고 적혀 있다. 1943, 「中華中聯合併經緯」, 『映畫旬報』 81, 8쪽.

1943년 4월 1일 대륙영화연맹이 출범할 것이며 6월부터는 기획 및 제작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¹⁶⁷⁾ 이때 상정된 대륙영화연맹의 목적은 漢民族영화의 제작을 주체로 극영화 및 계발영화를 제작하고 日本映畫社¹⁶⁸⁾와 제휴해 뉴스영화를 제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기술자와 자재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필품을 배분하고 제한된 생필품으로 어떻게 공동제작에 나설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데 있었다. 사무소를 중화전영 도쿄출장소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든지 가와기타가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중화전영이었다. 위원은 중화전영의 이시카와, 만영의 하야시, 네기시, 모기, 화북전영의 기타무라, 그리고 사무국장은 모기가 내정되었다. 위원의 수를 보면 만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위원장 자리를 가와기타가 차지한 반면에 아마카스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만영이 반발하면서 4월 1일로 예정된 창립일이 5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¹⁶⁹⁾ 이 와중에 상해 측의 시미즈 아키라는 한 좌담회에서 대륙영화연맹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가 강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⁷⁰⁾ 이는 예정된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만영과 상해 측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무렵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을 연맹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도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상해 측은 일본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성은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1943년 6월 대륙영화연맹 결성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 결정되었다. 대신에 생필품 분배 등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할 기구로 中滿映畫事業聯合事務局이 도쿄에 설치되었다.¹⁷¹⁾

대륙영화연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귀착점은 1944년 6월에 설립된 大陸

167) 1943, 「大陸映畫聯盟發足」, 『映畫旬報』 76, 8쪽.

168) 일본에서 영화법에 따라 1940년에 출범한 뉴스영화, 국책선전영화 제작회사이다.

169) 1943, 「大陸映畫聯盟 五月中旬發足」, 『映畫旬報』 81, 5쪽.

170) 野口久光·清水晶, 1943, 「中國映畫の現状」, 『映畫旬報』 82, 28쪽.

171) 1943, 「大陸映畫聯盟を解消 中滿事務局を設置」, 『映畫旬報』 85, 5쪽.

映材事務局이었다. 이 기구는 생필품을 포함한 각종 영화자재의 수급과 수송 업무를 맡았다.¹⁷²⁾ 애초의 구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왜소한 기구였다. 그리고 1945년 초 대륙영재사무국, 만영, 화북전영, 중화전영연합을 기초로 하는 大陸映畫綜合調査室이 발족한 것으로 보아 대륙영화연맹은 끝내 결성되지 못하고 대륙영재사무국이라는 대체기관의 형태로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¹⁷³⁾

한편 중화연합의 설립을 통해 제작회사를 일원화하는 데 성공한 가와기타는 1943년 5월 중화전영과 중화연합, 그리고 상해의 영화관을 관리하던 上海影院股份有限公司를 합병해 中華電影聯合股份有限公司(이하 중화전영연합)를 설립했다.¹⁷⁴⁾ 일제가 왕조명정권에 상해조계를 돌려주는 등 괴뢰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새로운 회사의 출현에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화전영연합의 자본규모는 중국화 5천만 원(일본화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¹⁷⁵⁾ 이제 자본규모로도 만영과 대등한 대형 영화회사가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자본규모가 늘어난 만큼 만영의 지분은 사실상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상해로 상징되는 화중, 화남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중화전영연합이 陳公博, 周佛海 등 왕조명정권의 핵심을 명예 동사장에 추대한 것을 비롯해 동사장 임백생 등 임원을 대부분 중국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이다. 중화전영연합이 어디까지나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와기타의 오른팔인 이시카와를 비롯해 몇몇 일본인의 이름이 임원명단에 보인다.¹⁷⁶⁾ 특히 일

172) 1944, 「大陸映材事務局設立さる」, 『日本映畫』改新8, 28쪽.

173) 1945, 「映畫會の發會と大陸映畫綜合調査室の發足」, 『日本映畫』19, 31쪽.

174) 중화전영연합에 대해서는 清水晶, 1943, 「中國映畫界の新出發－中聯の誕生」, 『映畫旬報』76; 1943, 「時事録音 中華中聯合併經緯」, 『映畫旬報』81; 野口久光·清水晶, 1943, 「中國映畫の現状」, 『映畫旬報』82; 川喜多長政, 1943, 「中國における映畫工作の新目標」, 『映畫旬報』85; 森久, 1943, 「對支政策轉換と支那映畫界の將來」, 『映畫旬報』85 등을 볼 것.

175) 辻久一, 1998, 앞의 책, 252쪽.

176) 임원명단은 1943, 「中國映畫界の一元的統制機關 中華電影聯合股份有限公司誕

본인이 주도권을 놓지 않은 것은 순회영사, 문화영화 제작, 그리고 영화연구라는 세 부문이었다.¹⁷⁷⁾

일본임원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사람이다. 하나는 동사인 후와이다.¹⁷⁸⁾ 후와는 혁신관료 출신으로 일본에서 영화통제체제가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괴벨스’라고도 불리던 인물이었다.¹⁷⁹⁾ 또 하나는 감사를 맡은 가나자시[金指英一]다. 가나자시는 당시 일본영화의 배급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화배급사의 상무이사이자 ‘대동아영화권’ 담론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중화전영연합은 단순히 중국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본정부 및 영화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영권회사임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에 반해 만영 측 인물은 감찰인 사카가미, 고문 모기의 이름만이 보일 뿐이다. 아무리 출자지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집행부에 한 사람도 끼지 못한 것은 그만큼 만영의 발언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화전영연합의 정관을 만들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정관에는 발기인 22명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은 가와기타와 이시카와 2명뿐이었다. 그리고 만영의 출자도 “일본 및 만주국 주(株)”라는 표현으로 두루뭉술하게 처리되었다. 한마디로 정관상 만영은 중화전영연합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¹⁸⁰⁾

이 시기에 중화전영연합 같은 대형 영화회사가 등장한 데는 일제의 동남아시아침략이라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획득한 점령지인 남방의 화교를 현지 지배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남방에 대한 영화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곧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해

生], 『映畫旬報』 83, 3쪽을 볼 것.

177) 清水晶, 1943, 「支那映畫界時評(一)」, 『映畫旬報』 93, 22쪽.

178) 후와는 부설 기관인 中華電影研究所의 소장을 겸임했다. 清水晶, 1943, 위의 논문, 21쪽.

179) 후와의 경력에 대해서는 岡本純, 1979, 『戰時下の日本映畫』, 砦書房, 136~137쪽을 볼 것.

180) 1943, 「中華電影聯合股份有限公司定款」, 『映畫旬報』 86, 28쪽.

만영이 필요했던 것처럼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남방지배를 위해 중화전영연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가와기타는 이러한 일본군부의 의도에 따라 1941년 말부터 이미 상해영화계가 “일본영화의 남진정책의 거점”으로 남방의 화교공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¹⁸¹⁾ 중화전영의 제작부장이던 노사카[野坂三郎]는 화교공작의 핵심이 “지나적 입장에 선 영화제작”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미 중국인 중심으로 영화를 만드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던 중화전영이야말로 남방진출의 적임자라는 것이었다.¹⁸²⁾

특히 1944년 이후 당시 일본영화계의 실력자이던 나가다[永田雅一: 다이에이 전무]가 ‘대동아영화인 대회’를 제안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¹⁸³⁾ 이제 일제의 영화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한 단계로 나아간 상황에서 만영의 입지는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었다. 곧 일제의 제국판도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에 따라 일제가 벌인 침략전쟁의 상황이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악화되면 될수록 만영은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만주국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일제 가운데서도 관동군이였다. 관동군은 천황제파시즘의 침병이였다. 따라서 만주국은 일제파시즘의 실험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각종 지배정책이 일본이나 일제의 식민지에서 시행되기에 앞서

181) 川喜多長政 외, 1941, 「日本映畫と南方文化進出」, 『新映畫』 1권 10호; 川喜多長政, 1942, 앞의 논문, 6~7쪽; 1944, 「川喜多長政氏と一問一答 南方映畫工作に寄せる」, 『映畫評論』 1권 8호.

182) 野坂三郎, 1942, 앞의 논문, 24~25쪽.

183) 永田雅一, 1944, 「大東亞映畫人大會を提唱す」, 『映畫評論』 1권 1호.

만주국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영화통제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국내에서 영화통제정책이 실시된 것은 영화법이 제정된 1939년 이후였고 조선에서도 영화법을 적용한 조선영화령이 시행된 1940년부터 영화신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만주국에서는 만영의 설립과 영화법의 제정을 통해 1937년부터 영화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만주국의 영화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선전정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만주국이 일제의 대륙침략에서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영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동아시아 영화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대륙에서의 일제의 점령지가 확대됨에 따라 북경과 상해에 새로운 영화회사를 만들어 일제의 영화정책이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만영이었다.

일본의 희극 영화 감독인 사이토[齋藤寅次郎]가 당대의 일류 희극배우인 야나기야[柳家金語樓]를 주연 배우로 내세워 만든 『멋있는 금광(素晴らしき金鑛)』이라는 영화가 있다. 1930년대 말 식민지조선에서의 산금장려정책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과 만주에서도 거의 동시에 상영되었다.¹⁸⁴⁾ 이러한 현상은 단지 『멋있는 금광』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가 조선이나 만주에서 상영된 것은 물론이고 만주에서 제작된 영화가 일본과 조선에서, 그리고 조선에서 제작된 영화가 만주와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이는 1930년대 말 이후 일제의 제국판도 안에 영화네트워크가 일정하게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만주, 중국, 조선, 대만을 하나로 묶는 영화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다. 특히 영화통제체제 수립 이후에는 도쿄,新京, 북경, 상해, 경성 등지를 잇는 네트워크가 일정 부분 구축되기도 했다. 만영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만주국을 넘어 중국대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이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까지도 포괄하는 대동아공영권 영화네트워크로 확장되면서 만영

184) 『京城日報』, 1941. 12. 4.; 『滿洲日日新聞』, 1942. 1. 3.

의 위상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널리 퍼진 ‘대동아영화권’ 담론에서 만영은 더 이상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다.¹⁸⁵⁾ 그것은 일제의 제국판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만영이 처음부터 갖는 한계였다. 일제의 침략논리가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계기로 만주를 포함한 중국대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북진론에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진론¹⁸⁶⁾으로 전환함에 따라 만주국과 만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85) ‘대동아영화권’ 담론에 대해서는 이준식, 「일본의 영화잡지와 대동아영화권 담론」(미발표논문)을 볼 것.

186) 남진론에 대해서는 矢野暢, 1975, 『南進の系譜』, 中央公論社; 後藤乾一, 1995, 『近代日本と東南アジア－南進の‘衝’と‘遺産’』, 岩波書店 등을 볼 것.

[ABSTRACT]Japanese Imperialism and East Asia Film Network
- Focusing on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Lee, Jun-Sik

It was the Manchuria that was the cornerstone for Japanese to invade to Continental. This was the same situation in the film industry because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took a great position in Japanese's East Asia film policy. It was also in the Manchuria that the Japanese's film control was first launched. And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was the central organization in the enforcement of the Japanese's film control. Even the organization was recognized as the symbol of the Japanese's film control.

Started as a national corporation to contribute for Japanese national benefits,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did a business in all of the areas related to film industry includ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Japanese imperialistic government supported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to advertise its policies and enforce its ideological strategies to the Chinese. Accumulated in Manchuria, the practice and know-hows, whether produced positive results for Japanese policies or not, would become standards in establishing film policies in the new Japanese territories acquiring through China-Japan War and Pacific War. Through these processes, the idea or concept to establish film network covered the whole Japanese Territory was appeared. This took my attention and in this article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imperialism and East Asia Film Network with focusing on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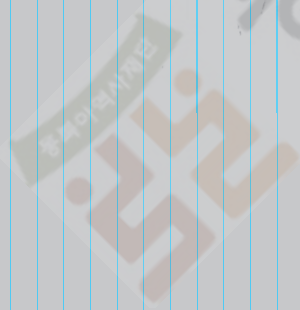
Since late 1930s Japanese imperialistic government had taken a step to develop the idea to establish a grand film network with the center for Japan binding Manchuria, China, Korea and Taiwan.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did special role in organizing these kinds of networks in these areas and developing grand film network. However the power of Manchurian Film Cooperativ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the idea of establishing a grand film network was reached to the Great East Asia Film Network, covering South East Asia, which was developed with the extension of the Japanese invasion war. This was the ultimate limitation of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because it was organized just in the far north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Great East Asia plan was announced, the fundamental reason that could justify Japanese invasion was converted from March North, targeting Chinese Continental including Manchuria, to March South, targeting South East Asi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Manchuria and the Manchurian Film Cooperative did not have a spot right any longer.

keywords

Japanese imperialism, Manchurian Film Cooperative, East Asia Film network, film control, Masahiko Amakatsu, Shanghai

설 립



동북아시아역사연구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獨島(竹島)問題의 再檢討

송 병 기 |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I. 머리말

筆者가 보건대 韓國人의 對日感情은 近來에 와서 더욱 나빠지지 않았는가 싶다. 그 까닭은 주로 獨島(竹島) 問題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난 2005년 3월 16일 '竹島(リャンコ島)領土編入100週年'을 기념하는 島根縣議會의 '竹島の 날'(條例) 제정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에도 '竹島の 날' 선포가 反韓感情을 조장하면 하였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사실은 기념일 제정과 같은 형식적 행사가 독도영유권 분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독도 문제를 마무리짓는 첩경은 아무래도 두 나라 국민이 獨島(竹島)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는 관계학자들의 자료발굴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주요 자료, 저서, 논문을 정리 혹은 번역하여 간행 보급(교류)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島根縣大學 內藤正中 名譽教授, 韓國國防大學校 金柄烈 教

授의 共著 『史的檢證 竹島·獨島』(岩波書店, 2007)가 간행되어 주목을 받았다. 한·일 양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독도의 역사를 정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공저요 공동작업이지 제1·3부 죽도의 역사·총괄은 內藤 교수가, 제2부 독도의 역사는 김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

『史的檢證 竹島·獨島』와 그 저자들은 拓殖大學 下條正男 教授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는 「岩波書店의 프로파간다(プロパガンダ)本」이라는 副題가 붙은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諸君!』, 文藝春秋社, 2007)이라는 논고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이제까지 펼쳐 온 ‘독도영유권’ 선전활동(プロパガンダ)을 집대성한 것으로, 저자들은 ‘史的檢證’을 내세우면서도 문헌비판을 소홀히 하고 자의적 사료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장래 한·일 양국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下條 교수의 저자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접어두고 이 논고에서는 독도문제를 편의상 I. 『疆界考』內 「輿地志」記事의 ‘改竄’과 申景濬, II. 于山·靑陵 一島說과 二島說, III.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渡海禁止令, IV. 韓國領의 範圍와 ‘竹島外一島’로 나누어 下條 교수의 견해와 관련지어 가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下條 교수는 필자가 자료(『강계고』)를 해석하는 데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는데, 본 논고는 이에 대한 해명을 겸한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명해 둘 것이 있다. “한국에서는 于山島라고 적힌 지도만 있으면 예외 없이 松島(독도)로 해석하여 한국령으로 보아왔다”는 下條 교수의 嘖聲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다. 구태여 그렇게 보이게 된 이유를 대라면, 下條 교수가 우산도라고 말하는 문제의 竹島(嶼)는 靑陵本島로부터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면적도 본도의 약 200분의 1이 채 안 되는 작은 섬이다. 동일 축척으로 그리면 본도에 거의 붙어 있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도에서 좀 떨어지고 그림으로 표시한 섬이라면, 그리고 부근에 다른 섬들이 없다면 이 섬을 독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II. 『疆界考』內「輿地志」記事의 ‘改竄’ 과 申景濬

『疆界考』(1756)는 조선 후기 영조대의 학자 申景濬(1712~1781)이 저술한 역사지리서다. 이 책(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下條 교수처럼 표지에 적힌 대로 『疆界誌』라고도 하나 이는 후대에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서문에 있는 대로 『疆界考』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 『疆界考』 「靑陵島」條에

① 내가 살피(생각)건대, 「輿地志」에 이르기를 ‘一說에는 于山과 靑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愚按 輿地志云 一說于山·靑陵本一島) ②圖志에서 相考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倭가 이르는바 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 다 于山國이다’라고 하였다(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蓋二島 俱是于山國也). (①②는 筆者)

라는 蔚山·울릉도에 관한 注記가 있다. 「輿地志」(1656)는 지금은 失傳된 柳馨遠(1622~1673)의 역사지리서다.

『강계고』의 저술로 申景濬의 역사지리에 대한 식견이 국왕(영조)에 의하여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申景濬은 『東國文獻備考』(1770) 편찬사업에 발탁되어 「輿地考」를 담당 편찬하였다.¹⁾ 「여지고」를 편찬하면서 申景濬은 『강계고』의 蔚山·울릉에 관한 『강계고』의 주기를,

「輿地志」에 이르기를 ‘靑陵과 于山은 다 于山國의 땅인데 蔚산은 倭가 이르는바 松島다’라고 하였다(輿地志云 靑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고 하여 『강계고』에서 전제했던 ‘내가 살피(생각)건대’를 삭제하는 한편, 두 섬

1) 『旅菴全書』 I (경인문화사, 1976), 墓碣銘(洪良浩 撰); 高東煥, 2003, 「旅菴 申景濬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6: 2, 185쪽.

중의 '하나가 倭가 이르는바 松島'라는 다소 애매한 내용을 '于山은 倭가 이르는바 松島다', 즉 우산이 곧 송도임을 명확히 하였다.

申景濬이 이처럼 울릉·우산도의 소속과 위치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지지」를 직접 참고하여 「여지고」를 편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강계고』 주기에 “내가 살피(생각)건대 「여지지」에 이르기를”이라고 한 것은 ‘전에 본 「여지지」에 의하면’이란 뜻인데, 「여지고」의 주기에 “「여지지」에 이르기를”이라고 한 것은 ‘여지를 직접 본 바에 의하면’이란 뜻이다. 申景濬은 「여지고」를 편찬하면서 「여지지」를 비롯한 필요한 문헌들을 왕실이나 개인 소장품을 막론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下條 교수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강계고』 주기(按記)를 ①과 ②로 나누어 ①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같은 섬임을 말하는 것이고, ②는 申景濬의 견해로 자신의 于山·靑陵 2島說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疆界考』 주기의 내용과 같아야 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주기에서 우산·울릉 2도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편찬과정에서 申景濬 등이 『강계고』에 들어 있는 「여지지」의 기사를 개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2006) 제주대학 지리학과 吳尙學 교수가 失傳되었던 柳馨遠의 「여지지」의 저본 - 『東國輿地志』(亞細亞文化社, 1983)를 확인하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인용된 「여지지」 기사와 대조하였다. 그 결과 『東國輿地志』에는 “一說에 이르기를 于山·靑陵은 本來 1島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宋炳基 씨 등의 『강계고』의 주기가 모두 柳馨遠의 「여지지」에서 인용되었다는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

이 下條 교수의 견해는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다. 申景濬이 ①과 ②의 주기를 단 것은 성종 초(1472)에 敬差官 朴宗元이 三峯島(우산도)를 찾아 나섰다가 실패한 사실³⁾을 설명하고 삼봉도(우산도)가 실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2)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99쪽의 주 34.

3) 『成宗實錄』, 成宗 3年 6月 丁丑.

것이였다. 그러므로 『강계고』나 「여지고」의 2도설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강계고』 주기 ①은 “一說에 于山·靑陵은 本來 한 섬이다”에서 문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문장 전체도 그렇게 되어야 자연스럽다. 이 시기의 역사학자 安鼎福(1712~1791)의 『雜同散異』(『海防』)에 「여지고」의 “輿地志云 靑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와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다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吳尙學 교수가 확인하였다는 『동국여지지』가 柳馨遠의 「여지지」인지도 의문이다. 책명이 표지에는 이제까지 알려진 「여지지」가 아니라 『동국여지지』로, 凡例에는 「修正東國輿地志」로 되어 있고, 凡例 ①에는 “輿地勝覽을 增修한 것”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柳馨遠의 「여지지」라고 하더라도 “于山島·靑陵島는……二島”임을 밝히고, 뒤에 가서 “一說에 于山·靑陵은 本來 한 섬”이라는 주기를 달고 있어서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下條 교수는 申景濬의 「강계고」 「울릉도」·「우산도」의 기사가 李孟休(1713~?)의 『春官志』(1744)의 「靑陵島爭界」(1693~1699)와 비슷한 점이 있음을 들어 이것 또한 申景濬이 『春官志』에서 표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李孟休가 「安龍福傳」을 지었고,⁴⁾ 그것이 『춘관지』 「울릉도쟁계」에 실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록된 시기가 李孟休가 편집을 맡았을 때(1744)인지, 내용이 너무 소략하다고 하여 그의 조카(姪) 李家煥(1742~1801)이 증보 편집하였을 때(1781)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李瀾(1681~1763, 李孟休의 父)의 『星湖集』(卷 12, 「答鄭汝逸」, 1745)에는 “近時에 朴判書師洙가 「安龍福傳」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또 다른 「安龍福傳」이 있으며, 그(李瀾) 자신도 울릉도영유권 분규와 安龍福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靑陵島」를 『星湖集』에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申景濬이 이런 글들을 참고하였겠지만, 『춘관지』의 「울릉도쟁계」를 그대로 『강계고』에 베껴 넣었다고 보기에는 내용상 다른 점

4) 成海應, 『研經齋全集』 後集 11, 「題安龍福傳後」.

이 너무 많다.

申景濬과 함께 당대에 호남(전라도)을 대표하는 학자로 黃胤錫(1729~1791)을 꼽는다. 그는 下條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의 저서 『儂齋亂藁』(卷16)에서 「여지고」는 “實로 柳馨遠·金崙·安鼎福에서 (위로는) 韓百謙(1552~1615)에 이르기까지의 諸說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다소 폄훼하는 듯한 평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이 기사는 申景濬과 黃胤錫이 17년이라는 연령 차에도 불구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1806)에 저술된 鄭東愈(1744~1791)의 『晝永編』에도 申景濬에 대하여 “申은 본래 博識으로 이름이 있고 진실로 남보다 뛰어난 데가 많다. 다만 附會하는 말을 잘하여 왕왕 자기가 한 말을 예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 석학이 가질 수 있는 학문적 오만이지 사료의 개찬이나 표절로 연결지으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Ⅲ. 于山·靑陵 一島說과 二島說

下條 교수는 이 논고에서 우산·울릉은 두 섬이 아니라 한 섬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高麗史』 「地理志」(1451)에는 “蔚珍縣 正東 바다 가운데 靑陵島가 있다” 하고, 그 주기에 ‘혹은’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于山·武陵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風日이 淸明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고려시대에 이미 우산도에 관한 지견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짐작건대 내륙에서 관원들을 파견하기 시작하는 12세기 중엽 이후, 특히 1157년 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 金柔立이 파견되어 울릉도의 지리를 자세히 조사하면서부터가 아닌

가 한다.

울릉도에는 고려 말부터 내륙 연해민들이 入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는 倭의 入寇를 우려하여 이미 15세기 초엽부터 靑島 空島 政策을 결정,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入居人들을 刷還하기 위하여 자주 관원을 울릉도로 파견하였다. 그 결과 蔚珍縣 正東 바다 가운데 于山·武(靑)陵 두 섬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가령 空島 政策을 확정짓고 金麟雨를 파견(1417)할 때 그 使命이 武陵島와 于山島 居民을 出陸시키는 것이었다든지 세종대에 金麟雨를 울릉도로 파견(1425)할 때 그 직함이 于山武陵等處 按撫使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⁶⁾

『世宗實錄』 「地理志」(1432) 江原道 蔚珍縣條에 “于山·武(靑)陵 두 섬이 縣의 正東 바다 가운데 있다” 하고, 그 주기에서 “두 섬은 떨어짐이 멀지 않아 風日이 淸明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두 섬에 대한 조선 초기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산도가 조선령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울릉도 공도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거민을 쇠환하고 이들에게 본국을 ‘謀背한 죄’를 적용해 처형한 결과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우산도나 무릉도는 점차 잊혀져 가는 섬들이 되어 버렸다. 그 대신 동해에 蓼島니 三峯島니 하는 新島說이 咸吉道 연해민들 사이에서 나돌게 되었던 것이다.⁷⁾

『東國輿地勝覽』(1436)의 于山島·武陵島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1) 江原道 蔚珍縣條에서 “두 섬(우산도·울릉도)이 縣의 正東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사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기에서 “一說에는 于山 武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15세기 말엽 이후 우산·울릉 2도설은 적지 않게 동요되고 있었다.

5) 『高麗史』 世家, 毅宗 11年 5月 丙子; 『高麗史』 地理志 3, 東界 蔚珍縣; 『高麗史節要』, 毅宗 11年 5月.

6) 『太宗實錄』, 太宗 17年 2月 乙丑; 『世宗實錄』, 世宗 7年 8月 甲戌.

7) 송병기, 2007,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38 ~ 39쪽.

그러나 이것은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실학자들의 저술을 통하여 극복되어 나갔다. 그 처음이 柳馨遠의 『輿地志』(1656)였다. 그는 「여지지」에서 “一說에 于山과 靑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圖志에서 相考하면 于山·울릉의 두 섬인데, 하나는 倭가 이르는바 松島이며, 모두 다 于山國의 땅이다”(『疆界考』), “靑陵·于山은 다 于山國의 땅인데 于山은 倭가 이르는바 松島다”(『東國文獻備考』)라고 밝혔던 것이다.

『輿地志』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록이 松島(우산도·독도)에 관한 일본 最古의 문헌인 齋藤豊仙(宣)의 『隱州視聽合記紀』(1667)에 보인다. 그 내용은 “隱岐(隱州)에서 서북쪽으로 2日1夜를 가면 松島가 있고, 1日程을 가면 竹島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 高麗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雲州(出雲國)에서 隱州(隱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乾地(西北境)은 은주로서 한계를 삼는다”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송도는 오늘의 독도(우산도),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두 섬은 조선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경은 이 주(은기)에 국한한다고 하고 있다. 우산·울릉 2도설은 일본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조선의 東南境이 송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柳馨遠의 견해와 符合되는 것이다.

최근 발견된 은기도 村上家文書(「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는 安龍福(1658~?) 등이 일본으로 밀항(1696)할 때 울릉도에서 은기도까지의 일정이 적혀 있다. 5월 15일 울릉도를 출발, 당일에 송도에 도착하여 1박한 뒤 16일 송도를 출발, 18일 아침에 은기도에 도착하였다. 이는 『은주시청합기』의 은기에서 송도까지는 2일1야, 송도에서 죽도까지는 1日程이라는 기사와 일치한다.

安龍福 등은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은기도의 役人—手代들의 조사를 받았다. 安龍福은 「朝鮮八道之圖」를 꺼내 보이면서 일본에서 죽도·송도로 불리는 섬은 조선 江原道 東萊府 소속의 울릉도·子山島(우산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죽도와 조선의 거리는 30리, 죽도와 송도의 거리는 50리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下條 교수의 우산도가 울릉도이거나 죽도(죽서)일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 몇 가지 사실들은 조선 후기로 들어와 柳馨遠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 우산·울릉 2도설이 安龍福이 현지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실증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산·울릉 2도설은 18세기 중엽 申景濬의 『疆界考』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있다. 『강계고』 「울릉도」조에는 “울진현 정동 바다 가운데 울릉·우산의 두 섬이 있다” 하고, “일본 은기주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 그 연혁과 울릉도정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연혁을 설명하는 중에 성종 때(1472) 敬差官 朴宗元이 三峯島를 찾는 데 실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앞에서 든 예의 「여지지」 기사를 주기함으로써 우산·울릉은 두 섬으로 그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로 그것이 우산국의 땅, 즉 조선령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강계고』 「安龍福事」조에서 安龍福이 일본으로 밀항(1696)할 때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민들을 꾸짖으면서 “松島는 바로 于山國”이라고 한 것도 송도가 곧 우산도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申景濬은 『東國文獻備考』 편찬에도 참여하여 「輿地考」를 담당 편찬(1770)하였다. 그는 「여지고」 울진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다루면서 『강계고』 「여지지」의 기사를 “울릉·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이다”라고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底本이 된 것은 『강계고』인데, 「여지고」는 『萬機要覽』 軍政篇(1808)에 그대로 轉載되었다. 『만기요람』은 국왕(純祖)이 座右에 놓고 보는 정무지침서로 편찬된 것이었다.⁸⁾

우산도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지도작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鄭尙驥(1678~1752)의 「東國地圖」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으로 옮겨지고 거리와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를 뒤따른 것이 19세기 중엽의 「海左全圖」와 金大建(1822~1846)의 「朝鮮全圖」(1846)였고,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大朝鮮國全圖」, 「大韓輿地圖」(1898, 서울대학교 내 奎章閣 소장), 玄采(1836~1925)의 『大韓地誌』(1899)에 수록된 「大韓全圖」였다.⁹⁾

下條 교수의 논고는 「동국지도」나 「해좌전도」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8) 『萬機要覽』(朝鮮總督府 中樞院, 1937), 「財用篇」序文(四方博).

9) 오상학, 2006, 앞의 논문, 90~91쪽.

이유는 울릉·우산도(송도)를 중심으로 한 2도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搜討官 朴錫昌의 「靑陵島圖形」(1711)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울릉본도에서 동쪽으로 2.5km쯤 떨어진 지금의 죽도(서)를 '所謂于山島'로 표시하고 있어서 그가 주장하는 울릉·우산 1도설과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유형의 것으로는 弘文館에서 18세기 중엽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海東地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에도 지금의 죽도 위에 '所謂于山島'를 적어 넣고 있다.¹⁰⁾

그런데 18세기 중·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朝鮮之圖」(서울대학교 내 규장각 소장)에서는 '所謂于山島' 대신 「于山」이라는 이름을 붙여 울릉본도로부터 좀더 멀리 떼어놓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초엽의 「朝鮮圖」·「東輿」와 같은 시기의 金正浩(?~1864)의 「靑丘圖」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金正浩가 「大東輿地圖」(1861)를 작성하면서 우산도를 그려 넣지 않은 것은 이 섬(우산도)이 울릉본도와 인접한 지금의 죽도(서)가 아니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¹⁾

李奎遠(1833~1901)도 울릉도를 검찰(1882)하면서 우산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聖人峰 정상에 올라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산도를 찾는 데 실패하였다. 그가 조정에 제출한 「靑陵島外圖」에도 죽도가 보일 뿐 우산도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울릉도에 인접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이곳에서 가까이 있는 섬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18세기 초엽 이래 죽도에 붙여졌던 '所謂于山島' '于山' '于山島'라는 호칭이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소멸되었던 것이다.¹²⁾

울릉도는 光武4年 勅令 第41号(1900)에 따라 靑島郡으로 승격되고 중앙에서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 관할구역으로 靑陵全島와 竹島·石島로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죽서, 울릉전도는 울릉본도와 이에 부속된 섬·바위를 통칭한 것이며, 따라서 석도는 독도(우산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石島를 訓讀하면 '돌

10) 오상학, 2006, 앞의 논문, 88~89쪽.

11) 오상학, 2006, 앞의 논문, 94~95쪽.

12) 오상학, 2006, 앞의 논문, 92·93·95쪽; 송병기, 2007, 앞의 책, 144쪽.

섬' 혹은 '독섬'이 되는데, 獨島는 '돌섬' 혹은 '독섬'을 借字表記한 것이다.¹³⁾

그런데 석도나 독도는 서울에서의 호칭이 아니었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반면 문헌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울릉도 개척이 상당히 진전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도 이 섬을 우산도로 부르고 있었다. 『皇城新聞』(1899. 9. 23)에 울릉도에 附屬한 6島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우산도와 죽도라고 한 것이나 『增補文獻備考』(1908) 蔚珍縣條에 “于山島·鬱[굴]陵島는 두 섬으로 하나가 芋山이다. 續 지금은 鬱[굴]島郡이 되었다”고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IV.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渡海禁止令

安龍福(1658~?)은 천민 신분으로 東萊左水營의 櫓軍이었다. 1690년에 작성된 그의 호패 사본에 의하면,¹⁴⁾ 이름은 '用卜', 1693년 被拉 당시 36세, 주소는 釜山 佐自川1리로 서울 사는 吳忠秋의 私奴이자 外居奴婢였다. 같이 拉致된 朴於屯은 蔚山의 鬮干(염한)으로 1693년 현재 33세, 주소는 蔚山 靑良 目島里에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 노군, 염한이라는 賤役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安龍福의 신분은 천민이었고, 朴於屯은 양인이었다. 朴於屯의 호패는 서울대학교 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蔚山 戶籍臺帳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安龍福의 호패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安龍福의 일본피랍(1693)이나 밀항(1696)에 관한 증언은 『숙종실록』이나 『강계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에 실려 있다. 이 문헌들에 보이는 그의 공술에는 대체로 진실성이 인정된다. 허위의 진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과시를 위하여 상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허언도 있고, 법금을 어긴 죄를 모면

13) 송병기, 2007, 앞의 책, 196쪽.

14) 岡嶋正義, 1828, 『竹島考』下, 「大谷之船人 拿歸朝鮮人」.

하기 위해서 한 부득이한 허언도 있었다. 「朝鮮八道之圖」를 갖고 밀항한 사실은 발설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밀항 당시 隱岐의 役人—手代들의 間情記錄인 「村上家文書」(「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가 安龍福의 공술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일본의 저명한 근대 한·일관계사학자 田保橋潔이 安龍福의 공술에 대하여 “한것 대언(大言)을 농(弄)한 혐의는 있으나 대체로 사실로 믿어진다(徒らに大言を弄するの嫌はあるが大體に於て事實と信ぜられる)”고 평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¹⁵⁾ 下條 교수가 安龍福의 증언을 諸惡의 근원이라고 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下條 교수가 언급한 바는 없지만, 安龍福의 靑陵島(竹島)·子山島(于山島·松島) 영유권 주장에 대한 鳥取藩의 반응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安龍福 등이 米子에 도착한 것은 4월 27일, 도착하자 바로 조취번의 家老이며 미자의 城主인 荒尾大和와 그의 伯父 荒尾修理 등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安龍福은 두 섬이 조선령임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조취번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¹⁶⁾

安龍福 등은 조선인들을 長崎를 거쳐 귀국시키라는 막부의 명(5월 13일자)에 따라 米子を 떠나(5월 29일) 먼저 장기로 가기 위하여 鳥取城下에 들렀다. 安龍福 등은 城下에 머무는 동안(6월 1~7일) 荒尾大和의 저택(별장)이나 町會所에서 숙식하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도착한 다음날(6월 2일)에는 荒尾大和 등 鳥取藩 重臣 4명과 荒尾의 저택에서 모임을 가졌다. 특히 장기로 떠날 때 조취번이 베푸는 餞別은 각별한 것이었다. 호송사절이 구성되고 安龍福 등은 轎子를 타는 환송을 받았다. 岡嶋正義(1784~1858)가 『竹島考』에서 평하였듯이 이는 “實로 드물게 있는 變事”였다.¹⁷⁾

15)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3, 19~20쪽.

16) 『肅宗實錄』, 肅宗 22年 9月 戊寅, 10月 丙申; 申景濬, 『疆界考』, 「安龍福事」;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 蔚珍.

17) 岡嶋正義, 1828, 앞의 책.

安龍福에게 베푼 이 환대나 환송은 아무래도 그가 무엇인가 鳥取藩에 크게 공헌한 데 따른 배려나 보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엇인가는 생각건대, 울릉·자산(우산) 두 섬이 조선령임을 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조취번으로 하여금 竹島渡海가 海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⁸⁾

이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鳥取藩이 울릉·자산 두 섬이 조선령이라는 安龍福의 주장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徵驗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조취번으로부터 울릉·자산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는 書契(공문)를 받았다는 安龍福의 공술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럴 경우 安龍福에게 이 서계를 건네준 장소는 그가 조취번 중신들과 회동한 荒尾大和의 저택, 날짜는 6월 2일이었을 것이다.

막부의 지시를 받은 對馬藩의 요청에 따라 부산왜관에서 열린(1693. 12) 조·일간의 울릉도영유권 협상은 1695년으로 3년째를 맞이하였지만 타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藩政을 맡고 있는 前對馬島主 宗義眞(1639~1702)은 막부 老中 阿部豊後守 正武(1649~1704)를 방문, 지원을 요청하였다. 노중 阿部는 이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鳥取藩으로는 죽도(울릉도), 송도(우산도·자산도) 소속에 대한 설문지가 보내졌다(12월 24일). 그리고 바로 다음날(25일) 죽도·송도의 영유를 부인하는 鳥取藩 江戸藩邸의 다음과 같은 회답이 있었다.

竹島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

竹島・松島其外兩國之附屬の島無御座候。

죽도는 因幡·伯耆의 소속이 아니며…… 죽도·송도(는 물론) 그 밖의(어떤) 附屬島嶼도 없다는 것이었다.¹⁹⁾

18) 송병기, 2007, 앞의 책, 58쪽.

19) 塚本孝, 1985, 「竹島關係 鳥取藩文書わよび繪圖(上)」, 『レファレンス』 411, 80~81쪽; 이훈, 1996, 「조선 후기의 독도(獨島)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

이는 두 섬이 조선령이라는 安龍福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鳥取藩이 安龍福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문지를 받은 바로 다음날 이런 회답(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조취번이 막부와도 사전에 두 섬의 소속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취번이 진작부터 安龍福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鳥取藩이 1693년 5월 22일자로 막부의 勘定頭 松平美濃守 重良에게 보낸 문서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竹島ははなれ島に人住居者不仕候 尤伯耆守支配所ニ而茂無之候

즉 '죽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伯耆守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한 기록(池田家文書)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문서를 작성한 시기가 安龍福을 조사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다가 죽도 영유를 부인한 것은 安龍福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鳥取藩이 安龍福의 주장을 수용한 시기는 이 문서가 작성된 5월 22일 이전, 아마도 米子에서 安龍福을 조사할 당시(4월 27~28일)가 아니었을까 한다.

安龍福이 밝힌 울릉·자산 두 섬이 조선령이라는 사실은 鳥取藩으로 하여금 법적 근거 없이 사적·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죽도도해어업이 해금에 노출되어 大谷·村川家は 물론 公儀御目見 등 兩家の 도해어업을 주선 지원하고 있는 藩이나 藩主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安龍福은 조취번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취번이 安龍福을 환대 환송하고 두 섬이 조선령임을 인정하는 서계(공문)를 발급한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鳥取藩으로서는 해금에 노출된 죽도도해어업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성의 섬, 39~42쪽;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84~86쪽.

되었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 두 섬에 대한 영유권 부인이 아니었겠는가 한다. 영유권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江戶(老中)와 비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죽도도해어업을 쉽사리 폐지시킬 수 있고, 조취번의 보고(건의)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막부는 鳥取藩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老中 阿部豊後守는 1696년 1월 宗義眞을 수행한 대마번 家老 平田直右衛門을 불러놓고 죽도(울릉도)가 조선판도임을 유지하였다. ① 죽도에 아직 일본인이 거주한 적이 없고, ② 米子町 사람들이 이 섬에서의 고기잡이를 원했기 때문에 허락(1625년경)한 것이며, ③ 지리적으로도 因幡보다는 조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地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²⁰⁾

阿部豊後守는 竹島(靑陵島)에 대한 시책도 언급하였다.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 다시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금할 뿐이다” 라면서 마땅히 이 뜻을 조선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던 것이다.²¹⁾ 「竹島(靑陵島)渡海禁止令」의 시달을 예고한 것이었다.

예고가 있는지 채 20일이 안 되는 그해(1696, 숙종 22, 元祿 9) 1월 28일, 老中 戶田山城守忠昌(1632~1699)이 노중들이 列坐한 가운데 죽도(울릉도)도 해금지령 覺書를 대마번의 宗義眞에게 수교하였다. 이어 鳥取藩 江戶留守居 吉田平馬를 불러 노중들이 連署한 죽도도해금지령 奉書를 건네어 鳥取藩主 松平(池田)綱清에게 전하였다.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이 내린 것이었다.²²⁾ 이로써 米子町 大谷·村川 양가의 죽도도해어업은 禁制되었고, 조취번은 해금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 『肅宗實錄』, 肅宗 20年 8月 己酉, 22年 10月 丙申; 『邊例集要』 下 17, 靑陵島, 1697年 1·3月; 『朝鮮通交大紀』 8; 『善隣通交事考』 4, 「告竹島一件事考」; 田保橋潔, 1931, 앞의 논문, 20쪽; 池內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95~301쪽.

21) 각주 20과 같음.

22)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157~158쪽; 內藤正中, 2000, 앞의 책, 84~87쪽; 池內敏, 2006, 위의 책, 300~301쪽.

安龍福은 일본에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시 鳥取藩으로 밀항(1696)했다. 靑陵島爭界의 주역 대마도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린 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밀항으로 얻은 성과는 柳馨遠의 2도설의 현장인 우산·울릉도를 확인한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安龍福의 활동은 피랍 당시(1693)가 오히려 돋보인다. 그가 피랍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취번을 설득하여 마침내 쟁계 해결의 기틀이 되는 막부의 죽도도해금지령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V. 韓國領의 範圍와 ‘竹島外一島’

下條 교수는 日本海軍水路部の 『朝鮮水路誌』(1899)를 보면 죽도(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수로지』에 표시된 한국의 經緯度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독도가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독도가 조선령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본 해군이 간행한 일련의 수로지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1894·1899년판 『朝鮮水路誌』 第4編 朝鮮東岸·リヤンコールト列岩에서 獨島, 리안코르트列岩(Liancourt Rocks)을 싣고 있다. 이에 반하여 1892년부터 순차적으로 간행된 일본 영토만을 다룬 『日本水路誌』에는 下關係約(1895)에 따른 새 영토 臺灣이나 澎湖島, 쿠릴(千島) 列島の 最北端인 古守島까지 싣고 있지만, 리안코르트列岩은 싣지 않았다. 그런데 독도를 편입한, 즉 1907년에 刊行된 『日本水路誌』 第4卷 第1改版 第3編 本州 西岸에 竹島(Liancourt列岩)를 추가하고 6장 말미에 “명치 38년(1905) 島根縣의 所管으로 編入되었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해군에서는 편입 이전까지 독도를 조선령으로 보았던 것이다.

玄采(1886 ~ 1925)의 『大韓地誌』(1899, 1903)나 張志淵(1864 ~ 1920)의 『大韓新地誌』(1907, 1908)도 한국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시하고 있다. 下條 교수는 두 지리서에 우산도(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들어 이 섬이 한국령이 아님을 주장한다. 우산도가 한국의 경위도에서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 한국 지리학의 수준이나 근대적 지도작성 기법과 관련지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이 무렵에 막 일본을 통하여 근대지리학이나 지도작성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었다. 한국지리교재로 편찬된 이 두 지리서는 일본인 저서를 底本으로 한 것이었다. 『大韓地誌』는 松本仁吉의 『朝鮮地誌要點』과 小松雲의 『朝鮮八道誌』를 譯輯(번역편집)한 것이고, 『大韓新地誌』는 田淵友彦의 『韓國新地誌』(1906)를 참고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교재들은 그 저본이 된 일본인의 한국지리교재에 실린 경위도 표시를 그대로 옮겨 실은 데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 경위도 안에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우산도가 한국령임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大韓地誌』에는 “蔚珍之東海에 一島가 有하니 曰 靑陵이라 其附屬한 小六島 中에 最著者는 于山島 · 竹島……”라 하였고, 『大韓新地誌』에도 “于山島는 其(靑島) 東南에 在하니라”고 하여 우산도가 죽도와 함께 울릉도에 소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 內務省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에 관한 質疑書나 “竹島外一島가 日本과 關係없다”는 太政官 右大臣 岩倉具視(1825 ~ 1883)의 指令(1877)에 보이는 ‘外一島’가 송도라는 것은 이제 통설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下條 교수는 이에 대한 구구한 반론을 제시한다. 태정관 지령 내의 ‘竹島’는 울릉도이지만, ‘外一島’는 내무성 질의서에 첨부된 島根縣 報告書(질 의서)에 기록된 송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것이다. 보고서의 문장이 송도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죽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記述상의 착오이지 ‘外一島’가 송도라는 본질까지 훼손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는 또 일본 지도의 기틀이 된 시볼트(Siebolt, Philipp Franz von,

1796~1866)의 「日本圖」(1840)에는 다즐레島(Dagelet, 松島, 1787)와 알고 노트島(Argonaut, 竹島, 1789)가 있는데, 어느 쪽 경위도에도 독도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무렵의 송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지적한다. 그러나 알고노트島가 1850년대에 가공의 섬임이 확인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고, 다즐레는 울릉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막부 말, 명치 초년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송도로 불렀고 송도를 リャンコ島(リャンコルト)로 불렀다. 그러나 내무성이나 태정관에서는 내무성의 질의서가 보여주듯 여전히 죽도(울릉도)·송도(독도)로 불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²³⁾

下條 교수는 光武 4年(1900) 勅令 第41號에 나오는 울도군 관할 石島는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독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말께부터 울릉도를 왕래하던 전라도의 남쪽지방 연해민들은 자신들이 목격했거나 당도한, 바위로 된 이 섬을 方言에 따라 ‘독섬’이라 불러왔던 것 같다. 그 뒤 1880년대 초부터 개척이 시작되면서 독섬은 入居人들의 방언에 잠식되어 ‘돌섬’이라는 어형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도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독섬이나 돌섬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독섬이나 돌섬을 漢譯 표기한 것이 광무 4년(1900)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石島이고, 借字 표기한 것이 沈興澤報告書(1906)에 나오는 獨島다. ‘독’을 차자 표기할 때 ‘獨’자를 쓴 예는 많다. 전라남도 務安의 ‘독섬’을 獨島로, 濟州의 ‘독개’를 獨浦로 표기한 것이 그 예다.²⁴⁾

어쨌든 下條 교수는 독도가 한국령 경위도 표시에 들어가 있지 않고 太政官 右大臣 指令 등에 나오는 ‘竹島外一島’가 독도라는 증거가 없으며 광무 4년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ャン코島領土編入(1905)을 일본의 새 固有領土說의 논거로 삼을 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논거들은, 보아온 바

23) 崔奭祐, 1985, 「歐美側 文獻에 나타난 獨島」,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358쪽; 송병기, 2007, 앞의 책, 136~138쪽.

24) 송병기, 2007, 앞의 책, 197~201쪽.

와 같이 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여기서 竹島外一島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자면, 下條 교수는 '外一島'가 오늘의 죽도(독도)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 단언은 잘못된 것이었다. 內務省 質疑書에 수록되어 있는 島根縣의 質疑書(報告書)와 「磯竹島略圖」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죽도 다음에 송도가 있다고 하여 '外一島'가 송도(우산도)라고 밝히고 「磯竹島略圖」에서는 송도의 위치, 울릉도와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그려 넣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磯竹島는 죽도(울릉도)를, 松島는 우산도(독도)를 가리킨다.²⁵⁾

죽도 지적편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10월 내무성 地理寮가 지적 편찬을 위하여 島根縣으로 죽도에 대하여 조회하면서부터였다. 도근현 당국에서는 17세기 大谷·村川 양가의 죽도 어업을 조사하는 한편 죽도와 송도의 약도를 첨부하여 「日本海(東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에 관한 質疑書」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에서는 竹島一件(靑陵島爭界)에 대하여 조사하고 도근현의 질의서를 검토한 끝에 두 섬이 '日本과 관계가 없다'는, 즉 朝鮮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版圖의 取捨는 重大한 事件"이기 때문에 1877년(고종 14, 明治 10) 3월 17일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관한 질의서」를 太政官으로 제출하고 그 판단을 요청하였다.²⁶⁾

이 내무성의 질의서에는 4개의 부속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제1호 구정부(德川幕府)가 죽도일진(울릉도쟁계)에 대하여 상담 결정한 요지, 제2호 對馬島奉行 平眞顯 등이 東萊府 訓導·別差에게 보낸 서신(1696. 10월자), 즉 宗義眞이 朝鮮譯官에게 건네준 죽도도해금지령·安龍福 등의 日本密航呈文事件(1696)의 日文口述書を 한문으로 바꾸어 쓴 서신, 제3호 예조참의 李善溥가 對馬藩政을 맡고 있는 宗義眞에게 보낸 서계(1698. 3월자), 제4호 宗義眞이 李善溥에게 보낸 회답서계(1699. 3월자)와 口上書(口上之覺) 등이다. 부속문

25) 「日本海內竹島外一件地籍編纂에 관한 質疑書」 明治 10年(1877) 3月 29日(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03 ~ 104쪽.

26) 각주 25와 같음.

서 말미에는 「磯竹島略圖」도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속문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럴 경우 내무성 질의서의 부속문서는 5개가 되는 셈이다.²⁷⁾

그 내용은 죽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여 일본인의 도해금지령을 내렸고(제1호), 對馬島奉行 平眞顯 등이 동래부 訓導·別差에게 서신을 보내어(1696. 10월자) 죽도도해금지령을 알리고 安龍福의 密航呈文사건에 항의하였다(제2호). 이에 예조참의 李善溥가 宗義眞에게 서계를 보내어(1698. 3월자) 막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울릉도와 죽도가 1島2名임을 들어 그 정당한 인식을 촉구하였다(제3호). 또 宗義眞이 李善溥에게 회답서계를 보내어 조선 측 서계 내용을 막부에 보고하였으며(제4호), 죽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게 된 전말과 이 과정에서 대마번이 수행한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口上書)도 들어 있었다. 이 부속문서 말미에 첨부된 「磯竹島略圖」는 ‘竹島外一島’의 一島가 송도(우산도·자산도)이며, 송도가 조선령임을 말해준다.²⁸⁾

질의서를 접수한 太政官 조사국의 심사에서는 내무성의 견해, 즉 원록 5년(1692) 조선인이 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조·일 양국 간에 문서가 왕복한 끝에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質疑한 竹島外一島件은 本邦과 關係가 없다는 것을 周知할 것(伺之趣
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이라는, 즉 指令按[案]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지령안은 右大臣 岩倉具視(1825~1883)의 승인을 받아 1877년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지령되었고, 이는 다시 4월 9일자로 도근현에 전달되었다.²⁹⁾

內務省의 질의서나 太政官의 지령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는 죽도도해금지령이 송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해왔는데, 이제 명치정부에서 ‘竹島外一島’

27) 각주 25와 같음.

28) 각주 25와 같음.

29) 「日本海内 竹島外一島 地籍編纂 等に 관한 太政官 指令」, 明治 10年(1877) 3月 29日(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堀和生, 1987, 앞의 논문, 103~104쪽.

의 '外一島'가 송도이며 그것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 금지령이 송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무성 질의서의 부속문서로 보아야 할 島根縣 제작의 「기죽도약도」에 죽도와 함께 송도를 그려 넣음으로써 그것이 조선령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무성의 질의서나 태정관의 지령에서 '竹島外一島', 즉 죽도(울릉도)와 송도(우산도·자산도)가 “本邦(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이 내무성 질의서에 수록된, 靑陵島爭界(竹島一件) 당시 조·일 간에 왕복된 외교문서(부속문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내무성 질의서의 부속문서 내용이 우산도를 포함하는 울릉도가 조선령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성이나 太政官도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1696년 10월부터 1699년 3월에 걸쳐 조·일 간에 완만하게 진행된 울릉도(죽도)·우산도(송도)의 조선 소속을 외교상으로 확인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치정부의 울릉도 시책은 17세기 말의 울릉도쟁계(죽도일건) - 죽도도해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내무성에서 질의하여 온 죽도(울릉도)와 송도(우산도) 영유 문제에 대하여,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다시 말하면 爭界의 다른 한쪽인 조선의 영토임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덕천 막부를 계승한 명치정부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위에서 독도 문제를 편의상 4개 부분으로 나누어 下條 교수의 최근 論考(『諸君!』, 2007)와 관련지어 가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고가 『史的檢證 竹島·獨島』(岩波書店, 2007)와 그 저자들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日本의 랑고(リャンコ)島(獨島) 領土編入(1905)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이를 새 固有領土論의 논거로 삼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일본의 랑고(リャンコ)島 영토편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는 17세기 중엽 이후 다시 대두하기 시작한 于山·靑陵 2島說을 부인하고 그 중심 인물인 申景濬을 폄하하여야만 했다. 이런 필요에서 제시된 것이 申景濬에 의한 『疆界考』 내 「輿地志」 기사(注記)의 ‘改竄’설이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우산·울릉은 한 섬이고 따라서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으며, 고지도에 보이는 우산도는 지금의 竹島(竹嶼)라고 주장한다.

독도(죽도)가 한국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 해군의 『朝鮮水路誌』나 한국의 『大韓地誌』와 『大韓新地誌』에 표시된 한국 경위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증명되었으며, 일본 內務省의 質疑書나 太政官 右大臣의 指令에 보이는 ‘竹島外一島’나 開國 504年 勅令 第41號(1900)의 石島가 독도임을 시사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는 랑고島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고유영토설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下條 교수가 제시한 「여지지」 기사 ‘개찬’ 설은, 『동국여지지』가 柳馨遠의 「여지지」가 아니며 그 내용도 우산과 울릉이 2도임을 밝힌 뒤 1도설을 부연한 것이기에 확증할 수 없다. 그는 또 랑고島(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이것들을 새 고유영토설의 논거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논거는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무성의 질의서나 태정관 지령에 보이는 ‘죽도외일도’나 개국 504년(1900) 칙령 제41호에 보이는 석도는 랑고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下條 교수는 우산·울릉 1도설을 고집하였다. 그는 1도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기록들을 과감히 捨象하였다. 『世宗實錄』 「地理志」(1432), 『高麗史』 「地理志」(1451) 이래 수많은 문헌에 나오는 2도설은 외면되었고 齋藤豊仙[宣]의 『隱州視廳合記紀』에 대하여 침묵한 것도 ‘日本の西北境을 隱岐까지로 본 데다가 그 너머로 松島(자산도, 우산도)와 竹島(울릉도)가 있다’는 2도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下條 교수는 “賤民(私奴) 安龍福”의 활동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그는 “諸惡의 根源, 安龍福의 證言”이라고 하여 備邊司의 供述에서 “松島는 곧 于山島다”라고 증언한 것이 “제약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安龍福은 일본 밀항(1696) 때 울릉도·독도를 거쳐 감으로써 柳馨遠의 우산·울릉 2도설을 사실상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安龍福의 활동 중 특히 돋보이는 것은 피랍(1693)되어 伯耆州 米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죽도(울릉도)와 송도(자산도·우산도)가 조선령임을 설득하였고, 이것이 家臣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鳥取藩은 두 섬이 그 소속이 아님을 幕府에 공식 보고(1695. 12) 하였고, 막부도 조선령임을 인정, 大谷·村川 兩家の 竹島出漁를 禁制하는 竹島渡海禁止令(1696. 1)을 내렸다. 이 禁止令에는 于山島(松島)가 포함된다.

于山島(松島)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靑陵島의 屬島였다. 또 于山島(松島)는 늦어도 12세기 중엽 이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알려져 왔고, 일본의 경우 17세기 중엽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지만 竹島(靑陵島)와 함께 일본의 어느 나라(州)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于山島는 江戸幕府에서 靑陵島를 朝鮮領으로 인정하여 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면서 母島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內務省의 質疑書나 太定官의 指令文에 “두 섬이 本邦(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힌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은 그것(두 섬)이 朝鮮領임을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해 말(1696)부터 조·일 양국은 울릉도(죽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하는 외교상의 절차를 밟았다. 이 일은 1699년 3월에 가서야 끝났다. 울릉도(죽도)와

우산도(자산도·송도)가 조선령임을 양측이 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明治政府의 최고기관인 太政官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다시 말하면 조선령임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17세기 말 德川幕府가 두 섬이 조선령임을 공식선언하였고 근대로 들어와 1877년 3월에 명치정부도 이를 확인하였다.

우산·울릉 2도설은 짐작건대, 고려에서 울릉도로 관원을 파견하기 시작하는 12세기 중엽부터 기록에 등장하고, 15세기 초엽에 이르러 정착되었다. 그런데 조선 초(태종대)부터 시행된 空島政策은 2도설을 동요시켰다. 동요는 17세기 중엽 이후 실학자들의 저술과 말엽 이후 靑陵島搜計의 정기적(3년에 1차) 실시에 따른 지리적 知見의 확대에 힘입어 鎮靜되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재정착된다. 2도설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下條 교수는 2도설을 배척하고 1도설을 고집하였다. 그는 2도설로 판단되는 역사적 사실들, 특히 安龍福의 일본에서의 활동과 울릉도쟁계(죽도 일건) 타결의 기틀이 된 竹島渡海禁止令에 대하여 외면하였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평



동북아시아역사연구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MBRIDGE

『영토 내셔널리즘의 탄생 -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정치학』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獨島/竹島問題」の政治學』, 東京:ミネルヴァ書房, 344쪽)

이 성 환 |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민족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영토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토 확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한 민족에게 있어서 영토는 넓힐수록 좋은 것인가. 영토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얻는 쪽과 잃는 쪽은 반드시 제로섬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고, 당사국들은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겪으며 양국관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맹목적으로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영토 민족주의가 반드시 옳이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경선의 변화 경험이 가장 많은 유럽은 2차대전 이후 영토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편협한 영토 민족주의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EU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영토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라는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한·중·일 간에 국가간 협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독도와 간도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의 상태로 있다. 간도문제는 아직 외교적 현안으로 되지는 않고 있으나,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최대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으며, 해결의 기미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

이다. 그 이유는 독도의 가치 그 자체보다도 양국의, 특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민족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 한·일 간 독도연구

한·일 양국에서 독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 현대송의 조사에 의하면, 1945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독도연구 관련 논문은 각각 577편과 171편을 헤아린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의 독도연구는 1960년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올해만 해도 일본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 권의 책과¹⁾ 보고서가 발간되었다.²⁾ 内藤正中·朴炳涉의 『竹島=팔도논쟁 -역사로부터 생각한다』와 竹島問題研究會의 「竹島問題에 對한 調査를 究報告書」가 그것이다. 전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의 독도연구는 주로 역사적·국제법적 입장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거나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도쿄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현대송의 이 책도 독도연구의 일환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심리적 왜곡이 증폭되면서 악순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변용되어 한국인의 영토의식, 대일감정,

1) 内藤正中·朴炳涉, 2007, 『竹島=팔도論쟁 - 較史から考える -』, 新幹社.

2) 竹島問題研究會, 2007, 『竹島問題に對する 調査研究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2007, 『竹島問題に對する 調査研究報告書(資料編)』(平成19年 3月).

대일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도문제가 한국인의 영토 민족주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이 책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독도문제를 영유권 문제로서가 아니라 독도문제가 어떻게 한·일 양국의 내셔널리즘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정치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연구로서는 이색적이다. 필자는 제1장에서 전후 한·일관계와 독도문제, 제2장에서 독도문제 담론, 제3장에서 한국인의 독도의식 조사라는 3가지 레벨에서 정치학적인 접근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를 매개로 한 한국의 영토 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분석 기법은 주로 역사적 내지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 온 종래의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로 평가받을 만하다.

영토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이 명확하다면 영토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 대부분의 영토문제가 국제정치질서의 변환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매우 강한 정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토문제의 정치성은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독도문제도 단순히 역사적·국제법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한·일 양국의 국가간·국민간에, 그리고 양국의 국내문제로서 강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이 책이 주목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II. 독도문제의 10년 주기설

먼저 이 책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독도문제를 10년 주기설로 파악한다. 첫번째의 독도 파동은 1977년 2월 일본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면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가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두번째의 파동은 1986년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의에서 일본 외상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세번째는 1996년 2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접안 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6년 일본 해양조사선이 독도 해역의 수로 조사를 시도하면서 전개된 양국의 긴장 관계도 정확히 10년 주기설에 해당됨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10년을 주기로 차츰 확대되고 있다. 2006년의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상충돌의 위기로까지 증폭되었다. 그러면 왜 10년 주기로 한·일 간에 독도문제가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증폭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물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성을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독도문제 10년 주기설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은 이 책이 갖고 있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III. 독도문제의 기원과 쟁점

이 책은 전후질서를 재편성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독도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명기되지 않음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문제, 어업문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와 함께 독도문제는 한·일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는 독도문제가 강화조약이라는 국제정치의 와중에서 한·일 양국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일본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함) 결정됨으로써, 독도문제의 정치성이 배태된 것임을 뜻한다. 독도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라는 거대한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애매하게 처리된 결과,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국익과 국가의 자존심 대결로 변용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가 명확히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비라도 한 듯,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른바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이다. 평화선은 어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누락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실질적 조치였다. 이 1965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일 간에는 이 평화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으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평화선은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협상카드로는 사용되었으나,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애매한 상태로 남겨지게 됨으로써 독도문제는 그 후 약 10년을 주기로 한·일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일 양국 간의 쟁점은 크게 역사적 문제와 국제법적 문제의 두 가지이다. 한·일 간에 가장 공방이 뜨거운 부분은 역사적 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주요 쟁점은 우산도(于山島)는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한·일 어느 쪽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가, 안용복의 활동은 사실인가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다음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정당한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도 한·일 간에 엇갈린다.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전개된 미국과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 및 동 조약 제2조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국은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필자는 매우 신중하게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균형을 상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한·일 양국의 ‘영토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까. 그러나 연구자로서 최소한의 균형 있는 자기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IV.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에서의 지적 담론

이 책의 제3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다른 독도문제 연구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독도에 대한 연구와 신문 기사의 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에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지(知)적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밝힌다.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론을 교육받고, 언론도 자국 영토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독도문제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매우 소박하면서도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 부분은 시작된다.

우선 양국에서 독도 연구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약 3배나 많다. 한국과 일본은 연구 분야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로 국제법적인 연구가 많으며(국제법적 연구 37.3%, 역사적 연구 18.9% 등), 일본은 역사적 연구가 많다(국제법적 연구 12.3%, 역사적 연구 35.7% 등). 이러한 연구 경향의 특징을 필자는 양국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각자의 ‘아킬레스건(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보였

으며,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와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해 증폭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1990년대 이후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양국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신문기사도 한국의 신문이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한국의 9개 신문에 게재된 독도문제 관련 기사 총수는 2,222건이며, 일본의 5개사 신문에 게재된 기사 총수는 512건이다. 양적으로 한국 신문이 4배 이상 많다. 기사의 내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신문기사에는 한국시민 - 한국정부 - 일본정부의 순으로 등장 빈도(42.6%, 31.1%, 14.0%)가 높으며, 일본 신문은 일본정부 - 한국정부 - 일본시민의 순(30.1%, 28.7%, 17.8%)이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시민이, 일본은 정부가 가장 중요한 액터(actor)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독도 담론의 주체가 한국은 민간중심으로, 일본은 정부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류해 보면, 영유권을 둘러싼 주장과 반론에 관한 것이 가장 많으며(한국 26.6%, 일본 25.2%), 항의와 캠페인에 관한 것(한국 29.0%, 일본 18.2%)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교접촉에 관한 내용은 한국이 3.5%, 일본이 11.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독도문제가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독도영유권이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문은 영유권 주장을 위한 자료로서 1993년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발견된 「선역도(鮮域圖)」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내용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쪽의 영유권 주장을 확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 덧붙여 한국 신문은 중·일 간의 영유권분쟁의 대상이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문제를 자주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독도문제에 대한 담론이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필자는 한국 신문은 독도문제를 보도하면서 가치중립적인 사실위주의 보도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도 지적하고 있다. 자존심·명예·국가주권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며, 이는 제국주의·종군위안부·야스쿠니신사·군국주의 문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영토'라 주장하는 데 비해 신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국제법보다는 역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신문이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 사회의 독도문제 담론은 신문의 이러한 논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독도 담론이 역사문제와 쉽게 연결되어 버리는 경향을 갖는 것은 이러한 신문의 보도 태도 때문이 아닐까.

그 외에 이 책에서는 신문 기사의 다양한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통해 한·일 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도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책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V. 한국인들의 '독도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면 한국인들의 독도인식과 그에 관련한 대일 이미지는 어떠한 연쇄(連鎖) 루트를 통해 형성되는 것일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필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1,183명을 대상으로 2001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양케트를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기(特記)할 점은 한국인의 40% 정도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단계에

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 단계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독도에 대한 영토관념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은 성장과 함께 더욱 강화되어, 한국인에게 있어 '독도=한국 영토'라는 문법명제(Grammatical proposition: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명제)가 성립되게 된다. 또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형성된다는 것은 이후의 교육이나 매스컴은 사실상 이미 형성된 인식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육과 매스컴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영토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루트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독도관련 노래와 텔레비전 등 전자 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과 문자 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는 근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와 '매스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한국인에게 독도영유권 인식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교육이나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아기에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영토관이 형성된 후 교육을 통해 이론화되면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해저 자원 확보'와 '군사적 측면' 등의 침략주의로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형성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본과의 거리감을 많이 느낄수록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또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한·일 간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군위안부 문제, 재일한국인의 차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독도문제가 대일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 민족주의가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로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이 과거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과 결부되어 일종의 침략주의 내지는 주권침해로 인식되는 연쇄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한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³⁾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필자가 밝힌 한국인의 독도인식의 연쇄 구조를 상징하고 있다.

VI. 영토 민족주의 극복과 독도문제

그러면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형성된 영토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독도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틀에서 영토문제를 인식하는 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독도를 그레이 존(gray zone)으로 둔 상태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 전체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문제를 매개로 한 인식론의 연쇄구조를 단절하고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결론맺고 있다. 필자의 이러한 인식은 한·일 관

3) 2006. 4. 26, 『중앙일보』.

계에서 독도문제가 처한 현실에서 나온 교육지책으로 보이며, 필자의 고뇌가 읽혀진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독도가 지금까지 한·일 간의 ‘그레이존’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독도를 매개로 한 한국에서의 영토 민족주의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민족주의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온도차가 있고, 한국이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역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은 독도문제의 연구영역을 정치학의 범위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법과 역사학에 갇혀 있던 독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해 준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1·2·3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및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과한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 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집필자 (집필순)

최장근(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권오엽(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종건(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차순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이효형(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준식(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송병기(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실장)

위 원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현혜(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윤재운(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8호(2007. 12)

초판 1쇄 인쇄 2007년 12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12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